

연구보고 2015-07

#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양미선 배운진 김정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 리 말

최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경직적인 장시간 고용체제에서 근로 형태 및 근무시간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간 정부 지원 확대로 보육과 유아교육은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대부분의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이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여성의 취업활동 확대 및 다양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보육·교육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여 왔다.

어린이집은 시간연장형 보육과 시간제보육,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과 온종일 돌봄교실 등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운영·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서비스 질 수준 또한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운영자와 담당교사의 어려움 및 요구 등을 파악하여 영유아 맞춤형보육과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서 맞춤형 보육과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정부 정책수립 자료로 기여하기를 바란다. 또한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관장과 담당교사, 보육·유아교육 담당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5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 차 례

요 약 .....	1
I. 서론 .....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2. 연구내용 .....	12
3. 연구방법 .....	13
4. 연구 범위 .....	23
II. 연구의 배경 .....	24
1. 영유아 부모의 경제활동 .....	24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 .....	35
3. 선행연구 .....	45
4. 국외 사례 .....	51
III.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현황 및 요구 .....	58
1. 시간연장보육 .....	58
가. 개요 .....	58
나. 현황 .....	59
다. 운영 시간 .....	65
라. 프로그램 운영 .....	68
마. 시간연장 보육교사 .....	71
바. 재정 운영 .....	84
사. 운영 애로 및 요구 .....	90
2. 24시간 보육 .....	101
가. 개요 .....	101
나. 현황 .....	101
다. 보육 환경 .....	104
라. 부모의 의무 .....	105
마. 프로그램 운영 .....	107

바. 24시간 보육교사 .....	109
사. 재정 운영 .....	112
아. 운영 애로 및 요구 .....	117
3. 시간제 보육 .....	123
가. 개요 .....	123
나. 운영 현황 .....	124
다. 운영 동기 .....	125
라. 홍보 .....	126
마. 보육 프로그램 운영 .....	127
바. 시간제 교사 .....	129
사. 재정 운영 .....	135
아. 운영 애로 및 요구 .....	139
4. 정책 시사점 .....	148
IV.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현황과 요구 .....	152
1. 유치원 방과후과정 .....	152
가. 개요 .....	152
나. 운영 현황 .....	153
다. 운영시간 .....	158
라. 이용 대상 .....	161
마. 프로그램 운영 .....	163
바.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	170
사. 재정 지원 .....	182
아. 운영 애로 및 요구 .....	184
2. 유치원 돌봄교실 .....	190
가. 개요 .....	190
나. 운영 현황 .....	191
다. 운영시간 .....	197
라. 이용 대상 .....	202
마. 프로그램 운영 .....	203
바. 돌봄 교사 .....	206
사. 재정 지원 및 운영 .....	217

아. 운영 애로 및 요구 .....	221
자. 개선사항 .....	225
3. 정책 시사점 .....	227
V. 정책 제언 .....	231
1. 기본 방향 .....	231
2.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내실화 방안 .....	232
3. 유치원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	243
4. 맺는 말 .....	250
참고문헌 .....	252
Abstract .....	258
부 록 .....	261
부록 1. 부록 표 .....	263
부록 2. 조사표 .....	269

## 표 차례

〈표 I-3-1〉 서비스별 운영기관 및 조사대상 수 .....	14
〈표 I-3-2〉 기관조사 조사내용: 어린이집 .....	14
〈표 I-3-3〉 시간연장보육 원장 조사 응답자 특성 .....	16
〈표 I-3-4〉 시간연장보육 교사조사 응답자 특성 .....	17
〈표 I-3-5〉 24 시간보육 원장 조사 응답자 특성 .....	18
〈표 I-3-6〉 시간제보육 원장 조사 응답자 특성 .....	18
〈표 I-3-7〉 시간제보육 교사 조사 응답자 특성 .....	19
〈표 I-3-8〉 방과후과정 운영 원장 조사 응답자 특성 .....	20
〈표 I-3-9〉 방과후과정 교사조사 응답자 특성 .....	20
〈표 I-3-10〉 돌봄교실 원장 조사 응답자 특성 .....	21
〈표 I-3-11〉 돌봄교실 교사조사 응답자 특성 .....	22
〈표 II-1-1〉 맞벌이가구 비율 .....	24
〈표 II-1-2〉 가구주 교육정도별 맞벌이가구 비율 .....	25
〈표 II-1-3〉 가구주 직업별 맞벌이가구 비율 .....	25
〈표 II-1-4〉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	26
〈표 II-1-5〉 영유아 가구의 맞벌이 여부 및 모의 취업상태 .....	26
〈표 II-1-6〉 영유아 모의 출근시간 .....	27
〈표 II-1-7〉 영유아 모의 활동분야별 출근시간 .....	28
〈표 II-1-8〉 영유아 모의 종사상 위치별 출근시간 .....	28
〈표 II-1-9〉 영유아 모의 근로형태별 출근시간 .....	29
〈표 II-1-10〉 영유아 모의 퇴근시간 .....	29
〈표 II-1-11〉 영유아 모의 활동분야별 퇴근시간 .....	30
〈표 II-1-12〉 영유아 모의 종사상위치별 퇴근시간 .....	30
〈표 II-1-13〉 영유아 모의 근로형태별 퇴근시간 .....	31
〈표 II-1-14〉 영유아 부모의 토요일 근무형태 .....	31
〈표 II-1-15〉 영유아 모의 활동분야별 토요일 근무형태 .....	32
〈표 II-1-16〉 영유아 모의 종사상 위치별 토요일 근무형태 .....	32
〈표 II-1-17〉 영유아 모의 근로형태별 토요일 근무형태 .....	33

〈표 II-1-18〉	영유아 부모의 일요일 근무형태 .....	33
〈표 II-1-19〉	영유아 모의 활동분야별 일요일 근무형태 .....	34
〈표 II-1-20〉	영유아 모의 종사상 위치별 일요일 근무형태 .....	34
〈표 II-1-21〉	영유아 모의 근로형태별 일요일 근무형태 .....	35
〈표 II-2- 1〉	모취업 및 맞벌이 여부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	35
〈표 II-2- 2〉	영유아 모의 활동분야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	36
〈표 II-2- 3〉	영유아 모의 종사상 위치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36
〈표 II-2- 4〉	영유아 모의 근로형태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	37
〈표 II-2- 5〉	모취업 및 맞벌이 여부별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	38
〈표 II-2- 6〉	모의 활동분야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	38
〈표 II-2- 7〉	모의 종사상 위치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	39
〈표 II-2- 8〉	모의 근로형태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	39
〈표 II-2- 9〉	모의 퇴근시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	40
〈표 II-2-10〉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등원시각 .....	41
〈표 II-2-11〉	영유아 모의 활동분야별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	41
〈표 II-2-12〉	영유아 모의 종사상 위치별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	42
〈표 II-2-13〉	영유아 모의 근로형태별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	42
〈표 II-2-14〉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하원시각 .....	43
〈표 II-2-15〉	영유아 모의 활동분야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	43
〈표 II-2-16〉	영유아 모의 종사상 위치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44
〈표 II-2-17〉	영유아 모의 근로형태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	44
〈표 II-2-18〉	영유아 모의 퇴근시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	45
〈표 II-4 1〉	보육시설 현황 .....	52
〈표 II-4 2〉	싱가포르 보육시설 현황 .....	54
〈표 II-4 3〉	시간제보육료 지원 현황: 영유아(18개월~5,6세) .....	54
〈표 II-4 4〉	시간제보육료 지원 현황: 영아(2~18개월) .....	55
〈표 II-4 5〉	일시보육 비용 .....	55
〈표 II-4 6〉	돌봄서비스 유형별, 연령별 이용 아동 수(2013. 12. 31 기준) ...	57
〈표 III-1- 1〉	시간연장 어린이집 수 .....	59
〈표 III-1- 2〉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	61
〈표 III-1- 3〉	시간연장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	61

〈표 III-1- 4〉	시간연장보육 반 수 및 이용 아동수 .....	62
〈표 III-1- 5〉	타 기관 아동의 시간연장보육 이용 여부 및 규모 .....	63
〈표 III-1- 6〉	토요일 시간연장보육 운영 여부 및 이용 아동 수 .....	64
〈표 III-1- 7〉	시간연장보육 운영시간 오전 시작시각 .....	65
〈표 III-1- 8〉	시간연장보육 운영시간 종료시각 .....	66
〈표 III-1- 9〉	타 기관 아동의 등원시각 .....	66
〈표 III-1-10〉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 주 하원시각 .....	67
〈표 III-1-11〉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 운영시 중점 활동 .....	68
〈표 III-1-12〉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 매뉴얼 인지 및 활용 .....	69
〈표 III-1-13〉	시간연장보육 관련 컨설팅 및 모니터링 경험 및 횟수, 필요성	70
〈표 III-1-14〉	시간연장 보육교사 수 .....	72
〈표 III-1-15〉	시간연장반 관련 교사연수 참여 여부 및 연수 주관기관 .....	73
〈표 III-1-16〉	시간연장반 관련 교사연수 미참여 이유 .....	74
〈표 III-1-17〉	시간연장보육 근무형태 .....	74
〈표 III-1-18〉	주간 보육교사 연장 근무형태 .....	75
〈표 III-1-19〉	월평균 연장근무 일수 .....	76
〈표 III-1-20〉	평일 1일 평균 연장근무 시간 .....	76
〈표 III-1-21〉	평일 출근 시각 .....	77
〈표 III-1-22〉	평일 퇴근 시각 .....	78
〈표 III-1-23〉	토요일 근무 여부 .....	78
〈표 III-1-24〉	시간연장반 교사의 출근 이후 주요 업무: 1+2순위 .....	79
〈표 III-1-25〉	제 특성별 시간연장반 교사의 출근 이후 주요 업무: 1순위 .....	79
〈표 III-1-26〉	시간연장반 운영 위한 추가인력 채용 .....	80
〈표 III-1-27〉	대체교사 지원 여부 및 미지원 시 담당자 .....	80
〈표 III-1-28〉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형태 .....	82
〈표 III-1-29〉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월평균 금액 .....	82
〈표 III-1-30〉	시간외 근무수당 만족도 .....	83
〈표 III-1-31〉	처우개선비 지원 여부 및 금액 .....	83
〈표 III-1-32〉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단가 .....	84
〈표 III-1-33〉	아침저녁 급식비 수납한도액 2015 년 기준 .....	85
〈표 III-1-34〉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예산 .....	85

〈표 III-1-35〉	시간연장보육 관련 시도특수보육시책 예산 .....	86
〈표 III-1-36〉	시간연장보육 월수입 및 항목별 지출 비중 .....	87
〈표 III-1-37〉	시간연장보육 운영비 추가 부담 여부 .....	87
〈표 III-1-38〉	시간연장보육 인건비 지원수준의 적절성 개요 .....	88
〈표 III-1-39〉	제 특성별 시간연장보육 인건비 지원수준의 적절성 .....	89
〈표 III-1-40〉	시간연장반 근무수당 지원 기준 및 시간당 보육료의 적절성 ..	90
〈표 III-1-41〉	시간연장보육 운영 동기 .....	91
〈표 III-1-42〉	시간연장보육의 어린이집 운영에의 도움정도 .....	92
〈표 III-1-43〉	어린이집 운영 도움 분야 .....	92
〈표 III-1-44〉	시간연장보육의 맞벌이가구의 자녀양육에의 도움 .....	93
〈표 III-1-45〉	시간연장보육 운영의 어려움: 1+2 순위 .....	93
〈표 III-1-46〉	제 특성별 시간연장보육 운영 시 어려움 1 순위 .....	94
〈표 III-1-47〉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채용 시 애로 .....	95
〈표 III-1-48〉	시간연장보육 운영의 어려움: 1+2 순위 .....	96
〈표 III-1-49〉	시간연장보육 담당교사 근무만족도 .....	97
〈표 III-1-50〉	시간연장보육 향후 운영 의향 .....	97
〈표 III-1-51〉	시간연장보육 교사 향후 근무 의향 .....	98
〈표 III-1-52〉	시간연장보육 근무 중단 이유 .....	98
〈표 III-1-53〉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위한 개선사항: 1+2 순위(원장) .....	99
〈표 III-1-54〉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위한 개선사항: 1순위(원장) .....	100
〈표 III-1-55〉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위한 개선사항 .....	100
〈표 III-2- 1〉	24 시간 보육 어린이집 수 .....	102
〈표 III-2- 2〉	24 시간 보육 아동수 .....	103
〈표 III-2- 3〉	어린이집별 이용 아동수 .....	103
〈표 III-2- 4〉	24 시간 보육 불필요 아동의 이용 여부 .....	104
〈표 III-2- 5〉	지역 특성 .....	104
〈표 III-2- 6〉	24 시간 보육실 형태 .....	105
〈표 III-2- 7〉	24 시간 보육 이용 부모의 의무이행 .....	105
〈표 III-2- 8〉	부모 의무 미이행 시 조치방법 .....	106
〈표 III-2- 9〉	24시간 보육 중점사항: 1+2순위 .....	107
〈표 III-2-10〉	24시간 보육 중점사항 1 순위 .....	107

〈표 III-2-11〉	시간연장형 보육프로그램 인지 및 활용 여부	108
〈표 III-2-12〉	지도점검 지원 여부 및 횟수	109
〈표 III-2-13〉	24 시간보육 교사 수	109
〈표 III-2-14〉	24 시간 보육교사 수	110
〈표 III-2-15〉	24 시간 보육 담당교사	110
〈표 III-2-16〉	24 시간보육교사 교대시각	111
〈표 III-2-17〉	24 시간 보육 담당교사 외 추가인력	111
〈표 III-2-18〉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단가	113
〈표 III-2-19〉	24 시간보육 관련 시도특수보육시책 예산	113
〈표 III-2-20〉	24 시간 보육료 월 수입	114
〈표 III-2-21〉	24 시간 보육료 미납·연체 여부 및 금액	114
〈표 III-2-22〉	어린이집 재정운영 상 부담되는 비용 1+2 순위	115
〈표 III-2-23〉	어린이집 재정운영 상 부담되는 비용: 1 순위	115
〈표 III-2-24〉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의 적절성	116
〈표 III-2-25〉	24 시간보육 운영 동기	117
〈표 III-2-26〉	어린이집 운영에의 도움정도	118
〈표 III-2-27〉	24 시간보육의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 분야	118
〈표 III-2-28〉	24 시간 보육의 취약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효과	119
〈표 III-2-29〉	24시간 보육 운영의 어려움 1+2 순위	120
〈표 III-2-30〉	24시간 보육 운영의 어려움: 1 순위	120
〈표 III-2-31〉	24 시간 보육 운영 여부 계획	121
〈표 III-2-32〉	24 시간보육 전문어린이집 운영 관련 의견	122
〈표 III-2-33〉	24 시간 전문어린이집 운영 찬성 이유	122
〈표 III-2-34〉	24 시간 전문어린이집 운영 반대 이유	123
〈표 III-3- 1〉	관리자, 담당기관 보육반 수	124
〈표 III-3- 2〉	운영 반수	125
〈표 III-3- 3〉	시간제보육 운영 동기	125
〈표 III-3- 4〉	홍보 방법	126
〈표 III-3- 5〉	효과적인 홍보방법 1+2 순위	127
〈표 III-3- 6〉	보육일지 작성 여부 및 미작성 이유	128
〈표 III-3- 7〉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계획 시 참고자료	128



〈표 III-3- 8〉	시간제보육 관련 교육 및 모니터링의 질 제고 효과 .....	129
〈표 III-3- 9〉	시간제보육 전담교사 채용 방법 .....	130
〈표 III-3-10〉	시간제보육 교사 기준 .....	131
〈표 III-3-11〉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이수율의 적절성 .....	132
〈표 III-3-12〉	영아보육 교육 이수 여부 .....	133
〈표 III-3-13〉	추가 채용 인력 .....	133
〈표 III-3-14〉	대체교사 지원 여부 및 미지원 시 시간제보육 담당자 .....	134
〈표 III-3-15〉	시간제보육 전담교사 수당 지급 여부 .....	135
〈표 III-3-16〉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원기준 .....	136
〈표 III-3-17〉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지원기준 .....	136
〈표 III-3-18〉	시간제보육 운영 및 지원기준 .....	137
〈표 III-3-19〉	시간제보육 예산 .....	138
〈표 III-3-20〉	시간제 보육 월 보육료 수입 .....	138
〈표 III-3-21〉	시간제보육료 주 사용처 .....	139
〈표 III-3-22〉	시간제보육 서비스 효과성 .....	140
〈표 III-3-23〉	시간제보육 운영의 어려움 개요 .....	141
〈표 III-3-24〉	시간제보육 운영의 어려움 1 .....	142
〈표 III-3-25〉	시간제보육 운영의 어려움 2 .....	142
〈표 III-3-26〉	시간제보육 운영의 어려움 3 .....	143
〈표 III-3-27〉	시간제보육 운영의 어려움 개요 .....	144
〈표 III-3-28〉	시간제보육 담당교사의 어려움 1 .....	144
〈표 III-3-29〉	시간제보육 담당교사의 어려움 2 .....	145
〈표 III-3-30〉	시간제보육교사 근무만족도 개요 .....	145
〈표 III-3-31〉	시간제보육교사 근무만족도 .....	146
〈표 III-3-32〉	시간제보육 계속 운영 여부 .....	147
〈표 III-3-33〉	향후 운영 중단 이유 .....	147
〈표 IV-1- 1〉	방과후과정 운영율 .....	153
〈표 IV-1- 2〉	방과후과정 이용률 .....	154
〈표 IV-1- 3〉	방과후과정반 학급 편성, 학급 및 유아 수 .....	156
〈표 IV-1- 4〉	담당 학급유형 및 연령 구성, 학급 당 유아수 .....	157
〈표 IV-1- 5〉	휴업일, 토요일 방학기간 중 방과후과정 운영 여부 .....	158

〈표 IV-1- 6〉	방과후과정반 시작시각 .....	159
〈표 IV-1- 7〉	방과후과정반 종료시각 .....	159
〈표 IV-1- 8〉	방과후과정 주요 하원시간 .....	160
〈표 IV-1- 9〉	방과후과정반 적정 하원시간 .....	161
〈표 IV-1-10〉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 .....	162
〈표 IV-1-11〉	방과후과정 유아 선정 시 기준 .....	162
〈표 IV-1-12〉	방과후과정 유아 선정 시 우선순위: 1+2순위 .....	163
〈표 IV-1-13〉	방과후과정 교육내용 예 .....	164
〈표 IV-1-14〉	특성화프로그램 비용 기준 .....	165
〈표 IV-1-15〉	방과후과정 중점 교육내용: 1+2순위(원장) .....	165
〈표 IV-1-16〉	방과후과정 중점 활동: 1+2순위(교사) .....	166
〈표 IV-1-17〉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과목 .....	166
〈표 IV-1-18〉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운영시간 .....	167
〈표 IV-1-19〉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이유 .....	168
〈표 IV-1-20〉	방과후과정 관련 장학 및 컨설팅 참여 여부 및 영역 .....	168
〈표 IV-1-21〉	장학 및 컨설팅 필요성 .....	169
〈표 IV-1-22〉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도·점검 내용 .....	170
〈표 IV-1-23〉	방과후과정반 담당교사 유형 .....	171
〈표 IV-1-24〉	방과후과정 관련 교사 연수 참여 여부 및 연수 주관기관 .....	172
〈표 IV-1-25〉	방과후과정 관련 교육 및 연수 미참여 이유 .....	172
〈표 IV-1-26〉	기본 교육과정반 교사의 연장근무 시간 .....	173
〈표 IV-1-27〉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평일 출근시각 .....	174
〈표 IV-1-28〉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평일 퇴근시각 .....	174
〈표 IV-1-29〉	방과후과정반 전담교사 고용 형태 .....	175
〈표 IV-1-30〉	방과후과정 전담교사의 경력 인정 여부 및 인정 정도 .....	176
〈표 IV-1-31〉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적정 자격 .....	176
〈표 IV-1-32〉	방과후과정반 운영시간 외 담당 업무 1+2 순위 .....	177
〈표 IV-1-33〉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외에 추가 인력 채용 여부 .....	178
〈표 IV-1-34〉	지원 인력 여부 및 유형 .....	178
〈표 IV-1-35〉	기본교육과정 교사 연장 근무 시 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 .....	179
〈표 IV-1-36〉	연장근무에 따른 근무 수당 형태 .....	180

〈표 IV-1-37〉	초과 근무수당 만족도 .....	180
〈표 IV-1-38〉	처우개선비 지원 여부 및 수준 .....	181
〈표 IV-1-39〉	교사 처우개선비 만족도 및 적정 수준 .....	182
〈표 IV-1-40〉	방과후과정비 지원액 .....	182
〈표 IV-1-41〉	방과후과정 예산 및 유아교육예산 대비 지원 비율 .....	183
〈표 IV-1-42〉	방과후과정의 유치원 운영 도움정도 .....	184
〈표 IV-1-43〉	방과후과정의 유치원 운영 도움 분야 .....	185
〈표 IV-1-44〉	방과후과정의 맞벌이 부모 자녀양육 도움정도 .....	186
〈표 IV-1-45〉	방과후과정 운영 시 어려움 1+2 순위 .....	186
〈표 IV-1-46〉	제 특성별 방과후과정 운영 시 어려움: 1순위 .....	187
〈표 IV-1-47〉	방과후과정반 운영 시 어려운 점 1+2 순위 .....	187
〈표 IV-1-48〉	방과후과정 개선사항 1+2 순위(원장) .....	188
〈표 IV-1-49〉	제 특성별 방과후과정 개선사항: 1순위 .....	189
〈표 IV-1-50〉	방과후과정 개선사항 1+2 순위(교사) .....	190
〈표 IV-2- 1〉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현황 .....	192
〈표 IV-2- 2〉	돌봄교실 운영형태 .....	193
〈표 IV-2- 3〉	아침·저녁돌봄 운영 학급 및 유아 수 .....	194
〈표 IV-2- 4〉	학급당 유아 수 .....	194
〈표 IV-2- 5〉	돌봄교실 교사1인당 적정 유아수 .....	195
〈표 IV-2- 6〉	휴업일 토요일 방학기간 중 돌봄교실 운영 여부 .....	196
〈표 IV-2- 7〉	토요일 미운영 이유 .....	196
〈표 IV-2- 8〉	엄마품 온종일 돌봄 운영 현황 .....	197
〈표 IV-2- 9〉	아침돌봄 시작시각 .....	198
〈표 IV-2-10〉	저녁돌봄 시작시각 .....	198
〈표 IV-2-11〉	저녁돌봄 종료시각 .....	199
〈표 IV-2-12〉	저녁돌봄 주요 하원시간 .....	199
〈표 IV-2-13〉	아침돌봄 적정 시작시각: 교사 .....	200
〈표 IV-2-14〉	저녁돌봄 적정 종료시각: 원장 .....	201
〈표 IV-2-15〉	저녁돌봄 적정 종료시각: 교사 .....	201
〈표 IV-2-16〉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 .....	202
〈표 IV-2-17〉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판단 서류 제출 여부 및 종류 .....	203

〈표 IV-2-18〉	돌봄교실 형태 및 전용교실 확보 시 예산 .....	204
〈표 IV-2-19〉	돌봄교실 중점 활동: 1+2 순위 .....	204
〈표 IV-2-20〉	장학 및 컨설팅 경험 여부 .....	205
〈표 IV-2-21〉	장학 또는 컨설팅 분야 .....	205
〈표 IV-2-22〉	돌봄교실 운영 위한 장학 및 컨설팅의 필요성 .....	206
〈표 IV-2-23〉	돌봄교사 유형 원장 .....	207
〈표 IV-2-24〉	제 특성별 돌봄교실 담당 교사 수 .....	207
〈표 IV-2-25〉	돌봄교실 방학 유무 및 기간 담당 교사 유형 .....	208
〈표 IV-2-26〉	돌봄교실 관련 연수 주관 기관 .....	209
〈표 IV-2-27〉	돌봄교실 관련 연수 미참여 이유 .....	210
〈표 IV-2-28〉	연장 근무교사1 일 평균 초과 근무시간 .....	211
〈표 IV-2-29〉	돌봄강사 출근시각 .....	211
〈표 IV-2-30〉	돌봄강사 퇴근시각 .....	212
〈표 IV-2-31〉	돌봄 전담강사 고용형태 .....	212
〈표 IV-2-32〉	돌봄강사 적정 자격 .....	213
〈표 IV-2-33〉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근무시간 담당 업무: 1+2 순위 .....	214
〈표 IV-2-34〉	돌봄교사 지원인력 .....	214
〈표 IV-2-35〉	연장 또는 당직근무 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 .....	215
〈표 IV-2-36〉	초과 근무수당 지급형태 .....	216
〈표 IV-2-37〉	초과 근무수당 만족도 .....	217
〈표 IV-2-38〉	2015년 돌봄교실 지원 예산 .....	218
〈표 IV-2-39〉	지원 예산의 충분성 .....	218
〈표 IV-2-40〉	정부지원금 외 유치원 추가 부담 여부 및 비중 .....	219
〈표 IV-2-41〉	돌봄교실 지원 예산에 관련한 의견 개요 .....	220
〈표 IV-2-42〉	제 특성별 돌봄교실 지원 예산에 관련 의견 .....	220
〈표 IV-2-43〉	추가 수납 항목 및 금액 .....	221
〈표 IV-2-44〉	돌봄교실 운영 동기 .....	221
〈표 IV-2-45〉	돌봄교실의 유치원 도움정도 .....	222
〈표 IV-2-46〉	돌봄교실의 운영 도움 분야 .....	223
〈표 IV-2-47〉	돌봄교실 운영 시 어려움: 1+2 순위 .....	223
〈표 IV-2-48〉	제 특성별 돌봄교실 운영 시 어려움 1 순위 .....	224

〈표 IV-2-49〉	돌봄교실 운영시 어려운 점: 1+2순위(교사) .....	225
〈표 IV-2-50〉	돌봄교실 활성화 위한 개선사항: 1+2순위(원장) .....	225
〈표 IV-2-51〉	제 특성별 돌봄교실 활성화 위한 개선사항: 1순위 .....	226
〈표 IV-2-52〉	돌봄교실 개선사항: 1+2순위(교사) .....	227
〈표 V-2- 1〉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정책제언 요약 및 추진 시기 .....	232
〈표 V-1- 2〉	시간연장보육 모니터링 지표(안) .....	235
〈표 V-3- 1〉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정책제언 요약 및 추진 시기 ..	244
〈표 V-3- 2〉	유치원 방과후 과정 모니터링 지표(안) .....	246

## 그림 차례

[그림 Ⅲ-1-1]	연도별 시간연장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	60
[그림 Ⅲ-1-2]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 주요 하원시각 .....	67
[그림 Ⅲ-1-3]	시간연장보육 운영의 어려움: 1+2순위(원장) .....	94
[그림 Ⅲ-1-4]	시간연장보육 운영의 어려움: 1+2순위(시간연장보육교사) .....	96
[그림 Ⅲ-2-1]	24시간보육 운영의 어려움: 1+2순위 .....	120
[그림 Ⅲ-3-1]	시간제보육 운영의 어려움 개요: 기관장 .....	141
[그림 Ⅲ-3-2]	시간제보육 운영의 어려움 개요: 시간제 보육교사 .....	144
[그림 Ⅳ-1-1]	연도별 방과후과정 운영률 및 이용률 .....	154
[그림 Ⅳ-1-2]	시도별 방과후과정 운영률과 이용률: 2014년 .....	155
[그림 Ⅳ-1-3]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의 주요 하원시간 .....	160
[그림 Ⅳ-1-4]	방과후과정 개선사항: 1+2순위(원장) .....	189
[그림 Ⅳ-2-1]	저녁돌봄 이용 유아의 주요 하원시간 .....	200
[그림 Ⅳ-2-2]	돌봄교실 운영 시 어려움: 1+2순위 .....	223
[그림 Ⅳ-2-3]	돌봄교실 활성화 위한 개선사항: 1+2순위(원장) .....	226

## 부표 차례

〈부표 Ⅲ-2-1〉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운영에 대한 찬반 .....	263
〈부표 Ⅲ-2-2〉	인건비 미지원 여부 및 기간 .....	263
〈부표 Ⅲ-2-3〉	24시간 담당교사 채용 시 고려사항: 2순위 .....	264
〈부표 Ⅲ-2-4〉	24시간 보육 중점사항 2 순위 .....	264
〈부표 Ⅲ-2-5〉	어린이집 재정운영 상 부담되는 비용: 2 순위 .....	265
〈부표 Ⅲ-2-6〉	24시간 보육 운영의 어려움 2 순위 .....	265
〈부표 Ⅳ-1-1〉	방과후과정 중점 활동 1 순위 .....	266
〈부표 Ⅳ-1-2〉	방과후과정반 운영 시 어려운 점(1 순위) .....	266
〈부표 Ⅳ-2-1〉	돌봄교실 중점 활동: 1순위 .....	267
〈부표 Ⅳ-2-3〉	돌봄교실 개선 사항: 1순위 .....	267
〈부표 Ⅳ-2-4〉	휴일 중 돌봄교실 담당자: 휴업일 .....	268
〈부표 Ⅳ-2-5〉	휴일 중 돌봄교실 담당자: 토요일 .....	268





## 요 약

### 1. 서론

#### 가.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등 시간연장형 보육과 시간제보육, 유치원의 방과후과정과 온종일 돌봄교실 등 운영 및 이용 현황, 애로 요구 등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영유아 맞춤형보육과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
-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존 자료를 분석하여 영유아 취업모의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추이, 영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하원시간, 영유아 취업모의 출퇴근시간과 영유아 자녀 등하원시간 간의 시간차이 등 파악함.
  - 관련 선행연구, 관련법 및 제도, 예산, 각종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
  - 어린이집 맞춤형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및 이용 현황,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장과 담당교사 요구 및 애로 파악
  -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내실화를 위한 단·중장기 방안 도출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선행연구 고찰하고, 관련법 및 제도, 통계자료 등 수집 분석함.
  - 전국보육실태조사(2009, 2012)와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기존 자료 분석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장 및 교사, 이용 부모 대상 집단 심층면담 실시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담당관,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실무협의회 개최함.

## 2.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현황 및 요구

### 가. 시간연장보육

- 시간연장 어린이집 2014년 기준 8,644개소, 전체 어린이집의 19.8%
-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수는 2014년 기준 41,655 명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2.8% 차지
- 시간연장반은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1.9개반 이용 아동은 평균 8.7 명으로 영아 4.4명, 유아 4.2명, 이중 맞벌이가구 자녀는 88.2% 임.
  - 타 기관 이용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중 37.5%, 평균 2.7 명
  - 토요일 시간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은 26.9%, 이용 아동 수는 평균 3.7명
- 시간연장보육 종료시각은 오후 20시 30분에서 22시 사이가 54.0%, 오후 22시에서 23시 19.9%, 오후 22시 이후는 16% 정도
  - 시간연장보육 주 하원시각은 오후 20시 30분에서 21시 사이에 수렴
- 2014년 기준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9,224명, 민간과 가정이 각각 3,611명, 3,077 명으로 과반수 이상 차지
-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는 평균 1.0명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는 평균 0.4명 채용
- 시간연장근무 보육교사의 월평균 연장근무 일수는 월평균 12.7일, 연장근무 시간은 1일 평균 2.7시간임
  -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평균 28만 8천원
- 시간연장반 교사의 평일 출근시각은 오후 15시 30분에서 16시 사이가 25.0%, 오후 15시에서 15시 30분 사이가 19.4%, 오후 16시 이후가 18.9% 정도임
  - 시간연장반 교사의 평일 퇴근시각은 오후 21시 30분에서 22시가 57.3%, 오

후 22시에서 22시 30분이 25.5%, 나머지 시간대는 10% 미만

- 시간연장보육 운영 동기는 재원아 부모 요구 43.2%, 지역특성 32.2%, 원아 확보 8.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조건 7.2%, 정부 참여 권장 6.8% 순임
- 시간연장보육의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된다는 비율은 37.2%이고, 도움정도는 평균 2.9점임.
  - 시간연장보육이 운영에 도움되는 분야는 부모의 어린이집 만족도 향상 45.9%, 원아 모집 29.0%, 공보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17.3% 임
- 시간연장보육이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에 도움된다는 비율은 85%이고, 도움정도는 평균 4.0점임.
- 시간연장보육 운영 시 어려움 1, 2순위 합산하면, 운영비 추가 부담이 45.6%로 높고, 시간연장보육 담당교사 채용이 31.4%, 유아 및 교사 안전문제 26.4%, 혼합반 운영과 타 기관 이용 아동의 이혼 등원이 각각 21% 정도
- 시간연장보육 담당교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로 평균 3.6점 업무량 및 업무 강도는 평균 3.4점, 처우는 평균 3.2점임.
- 시간연장보육 향후 운영 여부에 대해 62.2%는 계속 운영, 4.5%는 운영 여부 고민 중, 3.4%는 운영 중단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
- 시간연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1, 2순위를 합산하면, 교사 인건비 지원 수준 인상이 40.3%, 이용시간 합산 방법 개선 39.3%, 영아보육 시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 28.8%임.

#### 나. 24시간 보육

- 2014년 기준 24시간보육 어린이집은 277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중 0.6% 차지
  - 이용 아동은 1개소당 평균 4.3명, 영아 1.9명, 유아 2.4명으로 유아가 많음.
- 전용 보육실이 있는 어린이집은 25.0%이고, 나머지는 기존 보육실 사용
  - 민간/법인단체등,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의 전용 보육실 설치율이 높음.
- 24시간 보육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81.3%가 받고, 가정이 92.9%로 높고,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이 84.6%, 민간/법인단체등이 70.8% 순임.

- 24시간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2014년 300명으로 이용 아동 감소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고 있음.
  - 어린이집 당 보육교사 수는 평균 1.6명, 민간/법인단체등과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모두 1.7~1.8명, 가정 1.2명으로 가정이 적음.
  - 24시간 어린이집 중 93.8%는 교사 별도 채용, 17.2%는 시간연장보육 교사가 연장 근무, 3.1%는 원장이 담당함
- 24시간 보육 운영 동기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필요성 인식이 31.3%, 정부의 참여 권장 25.0%, 재원아 부모의 요구 17.2% 순임.
- 24시간 보육이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된다는 비율은 40.6%, 도움정도는 2.9점
  - 도움분야는 원아모집 42.3%, 재정 운영과 부모의 어린이집 만족도 향상, 공보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각각 19.2% 정도임.
- 24시간 보육이 자녀양육에 도움된다는 비율은 81.3% 동의 정도는 4.3점
- 24시간 보육 운영의 어려움 1, 2순위를 합산하면,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부담이 52.1%로 높고, 운영비 추가 부담과 24시간 보육교사 채용이 각각 31.7%, 야간보육에 따른 영유아 및 교사 안전문제 30.2%, 추가 보육료 연체 및 미납에 따른 보육료 수납의 어려움 23.7%, 교사 1인 근무로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어려움 21.0%
-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42.2%는 계속 운영, 42.2%는 현재 고민중, 15.6%는 그만둘 계획이 있음.
- 24시간보육을 전문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51.6%가 찬성, 9.4%가 절대 찬성으로 61.0%가 찬성함
  - 찬성 이유는 24시간 보육 아동의 체계적인 관리가 30.8%,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24시간 보육 관련 재정의 효율적 운영 17.9%, 야간보육 시 안전 강화 12.8%임.

#### 다.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수는 2015년 8월말 기준 총 179개소로, 어린이집이 139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38개소, 기타 기관이 2개소임.

- 시간제보육 운영 반수는 평균 1.1개반임.
- 시간제보육 운영 동기는 46.7%가 정부 정책 협력 26.7%는 시간제보육으로 기관 특성화, 11.1% 원아 모집에 도움, 8.1%는 정원 미달로 유휴공간 활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은 정부정책 협력이 80%, 민간/법인단체등과 가정은 시간제보육 특성화가 각각 46.5, 42.9%
- 제공기관 중 71.1%가 시간제 전담교사 별도 채용, 나머지 28.1%는 기관에 재직 중인 일반 교사 시간제보육반 교사로 전환
- 시간제보육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기준에 대해 92.6%가 적절, 교사 대 아동비율(1:5)은 43.8%가 적절, 영아 보육 특별직무교육 이수는 94%가 적절하다고 응답함.
- 시간제보육 보육료 수입은 월평균 61만원으로 2개반 이상 운영하는 기관이 1개반 운영기관보다 3배 이상 많음.
- 시간제보육의 효과성을 3가지 차원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가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마련이 71.1%,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의 부모 지원 82.2%, 시간제 취업 부모 지원은 68.9%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함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운영 어려움으로 홍보의 어려움이 43.7%, 이용자 확보 42.2%, 회계 관리 및 정리 37.8% 순임
- 시간제보육 교사의 근무만족도를 보면, 근로환경 만족한다는 비율이 64.5%, 급여 및 처우 58.9%, 업무강도가 43.3% 임
-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78.5%는 계속 운영, 20%는 현재 운영 여부 고민 중이고, 1.5%는 앞으로 운영 중단 예정임

### 3.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현황과 요구

#### 가. 방과후과정

-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은 2014년 기준 총 8,577 개원으로 전체 유치원 중 97.2%가 운영하고, 유치원 재원아 중 67.5%가 참여함.

- 유치원 중 59.7%가 오후 재편성반 37.2%는 독립편성 전일반 독립편성 전일반과 오후 재편성반 둘다 운영하는 경우는 3.1%로 소수
  - 독립 편성 전일반은 평균 3.2학급, 오후 재편성반은 평균 2.9학급
  - 이용 유아 수는 독립 편성 전일반 평균 61.7명, 오후 재편성반 평균 61.6명
- 방과후과정 시작시간은 오후 14시에서 15시 사이가 51.3%, 오후 13시에서 14시가 42.9%로 대부분 오후 13시에서 15시 사이에 시작함.
  - 방과후과정 종료시각은 오후 17시 이후 시간대별로 각각 25.8%, 29.0%, 24.6%로 일정 수의 유아가 하원함.
-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 중 맞벌이가구 자녀는 67.7%, 학급당 맞벌이가구 비율은 평균 68.1% 정도임.
-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 선정기준 마련 시 적정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 82.1%, 저소득가구 53.3%, 한부모가구 25.9%, 조손가구 12.6%, 돌봄취약가구 8.4%, 장애부모가구 7.1% 순임.
-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1일 운영시간은 평균 61.7분
-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이유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 62.2%, 학부모가 원해서가 31.3%, 나머지 이유는 소수임.
- 방과후과정반 담당교사는 방과후 전담교사 79.2%, 기본교육과정 교사 연장근무 41.8%, 유급 자원봉사자 29.9%, 보조교사 15.3% 정도임.
  - 기본 교육과정반 교사의 연장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9시간
- 전담교사 중 53.3% 정규직, 37.2% 계약직(기간제), 9.1% 시간제 교사임.
- 기본교육과정 교사가 연장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하는 유치원은 39.2%이고, 이중 사립이 46.5%, 공립 병설 13.5%, 공립 단설 25.0% 임
- 방과후과정이 유치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71%이고, 평균 4.0 점임
  - 도움되는 분야는 부모의 유치원 만족도 향상 64.2%, 원아 모집 16.2%,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기여 13.7%, 재정 운영에의 도움 5.9%임.
- 방과후과정이 맞벌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도움된다는 비율은 93.3%이고, 도움

정도는 평균 4.6점임.

- 방과후과정 운영의 어려움 1, 2순위를 합산하면 방과후과정반 교사채용이 54.2%, 교육청 지정 운영시간 준수 48.6%, 교육청의 지나친 지도감독 28.9%
  - 방과후과정반 담당 교사가 겪는 어려움은 유아 수 대비 인력 부족이 43.1%, 다양한 업무로 인한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 42.6%, 혼합 연력 학급 구성에 따른 교육활동 계획 및 실행과 기본 교육과정반 교육활동과 중복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이 각각 27.2%, 25.6%
- 방과후과정 개선사항으로 유치원 원장은 운영비 지원 확대가 46.9%로 높고, 보조인력 지원 43.1%, 수요에 따른 운영시간 탄력 조정 36.1%,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인상 28.5%, 방과후과정비 지원대상 조정과 특성화프로그램 운영기준 완화가 10% 대임.

#### 나. 온종일 돌봄교실

-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수는 2015년 2월 기준 979개원으로, 국공립 386개원, 사립이 593개원으로 사립이 많음.
- 온종일 돌봄과 저녁돌봄이 각각 47.4%, 45.9%, 아침 돌봄은 6.8%로 소수임.
  - 아침돌봄의 운영 학급은 평균 1.3개 학급, 유아는 기관당 평균 17.7명
  - 저녁돌봄 운영 학급은 평균 1.3개 학급, 유아는 기관당 평균 24.2명
- 방학기간 중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89.5%, 토요일 34.6%, 휴업일 9.0%
- 돌봄교실 시작시각은 아침돌봄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가 86.0%, 저녁돌봄 시작시각은 오후 17시에서 18시가 58.7%로 다수임.
  - 저녁돌봄 종료시각은 오후 20시에서 21시가 27.8%, 오후 22시 이후가 27.0%, 19시에서 20시가 21.4% 순임.
- 맞벌이 자녀 비율은 아침돌봄 평균 92.7%, 저녁돌봄 92.0%임.
- 돌봄강사는 돌봄교실 전담강사가 69.2%로 많고, 기본교육과정 교사 57.9%, 방과후과정반 교사 25.6%, 유급 자원봉사자 15.0%, 보조교사 9.8% 순임.
  - 아침·저녁돌봄 교사 중 돌봄교실 관련 연수 이수한 교사는 40.0% 정도임

- 돌봄교실 운영 동기는 지역사회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함이 51.1%로 절반을 차지하고, 재원 원아 부모의 요구 29.3%, 정부(교육부, 교육청 등)의 참여 권장 12.0%, 원아 확보 7.5% 순임
- 돌봄교실 운영 시 어려움 1순위는 매년 예산 감소로 인한 유치원 부담 가중이 35.3%로 높고, 경직된 운영시간과 돌봄교실 위한 강사 채용이 각각 16.5%, 유아 및 교사 안전 문제 11.3%임.
- 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1순위는 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증액이 42.1%, 2순위로는 운영상의 효율성 및 융통성 제고가 24.0% 임.

#### 4. 정책 제언

##### 가.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내실화 방안

-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모든 어린이집이 시간연장보육 운영하기보다 거점형 등 운영의 효율성 강화
  - 시간연장보육료는 1차적으로 3,500원까지 인상하고, 2단계는 4,000천원, 객관적인 시간연장보육 비용 산출을 통해 현실화함.
  - 타 기관 이용 아동이 정규 보육시간 내에 부모의 필요에 의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가 보육료를 부담함.
  - 시간연장형 보육프로그램 매뉴얼 홍보를 강화하고, 교사 교육 활성화하여 현장 적용함.
  - 시간연장보육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실시함.
    - 평가인증에서 제외되고,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나 영양 안전 회계 등에 국한되어 있어 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대체교사 지원사업 계획 시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 사업량을 별도 책정하여 시간연장보육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함.
  - 6시간 시간제보육교사로 전환하여 인건비를 지원함.
  - 시간연장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지원 체계 개편



- 보육교사 특수직무교육에 '시간연장보육 직무교육'을 신설하여 시간연장보육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유지, 개발
- 시간연장반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
- 어린이집 24시간보육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음
  - 24 시간 보육이 반드시 필요한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군구 보육정책 위원회에 '24시간보육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수요자 검증절차를 마련함
  - 24시간 보육 이용 시 주 1회 이상 가정에서 보호하게 하되 부모의 가정형 편이나 근로특성 고려하여 아동을 집으로 데려가는 요일은 부모가 지정함.
  - 24시간보육 어린이집 지정조건으로 전용 보육실 설치기준을 설정하여 24시간보육 이용 아동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부모가 부모부담 보육료를 미납한 경우 익월 보육료 지원을 중단함.
  - 아침 급식 및 등원 준비를 위한 보조 인력을 지원함.
  - 24시간보육은 지정제에서 전담어린이집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함.
  - 24 시간보육 이용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연계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
- 시간제보육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수요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접근성 및 보육환경, 서비스 질 등의 평가를 거쳐 제공기관을 재배치함.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함.
  - 시간제보육 운영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시간제보육반은 2개반 기본 배치
  - 제공기관장, 관리자, 보육교사 등 피교육자별로 특성화하고 분기별로 실시 하며,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 실시
  - 시간제보육 교사의 영아보육 직무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함.
  - 시간제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공기관 보육교직원의 업무 부담 경 감을 위해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함.

- 시간제보육 홍보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제공기관이 설치된 지역 중심의 실 수요자 대상으로 확대함.
-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시행 시 이용 대상을 맞춤형 이용 아동으로 확대함

#### 나. 유치원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 유치원 방과후과정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방과후과정 이용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함
- 돌봄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장학 및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정례화함
-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대상 연수를 정례화함
-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함.
-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과후과정 담당교사로 배정 시 사전에 연수에 참여하도록 함.
- 방과후과정 전담교사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기본 교육과정 교사에 준하여 경력 인정, 방과후과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중심으로 업무 배정하여 근로조건 및 근무만족도를 개선함.
- 방과후과정비 지원을 전 계층 지원에서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함.

□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역 및 이용 유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함.
- 돌봄교실 이용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함.
- 돌봄교실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학 및 컨설팅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실시
- 돌봄기능이 강화된 연수프로그램 개발하고, 담당교사 대상으로 연수 실시
- 연령별 학급당 유아수 기준을 마련함
-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 양육부담 경감 차원에서 돌봄교실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현대경제연구원, 2014)<sup>1)</sup>, 경직적인 장시간 고용체제에서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과 유아교육은 기관수가 5만 여개가 넘고, 소요예산도 13 조에 달하는 등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이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여성의 취업활동 확대 및 다양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보육·교육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린이집은 기존 보육시간 외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형 보육<sup>2)</sup>과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제보육, 유치원은 교육에 돌봄 기능을 확대한 방과후 과정과 야간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교실<sup>3)</sup>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발맞춰 시간연장보육 이용 영유아 수는 2014년 말 기준 41,655명으로 2010년 31,371 명에서 4년 사이 1 만명 이상 늘었고, 운영 어린이집 수도 2010년 6,535 개에서 2014년 8,644 개소로 25% 가까이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0, 2014). 시간제보육도 2014년 78개소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15년 230개소, 2016년에는 350개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15).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은 이용률이 2005년 20.8%에서 2014년 62.8%로 3배 이상 상승하였고, 운영률 또한 98%로 대부분의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최은영 외, 2014), 돌봄교실은 2012년 300여 개소에서 2014년 936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5).

이처럼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과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양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운영·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또한 이용자의 기대에 미

---

1) 기혼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2004년 47.3%에서 2014년 50.5%로 증가함(현대경제연구원, 2014).

2) 시간연장형보육에는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이 포함됨.

3) 온종일 돌봄교실은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등이 있음.

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질에 대한 이용 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서문희·양미선, 2012)에 따르면 안전한 보호, 영양식 제공과 건강에 비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이용시간과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만족도가 비용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문희·양미선, 2014).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획일적인 운영과 이용에서 벗어나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수요가 있는 경우 필요할 때마다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정기적으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양육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영유아 맞춤형 보육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부모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등 시간연장형 보육과 시간제보육, 유치원의 방과후과정과 온종일 돌봄교실 등의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기관장과 교사의 운영 애로 및 요구 등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영유아 맞춤형보육과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 2. 연구내용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과 시간제보육 등 영유아 맞춤형 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온종일 돌봄교실의 현황을 분석하고 요구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영유아 취업모의 고용형태(직종 및 종사상 위치) 및 근로시간의 변화 추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등·하원시간, 영유아 취업모의 출퇴근시간과 영유아 자녀 등·하원시간 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어린이집 맞춤형보육(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등)과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온종일 돌봄교실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관련법 및 제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 각종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한다.

셋째,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운영 및 이용 현황과 제

공기관의 기관장과 담당교사의 요구 및 애로 등을 파악한다.

다섯째,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특히 시간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한다.

여섯째, 영유아 맞춤형보육(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돌봄교실의 단·중장기 방안을 제시한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및 해외 사례

어린이집 맞춤형보육(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돌봄교실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관련법 및 제도,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나. 기존 자료 분석

전국보육실태조사(2009, 2012)와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기존 자료를 분석하여 영유아 취업모의 고용형태(직종 및 종사상 위치) 및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주말 근로 등의 변화 추이, 출·퇴근시간과 등·하원 시간 차이 등을 파악하였다.

#### 다. 조사연구

맞춤형 보육(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sup>4)</sup>)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과 이용 현황, 애로, 요구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조사 개요

맞춤형 보육(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sup>5)</sup>),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4)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공기관으로 조사대상에 이를 모두 포함시킴

돌봄교실 운영 기관장과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시간연장보육과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방과후과정, 온종일 돌봄교실 등 서비스별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수는 운영 기관수를 고려하여 임의 할당한 후 무선 표집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기관의 기관장과 담당교사 1인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방법은 이메일 또는 온라인 조사이며, 서비스별 모집단 및 표본 수는 <표 I-3-1>과 같다.

<표 I-3-1> 서비스별 운영기관 및 조사대상 수

단위: 개소, 개원,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sup>1)</sup>	시간제보육	방과후과정 <sup>2)</sup>	엄마품 돌봄교실
운영 기관수	8,644	277	100	8,504	946
담당 교사수	9,244	300	120	-	-
조사 기관수	800	100	100	500	200
조사 교사수	800	-	100	500	200

주: 2014년 말 기준 방과후과정 운영률이 98%로 운영 기관수는 추정함.

1) 24시간보육 담당교사 대부분 밤 24시에 출근하여 조사 진행 상의 어려움으로 원장만을 조사 대상으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2014). 보육통계

최은영 외(2014). 2013-2014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교육부(2014). 엄마품 돌봄교실 운영 계획. 내부자료.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과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기관장과 교사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I-3-2 참조).

<표 I-3-2> 기관조사 조사내용: 어린이집

구분	조사 내용
1) 공통	기관유형, 정원(어린이집), 현원, 지역규모 등
2)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원장	· 개인 특성: 연령, 성별, 경력, 최종학력
교사	· 개인 특성: 연령, 성별, 보육교사 급수, 보육경력, 최종학력, 교육 이수여부 · 근무시간, 보조인력, 업무 부담 정도, 교사교육, 어려움, 추가 지원 등 · 담당 영유아수(교사대 아동비율), 적정 아동수, 프로그램 운영 · 문제점, 애로 및 요구, 내실화 방안 관련 의견 등

5)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공기관으로 조사대상에 이를 모두 포함시킴

(표 I-3-2 계속)

구분	조사 내용
3) 어린이집 24시간보육	
기관장	· 개인 특성: 연령, 성별, 경력, 최종학력 · 운영 상태: 반 수, 인력 배치, 보육료 수입 및 사용처, 어려움, 업무량 증가 등 · 교사 수, 이용 유아수, 취업모 자녀수, 차량운영,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가 비용, 재정 도움정도, 문제점 및 요구, 내실화 방안 관련 의견 등
교사	· 개인 특성: 연령, 성별, 보육교사 급수, 보육경력, 최종학력, 교육 이수여부 · 근무시간, 보조인력, 업무 부담 정도, 교사교육, 어려움, 추가 지원 등 · 담당 영유아수(교사대 아동비율), 적정 아동수, 프로그램 운영 · 문제점, 애로 및 요구, 내실화 방안 관련 의견 등
4) 시간제보육	
기관장	· 개인 특성: 연령, 성별, 자격유형, 보육경력, 최종학력, 교육 이수여부 · 운영 상태: 반 수, 인력 배치, 시간제보육 보육료 수입 및 사용처, 애로 및 요구,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기대효과 관련 의견
교사	· 개인 특성: 연령, 성별, 보육교사 급수, 보육경력, 최종학력, 교육 이수여부 · 제 기준의 적절성: 회당 이용시간 제한, 운영시간 등 · 업무 특성: 시간제보육 및 기타 업무 비중,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여부, 근무 만족도, 보조인력 유무, 애로 및 요구 등
5) 유치원 방과후과정	
원장	· 개인특성: 연령, 성별, 경력, 최종학력, 취득자격, 재직 기간 · 유치원 일반사항, 학급형태(독립편성, 오후재편성, 별 학급수, 유아수, 교실유형, 맞벌이 가구 자녀수, 운영형태(휴업일, 토요일, 방학기간), 방학유무, 우선순위, 교육내용, 특성화프로그램 현황 및 이유, 추가비용, 과목 및 업체 선정 기준 특성화 기준의 적절성 · 교사 채용 형태, 교사자격, 근무시간, 월급, 교사 채용의 어려움, 교사 외 추가 인력, 자격 수준의 적절성 · 추가 수납비용, 예산의 지출비용, 처우개선비 여부, 운영 도움정도, 맞벌이 부모 도움 정도, 운영의 어려움, 개선점, 전계층 지원 관련 의견
교사	· 개인 특성: 연령, 자격, 교육경력, 교사채용 방법, 유형(돌봄교사, 보조교사) · 근무시간, 보조인력, 업무 부담 정도, 교사교육, 어려움, 추가 지원 등 · 담당 유아수(교사대 아동비율), 적정 유아수, 별도 프로그램 운영 · 문제점, 애로 및 요구, 내실화 방안 관련 의견 등
6)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원장	· 개인 특성: 연령, 성별, 경력, 최종학력 · 운영 학급수, 학급형태(단독, 혼합), 운영시간, 인력배치, 돌봄교사 및 보조교사 수, 이용 유아수, 취업모/미취업모 자녀수, 차량운영,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특성화활동), 추가 비용(특성화활동비), 원 운영 도움정도, 문제점 및 요구, 내실화 방안 관련 의견 등
교사	· 개인 특성: 연령, 자격, 교육경력, 교사채용 방법, 유형(돌봄교사, 보조교사) · 근무시간, 보조인력, 업무 부담 정도, 교사교육, 어려움, 추가 지원 등 · 담당 유아수(교사대 아동비율), 적정 유아수, 별도 프로그램 운영 · 문제점, 애로 및 요구, 내실화 방안 관련 의견 등

## 2) 조사 결과

### 가) 시간연장보육

시간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대다수가 여자이고, 과반수 이상이 4년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으며, 현 재직기간이 3~5년이 27.4%, 6~10년 22.2%, 3년 미만 20.3% 순이다. 어린이집 유형은 가정이 38.8%이고 민간개인이 29.6%, 국공립이 22.2%, 나머지는 5% 미만이고, 규모는 50명 이하가 40.1%, 101~150명 27.4%, 51~100명이 24.2% 정도이며, 대도시가 45.4%, 중소도시 35.6%, 읍면지역 19.0%이었다

〈표 1-3-3〉 시간연장보육 원장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기관 유형		원장 성별	
국공립	22.2(138)	여자	96.1(597)
사회복지법인	4.8( 30)	남자	3.9( 24)
법인단체	2.6( 16)	원장 학력	
민간개인	29.6(184)	고졸	3.7( 23)
가정	38.8(241)	대졸(3년제 이하)	30.1(187)
직장	1.9( 12)	4년제 졸	36.6(227)
정원		대학원 이상	29.6(184)
50명 이하	40.1(249)	원장 현 재직기간	
51~100명 이하	24.2(150)	3년 미만	20.3(126)
101~150명	27.4(170)	3~5년 이하	27.4(170)
151명 이상	8.4( 52)	6~10년 이하	22.2(138)
지역규모		11~15년 이하	18.8(117)
대도시	45.4(282)	16년 이상	11.3( 70)
중소도시	35.6(221)		
읍면지역	19.0(118)		
전체	100.0(621)	전체	100.0(621)

시간연장보육 교사 또한 대다수가 여자이다. 과반수인 51.2%가 전문대 정도의 학력을 소지하였고, 1급 보육교사 자격이 54.2%, 2급 보육교사 34.1%, 원장 29.3%이었다. 교사 자격이 없는 경우는 없었다. 현 기관에서의 재직경력 3년 미만이 48.1%, 3~5년이 29.5%로 다수이고, 6~10년 14.6% 순이다. 시간연장보육 교사 경력은 1년이 36.8%, 1년 미만 24.8%로 1년 이하의 경력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재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이 36.6%, 30.6%로 많



왔다(표 I-3-4 참조).

〈표 I-3-4〉 시간연장보육 교사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교사 자격1)	
여자	95.2(572)	3급 보육교사	4.7( 28)
남자	4.8( 29)	2급 보육교사	34.1(205)
학력		1급 보육교사	54.2(326)
고졸 이하	15.1( 91)	원장	29.3(176)
전문대	51.2(308)	없음	-
4년제 대학교	29.3(176)	시간연장보육 교사경력	
대학원 이상	4.3( 26)	1년 미만	24.8(149)
교사 경력		1년	36.8(221)
3년 미만	27.8(167)	2년	24.5(147)
3~5년 이하	31.3(188)	3~5년	12.6( 76)
6~10년 이하	23.3(140)	6년 이상	1.3( 8)
11~15년 이하	13.0( 78)	기관 유형	
16~20년 이하	3.7( 22)	국공립	23.1(139)
21년 이상	1.0( 6)	사회복지법인	4.3( 26)
현 재직기간		법인단체	2.8( 17)
3년 미만	48.1(289)	민간개인	30.6(184)
3~5년 이하	29.5(177)	가정	36.6(220)
6~10년 이하	14.6( 88)	직장	2.5( 15)
11년 이상	7.8( 47)		
전체	100.0(601)	전체	100.0(601)

주: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기준임.

나) 24시간보육

24시간보육 어린이집 원장도 대다수가 여자이고, 과반수 이상이 4년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으며, 현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이 28.1%, 6~10년이 25.0%, 3~5년이 21.9% 순이었다. 어린이집 유형은 민간개인이 34.4%, 국공립 32.8%, 가정 21.9%로 많고, 정원은 50명 이하가 54.7%, 51~100명 이하 37.5%로 소규모 어린이집이 많았다. 지역은 대도시가 64.1%로 다수이고, 중소도시 23.4%, 읍면지역 12.5% 정도이다

〈표 1-3-5〉 24시간보육 원장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기관 유형		원장 성별	
국공립	32.8(21)	여자	93.8(60)
사회복지법인	7.8( 5)	남자	6.3( 4)
법인단체	3.1( 2)	원장 학력	
민간개인	34.4(22)	고졸	4.7( 3)
가정	21.9(14)	대졸(3년제 이하)	20.3(13)
정원		4년제 졸	37.5(24)
50명 이하	54.7(35)	대학원 이상	37.5(24)
51~100명 이하	37.5(24)	원장 현 재직기간	
101~150명	6.3( 4)	3년 미만	28.1(18)
151명 이상	1.6( 1)	3~5년 이하	21.9(14)
지역규모		6~10년 이하	25.0(16)
대도시	64.1(41)	11~15년 이하	14.1( 9)
중소도시	23.4(15)	16년 이상	10.9( 7)
읍면지역	12.5( 8)		
전체	100.0(64)	전체	100.0(64)

## 다)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장도 여자가 다수이고, 과반수 이상이 4년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표 1-3-6〉 시간제보육 원장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기관 유형		원장 성별	
국공립	25.2(34)	여자	95.6(129)
사회복지법인	8.1(11)	남자	4.4( 6)
법인단체	3.0( 4)	원장 학력	
민간개인	28.9(39)	고졸	0.7( 1)
가정	15.6(21)	대졸(3년제 이하)	26.7( 36)
직장	0.7( 1)	4년제 졸	30.4( 41)
육아종합지원센터	18.5(25)	대학원 이상	42.2( 57)
지역규모		기관장 경력	
대도시	50.4(68)	3년 미만	10.4( 14)
중소도시	36.3(49)	3~5년 이하	11.9( 16)
읍면지역	13.3(18)	6~10년 이하	28.9( 39)
		11~15년 이하	24.4( 33)
		16~20년 이상	14.8( 20)
		20년 이상	9.6( 13)
전체	100.0(135)	전체	100.0(135)

기관 유형은 국공립 25.2%, 민간개인 28.9%, 가정 15.6% 순이다. 지역은 50.4%가 대도시, 36.3%는 중소도시, 13.3%는 읍면지역이며, 기관장 경력은 6~10년이 28.9%, 11~15년이 24.4%로 5~15년 사이에 수렴하였다(표 I-3-6 참조).

시간제보육 교사도 대다수가 여자이고, 52.8%가 전문대, 32.4% 4년제, 5.6%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으며, 1급 보육교사가 51.4%, 원장 35.9%, 2급은 10.6%, 3급은 2.1%로 소수이었다. 교사 경력은 6~10년 이하와 3~5년 이하가 각각 40.1%, 38.7% 정도이고, 시간제보육교사 경력은 6개월 이하가 60.6%로 다수이고, 1년 미만도 29.6%이다. 재직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4%, 민간개인 28.2%, 국공립 26.1% 정도이다.

〈표 I-3-7〉 시간제보육 교사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교사 자격 <sup>1)</sup>	
여자	98.6(140)	3급 보육교사	2.1( 3)
남자	1.4( 2)	2급 보육교사	10.6(15)
학력		1급 보육교사	51.4(73)
고졸 이하	9.2( 13)	원장	35.9(51)
전문대	52.8( 75)	교사 경력	
4년제 대학교	32.4( 46)	3년 미만	4.2( 6)
대학원 이상	5.6( 8)	3~5년 이하	38.7(55)
기관 유형		6~10년 이하	40.1(57)
국공립	26.1( 37)	11~15년 이하	15.5(22)
사회복지법인	7.7( 11)	16년 이상	1.4( 2)
법인단체	2.8( 4)	시간제보육교사경력	
민간개인	28.2( 40)	6개월 이하	60.6(86)
가정	14.1( 20)	7~12개월	29.6(42)
직장	0.7( 1)	13~18개월	7.0(10)
육아종합지원센터	20.4( 29)	19개월 이상	2.8( 4)
전체	100.0(142)	전체	100.0(142)

라) 유치원 방과후과정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원장 또한 여자가 94.9%로 다수이고, 절반 정도인 48.9%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으며, 현 재직기간은 16년 이상이 34.7%, 3년 미만 26.3%, 6~10년 16.4%, 3~5년 13.9% 순이다. 기관 유형은 사립이 60.0%, 공립 병설 34.3%, 공립 단설 5.8% 정도이고, 정원이 50명 이하가 25.7%, 51~100명 이하 23.5%, 101~150명 21% 정도이다. 대도시가 36.1%이고, 중소도시 32.7%, 읍면지역 31.2% 이다(표 I-3-8 참조).

〈표 1-3-8〉 방과후과정 운영 원장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기관 유형		원장 성별	
공립 병설	34.3(155)	여자	94.9(429)
공립 단설	5.8( 26)	남자	5.1(23)
사립	60.0(271)	원장 학력	
정원		대졸(3년제 이하)	12.8( 58)
50명 이하	25.7(116)	4년제 졸	38.3(173)
51~100명 이하	23.5(106)	대학원 이상	48.9(221)
101~150명	21.0( 95)	원장 현 재직기간	
151~200명	15.5( 70)	3년 미만	26.3(119)
201명 이상	14.4( 65)	3~5년 이하	13.9( 63)
지역규모		6~10년 이하	16.4( 74)
대도시	36.1(163)	11~15년 이하	8.6( 39)
중소도시	32.7(148)	16년 이상	34.7(157)
읍면지역	31.2(141)		
전체	100.0(452)	전체	100.0(452)

〈표 1-3-9〉 방과후과정 교사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교사 자격 <sup>1)</sup>	
여자	98.7(366)	2급 정교사	56.3(209)
남자	1.3( 5)	1급 정교사	35.6(132)
학력		원감	1.3( 5)
고졸 이하	1.6( 6)	원장	-
전문대	38.5(143)	없음	6.7( 25)
4년제 대학교	44.2(164)	3급 보육교사	0.5( 2)
대학원 이상	15.6( 58)	2급 보육교사	17.0( 63)
교사 경력		1급 보육교사	25.1( 93)
3년 미만	26.7( 99)	없음	57.4(213)
3~5년 이하	22.9( 85)	경력	
6~10년 이하	26.1( 97)	1년 미만	25.1( 93)
11~15년 이하	10.8( 40)	1년	20.8( 77)
16~20년 이하	5.1( 19)	2년	12.9( 48)
21년 이상	8.4( 31)	3~5년	23.7( 88)
현 재직기간		6~10년	14.6( 54)
3년 미만	50.9(189)	11년 이상	3.0( 11)
3~5년 이하	23.7( 88)	기관 유형	
6~10년 이하	14.3( 53)	공립 병설	39.6(147)
11년 이상	11.1( 41)	공립 단설	6.7( 25)
		사립	53.6(199)
전체	100.0(371)	전체	100.0(371)

주: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기준임. 유치원, 보육교사 둘다 자격이 없는 비율은 2.2%임.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도 여자가 98.74%로 다수이고, 4년제 대학교가 44.2%, 전문대가 38.5%로 대다수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며 과반수인 56.3%가 2급 정교사, 35.6% 1급 정교사 자격이 있었다 또한 방과후과정 교사 중 25.1%는 1급 보육교사, 17%는 2급 보육교사 자격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었다 현 기관의 경력은 50.9%가 3년 미만이고, 총 교직경력은 3년 미만이 26.7%로 다수이었다. 방과후과정반 교사 경력은 1년 미만이 25.1%, 3~5년 23.7%, 1년 20.8%로 경력이 길지 않았다. 소속기관은 사립이 53.6%, 공립 병설 39.6%, 공립 단설은 6.7%로 소수이다(표 I-3-9 참조).

마)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온종일 돌봄교실 원장 또한 여자가 94.0%로 다수이고, 과반수인 60.2%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다. 현 재직기간은 21년 이상과 3~5년이 각각 24.8%, 3~5년 21.8%로 다빈도이고, 기관 유형은 사립이 69.9%, 공립 단설 17.3%, 공립 병설이 12.8% 정도이었다. 돌봄유형은 온종일 돌봄교실이 47.4%, 저녁돌봄 45.9%, 아침돌봄은 6.8%로 소수였다(표 I-3-10 참조).

〈표 I-3-10〉 돌봄교실 원장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기관 유형		원장 성별	
공립 병설	12.8(17)	여자	94.0(125)
공립 단설	17.3(23)	남자	6.0( 8)
사립	69.9(93)	원장 학력	
정원		대졸(3년제 이하)	10.5( 14)
100명 이하	24.8(33)	4년제 졸	29.3( 39)
101~150명	32.3(43)	대학원 이상	60.2( 80)
151~200명	22.6(30)	원장 현 재직기간	
21명 이상	20.3(27)	3년 미만	15.8( 21)
지역규모		3~5년 이하	21.8( 29)
대도시	21.8(29)	6~10년 이하	17.3( 23)
중소도시	50.4(67)	11~15년 이하	13.5( 18)
읍면지역	27.8(37)	16~20년 이하	6.8( 9)
돌봄유형		21년 이상	24.8( 33)
아침돌봄	6.8( 9)		
저녁돌봄	45.9( 61)		
온종일돌봄	47.4( 63)		
전체	100.0(133)	전체	100.0(133)

유치원 교사도 여자가 98.5%로 다수이고, 전문대가 37.0%, 4년제 대학교가 29.6%, 대학원 이상 26.7%로 대다수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28.1%가 2급 정교사 자격, 38.5%가 1급 정교사 자격이 있고, 20.7%는 2급 보육교사, 19.3%는 1급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현 기관의 경력은 3년 미만이 46.7%이고, 총 교직경력은 21년 이상이 23%로 다수이었다. 돌봄강사 경력은 1년 미만이 29.6%로 다수이고, 1년 24.4%, 2년 20% 순이었다. 재직 기관은 사립이 63.7%, 공립 단설과 병설이 각각 19.3%, 17.0% 정도이었다(표 1-3-11 참조).

〈표 1-3-11〉 돌봄교실 교사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교사 자격 <sup>1)</sup>	
여자	98.5(133)	2급 정교사	28.1( 38)
남자	1.5( 2)	1급 정교사	38.5( 52)
학력		원감	7.4( 10)
고졸 이하	6.7( 9)	원장	0.7( 1)
전문대	37.0( 50)	없음	25.2( 34)
4년제 대학교	29.6( 40)	3급 보육교사	2.2( 3)
대학원 이상	26.7( 36)	2급 보육교사	20.7( 28)
교사 경력		1급 보육교사	19.3( 26)
3년 미만	20.7( 28)	없음	57.8( 78)
3~5년 이하	20.7( 28)	돌봄강사 경력	
6~10년 이하	21.5( 29)	1년 미만	29.6( 40)
11~15년 이하	9.6( 13)	1년	24.4( 33)
16~20년 이하	4.4( 6)	2년	20.0( 27)
21년 이상	23.0( 31)	3년	15.6( 21)
현 재직기간		4년 이상	10.4( 14)
3년 미만	46.7( 63)	기관 유형	
3~5년 이하	23.0( 31)	공립 병설	17.0( 23)
6~10년 이하	10.4( 14)	공립 단설	19.3( 26)
11년 이상	20.0( 27)	사립	63.7( 86)
전체	100.0(135)	전체	100.0(135)

주: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기준임.

2) 유치원, 보육교사 둘다 자격이 없는 비율은 2.2%임.

###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교차분석 등의 기초 분석과 변인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하여 t-test와 F검증을 실시하였다

## 라. 모니터링 지표 개발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서비스의 질을 내실화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였다.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모니터링 지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등의 지표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교육부가 자체점검표를 마련하여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자료를 검토 및 수정하여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였다.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모니터링 지표의 영역 및 영역별 세부지표 1차(안)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 후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 마. 집단 심층면담

맞춤형보육(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기관장 및 교사, 이용 부모 등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도출하여 설문조사 자료를 보완하였다.

## 바. 자문회의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담당관,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 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정책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4.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기본 보육·교육시간 즉,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9시 30분, 유치원은 1일 4~5시간 외에 부모의 취업이나 가족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보육·교육서비스를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맞춤형 돌봄서비스에는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과 시간제보육,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돌봄교실이 포함된다.

## II. 연구의 배경

제2장에서는 전국보육실태조사와 경제활동조사 등 원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 부모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과 이들 자녀의 기관 이용시간, 특히 등·하원시간 등을 살펴보고, 부모의 근로시간과 기관 이용시간 간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 1. 영유아 부모의 경제활동

#### 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은 매년 지역별 고용조사를 실시하여 맞벌이가구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50세 미만 유배우 가구 총 5,380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2,567가구로 47.7%이다. 2013년 46.5% 보다 맞벌이 가구 비율이 다소 상승하였다(표 II-1-1 참조).

〈표 II-1-1〉 맞벌이가구 비율

구분	단위: 명(%)			전체
	15~29세	30~39세	40~49세	
2014년				
유배우 가구	174(3.2)	2,015(37.5)	3,191(59.3)	5,380(100.0)
맞벌이 가구	65(2.5)	848(33.0)	1,654(64.4)	2,567(100.0)
맞벌이 비율	(37.4)	(42.1)	(51.8)	(47.7)
2013년				
유배우 가구	188(3.2)	2,094(37.9)	3,250(58.7)	5,532(100.0)
맞벌이 가구	70(2.7)	851(33.1)	1,650(64.2)	2,571(100.0)
맞벌이 비율	(37.2)	(40.6)	(50.8)	(46.5)

주: 1) 전체 조사대상은 15~60세 이상(2013년 유배우 11,780가구, 2014년 유배우 11,825가구)이나 영유아 가구가 있는 50세 이하 가구만을 제시하였고, 전체 비율은 재산출함.

2) 맞벌이 가구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고용조사의 취업자 개념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함. 집단 가구 등은 집계 및 추정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통계청(2014).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 조사결과.



가구주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는 유배우 가구 중 1,654가구, 51.8%가 맞벌이 가구이고, 다음으로 30대는 848가구 42.1%, 10~20대는 65개구 37.4% 순이다 2013년 조사와 비교하여 맞벌이 가구 비율이 각 연령계층별로 다소 상승하였다

〈표 II-1-2〉 가구주 교육정도별 맞벌이가구 비율

구분				단위: 명(%)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전체
2014년				
유배우	2,387	4,440	4,999	11,825
맞벌이	983	2,015	2,188	5,186
맞벌이 비율	(41.2)	(45.4)	(43.8)	(100.0)
2013년				
유배우	2,452	4,420	4,907	11,780
맞벌이	997	1,960	2,099	5,055
맞벌이 비율	(40.6)	(44.3)	(42.8)	(100.0)

주: 지역별고용조사 전체 조사대상 결과임.  
 자료: 통계청(2014).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 조사결과.

전체 가구주 취업자 중 맞벌이는 2014년 기준 53.8% 이다 이를 직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맞벌이 비율이 84.3%로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종사자가 각각 62.9%, 60.6%, 사무종사자 50.5%, 나머지는 30~40% 대이다. 2013년보다 전반적으로 맞벌이 비율이 상승하였다.

〈표 II-1-3〉 가구주 직업별 맞벌이가구 비율

구분	2014년		2013년	
	가구주 취업자	맞벌이	가구주 취업자	맞벌이
전체	9,633	5,186(53.8)	9,658	5,055(52.3)
관리자	202	79(39.2)	208	74(35.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780	875(49.2)	1,756	831(47.3)
사무종사자	1,614	815(50.5)	1,653	785(47.5)
서비스종사자	565	356(62.9)	552	333(60.4)
판매종사자	968	587(60.6)	963	567(58.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809	682(84.3)	818	684(83.6)
기능원숙련종사자	1,197	587(49.1)	1,207	589(48.8)
장치기계조작조립원	1,609	790(49.1)	1,600	772(48.2)
단순노무종사자	889	514(46.6)	901	420(46.6)

주: 지역별고용조사 전체 조사대상 결과임.  
 자료: 통계청(2014).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 조사결과.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여자 41.4시간, 남자 46.8시간으로 여자와 남자 모두 주 40시간을 초과한다.

〈표 II-1-4〉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구분	동거부부	비동거부부	전체
여자	41.3	41.8	41.4
남자	47.1	44.5	46.8

주: 2014년 10월말 기준임.

자료: 통계청(2014).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 조사결과.

## 나. 전국보육실태조사

다음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영유아 부모의 취업상태 및 근로형태, 근로시간 등을 살펴보았다

### 1) 부모의 취업 특성

영유아 가구 중 37.0%가 맞벌이이고, 외벌이 61.1%, 나머지는 무직이다.

〈표 II-1-5〉 영유아 가구의 맞벌이 여부 및 모의 취업상태

구분	맞벌이 여부			모의 취업상태				전체(수)
	맞벌이	외벌이	둘다 무직	취업(근로)	휴직중	미취업	부재, 모름	
2012년	37.0	61.1	1.9	35.4	4.1	59.7	0.9	100.0(2,516)
최연소자녀								
영아	33.2	64.7	2.0	27.6	6.6	64.8	0.9	100.0(1,583)
유아	42.4	55.9	1.7	46.4	0.5	52.4	0.8	100.0( 933)
연령								
0세	28.1	69.7	2.2	16.8	12.2	71.1	-	100.0( 785)
1세	34.8	63.4	1.9	35.0	1.4	63.1	0.5	100.0( 472)
2세	41.9	56.0	2.1	41.7	1.2	53.6	3.6	100.0( 326)
3세	40.2	57.4	2.5	44.3	0.6	54.5	0.6	100.0( 317)
4세	44.0	54.7	1.3	47.0	-	52.3	0.7	100.0( 324)
5세이상	42.8	55.8	1.4	47.6	0.5	50.7	1.2	100.0( 292)
2009년				35.8	-	61.6	4.8	100.0(2,548)

주: 2009, 2004년 경우 휴직 중이 취업에 포함.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외(2009).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최연소 자녀의 영유아 구분별로 보면 유아 부모가 영아보다 맞벌이 비율이 10%p 정도 높고,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맞벌이 비율이 증가한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이 35.4%, 휴직중이 4.1%로 약 40% 정도는 취업 상태이었다(표 II-1-5 참조).

## 2) 영유아 모의 근로시간

### 가) 출근시간

<표 II-1-6>은 영유아 모의 출근시간을 나타낸다. 오전 7시 30분 이전과 8시에서 8시 30분 사이가 각각 19.8%로 높고, 다음으로 오전 8시 30분에서 9시와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가 각각 18% 정도, 10시 이후가 13% 순이다.

막내자녀 연령별로 보면, 영아 모는 오전 7시 30분 이전이 24.6%로 높고, 유아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10시 이후는 영아와 유아 모두 12~13% 정도로 비슷하다.

〈표 II-1-6〉 영유아 모의 출근시간

구분	단위: %(명)							계(수)
	7:30 까지	7:31~ 8:00	8:01~ 8:30	8:31~ 9:00	9:01~ 9:30	9:31~ 10:00	10시 이후	
전체	19.8	18.3	19.8	18.4	5.1	5.7	13.0	100.0(808)
영유아 구분								
영아	24.6	19.3	18.8	15.1	3.8	5.0	13.3	100.0(412)
유아	15.7	17.4	20.6	21.2	6.1	6.4	12.7	100.0(396)
연령								
0세	21.6	21.6	18.1	12.9	2.6	4.3	19.0	100.0(125)
1세	31.5	18.5	20.5	14.4	3.4	1.4	10.3	100.0(162)
2세	19.4	18.7	17.2	18.7	5.2	9.0	11.9	100.0(125)
3세	13.8	25.4	18.8	15.2	8.7	5.1	13.0	100.0(127)
4세	14.5	13.0	26.1	20.3	8.7	7.2	10.1	100.0(141)
5세 이상	17.9	14.8	17.9	26.0	2.6	6.6	14.3	100.0(128)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모의 활동분야별로 출근시간을 보면, 전문가와 사무종사자 과반수 이상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출근하지만,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는 오전 8시 30분 이후가 과반수를 차지한다(표 II-1-7 참조).

〈표 II-1-7〉 영유아 모의 활동분야별 출근시간

단위: %(명)

구분	7:30 까지	7:31~ 8:00	8:01~ 8:30	8:31~ 9:00	9:01~ 9:30	9:31~ 10:00	10시 이후	계(수)
전체	19.8	18.4	19.8	18.4	5.1	5.7	12.9	100.0(807)
관리자	80.0	-	-	20.0	-	-	-	100.0( 4)
전문가	19.4	19.8	21.6	13.1	2.6	3.4	20.1	100.0(265)
사무종사자	22.0	27.3	24.8	17.8	3.8	1.0	3.1	100.0(265)
서비스종사자	8.8	9.9	16.5	24.2	11.0	12.1	17.6	100.0( 85)
판매종사자	13.3	8.9	7.8	20.0	14.4	13.3	22.2	100.0( 8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7.8	2.7	8.1	29.7	-	21.6	-	100.0( 23)
기능원	16.7	11.1	50.0	16.7	-	-	5.6	100.0( 17)
장치기계조작	80.0	-	20.0	-	-	-	-	100.0( 6)
단순노무	17.2	10.9	10.9	28.1	4.7	9.4	18.8	100.0( 59)
기타	-	100.0	-	-	-	-	-	100.0( 1)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모의 종사상 위치별로는 자영업자 중 1/3인 29.9%가 10시 이후에 출근하나, 10% 정도는 시간대별로 고루 분포한다. 일용근로자는 오전 8시 30분에서 9시가 36.2%로 다수를 차지하고, 대체로 이 시각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용근로자는 나머지 종사상 위치보다 이른 오전 8시 30분 전에 출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II-1-8 참조).

〈표 II-1-8〉 영유아 모의 종사상 위치별 출근시간

단위: %(명)

구분	7:30 까지	7:31~ 8:00	8:01~ 8:30	8:31~ 9:00	9:01~ 9:30	9:31~ 10:00	10시 이후	계(수)
전체	19.8	18.1	19.8	18.3	5.1	5.5	13.3	100.0(808)
고용주	11.1	-	11.1	27.8	5.6	16.7	27.8	100.0( 19)
자영업자	16.4	10.4	11.9	11.9	13.4	6.0	29.9	100.0( 54)
상용근로자	25.4	26.8	24.6	16.6	1.8	1.4	3.3	100.0(455)
임시근로자	10.3	9.1	17.6	17.0	9.7	8.5	27.9	100.0(170)
일용근로자	10.6	4.3	14.9	36.2	14.9	10.6	8.5	100.0( 44)
무급가족종사자	15.9	2.4	7.3	24.4	2.4	18.3	29.3	100.0( 65)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표 II-1-9>는 영유아 모의 근로형태별 출근시간을 나타낸다.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영유아 모는 오전 8시에서 8시 30분과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각각 22.0%, 20.4%, 다음으로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가 17.4%를 차지한다. 불규칙하게 출퇴근 하는 모는 오전 8시 30분에서 9시와 10시 이후가 각각

26.2%로 규칙적으로 출퇴근 하는 영유아 모보다 출근시간이 대체로 늦다

〈표 II-1-9〉 영유아 모의 근로형태별 출근시간

단위: %(명)

구분	7:30 까지	7:31~ 8:00	8:01~ 8:30	8:31~ 9:00	9:01~ 9:30	9:31~ 10:00	10시 이후	계(수)
전체	19.7	18.2	19.8	18.4	5.0	5.8	13.1	100.0(808)
규칙적으로 출퇴근	19.7	20.4	22.0	17.4	5.0	4.2	11.4	100.0(727)
불규칙하게 출퇴근	19.4	1.9	3.9	26.2	4.9	17.5	26.2	100.0(81)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나) 퇴근시간

<표 II-1-10>은 영유아 모의 퇴근시간을 분석한 것이다. 오후 15 시에서 16 시 사이가 21.7%로 이 시각에 수렴한다. 오후 18시 이후는 11% 정도이다. 이를 영유아별로 보면,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아동 연령별로도 전체 비율과 유사하나, 오후 18시 이후는 0세 9.4%에서 2세 6.7%까지 줄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II-1-10〉 영유아 모의 퇴근시간

단위: %(명)

구분	14:00 까지	14:01~ 15:00	15:01~ 16:00	16:01~ 17:00	17:01~ 17:30	17:31~ 18:00	18:01~ 19:00	19:01 이후	계(수)
전체	9.0	15.2	21.7	15.5	12.8	14.8	6.6	4.4	100.0(808)
영유아 구분									
영아	9.8	16.4	20.7	15.6	12.3	15.6	5.0	4.5	100.0(412)
유아	8.3	14.2	22.7	15.5	13.1	14.2	7.8	4.2	100.0(396)
연령									
0세	12.8	8.5	23.1	11.1	14.5	20.5	5.1	4.3	100.0(125)
1세	8.8	13.5	22.3	16.9	13.5	12.8	6.8	5.4	100.0(162)
2세	8.9	25.9	17.0	17.0	9.6	14.8	3.0	3.7	100.0(125)
3세	10.9	9.5	24.1	16.8	9.5	13.9	12.4	2.9	100.0(127)
4세	5.8	18.1	26.1	11.6	16.7	10.1	6.5	5.1	100.0(141)
5세 이상	8.7	14.8	18.9	16.8	13.3	17.3	5.1	5.1	100.0(128)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모의 활동분야별 퇴근시간을 보면, 판매종사자와 기능원 30% 정도는 오후 18시 이후에 퇴근한다. 사무종사자는 오후 15시에서 16시와 오후 16시에서 17시 사이가 각각 26.6%, 21.7%로 다수를 차지한다. 오후 18시 이전에 95% 이상이 퇴근한다. 전문가는 이보다 이른 오후 15시에서 16시, 오후 14시와 15시

사이가 각각 19% 정도로 높다. 판매종사자는 오후 16시 이전과 오후 18시 이후에 각각 10% 정도로 높다(표 II-1-11 참조).

〈표 II-1-11〉 영유아 모의 활동분야별 퇴근시간

단위: %(명)

구분	14:00 까지	14:01~ 15:00	15:01~ 16:00	16:01~ 17:00	17:01~ 17:30	17:31~ 18:00	18:01~ 19:00	19:01 이후	계(수)
전체	9.1	15.3	21.5	15.7	12.7	14.9	6.5	4.4	100.0(807)
관리자	-	-	-	20.0	-	80.0	-	-	100.0( 4)
전문가	9.3	18.7	19.0	15.7	14.6	13.4	3.4	6.0	100.0(265)
사무종사자	3.5	10.5	26.6	21.7	14.0	19.9	3.5	0.3	100.0(265)
서비스종사자	12.1	14.3	24.2	5.5	13.2	13.2	9.9	7.7	100.0( 85)
판매종사자	13.0	17.4	18.5	5.4	5.4	9.8	18.5	12.0	100.0( 8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0.8	35.1	18.9	24.3	5.4	2.7	-	2.7	100.0( 23)
기능원	10.5	5.3	21.1	5.3	26.3	-	31.6	-	100.0( 17)
장치기계조작	33.3	16.7	-	-	33.3	-	16.7	-	100.0( 6)
단순노무	20.6	14.3	15.9	17.5	7.9	14.3	6.3	3.2	100.0( 59)
기타	-	-	-	-	-	100.0	-	-	100.0( 1)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모의 종사상 위치별 퇴근시간도 분석하였다. 자영업자는 오후 18 시에서 19시 사이가 34.8%로 다수를 차지하고, 오후 19시 이후도 10.6%로 다른 유형보다 높다. 상용근로자는 오후 15시에서 16시와 오후 16시와 17시 사이가 각각 23.2%, 20.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오후 16시 이전에 과반수 이상이 분포한다(표 II-1-12 참조).

〈표 II-1-12〉 영유아 모의 종사상위치별 퇴근시간

단위: %(명)

구분	14:00 까지	14:01~ 15:00	15:01~ 16:00	16:01~ 17:00	17:01~ 17:30	17:31~ 18:00	18:01~ 19:00	19:01 이후	계(수)
전체	9.0	15.2	21.8	15.5	12.7	14.9	6.5	4.4	100.0(808)
고용주	11.1	16.7	5.6	16.7	5.6	27.8	11.1	5.6	100.0( 19)
자영업자	1.5	12.1	18.2	1.5	3.0	18.2	34.8	10.6	100.0( 54)
상용근로자	3.1	12.5	23.2	20.7	17.8	16.0	3.9	2.9	100.0(455)
임시근로자	25.0	18.3	26.8	7.3	5.5	10.4	3.0	3.7	100.0(170)
일용근로자	14.9	21.3	17.0	6.4	17.0	21.3	-	2.1	100.0( 44)
무급가족종사자	14.8	23.5	12.3	17.3	3.7	8.6	8.6	11.1	100.0( 65)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모의 출퇴근이 규칙적인 경우에는 오후 15시에서 16시 사이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나, 불규칙한 출퇴근의 경우 오후 15시 이전이 40%가 넘는다.

〈표 II-1-13〉 영유아 모의 근로형태별 퇴근시간

단위: %(명)

구분	14:00 까지	14:01~ 15:00	15:01~ 16:00	16:01~ 17:00	17:01~ 17:30	17:31~ 18:00	18:01~ 19:00	19:01 이후	계(수)
전체	9.0	15.2	21.7	15.6	12.8	14.8	6.5	4.4	100.0(808)
규칙적으로 출퇴근	7.7	13.6	22.7	16.3	13.6	14.4	7.2	4.5	100.0(727)
불규칙하게 출퇴근	18.4	27.2	14.6	10.7	6.8	17.5	1.0	3.9	100.0( 81)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3) 영유아 부모의 주말근무

#### 가) 토요일 근무

영유아 부모의 주말근무 형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토요일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영유아 모 대부분이 휴무이지만, 나머지 중 20.7%는 매주 전일 근무, 나머지 근무형태는 3~5% 정도씩을 차지한다. 유아 부모가 영아보다 매일 전일 근무하는 비율이 10%p 정도 많다. 영유아 연령이 많아질수록 모가 매주 전일 근무한다는 비율도 높아진다.

〈표 II-1-14〉 영유아 부모의 토요일 근무형태

단위: %(명)

구분	모						부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전일	격주 반일	휴무	계(수)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전일	격주 반일	휴무	계(수)
전체	20.7	4.7	5.7	2.9	65.9	100.0(836)	31.1	3.3	11.9	3.2	50.5	100.0(2,411)
영유아구분												
영아	15.4	5.4	6.4	2.2	70.6	100.0(426)	29.4	4.1	13.0	3.3	50.2	100.0(1,533)
유아	25.2	4.1	5.2	3.5	62.0	100.0(410)	33.6	2.2	10.2	3.2	50.8	100.0( 878)
연령												
0세	12.5	2.5	8.3	3.3	73.3	100.0(131)	28.8	3.6	11.0	4.3	52.3	100.0( 762)
1세	12.8	6.1	6.8	0.7	73.6	100.0(163)	31.4	3.4	13.7	2.0	49.5	100.0( 455)
2세	19.9	7.1	5.0	2.8	65.2	100.0(132)	28.7	5.8	16.5	2.7	46.3	100.0( 316)
3세	25.0	6.3	8.3	3.5	56.9	100.0(135)	31.4	1.0	11.2	3.6	52.8	100.0( 295)
4세	22.0	6.4	1.4	5.0	65.2	100.0(145)	38.1	3.8	9.8	4.5	43.7	100.0( 309)
5세이상	28.1	1.0	5.1	2.0	63.8	100.0(130)	32.0	1.6	9.8	2.1	54.5	100.0( 274)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부모 절반은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지만, 31.1%는 매주 전일, 11.9% 격주 전일, 나머지는 각각 3% 정도로, 영유아 모보다 근무하는 비율이 높다

〈표 II-1-15〉 영유아 모의 활동분야별 토요일 근무형태

구분	단위: %(명)					계(수)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전일	격주 반일	휴무	
전체	20.7	4.6	5.8	2.8	66.0	100.0(835)
관리자	-	-	-	60.0	40.0	100.0( 4)
전문가	15.0	4.6	7.5	4.6	68.2	100.0(283)
사무종사자	4.5	3.8	4.5	0.3	86.9	100.0(267)
서비스종사자	22.8	2.2	6.5	3.3	65.2	100.0( 85)
판매종사자	53.8	3.2	5.4	-	37.6	100.0( 85)
농림어업숙련종사자	75.0	19.4	2.8	-	2.8	100.0( 23)
기능원	66.7	11.1	-	-	22.2	100.0( 17)
장치기계조작	28.6	-	14.3	14.3	42.9	100.0( 7)
단순노무	25.0	4.4	7.4	4.4	58.8	100.0( 63)
기타	-	-	-	100.0	-	100.0( 1)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모의 종사상 위치에 따라 토요일 근무형태를 보면, 고용주 38.9%와 자영업자 45.6%는 매주 전일 근무한다. 무급가족종사자 61.0%가 매주 전일 근무하고, 매주 반일 근무한다는 비율도 11.0%로 과반수 이상이 토요일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다(표 II-1-16 참조).

〈표 II-1-16〉 영유아 모의 종사상 위치별 토요일 근무형태

구분	단위: %(명)					계(수)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전일	격주 반일	휴무	
전체	20.6	4.7	5.7	2.9	66.0	100.0(835)
고용주	38.9	5.6	5.6	-	50.0	100.0( 19)
자영업자	45.6	6.3	2.5	-	45.6	100.0( 70)
상용근로자	12.1	4.3	8.0	3.9	71.8	100.0(457)
임시근로자	10.9	3.0	3.0	1.2	81.8	100.0(171)
일용근로자	23.2	1.8	3.6	3.6	67.9	100.0( 51)
무급가족종사자	61.0	11.0	2.4	3.7	22.0	100.0( 67)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토요일 근무형태를 모의 근로형태별로도 살펴보았다.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매주 전일 토요일 근무하는 비율은 19.1%이고, 격주 전일이 6%이나 불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비율은 매주 전일이 32.0%로 높고, 매주 반일도 7.8%로



약 40% 정도가 토요일에 근무한다(표 II-1-17 참조).

〈표 II-1-17〉 영유아 모의 근로형태별 토요일 근무형태

구분	단위: %(명)					계(수)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전일	격주 반일	휴무	
전체	20.6	4.7	5.9	3.0	65.8	100.0(808)
규칙적으로 출퇴근	19.1	4.3	6.0	3.1	67.5	100.0(727)
불규칙하게 출퇴근	32.0	7.8	4.9	1.9	53.4	100.0( 81)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나) 일요일 근무

영유아 부모의 일요일 근무형태는 <표 II-1-18>에 제시하였다. 먼저, 영유아 부모 대부분 일요일이 휴무이지만, 어머니 중 9%는 매주 전일, 3.3%는 격주 전일을 근무한다. 유아 모 중 매주 전일 근무한다는 비율이 11.4%로 영아 6.1%의 두배 정도 많다. 아버지는 10.8%가 매주 전일 근무하고, 격주 전일은 4.4% 나머지는 1% 미만으로 소수이다 어머니와 동일하게 영아보다 유아 부의 매주 전일 근무비율이 높다(표 II-1-18 참조).

〈표 II-1-18〉 영유아 부모의 일요일 근무형태

구분	모						부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전일	격주 반일	휴무	계(수)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전일	격주 반일	휴무	계(수)
전체	9.0	1.2	3.3	0.1	86.4	100.0(836)	10.8	0.9	4.4	0.4	83.5	100.0(2,411)
영유아구분												
영아	6.1	1.2	3.4	-	89.2	100.0(426)	9.9	1.3	4.4	0.3	84.2	100.0(1,533)
유아	11.4	1.2	3.1	0.2	84.1	100.0(410)	12.2	0.4	4.4	0.5	82.5	100.0( 878)
연령												
0세	5.0	0.8	5.0	-	89.3	100.0(131)	10.2	1.3	4.6	0.3	83.6	100.0( 762)
1세	2.0	0.7	2.7	-	94.6	100.0(163)	7.6	0.7	4.2	0.2	87.2	100.0( 455)
2세	12.1	2.1	2.8	-	83.0	100.0(132)	11.9	1.8	4.3	0.3	81.8	100.0( 316)
3세	12.5	0.7	5.6	-	81.3	100.0(135)	9.6	-	4.3	0.7	85.5	100.0( 295)
4세	7.1	3.5	0.7	0.7	87.9	100.0(145)	12.2	1.0	4.9	1.0	80.8	100.0( 309)
5세이상	13.6	-	3.0	-	83.3	100.0(130)	14.5	0.3	4.1	-	81.1	100.0( 274)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모의 일요일 근무를 활동분야별로 분석하였다. 농업·어업·숙련종사자는 매주 전일이 61.1%, 매주 반일이 22.2%로 대다수가 매주 일요일 근무한다. 판매 종사자 34.0%, 서비스종사자 10.9%는 매주 전일 근무하고 각각 6% 정도는 격

주 전일 근무한다. 장치기계조작 종사자 14.3%는 격주 전일 근무한다(표 II-1-19 참조).

〈표 II-1-19〉 영유아 모의 활동분야별 일요일 근무형태

구분	단위: %(명)					계(수)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전일	격주 반일	휴무	
전체	9.0	1.2	3.3	0.1	86.4	100.0(835)
관리자	-	-	-	-	100.0	100.0( 4)
전문가	2.1	-	4.3	-	93.6	100.0(283)
사무종사자	1.4	-	0.3	-	98.3	100.0(267)
서비스종사자	10.9	1.1	6.5	1.1	80.4	100.0( 85)
판매종사자	34.0	2.1	6.4	-	57.4	100.0( 85)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1.1	22.2	2.8	-	13.9	100.0( 23)
기능원	5.6	-	-	-	94.4	100.0( 17)
장치기계조작	-	-	14.3	-	85.7	100.0( 7)
단순노무	7.2	-	2.9	-	89.9	100.0( 63)
기타	-	-	-	-	100.0	100.0( 1)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모의 종사상 위치를 기준으로 일요일 근무형태를 보면, 무급가족종사자 일요일 휴무 비율이 절반이 채 못된다. 나머지 중 43.4%는 매주 전일, 10.8%는 매주 반일 근무한다. 자영업자 22.5%, 일용근로자 10.7%는 매주 전일 근무하고, 고용주 10.5%는 격주 전일 근무한다(표 II-1-20 참조).

〈표 II-1-20〉 영유아 모의 종사상 위치별 일요일 근무형태

구분	단위: %(명)					계(수)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전일	격주 반일	휴무	
전체	9.0	1.2	3.3	0.1	86.4	100.0(835)
고용주	-	-	10.5	5.3	84.2	100.0( 19)
자영업자	22.5	1.3	5.0	-	71.3	100.0( 70)
상용근로자	3.7	-	3.7	-	92.6	100.0(457)
임시근로자	1.2	0.6	1.2	-	97.0	100.0(171)
일용근로자	10.7	-	1.8	-	87.5	100.0( 51)
무급가족종사자	43.4	10.8	2.4	-	43.4	100.0( 67)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일요일 근무를 모의 근로형태에 따라 보면, 규칙적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보다 불규칙적인 경우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다. 불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25.0%는 매주 전일, 8.7%는 매주 반일, 3.8%는 격주 전일 근무한다

〈표 II-1-21〉 영유아 모의 근로형태별 일요일 근무형태

구분	단위: %(명)					계(수)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전일	격주 반일	휴무	
전체	8.9	1.1	3.3	0.1	86.6	100.0(808)
규칙적으로 출퇴근	6.7	0.1	3.3	0.1	89.8	100.0(727)
불규칙하게 출퇴근	25.0	8.7	3.8	-	62.5	100.0( 81)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

### 가. 어린이집

#### 1) 등원시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을 모의 취업 및 맞벌이 여부별로 살펴보았다(표 II-2-1 참조).

먼저 모의 취업별로 보면, 모가 취업한 경우 오전 8시에서 8시 30분과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가 영유아 각각 33.0%, 23.8%로 이 시각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모가 미취업인 경우에는 취업보다 30분 늦은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수렴한다.

〈표 II-2-1〉 모취업 및 맞벌이 여부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구분	모 취업 여부				맞벌이 여부			전체	2009년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맞벌이	외벌이	둘다무직		
7:30 까지	1.8	2.2	0.1	5.6	1.8	0.4	-	1.0	2.1
7:31~8:00	16.4	4.3	2.1	-	16.1	1.9	11.5	8.1	7.4
8:01~8:30	33.0	10.9	12.3	5.6	32.1	12.0	30.8	20.7	18.4
8:31~9:00	23.8	39.1	34.3	44.4	24.6	34.1	38.5	30.2	35.9
9:01~9:30	17.0	28.3	34.8	5.6	16.6	35.1	11.5	26.9	26.4
9:31~10:00	5.6	10.9	13.8	33.3	6.4	13.9	3.8	10.6	7.7
10:01 이후	2.4	4.3	2.6	5.6	2.4	2.6	3.8	2.5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08)	(48)	(862)	(13)	(620)	(886)	(25)	(1,531)	(1,343)
$X^2(df)$	-				250.5(12)***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p < .001$

영유아 부모의 맞벌이 여부별로 보면, 맞벌이 부모 자녀는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외벌이 부모 자녀는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에 수렴한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을 모의 활동분야별로 살펴보았다. 모가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인 경우 영유아 자녀 다수가 오전 9시 이전에 등원한다. 모가 서비스나 판매종사자인 경우 오전 8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높은 비율의 영유아 자녀가 등원한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자녀 60% 이상이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한다(표 II-2-2 참조).

<표 II-2-2> 영유아 모의 활동분야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단위: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	기타	전체
7:30 까지	-	2.8	2.6	-	-	-	-	-	-	-	1.8
7:31~8:00	-	17.6	16.9	6.5	10.9	24.2	11.1	11.1	13.6	100.0	15.7
8:01~8:30	-	23.6	36.8	35.5	29.1	36.4	44.4	55.6	27.3	-	31.5
8:31~9:00	-	25.0	21.2	37.1	23.6	36.4	16.7	11.1	25.0	-	24.8
9:01~9:30	100.0	19.4	16.5	17.7	23.6	3.0	16.7	11.1	22.7	-	17.9
9:31~10:00	-	8.3	4.8	3.2	1.8	-	11.1	11.1	11.4	-	6.0
10:01 이후	-	3.2	1.3	-	10.9	-	-	-	-	-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	(219)	(224)	(64)	(61)	(23)	(14)	(10)	(40)	(1)	(659)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표 II-2-3>는 영유아의 등원시각을 모의 종사상 위치별로 분석한 것이다.

<표 II-2-3> 영유아 모의 종사상 위치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단위: %(명)

구분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7:30 까지	10.0	-	2.3	2.6	-	-	1.9
7:31~8:00	-	1.8	20.8	8.6	5.3	15.9	15.5
8:01~8:30	10.0	21.4	35.1	26.7	39.5	25.4	31.5
8:31~9:00	10.0	28.6	20.0	31.0	28.9	39.7	24.8
9:01~9:30	40.0	32.1	16.2	18.1	15.8	12.7	17.8
9:31~10:00	20.0	8.9	5.1	7.8	10.5	-	5.9
10:01 이후	10.0	7.1	0.5	5.2	-	6.3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	(52)	(380)	(122)	(40)	(50)	(655)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모가 상용근로자인 경우 영유아 자녀 절반 이상이 오전 8시 30분 전에 등원하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자녀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절반 정도가 등원한다. 자영업자 자녀는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가 32.1%로 등원시각이 다른 종사상 위치보다 늦다(표 II-2-3 참조).

영유아 모의 근로형태별로 등원시각을 분석하였다. 모가 규칙적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불규칙하게 출퇴근 하는 경우에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절반 이상이 등원하고, 오전 9시 30분 이후도 20% 가까이 된다. 모가 출퇴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오전 8시 30분 이후에 등원한다(표 II-2-4 참조).

<표 II-2-4> 영유아 모의 근로형태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구분	단위: %(명)			전체
	규칙적으로 출퇴근	불규칙하게 출퇴근	출퇴근하지 않음	
7:30 까지	2.1	-	-	1.8
7:31~8:00	17.1	15.9	-	16.4
8:01~8:30	35.2	24.6	5.0	33.0
8:31~9:00	22.2	31.9	40.0	23.8
9:01~9:30	17.7	8.7	30.0	17.1
9:31~10:00	3.8	13.0	25.0	5.5
10:01 이후	2.1	5.8	-	2.4
계	100.0	100.0	100.0	100.0
(수)	(528)	(57)	(23)	(608)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2) 하원시간

<표 II-2-5>는 모의 취업 및 맞벌이 여부별로 영유아 자녀의 하원시각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모의 취업별로 보면, 취업모 자녀는 오후 16시에서 17시 사이에 다수인 30.2%가 하원하고, 오후 17시 30분에서 18시, 오후 18시에서 19시 사이에 각각 16% 정도가 하원한다. 오후 19시 이후는 4% 정도로 소수이다. 미취업모 자녀는 취업모 자녀보다 이른 오후 15시에서 16시에 37.2%가 집으로 돌아오고, 오후 16시에서 17시 사이도 29.8%로 많다. 오후 17시 이후로 갈수록 하원 비율이 감소한다. 오후 15시 이전 하원 비율도 15.9%로 높다.

영유아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오후 16시에서 17시 사이가 31.8%로 높고 오후 18시 이후도 13.5% 정도 된다. 외벌이는 오후 15시에서 16시 사이가 33.2%, 오후 16시에서 17시가 24.4% 순으로 오후 17시

이전에 대다수가 하원한다(표 II-2-5 참조).

〈표 II-2-5〉 모취업 및 맞벌이 여부별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모취업				맞벌이 여부			전체	2009년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맞벌이	외벌이	둘다무직			
14:00 까지	1.6	12.8	3.8	-	2.3	6.1	5.3	3.1	3.6	
14:01~15:00	5.1	4.3	12.1	-	9.9	19.0	13.2	8.8	15.7	
15:01~16:00	15.5	23.4	37.2	11.1	18.4	33.2	26.3	27.5	17.1	
16:01~17:00	30.2	34.0	29.8	11.1	31.8	24.4	18.4	30.0	22.4	
17:01~17:30	10.7	4.3	8.8	72.2	10.2	9.7	7.9	10.2	11.9	
17:31~18:00	16.2	14.9	5.8	-	13.8	5.0	21.1	10.3	10.8	
18:01~19:00	16.6	4.3	2.0	5.6	13.5	2.5	7.9	8.1	13.1	
19:01 이후	4.0	2.1	0.5	-	-	-	-	1.9	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13)	(48)	(862)	(13)	(594)	(884)	(23)	(1,536)	(1342)	
$\chi^2$ (df)										
										263.8(12)***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p < .001$

이를 영유아 모의 활동분야별로 보면, 대부분 오후 16시에서 17시 사이에 하원하지만 사무종사자와 전문가는 오후 18시 이후가 각각 24.6%, 20.3%로 높다. 판매종사자와 서비스종사자 자녀는 19시 이전에 하원한다 반면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는 오후 17시 이전에 과반수 이상이 하원한다(표 II-2-6 참조).

〈표 II-2-6〉 모의 활동분야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	기타	전체
14:00 까지	-	2.3	3.0	6.3	1.8	-	-	-	-	-	2.5
14:01~15:00	-	8.8	3.0	6.3	3.6	-	-	-	2.3	-	4.9
15:01~16:00	-	22.1	11.6	12.7	18.2	21.2	27.8	-	9.1	-	16.2
16:01~17:00	-	28.1	28.4	36.5	25.5	51.5	11.1	44.4	38.6	100.0	30.5
17:01~17:30	-	7.8	10.3	1.6	20.0	18.2	5.6	11.1	18.2	-	10.3
17:31~18:00	-	10.6	19.0	23.8	20.0	3.0	38.9	-	13.6	-	15.9
18:01~19:00	100.0	15.2	20.3	12.7	10.9	6.1	11.1	-	18.2	-	15.9
19:01 이후	-	5.1	4.3	-	-	-	5.6	44.4	-	-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	(219)	(228)	(64)	(61)	(23)	(15)	(10)	(40)	(1)	(662)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모의 종사상 위치별로 보아도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의 하원비율이 가장 높으나, 상용근로자는 오후 6시 이후 하원하는 비율이 25% 정도로 높다. 임시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표 II-2-7 참조).

〈표 II-2-7〉 모의 종사상 위치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14:00 까지	-	1.9	2.3	0.9	-	6.5	2.3
14:01~15:00	22.2	5.6	4.9	5.3	5.6	1.6	5.0
15:01~16:00	11.1	13.0	15.6	15.9	22.2	17.7	15.9
16:01~17:00	22.2	42.6	24.8	38.1	50.0	35.5	30.8
17:01~17:30	11.1	14.8	7.7	14.2	11.1	16.1	10.4
17:31~18:00	-	13.0	19.4	14.2	5.6	9.7	16.1
18:01~19:00	11.1	7.4	19.9	10.6	5.6	12.9	15.8
19:01 이후	22.2	1.9	5.4	0.9	-	-	3.8
계(수)	100.0(11)	100.0(52)	100.0(385)	100.0(122)	100.0(40)	100.0(50)	100.0(660)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표 II-2-8〉은 모의 근로형태별로 하원시각을 분석한 것이다. 모가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오후 18시 이후에 20% 이상이 하원하지만 불규칙하게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대다수가 오후 17시 30분 전에 하원하고 소수만 오후 18시 이후에 하원한다.

〈표 II-2-8〉 모의 근로형태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규칙적으로 출퇴근	불규칙하게 출퇴근	출퇴근하지 않음	전체
14:00 까지	1.9	-	-	1.6
14:01~15:00	4.7	7.1	9.5	5.1
15:01~16:00	15.0	20.0	14.3	15.5
16:01~17:00	27.9	42.9	52.4	30.4
17:01~17:30	9.9	17.1	4.8	10.5
17:31~18:00	18.3	5.7	-	16.3
18:01~19:00	18.3	4.3	14.3	16.6
19:01 이후	4.1	2.9	4.8	4.0
계(수)	100.0(533)	100.0(57)	100.0(23)	100.0(613)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모의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하원시각을 분석한 것이다. 모의 퇴근이 이룰수록 모의 퇴근시간보다 어린이집 하원이 늦은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표 II-2-9 참조).

〈표 II-2-9〉 모의 퇴근시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모의 퇴근시간								전체
	14:00 까지	14:01~ 15:00	15:01~ 16:00	16:01~ 17:00	17:01~ 17:30	17:31~ 18:00	18:01~ 19:00	19:01 이후	
14:00까지	1.7	3.9	-	-	-	2.9	9.1	-	1.7
14:01~15:00	16.9	1.0	2.9	4.4	7.6	4.4	-	12.5	5.1
15:01~16:00	33.9	18.4	10.9	10.5	12.1	7.4	18.2	33.3	15.4
16:01~17:00	33.9	53.4	23.9	13.2	33.3	30.9	30.3	8.3	29.4
17:01~17:30	5.1	10.7	16.7	11.4	13.6	2.9	6.1	8.3	10.7
17:31~18:00	6.8	5.8	34.1	16.7	1.5	16.2	21.2	25.0	16.7
18:01~19:00	-	5.8	10.9	43.9	24.2	17.6	3.0	8.3	16.9
19:01 이후	1.7	1.0	0.7	-	7.6	17.6	12.1	4.2	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8)	(26)	(31)	(72)	(39)	(83)	(194)	(117)	(590)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나. 유치원

### 1) 등원시간

유치원 이용 유아의 등원시각을 모 취업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분석하였다. 모가 취업한 경우,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가 37.0%로 높고, 오전 8시 30분에서 9시가 27.2%,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이 22.9%로 8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대다수 유아가 등원하였다. 반면에 모가 휴직중인 경우에는 1시간 늦은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절반 가까이 되는 45.5%가 등원한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부모 유아는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36.8%가 등원하지만, 외벌이 부모 자녀는 오전 8시 30분에서 9시에 43.4%가 등원한다.



<표 II-2-10>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등원시각

단위: %(명)

구분	모 취업				맞벌이 여부			전체	2009년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맞벌이	외벌이	둘다 무직		
7:30 까지	0.9	-	-	-	1.0	-	-	0.4	0.5
7:31~8:00	9.8	-	3.4	-	9.8	3.5	-	5.8	5.4
8:01~8:30	37.0	27.3	22.3	50.0	36.8	23.5	20.0	28.5	26.0
8:31~9:00	27.2	27.3	43.8	50.0	26.7	43.4	40.0	37.0	40.4
9:01~9:30	22.9	45.5	25.3	-	23.5	24.9	33.3	24.4	23.4
9:31~10:00	2.1	-	5.1	-	2.3	4.7	6.7	3.8	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80)	(13)	(446)	(5)				(744)	(611)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표 II-2-11>은 모의 활동분야별로 유아의 등원시각을 분석한 것이다. 모가 전문가와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인 경우 오전 8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대다수 유아가 등원한다.

<표 II-2-11> 영유아 모의 활동분야별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단위: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 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장치 기계 조작	단순 노무	전체
7:30 까지	-	2.2	1.1	-	-	-	-	-	-	0.9
7:31~8:00	-	13.2	12.6	2.3	5.6	8.3	-	-	9.8	9.6
8:01~8:30	100.0	27.5	36.8	37.2	37.0	83.3	-	100.0	43.9	37.2
8:31~9:00	-	29.7	28.4	32.6	16.7	8.3	75.0	-	26.8	26.7
9:01~9:30	-	25.3	17.9	27.9	38.9	-	25.0	-	14.6	23.3
9:31~10:00	-	2.2	3.2	-	1.9	-	-	-	4.9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	(91)	(78)	(38)	(36)	(6)	(6)	(2)	(35)	(294)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모가 상용근로자인 경우 영유아 자녀 절반 이상이 오전 8시 30분 전에 등원하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자녀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절반 정도가 등원한다. 자영업자와 고용주 자녀는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가 각각 36.1%, 25%로 등원시각이 다른 종사상 위치의 자녀보다 늦다(표 II-2-12 참조).

〈표 II-2-12〉 영유아 모의 종사상 위치별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단위: %(명)

구분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7:30 까지	-	-	1.3	1.2	-	-	0.9
7:31~8:00	8.3	8.3	14.9	4.9	-	2.9	9.4
8:01~8:30	25.0	33.3	35.7	39.5	23.8	48.6	36.6
8:31~9:00	41.7	13.9	26.6	25.9	52.4	25.7	27.1
9:01~9:30	25.0	36.1	19.5	25.9	23.8	22.9	23.6
9:31~10:00	-	8.3	1.9	2.5	-	-	2.4
계(수)	100.0(12)	100.0(23)	100.0(134)	100.0(77)	100.0(22)	100.0(25)	100.0(293)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모의 근로형태별로 등원시각을 보면, 모가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가 37.3%로 다수이고, 이후 오전 8시 30분에서 9시가 27.1%,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이 21.8%이다. 불규칙하게 출퇴근 하는 경우에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절반 이상이 등원하고, 오전 9시 이후도 30% 가까이 된다. 모가 출퇴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전 8시 30분 이후에 대다수가 등원한다(표 II-2-13 참조).

〈표 II-2-13〉 영유아 모의 근로형태별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단위: %(명)

구분	규칙적으로 출퇴근	불규칙하게 출퇴근	출퇴근하지 않음	전체
7:30 까지	1.1	-	-	0.9
7:31~8:00	10.2	5.4	16.7	9.8
8:01~8:30	37.3	37.8	16.7	37.0
8:31~9:00	27.1	29.7	33.3	27.5
9:01~9:30	21.8	27.0	33.3	22.6
9:31~10:00	2.5	-	-	2.1
계(수)	100.0(242)	100.0(31)	100.0(7)	100.0(280)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2) 하원시간

모의 취업 및 맞벌이 여부별로 영유아 자녀의 하원시각을 보았다. 먼저 모의 취업별로 보면, 취업모 자녀는 오후 16시에서 17시 사이에 다수인 32.5%가 하원하고, 오후 15시에서 16시 19.3%, 오후 17시 30분에서 18시와 오후 14시에서 15시 사이에 각각 12% 정도가 하원한다. 오후 18시 이후도 10.7%로 많다. 미취업모 자녀는 취업모 자녀보다 이른 오후 14시 이전에 11.1%가 집으로 돌아가고,

오후 14시에서 15시와 오후 15시에서 16시 사이가 29% 정도로 많다. 오후 17시 이후가 될수록 하원 비율이 감소한다(표 II-2-14 참조).

〈표 II-2-14〉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모취업 여부				맞벌이 여부			전체	2009년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맞벌이	외벌이	둘다무직		
14:00 까지	1.8	-	11.1	-	2.0	10.4	14.3	7.3	15.2
14:01~15:00	12.0	9.1	29.6	-	12.7	27.8	35.7	22.2	31.7
15:01~16:00	19.3	-	28.9	-	20.2	27.3	21.4	24.5	26.0
16:01~17:00	32.5	27.3	17.0	50.0	34.2	17.6	-	23.6	10.9
17:01~17:30	10.7	45.5	7.4	50.0	10.1	9.0	7.1	9.4	5.0
17:31~18:00	12.9	18.2	2.6	-	10.4	4.5	7.1	6.8	5.1
18:01~19:00	8.6	-	3.4	-	8.1	3.5	14.3	5.4	5.4
19:00 이후	2.1	-	-	-	2.3	-	-	0.9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80)	(13)	(446)	(5)	(269)	(459)	(16)	(744)	(611)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유아 모의 활동분야별로 보면, 대부분 오후 16시에서 17시 사이에 하원하지만 사무종사자와 전문가는 오후 17시 30분 이후가 각각 28.4%, 26.7%로 높다. 판매 종사자와 서비스종사자 자녀는 과반수 이상이 오후 17시 이전에 하원한다 반면에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오후 16시에서 17시 사이에 과반수 이상이 하원한다.

〈표 II-2-15〉 영유아 모의 활동분야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장치 기계 조작	단순 노무	전체
14:00 까지	75.0	1.1	2.1	-	-	-	-	-	-	1.7
14:01~15:00	-	17.8	10.5	11.6	7.4	-	25.0	-	9.8	11.6
15:01~16:00	-	14.4	17.9	32.6	16.7	-	25.0	-	34.1	19.7
16:01~17:00	-	25.6	32.6	23.3	48.1	69.2	50.0	100.0	19.5	31.9
17:01~17:30	-	14.4	8.4	14.0	9.3	15.4	-	-	14.6	11.6
17:31~18:00	25.0	11.1	16.8	9.3	13.0	7.7	-	-	14.6	13.0
18:01~19:00	-	15.6	6.3	9.3	5.6	7.7	-	-	2.4	8.4
19:01 이후	-	-	5.3	-	-	-	-	-	4.9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	(91)	(78)	(38)	(36)	(6)	(6)	(2)	(35)	(294)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모의 종사상 위치별로 보아도 오후 16시에서 17시 사이의 하원비율이 가장 높다. 고용주 자녀는 오후 15시에서 16시 45.5%, 오후 16시에서 17시 사이가 36.4%로 높다(표 II-2-16 참조).

〈표 II-2-16〉 영유아 모의 종사상 위치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14:00 까지	-	2.8	2.6	1.2	-	-	1.8
14:01~15:00	-	13.9	13.7	12.3	9.5	5.9	11.9
15:01~16:00	45.5	2.8	17.0	17.3	23.8	35.3	18.8
16:01~17:00	36.4	44.4	27.5	33.3	23.8	44.1	32.4
17:01~17:30	9.1	16.7	11.8	9.9	19.0	5.9	11.6
17:31~18:00	9.1	13.9	15.0	14.8	14.3	-	13.1
18:01~19:00	-	5.6	9.2	8.6	9.5	8.8	8.3
19:01 이후	-	-	3.3	2.5	-	-	2.1
계(수)	100.0(12)	100.0(23)	100.0(134)	100.0(77)	100.0(22)	100.0(25)	100.0(293)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모의 근로형태별 하원시각을 보면, 모가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오후 17시 30분 이후에 20% 이상이 하원하지만 불규칙하게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대다수가 오후 17시 30분 전에 하원하고 소수만 오후 17시 30분 이후에 하원한다(표 II-2-17 참조).

〈표 II-2-17〉 영유아 모의 근로형태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규칙적으로 출퇴근	불규칙하게 출퇴근	출퇴근하지 않음	전체
14:00 까지	1.8	-	-	1.5
14:01~15:00	10.9	22.2	16.7	12.3
15:01~16:00	20.1	8.3	50.0	19.3
16:01~17:00	31.3	44.4	16.7	32.5
17:01~17:30	10.6	11.1	16.7	10.7
17:31~18:00	14.1	5.6	-	12.9
18:01~19:00	9.2	5.6	-	8.6
19:01 이후	2.1	2.8	-	2.1
계(수)	100.0(242)	100.0(31)	100.0(7)	100.0(280)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유치원 유아 모의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유치원 하원시각을 보면,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모의 퇴근이 이룰수록 모의 퇴근시간보다 유치원 하원이 늦은 유아의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표 II-2-18 참조).

〈표 II-2-18〉 영유아 모의 퇴근시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모의 퇴근시간								전체
	14:00 까지	14:01~ 15:00	15:01~ 16:00	16:01~ 17:00	17:01~ 17:30	17:31~ 18:00	18:01~ 19:00	19:01 이후	
14:00까지	-	-	1.5	2.3	-	6.1	3.0	-	1.9
14:01~15:00	28.1	9.1	6.1	6.8	22.0	16.3	3.0	7.7	12.1
15:01~16:00	21.9	36.4	18.2	11.4	14.6	12.2	15.2	30.8	18.9
16:01~17:00	31.3	31.8	30.3	47.7	19.5	32.7	42.4	15.4	32.6
17:01~17:30	12.5	11.4	6.1	4.5	19.5	10.2	12.1	15.4	10.6
17:31~18:00	6.3	6.8	22.7	11.4	14.6	14.3	12.1	-	13.0
18:01~19:00	-	4.5	15.2	15.9	2.4	4.1	6.1	30.8	8.7
19:01 이후	-	-	-	-	7.3	4.1	6.1	-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8)	(11)	(16)	(30)	(14)	(39)	(73)	(72)	(273)

자료: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3. 선행연구

#### 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연구는 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여성고용률 제고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시간제 일자리 영유아 취업모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여성부 지원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오은진 외, 2008)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욕구를 조사하여 수요자 중심의 직업정보 제공, 자녀 보육이 지원되는 교육 훈련, 직업교육 시간의 다양화, 육아기 탄력적인 근무시간 보장 다양한 형태의 보육지원서비스 강화, 개인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김중숙 외(2013)는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의 하나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 및 지역사회 맞춤형 훈련정책 제공, 취업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김영옥 외(2013)는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및 정책 요구를 반영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였는데, 개정안 내용은 경력단절 여성의 정의를 재직 근로자를 포함한 범

위로 확대하고, 지원 정책을 세분화하며 창업지원 및 돌봄서비스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센터 및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주재선 외, 2014)은 여성가족패널 데이터(2004~2012)를 심층 분석하여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요인으로 임신과 출산, 근로시간, 임금, 비정규직 여부 등을 추출하였다.

유희정 외(2014)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자녀 양육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하여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제공시간 연장, 취업모의 육아지원 소요 비용 지원, 오후 8시 전후 야간 돌봄 지원, 가정 내 영아의 양육지원방안 모색, 휴일 근무 취업모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국공립 기관 설치 확대 등을 지원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그 외 기혼여성 취업과 관련하여 이진경·옥선화(2009)는 2002~2006년 한국노동패널 데이터의 20~30대 기혼여성취업자를 통해 기혼 여성의 취업 현황을 분석하였고, 오은진·이한나(2013)은 기혼 여성의 직업 이동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정영순 외(2012)는 전일제와 시간제 취업모의 근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하였다.

## 나. 영유아 맞춤형보육

### 1) 시간연장보육

2000년 이후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 부모의 다양한 보육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시간연장형 보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야간 보육의 수요 및 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강달금 외(2002)는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시간연장보육의 법적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보육시간을 18:00~22:30으로 규정하였으며,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정 절차와 종사자 자격 및 처우 기준 등을 제안하였다.

2004년에는 여성부 의뢰로 김정희 외(2004)가 특수 근로방식 및 특수 보육 필요 직업군을 대상으로 특수보육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자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토대로 특수(시간연장형)보육을 확대하고, 야간 및 24시간 보육의 질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야간보육은 확대하나 정

원 100명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매일 운영하되, 아동 가구 당 주 3회 이내로 이용을 제한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민간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며,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하고, 주·야간 교사의 상호 지원, 충분한 급간식 및 실외활동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조선주 외(2010)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인건비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의 시간연장 인건비 지원사업과 근무수당지원 시범사업의 동시 확대와 장기적으로 지역별 지정시설(거점)의 확대 서비스의 질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별 시간연장 보육매뉴얼 제작 및 배포, 보육정보통합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청·관리 및 원아 관리의 효율화 등을 주장하였다.

서문희·양미선 외(2011)는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질 높은 시간연장보육 모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간연장보육을 상시 이용하는 아동을 지역내 거점으로 모아 종일보육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거점형과 등·하원 차량으로 인근 기관을 순회하여 시간연장보육 운영기관에서 모아서 보육하는 연계형, 이용 아동수 1일 평균 3명 이하인 어린이집 2개소가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결합형 등을 제안하였다.

이후 서문희·양미선(2012)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시간연장보육 제도 개선 및 재정 절감 등의 목적으로 시간연장보육 서비스의 인식과 이용 행태, 이용자 만족도 등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간연장보육 관리체계 강화와 부모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시간연장보육료 인상, 시간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의 저녁 급식비 확보 대책 마련 시간연장보육의 탄력적 적용, 시간연장보육 아동수가 일정 규모 이상 확보 시 운영하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 시간연장보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프로그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바 학계에서 이와 관련되는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서원경·최석란(2005)은 보육교사와 영아의 애착증진을 위한 야간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김동례 외(2010)는 시간연장형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았다. 김혜경·류왕희(2006)는 시간연장보육의 장시간 보육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영향 정도를 살펴보았고, 서현·윤경아(2012, 2013)는 시간연장보육 아동의 적응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외

에 서문희·양미선(2013)은 시간연장보육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송경섭(2013)은 어린이집 유형별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실태 및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 2) 24시간 보육

24시간 보육은 이용 수요가 적어 그간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나, 가족형태 및 근로시간 등의 변화에 따라 맞춤형 보육에 대한 요구 늘어나면서 관련 연구도 조금씩 수행되고 있다.

24시간 보육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전광현 외(2006)가 처음으로 추진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24시간 입소대상 아동 자격조건과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조건, 운영지침서 마련을 제안하였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와 전담교사와 보조교사로의 의무 배치, 아동대 교사 비율, 24시간 보육 프로그램 개발,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추가 지원 보호자의 의무사항 마련, 24시간 보육시설 지도감독 및 평가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백선정 외, 2015)은 경기도 소재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중심의 거점형 시설을 지정 운영하고, 24시간 보육 대상을 부나 모의 야간근무로 제한하여 이용 대상을 관리하며, 24시간 보육아동 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입소과정을 체계화하고, 아동 연령별로 교사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고, 교사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야간 및 24시간 보육 관련 학계 연구로는 표갑수(199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자는 24시간 보육의 필요성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분석하였으며, 복지사회와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따라 보육 대상 부모의 다양한 보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종일제에 보육유형에서 벗어나 시간제, 야간보육, 휴일제, 24시간 보육시설 등을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문희 외(2000)는 야간 및 24시간 보육의 실태 및 요구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강조하였고, 이후 김현진·윤상용(2015)은 24시간 보육의 개선점으로 아동발달에 적합한 표준서비스체계 구축, 보육기관 보육료 상향조정 야간 근무자 중심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 재정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 3) 시간제보육

그동안 12시간 보육이 보편화되면서 시간제보육 또한 연구 분야에서 간과되었다. 그러나 2010년 양육수당 도입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간제보육 관련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장영인·최영신(2008)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시간제보육 수요 조사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시간제보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시간제보육 관련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다. 서문희·양미선(2014)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서문희 외 2009, 2012)에서 영유아 부모의 시간제 보육 이용 실태와 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왔다. 또한 정부는 시간제보육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시간제 보육료 단가를 책정하고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실시되는 시간제보육의 비용기준을 제시하여 왔다(서문희·양미선, 2014 재인용).

서문희·양미선 외(2011)는 2011년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일시보육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 모형을 제시하였다. 기존 어린이집 운영을 변화하거나 어린이집 이외 기관으로 확대, 신규기관을 설치하거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2012년 일시보육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일시보육 운영체계와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구철희 외, 2013)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2013년 일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서문희·양미선, 2014). 서문희 외(2013)는 2013년 한국보육진흥원 지원으로 일시보육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에 따라 일시보육은 2014년 시간제보육으로 전환되었고, 다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서문희·양미선(2014)은 2014년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 개선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안 중 시간제보육교사 영아보육 교육 이수 의무화, 운영비 사용 지침 변경 등의 일부는 2015년 본 사업에 반영되었다.

한편, 학계에서는 시간제보육 이용 현황과 부모의 인식에 대한 연구(김설아 2015; 이영환, 2015)가 일부 수행되었다.

## 다. 영유아 방과후돌봄 서비스

유치원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근로시간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과 보육의 양분적 논리에서 탈피하여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며,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생산하여 왔다.

### 1) 종일제 및 방과후과정

육아정책연구소(문무경·김문정, 2008)은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 현황과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하여 내실있고 효과적인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종일반 운영시간을 1일 12시간, 연중 300일로 재개념화를 제안하였고, 공사립의 종일반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 요구가 상이하므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범주화하여 학급편성, 운영시간, 교사배치, 프로그램 등을 다양화하고, 종일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보급, 전담교사 확보 위한 교사 배정조건 명시, 순회교육지원제도 활성화, 온오프라인 종일반 교사 협력체제 구축, 종일반 이용 부모 및 가정과의 연계, 장학지원 체제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김은설·유해미·김선화, 2010)는 에듀케어 운영 유치원과 학부모 대상으로 운영 및 이용 실태와 부모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개선 방안으로 부모의 종일제 이용비용 부담을 낮추고, 특히 저소득층의 종일제 이용비 지원을 통해 부모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이용 현황에서 차이를 보인 공·사립 에듀케어 운영 격차를 줄이고, 취업모 우선으로 종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건비 지원 확대를 통한 정규직 전담 교사 채용으로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정·김미숙(2005)은 에듀케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원아 교사 시설 프로그램, 급간식, 안전 등에 대한 통합형 운영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에듀케어 확산을 위해 부모 요구를 반영한 운영시간 조율, 별도 교실과 낮잠 공간의 확보, 취업모의 협조를 최소화하는 운영, 영양사, 조리사 등 지원자에 대한 보상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 종일제 운영 개선을 위한 학계 연구로는 종일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문미옥 외, 2008)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종일반 운영 차이점을 비교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한 연구(노은호·김정주,

2011), 종일제 운영 교사의 면담을 통해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연구(배지희 외, 2010),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한 인식을 부모 변인에 따라 살펴본 연구(이희선, 2006)가 있다.

## 2)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

유치원은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김홍원 외, 2012)은 유·초등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추진 배경 및 경과와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으로 이용 아동의 안전체계 구축과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 운영 지속적인 프로그램 질 평가와 그 결과를 운영 개선에 활용하는 체제 구축, 운영 관계자 연수 확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돌봄강사의 전문성 및 신분안정 제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김근혜·홍순옥(2013)은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 원감, 부자육사,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의 필요성 및 운영, 교사교육,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유치원 원장과 원감 등 운영자 입장에서는 원아 모집이나 원 운영에 도움이 되나, 교사의 업무 과정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전담교사 및 보조교사 확대 배치, 야간업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온종일 돌봄 특성에 맞는 별도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제언하였다.

## 4. 국외 사례

### 가. 프랑스

프랑스는 단일 보육시설과(Mono-Accueil)과 복합보육시설(Multi -Accueil), 가족보육시설(Accueil familial) 3가지 유형의 보육시설이 있다. 단일 보육시설은 집단 보육시설(Crèches collectives)과 일시 보육시설(Haltes-garderies)로 구분된

다. 집단 보육시설은 평일 낮시간 동안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정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일시 보육시설은 반시간 동안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복합 보육시설(Multi - Accueil)은 정규 보육(Accueil régulier)과 일시보육(Accueil ponctuel, occasionnel), 위급보육(Accueil régulier)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이다(신윤정 외, 2014).

보육서비스 중 일시보육(l'accueil occasionnel)은 아동이 보육시설에 등록되어 있지만 제한된 시간만 이용하거나 미리 이용시간 스케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이다. 위급 보육(l'accueil d'urgence)은 아동이 보육 시설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위급할 경우 이용하는 시설 보육 서비스이다(서문희·양미선, 2014 재인용).

일시보육 또는 위급보육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일시 보육시설은 시설수나 정원이 점차적으로 줄어서 2012년 1,543개소, 정원이 26,870명이다. 반면에 정규보육과 일시보육, 위급보육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보육시설은 매년 증가하여 2011년 기준 6,870개소이고, 정원은 198,330명이다(표 II-4-1 참조).

〈표 II-4-1〉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정원						시설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sup>1)</sup>	2011	2012 <sup>1)</sup>
단일 보육시설	133,380	128,210	126,000	125,340	118,280	-	7,810	-
집단보육시설	90,780	87,140	85,870	86,830	81,520	-	2,090	-
일시보육시설	35,180	33,320	32,060	30,480	28,510	26,870	1,690	1,543
일반	33,670	31,990	30,850	39,490	27,600	25,880	1,630	1,480
부모협동	1,510	1,330	1,210	990	920	990	60	62
복합보육시설	136,640	153,600	166,360	177,980	198,330		6,870	

주: 2012년 단일보육시설, 집단보육시설 자료 미제공하여 제시하지 않음.

자료: 프랑스 보건사회부

<http://www.acepprif.org/images/public/biblio/ressourcespe/drees-etude-offre-accueil-03ans-2013.pdf>

1) 서문희·양미선(2014).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성과분석. 한국보육진흥원·육아정책연구소.

일시 보육시설은 공립, 사립, 이동(HGI: Halte-garderie itinérante)<sup>6)</sup>형 3가지 유형이 있다. 대상연령은 6세 이하 아동이며 정원은 60명, 1주일 최대 36시간 (trois demi-journees)까지 이용할 수 있다. 등록 방법은 보육시설에 따라 다르

6) HGI(Halte-garderie itinérante)는 보육시설이 적은 농촌지역 거주민을 위한 형태 장난감과 교육 자재를 실은 소형트럭으로 운영됨

며, 보육료는 부모의 수입이나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립인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당 1~5유로 정도로, 최대 비용은 CAF(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가족수당기금)에 의해 결정된다<sup>7)</sup>.

일시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보육시설이나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나 그림그리기, 농작물 키우기, 물놀이 등 다양하고, 급식은 법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 나.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7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보육시설은 2~18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시설에서는 종일제(주당 48시간 이상), 반일제(주당 24시간), 시간제 보육 등을 제공한다. 일부 센터는 일시보육 또는 긴급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14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보육프로그램을 추가 제공한다.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sup>8)</sup>.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18개월~5,6세)는 2014년 기준 2,285명으로 2009년 2,172명에서 1,700명 선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이다.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시간제보육 아동은 3% 내외로 소수이다. 한편 영아(2~18개월)는 2014년 2월 기준 64명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2%에 해당한다(표 II-4-2 참조).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국적의 자녀가 ECDA(Early Childhood Development Development Agency)로부터 인가받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시간이 월 56시간 이상인 모 또는 남성 한부모 가정으로, 월 총 가구소득(HHI) \$7,500 이하 가구에 가구소득이나 이용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단, 가구원 1인당 소득(PCI)이 \$1,875 이하인 경우에는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18개월~5,6세 영유아 기준 시간제보육 기본 보육료는 주당 12~24 시간 \$110, 주당 24~36시간 \$165, 주당 36~48시간 \$220이고, 총 가구소득 또는 가구원 1인당 소득에 따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과 정부로부터 최대 지원받을 있는 금액

7)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853.xhtml>(2015년 11월 14일 인출)

8) <http://app.msf.gov.sg/Policies>(2015년 11월 14일 인출)

[https://www.childcarelink.gov.sg/ccls/uploads/MCYS-Choosing\\_110310\\_FA.pdf](https://www.childcarelink.gov.sg/ccls/uploads/MCYS-Choosing_110310_FA.pdf)

이 달라진다.

〈표 II-4-2〉 싱가포르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sup>1)</sup>
영유아보육시설	785	874	955	1,016	1,083	1,106
정원	67,980	77,792	85,790	92,779	101,597	106,833
현원	57,870	63,900	73,900	75,530	73,852	82,237
중일제	47,379	53,903	63,091	65,826	65,650	72,866
반일제	8,319	7,922	8,734	7,808	6,478	7,086
시간제	2,172	2,075	2,075	1,896	1,724	2,285
(시간제 비율)	(3.8)	(3.2)	(2.8)	(2.5)	(2.3)	(2.8)
영아보육시설						
보육시설	152	208	259	296	327	336
정원	2,011	3,117	3,997	4,722	5,257	5,329
현원	1,409	1,743	2,102	2,604	3,015	3,141
중일제	1,316	1,637	1,988	2,510	2,902	3,009
반일제	44	75	81	64	59	68
시간제	49	31	33	30	54	64
(시간제 비율)	(3.5)	(1.8)	(1.6)	(1.2)	(1.8)	(2.0)

주: 영아보육은 2~18개월 영아대상임.

1) 영아보육은 2014년 2월 자료임.

자료: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gency(ECDA).

1) <http://app.msf.gov.sg/Research-Room/Research-Statistics/Childcare-Centres-Places-Of-red-and-Children-Pla>. 2015년 11월 15일 인출.

〈표 II-4-3〉 시간제보육료 지원 현황: 영유아(18개월~5.6세)

단위: 싱가포르 달러(%)

총 가구소득	가구원 1인당 소득(PCI)	주당 12~24시간				주당 24~36시간				주당 36~48시간			
		기본보육료	부모부담최소금액	최대지원액	정부지원비율	기본보육료	부모부담최소금액	최대지원액	정부지원비율	기본보육료	부모부담최소금액	최대지원액	정부지원비율
2,500 이하	625 이하	1	160	(99)	2	240	(99)	2	320	(99)			
2,501~3,000	626~750	2	145	(98)	3	220	(98)	4	290	(98)			
3,001~3,500	751~875	12	135	(90)	18	205	(90)	23	270	(90)			
3,501~4,000	876~1,000	110	23	115	(80)	165	35	170	(80)	220	46	225	(80)
4,001~4,500	1,001~1,125		35	80	(70)		52	120	(70)		69	160	(70)
4,501~7,500	1,226~1,875		80	35	(50)		118	55	(50)		157	70	(50)
7,500 이상	1,875 이상		-	-	-		-	-	-		-	-	-

자료: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gency(ECDA).

[https://www.childcarelink.gov.sg/ccsls/uploads/Subsidy\\_Brochure\(ECDA\).pdf](https://www.childcarelink.gov.sg/ccsls/uploads/Subsidy_Brochure(ECDA).pdf). 2015년 11월 15일 인출.

2~18개월 영아는 <표 II-4-4>와 같이 주당 이용시간에 따라 기본 보육료가 \$220에서 \$440까지이며, 부모부담 최소금액이나 최대 지원액도 차등 지원된다.

<표 II-4-4> 시간제보육료 지원 현황: 영아(2~18개월)

단위: 싱가포르 달러(%)

총 가구소득	가구원 1인당 소득(PCI)	주당 12~24시간				주당 24~36시간				주당 36~48시간			
		기본 보육 료	부모 부담 최소 금액	최대 지원 액	정부 지원 비율	기본 보육 료	부모 부담 최소 금액	최대 지원 액	정부 지원 비율	기본 보육 료	부모 부담 최소 금액	최대 지원 액	정부 지원 비율
2,500 이하	625 이하	22	200	(99)	33	300	(99)	44	400	(99)			
2,501~3,000	626~750	37	185	(98)	55	275	(98)	73	365	(98)			
3,001~3,500	751~875	48	175	(90)	72	260	(90)	95	345	(90)			
3,501~4,000	876~1,000	220	70	150	(80)	330	105	225	(80)	440	139	300	(80)
4,001~4,500	1,001~1,125	104	120	(70)	154	175	(70)	204	235	(70)			
4,501~7,500	1,226~1,875	148	75	(50)	220	110	(50)	292	145	(50)			
7,500 이상	1,875 이상	-	-	-	-	-	-	-	-	-			

자료: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gency(ECDA).  
[https://www.childcarelink.gov.sg/ccls/uploads/Subsidy\\_Brochure\(ECDA\).pdf](https://www.childcarelink.gov.sg/ccls/uploads/Subsidy_Brochure(ECDA).pdf). 2015년 11월 15일  
 인출.

### 다. 핀란드

핀란드 헬싱키 시는 1일 5~7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종일보육과 5시간 미만의 시간제보육 외에 야간 및 24시간 보육(evening and round-the-clock care) 과 일시보육(Temporary daycare)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야간 및 24 시간 보육과 일시보육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일시보육(Temporary daycare)

핀란드 헬싱키 시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임시로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보육(Temporary daycare)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II-4-5> 일시보육 비용

단위: 유로

구분	첫째아	둘째아
5시간 이상 보육	42.20	22.50
5시간 미만 시간제 보육	22.50	14.00

자료: 핀란드 헬싱키 시 홈페이지(<http://www.hel.fi/www/Helsinki>) 2016년 1월 13일 인출.

가정양육수당과 개인수당을 받거나 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시보육 서비스 비용은 출생순위에 따라 다르다. 5시간 미만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첫째아는 22.50유로이고, 둘째아는 14.00유로이다(표 II-45 참조).

## 2) 야간 및 24시간 보육(Evening and Round-the-clock care)

24시간 보육(Round-the-clock care)은 정규보육 외에 주말 또는 오후 6 시에서 익일 6시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보육은 부모의 직장이나 학업으로 정기적인 요구가 있는 부모들에게 제공된다. 24시간 보육시설(Round-the-clock daycare centre)은 휴일 없이 1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운영된다. 야간보육은 오후 22시까지 지정 보육시설에서 제공한다. 이용시간은 부모의 퇴근시간이나 연구 등의 일정을 기준으로 한다. 헬싱키 시에는 야간 보육시설 5개소, 24시간보육 시설이 7개소 있다<sup>9)</sup>.

## 라. 영국(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아동법에 의해 모든 아동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 중 기본 운영시간 외 시설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탁아서비스(Crèche)와 휴일돌봄(Holiday play scheme), 보육원(nurseries)의 추가 보육이 있다.

보육원(nurseries)은 6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는 정기적인 종일제 시설보육으로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이다. 보육원 중에는 아침돌봄(breakfast club)이나 휴일돌봄 등 기본시간 외 추가 보육을 제공하거나 학령기 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이나 등교 전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은 부모의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며,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탁아서비스(Crèche)는 쇼핑, 모임, 교육 등 부모의 사적인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해 자녀를 잠시 맡기는 드롭 인(drop-in) 서비스이다. 보육원에서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경우 탁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7:30부터 오후 6:30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9) <http://www.hel.fi/www/Helsinki>. 2015년 11월 15일 인출.



휴일돌봄(Holiday play scheme)은 방학 중 돌봄을 제공하며 활동별 수업 형태가 아닌 광범위한 교육 및 레저 활동을 제공한다.

〈표 II-4-6〉 돌봄서비스 유형별, 연령별 이용 아동 수(2013. 12. 31 기준)

구분	명(%)				
	1세미만	1세	2~3세	4~5세	0~5세
전체 아동수	57,058(100)	58,898(100)	118,742(100)	119,040(100)	353,738(100)
탁아서비스(Crèche)	450(0.8)	610 (1.0)	1,780 (1.5)	1,210 (1.0)	4,050 (1.1)
휴일돌봄(Holidayplayscheme)	-	-	30(-)	300 (0.3)	330 (0.1)
보육원(nurseries)	2,440(4.3)	12,380(21.0)	63,220(53.2)	57,500(48.3)	135,540(38.3)
추가돌봄 제공	620(1.1)	3,140 (5.3)	12,630(10.6)	9,310 (7.8)	25,700 (7.3)
추가돌봄 미제공	1,820(3.2)	9,240(15.7)	50,590(42.6)	48,180(40.5)	109,830(31.0)
방과후돌봄	-	20(-)	110 (0.1)	6,650 (5.6)	6,780 (1.9)
추가돌봄 제공	-	20(-)	110 (0.1)	5,340 (4.5)	5,470 (1.5)
추가돌봄 미제공	-	-	-	1,310 (1.1)	1,310 (0.4)
총계	4,080(7.2)	18,140(30.8)	86,090(72.5)	77,950(65.5)	186,260(52.7)

주: 추가 돌봄에는 아침돌봄(breakfast club), 휴일돌봄(Holiday play scheme) 등이 포함됨.  
 자료: Care Inspectorate(2013) Care Inspectorate service-lists and annual return data.

돌봄 서비스별 이용 아동 수를 살펴보면 보육원(nurseries)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은 135,540명으로 전체 아동의 약 40%가 이용한다. 보육원을 이용하는 아동 중 아침돌봄 등 추가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는 약 19%인 25,700명이다. 방과후돌봄을 이용하는 아동 중 추가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는 약 80%로 방과후돌봄을 이용하는 부모 중 대부분이 추가돌봄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탁아소(Crèche)는 2~3세의 이용률이 전체 아동의 1.5%로 가장 높고, 1세와 5세는 1%, 0~1세는 0.8%로 가장 낮다(표 II-4-6 참조).

### Ⅲ.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현황 및 요구

제3장에서는 어린이집이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형 보육, 즉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과 시간제보육 관련법 및 제도, 운영 현황과 요구 등을 제시하였다

#### 1. 시간연장보육

##### 가. 개요<sup>10)</sup>

시간연장보육 관련 조항은 2005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보육의 종류와 기준을 명시하면서 법제화<sup>11)</sup>하였다. 동법 제28조 4항은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간연장형 보육으로 정의하고 있다(법제처 홈페이지).

시간연장보육은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 까지 보육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었다. 이전까지 종일제 보육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초과 보육료를 지원하던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보건복지부, 각 년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보육교사 월급여 지원과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두 가지가 있다. 보육교사 월 급여 지원은 2003년 국공립과 법인시설에서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할 경우 인건비 100%<sup>12)</sup>를 지원하고, 주간 보육교사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하면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2004년 90%에서 2005년 80%까지 줄었으나, 지원대상을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

10) 시간연장보육 개요는 2003년부터 2015년 보육사업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11)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은 아동을 22시 30분 이후까지 보육하는 경우, 보육 아동이 80%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함.

하게 되었다. 직장의 경우, 2006년까지 민간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2007년부터 정부지원시설 보수기준표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사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시간연장반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범이 실시되고, 이후 주간 보육교사 및 시설장이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 시간연장반 별로 월 30만원을 지원하였다. 2013년 민간어린이집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가 120만원, 시간연장반 근무수당이 4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인건비 지원단가가 동결되었다(보건복지부, 각 년도).

**나. 현황**

**1) 어린이집 수**

시간연장 어린이집<sup>13)</sup>은 2014년 기준 8,644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19.8%가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 1,344개소에서 2012년 8,000개소 대로 접어들어서 지난 10년 간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보건복지부, 각 년도).

〈표 III-1-1〉 시간연장 어린이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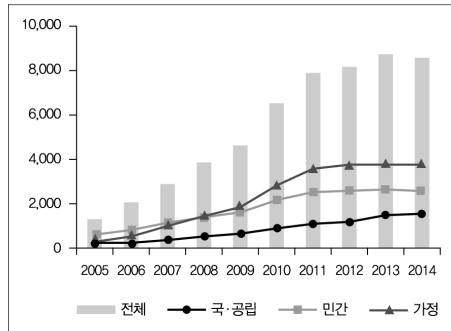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공 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전체	
									어린이집 수	운영률
2014	8,644	1,607	359	180	2,626	3,741	8	123	43,742	(19.8)
비율	(19.8)	(64.6)	(25.3)	(21.1)	(17.7)	(16.0)	(5.4)	(17.8)		
2013	8,705	1,541	369	188	2,653	3,835	7	112	43,770	(19.9)
2012	8,164	1,177	359	182	2,590	3,760	6	90	42,527	(19.2)
2011	7,844	1,093	372	183	2,532	3,586	4	74	39,842	(19.7)
2010	6,535	909	345	175	2,207	2,840	1	58	38,021	(17.2)
2009	4,666	679	298	140	1,660	1,852	1	36	35,550	(13.1)
2008	3,910	564	266	116	1,444	1,494	-	26	33,499	(11.7)
2007	2,867	378	191	83	1,146	1,058	-	11	30,856	( 9.3)
2006	2,029	284	176	108	829	573	56	3	29,233	( 6.9)
2005	1,344	202	167	55	604	314	1	1	28,367	(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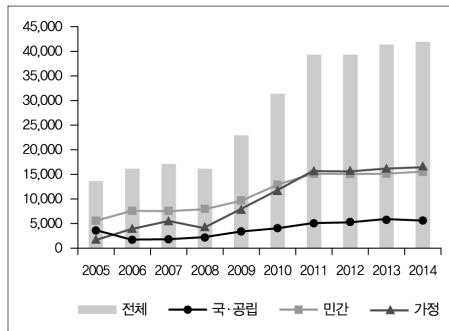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13) 시간연장어린이집은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시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시간연장보육 미지정 시설에서도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으로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할 수 있다. 시간연장보육 미지정 어린이집은 2014년 기준 1,297개소이고, 이용 아동수는 4,090명이다(보건복지부, 2014).

전체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비율은 2005년 4.7%에서 2008년 11.8%로 두배 이상 상승하였고, 2011년 이후 19%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가정이 3,741개소, 민간 2,626개소, 국공립 1,607개소 순이지만, 운영 비율은 국공립이 64.6%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등이 20%대, 민간과 가정, 직장이 16~17%대 정도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05년 202개소에서 매년 10% 정도 늘어나고 있으나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수 증가에 비례하여 늘어나다가 201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각 년도).



〈시간연장보육 지정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

[그림 III-1-1] 연도별 시간연장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 2) 이용 아동 수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수는 2014년 기준 41,655명이다. 즉,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2.8% 정도가 기준 보육시간을 연장하여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수는 2005년 13,679명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으로 3만 명까지 늘었고, 누리과정이 3~5세로 확대된 2013년 이후에는 4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각 년도).

앞서 살펴본 시간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수와 마찬가지로 가정과 민간, 국공립 순으로 이용 아동 수가 많다. 시간연장보육 이용률은 가정이 4.5%로 가장 높고, 국공립과 직장이 3%대, 나머지는 1~2%대로 소수이다. 국공립은 2007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15~16천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표 III-1-2 참조).

<표 III-1-3>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률을 산출한 것이다. 2014

년 시간연장보육 현원률은 10.1%로 정원 5명 중 1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30.4%에서 2008년 8.2% 대로 급감한 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이후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가정이 24.4%로 가장 높고, 부모협동과 직장이 10% 정도, 나머지는 5~9% 선이다. 직장은 2010년 3.5%에서 2014년 10.2%까지 상승하였고, 가정은 2012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는 2008년 이후 4~8%대를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각 년도).

〈표 III-1-2〉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전체	
									이용 아동수	이용률
2014	41,655	5,583	1,750	1,086	15,539	16,420	55	1,222	1,496,671	(2.8)
(비율)	(2.8)	(3.5)	(1.7)	(2.2)	(2.0)	(4.5)	(1.5)	(3.1)		
2013	41,052	5,796	1,860	1,092	15,093	16,112	53	1,046	1,486,980	(2.8)
2012	39,287	5,272	1,838	1,080	15,014	15,470	52	561	1,487,361	(2.6)
2011	39,313	4,989	1,961	1,126	15,235	15,598	44	360	1,348,729	(2.9)
2010	31,371	4,208	1,633	976	12,672	11,684	5	193	1,279,910	(2.5)
2009	22,848	3,252	1,414	768	9,520	7,810	5	79	1,175,049	(1.9)
2008	16,278	2,223	1,096	623	8,001	4,287	-	48	1,135,502	(1.4)
2007	17,084	1,871	1,319	600	7,590	5,635		69	1,099,933	(1.6)
2006	16,261	1,912	1,323	821	7,425	4,027	406	347	1,040,361	(1.6)
2005	13,679	3,375	2,224	823	5,434	1,813	5	5	989,390	(1.4)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표 III-1-3〉 시간연장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단위: %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4	10.1	4.5	5.0	8.3	9.5	24.4	13.2	10.2
2013	9.9	4.9	5.2	7.8	9.1	23.4	13.3	10.1
2012	10.4	5.7	5.2	7.9	9.4	22.9	13.9	7.0
2011	10.9	5.8	5.4	8.1	10.0	24.5	16.7	5.2
2010	10.2	5.7	4.9	7.2	9.7	23.0	6.8	3.5
2009	9.9	5.7	4.9	7.0	9.8	23.2	6.8	2.5
2008	8.2	4.6	4.2	6.8	9.5	15.8	-	2.0
2007	18.1	8.6	12.5	17.5	18.2	35.4	-	6.4
2006	20.4	8.8	14.0	16.9	22.5	43.2	47.0	94.6
2005	30.4	34.5	21.0	32.1	30.0	46.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 3) 운영 반 및 아동 수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시간연장반은 평균 1.9개반으로 구간별로는 1개반이 54.9%로 다빈도이고, 2개반 28.3%, 3개반 이상이 16.7% 순이다. 기관유형별로는 법인단체등이 평균 3.1개반으로 많고, 국공립이 평균 1.6개 반으로 적었다. 정원규모별로는 101명 이상 규모가 평균 3.1개반 나머지는 평균 1.8개 반으로 동일하였다.

한편,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평균 8.7명으로 영아가 4.4명, 유아 4.2명으로 비슷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 평균 16.4명으로 가장 많고, 가정과 국공립이 6~7명으로 적었다.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1명 정도 많고, 정원에 비례하여 이용 아동 수도 증가하였다(표 Ⅲ-1-4 참조).

〈표 Ⅲ-1-4〉 시간연장보육 반 수 및 이용 아동수

단위: %(개소), 반, 명

구분	시간연장반 수					이용 아동수				
	1개	2개	3개 이상	계(수)	평균	영아 수	유아 수	총계	맞벌이 가구자녀 비율	(수)
전체	54.9	28.3	16.7	100.0(621)	1.9	4.4	4.2	8.7	88.2	(621)
기관 유형										
국공립	71.7	18.8	9.4	100.0(138)	1.6	2.5	5.4	7.9	91.8	(138)
사회복지법인	56.7	30.0	13.3	100.0( 30)	1.9	4.3	6.2	10.5	88.6	( 30)
법인단체 등	31.3	18.8	50.0	100.0( 16)	3.1	4.9	11.5	16.4	87.9	( 16)
민간개인	44.0	33.2	22.8	100.0(184)	2.2	4.8	5.9	10.8	85.5	(184)
가정	56.0	30.3	13.7	100.0(241)	1.8	5.2	1.5	6.6	87.7	(241)
직장	33.3	33.3	33.3	100.0( 12)	2.4	6.4	5.7	12.1	97.6	( 12)
X <sup>2</sup> (df)/F		-			3.0*	3.4**	17.0***	5.0***	1.4	
지역규모										
대도시	55.0	28.7	16.3	100.0(282)	1.9	4.2	4.7	8.9	88.3	(282)
중소도시	56.1	27.6	16.3	100.0(221)	1.9	4.2	3.9	8.0	90.8	(221)
읍면지역	52.5	28.8	18.6	100.0(118)	2.1	5.6	3.9	9.5	83.2	(118)
X <sup>2</sup> (df)/F		-			0.6	2.1	1.0	0.7	3.6*	
정원규모										
20명 이하	55.8	30.5	13.7	100.0(249)	1.8	5.1	1.5	6.6	87.5	(249)
21~50명	54.0	28.0	18.0	100.0(150)	1.8	4.5	4.2	8.7	85.3	(150)
51~100명	58.8	27.1	14.1	100.0(170)	1.8	3.0	6.4	9.4	91.5	(170)
101명 이상	40.4	23.1	36.5	100.0( 52)	3.1	5.9	10.3	16.2	89.6	( 52)
X <sup>2</sup> (df)/F		-			7.1***	4.8*	38.2***	11.3***	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수 중 평균 88.2%가 맞벌이가구 자녀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직장이 97.6%로 높고, 민간개인이 85.5%로 낮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며,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90.8%, 읍면지역 83.2%로 차이가 유의하였다.

시간연장보육 어린이집은 해당 시설의 종일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간에 다른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도 보육할 수 있다. 주간보육 정원이 미충족 되었을 경우에는 오후 15시 30분 이전에 등원하여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한 아동은 주간 아동으로 보아 주간보육 정원에 포함하지만, 정원이 채워졌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후 19시 30분 이전에는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입소시킬 수 없다. 그러나 조기 귀가 아동이 있고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근무할 경우에는 오후 19시 30분 이전에도 정원 외로 시간연장 아동을 보육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간 보육료를 수납할 수 없으며 인건비 지원 또한 받을 수 없다(보건복지부, 2015).

<표 III-1-5>는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 중 타 기관 이용 아동 수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대상 중 37.5% 정도가 다른 기관 이용 아동을 보육하고 있었다 기관유형 중 가정 62.2%, 민간개인 33.7%로 높고 나머지는 10% 내외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대도시보다 10%p 정도 높았다.

<표 III-1-5> 타 기관 아동의 시간연장보육 이용 여부 및 규모

단위: %(개소), 명

구분	타 기관 이용		타 기관 이용 아동 수					평균
	'있다'는 비율	(수)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수)	
전체	37.5	(621)	33.5	24.5	19.3	22.7	100.0(233)	2.7
기관 유형								
국공립	11.6	(138)	50.0	18.8	18.8	12.5	100.0( 16)	2.4
사회복지법인	10.0	( 30)	66.7	-	33.3	-	100.0( 3)	1.7
법인단체 등	6.3	( 16)	-	-	-	100.0	100.0( 1)	5.0
민간개인	33.7	(184)	35.5	25.8	17.7	21.0	100.0( 62)	2.7
가정	62.2	(241)	30.7	25.3	20.0	24.0	100.0(150)	2.7
직장	8.3	( 12)	-	-	-	100.0	100.0( 1)	4.0
X <sup>2</sup> (df)/F	124.3(5) <sup>***</sup>			-				0.6
지역규모								
대도시	31.2	(282)	37.5	27.3	20.5	14.8	100.0( 88)	2.4
중소도시	43.4	(221)	32.3	24.0	20.8	22.9	100.0( 96)	2.8
읍면지역	41.5	(118)	28.6	20.4	14.3	36.7	100.0( 49)	3.2
X <sup>2</sup> (df)/F	8.9(2) <sup>*</sup>			-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타 기관 이용 아동은 평균 2.7명으로, 1명이 33.5%, 2명 24.5%, 3명 19.3%, 4명 이상을 보육하는 경우도 22.7%로 높았다. 기관유형별로는 법인단체 등이 평균 5.0명으로 보육 아동수가 많고, 사회복지법인이 1.7명으로 적고 읍면지역일수록 타 기관 아동수가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 4) 토요일 운영

시간연장보육 어린이집 중 토요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26.9% 정도이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법인단체등이 43.8%, 사회복지법인과 민간개인이 30%대, 가정이 28.2%, 국공립이 15.2%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일수록 토요일에 운영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토요일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수는 1일 평균 3.7명으로, 구간별로는 1명과 2명이 각각 22% 정도로 다빈도를 나타내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 토요일 평균 6.7명으로 가장 많고, 국공립과 가정이 평균 2.6~2.9명으로 적었다. 읍면지역일수록 토요일에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많았다 (표 III-1-6 참조).

〈표 III-1-6〉 토요일 시간연장보육 운영 여부 및 이용 아동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운영 여부		이용 아동 수							계	평균
	운영 비율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10명	11명 이상		
전체	26.9	(621)	22.2	22.8	19.2	7.8	10.2	14.4	3.6	100.0(167)	3.7
기관 유형											
국공립	15.2	(138)	42.9	19.0	9.5	9.5	9.5	9.5	-	100.0( 21)	2.6
사회복지법인	33.3	( 30)	20.0	30.0	10.0	-	-	30.0	10.0	100.0( 10)	4.7
법인단체 등	43.8	( 16)	-	28.6	14.3	-	-	42.9	14.3	100.0( 7)	6.7
민간개인	32.6	(184)	13.3	25.0	20.0	1.7	13.3	20.0	6.7	100.0( 60)	4.6
가정	28.2	(241)	26.5	20.6	22.1	14.7	10.3	5.9	-	100.0( 68)	2.9
직장	8.3	( 12)	-	-	100.0	-	-	-	-	100.0( 1)	3.0
$X^2(df)/F$											4.0**
지역규모											
대도시	25.2	(282)	25.4	19.7	16.9	12.7	11.3	12.7	1.4	100.0( 71)	3.3
중소도시	26.2	(221)	19.0	24.1	24.1	3.4	12.1	12.1	5.2	100.0( 58)	3.9
읍면지역	32.2	(118)	21.1	26.3	15.8	5.3	5.3	21.1	5.3	100.0( 38)	4.3
$X^2(df)/F$											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1$



## 다. 운영 시간

### 1) 시간연장보육 오전 시작시각

시간연장보육은 오전 7시 30분 이전과 오후 19시 30분 이후에 운영하는 보육 서비스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15). 조사대상 중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조사 참여 어린이집 중 38개소로 소수이나 시작 시간을 조사하여 보았다.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시작하는 어린이집은 65.8%이고,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는 28.9%, 소수이지만 정규 시작시간 이전인 오전 6시 이전도 5.3% 정도 되었다(표 Ⅲ-1-7 참조).

〈표 Ⅲ-1-7〉 시간연장보육 운영시간: 오전 시작시각

단위: %(개소)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6:00 이전	-	-	-	8.3	4.3	6.3	-	14.3	5.3
6:00~7:00 이전	-	-	-	33.3	30.4	31.3	33.3	14.3	28.9
7:00~8:00 이전	100.0	-	-	58.3	65.2	62.5	66.7	71.4	65.8
계	100.0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			(12)	(23)	(16)	(15)	(7)	(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2) 종료시간

시간연장보육은 오후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서비스로, 이용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오후 22시까지는 반드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Ⅲ-1-8>은 시간연장보육 종료시각을 나타낸다. 오후 21시 30분에서 22시 사이가 54.0%로 다빈도이고, 다음으로 오후 22시에서 22시 30분 사이가 19.9%로 많았다. 오후 22시 30분 이후까지 운영한다는 비율도 16%로 높았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오후 21시 30분에서 22시 사이가 다빈도이나 직장어린이집은 오후 22시에서 22시 30분이 41.7%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도 오후 21시 30분에서 22시 사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오후 22시에서 22시 30분 사이에 종료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1-8〉 시간연장보육 운영시간: 종료시각

단위: %(개소)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9:00~20:00 이전	0.7	-	-	1.1	0.8	-	0.4	1.4	0.8	0.8
20:00~21:00 이전	0.7	3.3	-	3.3	4.6	-	3.9	2.3	2.5	3.1
21:00~21:30 이전	3.6	3.3	6.3	6.5	8.4	-	6.0	6.8	5.9	6.3
21:30~22:00 이전	63.0	56.7	50.0	51.6	51.5	33.3	48.4	54.5	66.1	54.0
22:00~22:30 이전	22.5	30.0	31.3	19.0	15.9	41.7	23.1	20.5	11.0	19.9
22:30~23:00 이전	3.6	3.3	12.5	10.3	12.1	16.7	10.0	7.3	11.9	9.4
23:00~24:00 이전	1.4	3.3	-	5.4	4.6	8.3	5.3	4.1	0.8	4.0
24:00 이후	4.3	-	-	2.7	2.1	-	2.8	3.2	0.8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38)	(30)	(16)	(184)	(239)	(12)	(281)	(220)	(118)	(61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3) 타 기관 이용 아동 등원시각

타 기관 이용 아동이 등원하기 시작하는 시각은 오후 18시에서 19시와 오후 17시와 18시 사이가 각각 38.2%, 32.6%로 기준 시작시간보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빨리 등원하고 있었다. 오후 17시 이전에 등원한다는 기관도 12.9%이었다

〈표 III-1-9〉 타 기관 아동의 등원시각

단위: %(개소)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6:00 이전	6.3	-	-	3.2	2.7	-	3.4	3.1	2.0	3.0
16:00~17:00 이전	-	33.3	-	12.9	8.7	100.0	6.8	10.4	14.3	9.9
17:00~18:00 이전	37.5	-	-	29.0	34.7	-	23.9	33.3	46.9	32.6
18:00~19:00 이전	50.0	33.3	100.0	40.3	36.0	-	43.2	37.5	30.6	38.2
19:00~20:00 이전	6.3	33.3	-	12.9	18.0	-	21.6	15.6	6.1	15.9
20:00 이후	-	-	-	1.6	-	-	1.1	-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	(3)	(1)	(62)	(150)	(1)	(88)	(96)	(49)	(2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민간개인과 가정어린이집은 오후 17시 이전에 등원한다는 비율이 10%가 넘는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오후 18시 이후가 다빈도이나 읍면지역은 1시간 이른 오

후 17시에서 18시 사이가 46.9%로 많았다(표 III-1-9 참조).

#### 4) 주요 하원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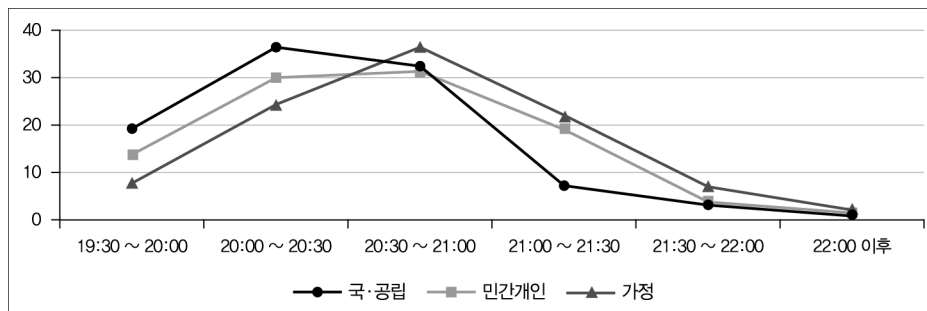
<표 III-1-10>은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의 주 하원시각으로 오후 20시 30분에서 21시 사이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오후 20시 30분에서 21시 사이가 34%로 높고, 오후 20시에서 20시 30분 28.5%, 오후 21시에서 21시 30분 16.6%, 오후 19시 30분에서 20시 14.7% 순이다. 전반적으로 오후 20시 30분에서 21시 사이가 다빈도이나, 국공립은 이보다 30분 이른 오후 20시에서 20시 30분 사이가 많았다. 특히 민간개인과 가정은 오후 21시에서 21시 30분 사이가 각각 19.6%, 22%로 다른 유형보다 높았다. 또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오후 20시 30분에서 21시 사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대도시는 오후 20시에서 20시 30분 사이가 높았다.

<표 III-1-10>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 주 하원시각

단위: %(개소)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9:30~20:00 이전	19.6	23.3	37.5	14.1	8.7	33.3	13.5	15.4	16.1	14.7
20:00~20:30 이전	36.2	30.0	6.3	29.9	24.1	33.3	31.9	26.2	24.6	28.5
20:30~21:00 이전	32.6	40.0	31.3	31.0	36.5	33.3	31.6	38.0	32.2	34.0
21:00~21:30 이전	7.2	6.7	12.5	19.6	22.0	-	16.3	14.9	20.3	16.6
21:30~22:00 이전	3.6	-	12.5	3.8	7.1	-	6.0	3.2	5.9	5.0
22:00 이후	0.7	-	-	1.6	1.7	-	0.7	2.3	0.8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38)	(30)	(16)	(184)	(241)	(12)	(282)	(221)	(118)	(6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그림 III-1-2]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 주요 하원시각

## 라. 프로그램 운영

### 1) 중점 프로그램

시간연장보육 운영 시 어린이집에서 중점을 두는 사항은 안전한 보호 또는 돌봄이 75.5%로 높고, 자유선택활동이 12.9%, 나머지는 5% 미만으로 소수이다. 특히 국공립은 프로그램 운영, 직장은 자유선택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비율이 타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전체 응답비율과 유사하다.

한편, 시간연장보육을 담당하는 교사 또한 안전한 보호 또는 돌봄에 중점을 둔다는 비율이 72.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자유선택활동 15.1%, 나머지는 5% 미만이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프로그램 운영, 생활지도, 실외놀이 등에 중점을 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정과 직장 어린이집 교사는 안전한 보호와 돌봄에 중점을 둔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III-1-11 참조).

〈표 III-1-11〉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 운영시 중점 활동

단위: %(명)

구분	원장							교사						
	자유 선택 활동	안전 한 보호 또는 돌봄	개인 학습 지도	프로 그램 운영	생활 지도	실외 놀이	계(수)	자유 선택 활동	안전 한 보호 또는 돌봄	개인 학습 지도	프로 그램 운영	생활 지도	실외 놀이	계(수)
전체	12.9	75.5	2.6	4.3	2.7	1.9	100.0(621)	15.1	72.0	2.0	4.3	4.5	2.0	100.0(601)
기관 유형														
국공립	9.4	68.8	4.3	10.1	3.6	3.6	100.0(138)	12.9	61.9	2.9	10.1	7.9	4.3	100.0(139)
사회복지법인	3.3	83.3	6.7	3.3	3.3	-	100.0( 30)	7.7	76.9	3.8	3.8	7.7	-	100.0( 26)
법인단체 등	12.5	75.0	-	6.3	6.3	-	100.0( 16)	11.8	76.5	5.9	-	5.9	-	100.0( 17)
민간개인	14.1	71.2	2.7	6.0	4.3	1.6	100.0(184)	20.7	67.4	1.6	4.9	4.3	1.1	100.0(184)
가정	14.5	81.7	1.2	-	0.8	1.7	100.0(241)	13.6	80.0	1.4	0.9	2.3	1.8	100.0(220)
직장	25.0	75.0	-	-	-	-	100.0( 12)	6.7	93.3	-	-	-	-	100.0( 15)
지역규모														
대도시	12.8	74.8	1.8	5.0	3.5	2.1	100.0(282)	16.4	69.3	1.7	5.9	5.2	1.4	100.0(287)
중소도시	11.8	76.5	3.6	4.1	2.3	1.8	100.0(221)	12.8	76.8	2.0	1.5	4.4	2.5	100.0(203)
읍면지역	15.3	75.4	2.5	3.4	1.7	1.7	100.0(118)	16.2	70.3	2.7	5.4	2.7	2.7	100.0(1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교사 조사」 결과임.

### 2) 시간연장보육 매뉴얼

정부는 2014년 시간연장보육형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 표 III-1-12 > 는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 매뉴얼의 인지 및 활용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원장 중 41.7%는 잘 알고 있고 현재 활용하며 40.1%는 잘 알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고, 15.3%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답하였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인지 및 활용 비율이 높고, 법인단체 등은 잘 모른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인지 및 활용 비율이 높고, 읍면지역일수록 모른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1-12〉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 매뉴얼 인지 및 활용

단위: %(명)

구분	잘 알고 있고 현재 활용	잘 알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음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름	잘 모름	계(수)
원장					
전체	41.7	40.1	15.3	2.9	100.0(621)
기관 유형					
국공립	65.2	26.8	5.8	2.2	100.0(138)
사회복지법인	36.7	46.7	16.7	-	100.0( 30)
법인단체 등	25.0	43.8	25.0	6.3	100.0( 16)
민간개인	41.3	39.1	15.2	4.3	100.0(184)
가정	31.1	46.9	19.9	2.1	100.0(241)
직장	25.0	50.0	16.7	8.3	100.0( 12)
지역규모					
대도시	45.4	38.3	14.2	2.1	100.0(282)
중소도시	38.0	44.3	15.4	2.3	100.0(221)
읍면지역	39.8	36.4	17.8	5.9	100.0(118)
시간연장 교사					
전체	39.6	31.9	22.1	6.3	100.0(601)
기관 유형					
국공립	48.9	28.1	18.7	4.3	100.0(139)
사회복지법인	34.6	42.3	15.4	7.7	100.0( 26)
법인단체 등	35.3	29.4	35.3	-	100.0( 17)
민간개인	42.9	30.4	21.2	5.4	100.0(184)
가정	30.0	36.4	25.9	7.7	100.0(220)
직장	66.7	6.7	6.7	20.0	100.0( 15)
지역규모					
대도시	43.2	32.4	18.8	5.6	100.0(287)
중소도시	35.0	33.0	24.1	7.9	100.0(203)
읍면지역	38.7	28.8	27.0	5.4	100.0(1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교사 조사」 결과임.

한편, 시간연장보육 담당교사는 잘 알고 있고 현재 활용 중인 경우가 39.6% 이고, 알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31.9%,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는 비율은 22.1% 정도이다. 직장과 국공립 교사의 활용 비율이 높고, 사회복지 법인은 활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법인단체등 교사의 인지 비율이 낮고, 직장은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로 높은 편이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알고 있거나 활용한다는 비율 높았다.

### 3) 시간연장보육 컨설팅

시간연장보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관련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여부를 조사하였다. 경험이 있는 경우는 10.3%로 낮은 편이다. 직장이 20.0%로 높고, 민간개인, 가정은 10%대로 다음이다.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지원 횟수는 평균 1.3회로, 1회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5.5%로 대다수이다.

〈표 III-1-13〉 시간연장보육 관련 컨설팅 및 모니터링 경험 및 횟수, 필요성

단위: %(명), 회, 점

구분	지원 여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횟수					필요성	
	있음 (수)	1회	2회	4회 이상	계(수)	평균	'필요하다' 비율	필요 정도
전체	10.3 (601)	85.5	11.3	3.2	100.0(62)	1.3	47.6	2.5
기관 유형								
국공립	7.9 (139)	90.9	9.1	-	100.0(11)	1.1	57.6	2.6
사회복지법인	3.8 (26)	100.0	-	-	100.0(1)	1.0	53.8	2.5
법인단체 등	5.9 (17)	100.0	-	-	100.0(1)	1.0	64.7	2.6
민간개인	13.0 (184)	79.2	16.7	4.2	100.0(24)	1.5	44.0	2.4
가정	10.0 (220)	90.9	9.1	-	100.0(22)	1.1	41.4	2.4
직장	20.0 (15)	66.7	-	33.3	100.0(3)	1.5	60.0	2.5
X <sup>2</sup> (df)/F	-	-	-	-	-	0.7	-	1.7
지역규모								
대도시	10.5 (287)	83.3	13.3	3.3	100.0(30)	1.2	47.8	2.5
중소도시	8.9 (203)	100.0	-	-	100.0(18)	1.0	49.8	2.5
읍면지역	12.6 (111)	71.4	21.4	7.1	100.0(14)	1.7	43.2	2.3
X <sup>2</sup> (df)/F	1.1(2)	-	-	-	-	2.2	-	2.1

주: 필요비율은 컨설팅 및 모니터링 필요정도를 필요와 매우 필요(4점 척도)를 합산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시간연장보육 관련 컨설팅 및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비율이 47.6%로 절반을 조금 못 미쳤다. 필요 정도를 4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2.5점으로 중간 수준이다(표 III-1-13 참조).

## 마. 시간연장 보육교사

### 1) 운영 지침<sup>14)</sup>

시간연장어린이집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에 한해 인건비를 지원하며, 월급여 지원과 근무수당 지원으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15).

#### 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한다. 단,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이 1명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5).<sup>15)</sup>

정부지원시설과 직장어린이집<sup>16)</sup>은 월 지급액의 80%, 민간어린이집은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시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하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에는 1:7까지 조정할 수 있다.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5).

#### 나)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은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를 말한다.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 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 월급여 시간연장반과 동일하게 보육 아동이 1명으로 줄면 감소되

14) 시간연장보육교사 운영 지침은 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내용을 수록함

15)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함. 보육 아동의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은 제외하며 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함(보건복지부, 2015).

16)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함(보건복지부, 2015).

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한다.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의 지원액은 반별 월 40만원이다.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개 반까지 지원한다. 이 외에 시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과 동일하다(보건복지부, 2015).

## 2) 시간연장 보육교사 수

2014년 기준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9,224 명으로 2005년 1,615 명에서 매년 50%p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13년에는 전년도보다 3천명 이상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보건복지부, 각 년도). 이는 3~5 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14〉 시간연장 보육교사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4	9,224	1,449	403	250	3,611	3,077	11	423
2013	9,054	1,434	422	252	3,538	3,038	10	360
2012	5,995	859	246	149	2,181	2,458	6	96
2011	5,513	736	218	135	2,083	2,261	4	76
2010	4,675	610	212	106	1,830	1,857	1	59
2009	3,778	465	171	95	1,467	1,548	1	31
2008	12,319	2,533	1,307	595	5,475	2,326	-	83
2007	3,036	312	225	114	1,276	1,099	-	10
2006	2,125	292	174	118	880	601	56	4
2005	1,615	214	257	63	759	318	3	1

주: 2008년 이전 통계는 종사자수로 집계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과 가정이 각각 3,611명, 3,077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국공립은 민간과 가정의 절반 수준이나 타 유형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이다. 모든 어린이집 유형이 2013년에 보육교사 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은 1,400명 가까이 늘었다(보건복지부, 각년도). 이러한 증가는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수 증가와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표 III-1-14 참조).



### 3) 시간연장보육 관련 연수

#### 가) 연수 참여 및 주관기관

시간연장보육 관련 교사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43.3%로 절반이 채 못 된다. 기관유형별로 직장, 국공립, 법인단체 등 교사의 참여비율이 높은 편이다.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연수 주관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61.2%로 높고, 어린이집 연합회 31.5%, 한국보육진흥원 25.4% 순이다(표 Ⅲ-1-15 참조).

〈표 Ⅲ-1-15〉 시간연장반 관련 교사연수 참여 여부 및 연수 주관기관

단위: %(명)

구분	연수 참여 여부		연수 주관기관				계(수)
	‘참여 비율	(수)	한국보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어린이집 연합회	기타	
전체	43.3	(601)	25.4	61.2	31.5	13.8	100.0(260)
기관 유형							
국공립	54.0	(139)	44.0	62.7	18.7	8.0	100.0( 75)
사회복지법인	23.1	( 26)	-	100.0	16.7	-	100.0( 6)
법인단체 등	47.1	( 17)	25.0	62.5	37.5	12.5	100.0( 8)
민간개인	44.6	(184)	19.5	56.1	35.4	20.7	100.0( 82)
가정	36.4	(220)	15.0	61.3	43.8	11.3	100.0( 80)
직장	60.0	( 15)	33.3	66.7	-	33.3	100.0( 9)
지역규모							
대도시	48.4	(287)	29.5	62.6	26.6	14.4	100.0(139)
중소도시	34.5	(203)	25.7	60.0	32.9	11.4	100.0( 70)
읍면지역	45.9	(111)	13.7	58.8	43.1	15.7	100.0( 5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나) 미참여 이유

시간연장보육 관련 교사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교사교육 관련 정보 부족이 23.8%, 교사교육 부재 26.7%, 교육 일정이 근무시간과 중복되어서 26.1%로 높고, 나머지는 10% 이내이다

기관유형별로도 교사교육 부재가 다빈도이나, 사회복지법인은 교사교육 관련 정보 부족, 가정은 교육 일정이 근무시간과 중복되어서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은 교사교육 부재, 읍면지역은 교사교육 관련 정보 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요약하면 교사교육 홍보와 이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Ⅲ-1-16 참조).

〈표 III-1-16〉 시간연장반 관련 교사연수 미참여 이유

단위: %(명)

구분	시간연장보육관련교사교육관련정보 부족	시간연장보육관련교사교육부재	희망교육프로그램없음	교육일이근무시간과중복	교육강원감	교육신청기간놓쳐서	대체교사미원	교사연수비없음	기관서락하지않음	기타	근업으로교육회없음	계(수)
전체	23.8	26.7	5.3	26.1	2.3	3.8	5.3	0.6	0.9	2.1	3.2	100.0(341)
기관 유형												
국공립	18.8	34.4	4.7	26.6	9.4	1.6	-	-	-	4.7	-	100.0( 64)
사회복지법인	35.0	10.0	20.0	25.0	-	10.0	-	-	-	-	-	100.0( 20)
법인단체 등	33.3	44.4	-	-	11.1	-	-	-	11.1	-	-	100.0( 9)
민간개인	23.5	27.5	5.9	31.4	1.0	1.0	3.9	-	1.0	2.0	2.9	100.0(102)
가정	23.6	24.3	3.6	25.0	-	5.0	10.0	1.4	0.7	1.4	5.0	100.0(140)
직장	33.3	16.7	-	-	-	33.3	-	-	-	-	16.7	100.0( 6)
지역규모												
대도시	19.6	28.4	6.1	28.4	3.4	2.0	7.4	-	-	2.7	2.0	100.0(148)
중소도시	27.1	28.6	4.5	24.1	1.5	4.5	4.5	1.5	1.5	0.8	1.5	100.0(133)
읍면지역	26.7	18.3	5.0	25.0	1.7	6.7	1.7	-	1.7	3.3	10.0	100.0( 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4) 시간연장보육 근로조건 및 처우

가) 근무형태

<표 III-1-17>은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근무형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III-1-17〉 시간연장보육 근무형태

단위: 명(개소)

구분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	주간보육교사 초과근무자	단시간보육교사 (수)	구분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	주간보육교사 초과근무자	단시간보육교사 (수)
전체	1.0	0.4	1.1	0.1 (621)					
기관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	1.1	0.2	1.3	0.1 (138)	대도시	1.1	0.4	1.1	0.1 (282)
사회복지법인	1.1	0.4	1.1	0.2 ( 30)	중소도시	1.0	0.4	1.0	0.1 (221)
법인단체 등	1.3	1.1	2.0	0.1 ( 16)	읍면지역	0.9	0.7	1.3	0.1 (118)
민간개인	1.2	0.5	1.2	0.1 (184)					
가정	0.8	0.5	1.0	0.1 (241)					
직장	1.5	0.1	1.0	- ( 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는 평균 1.0명,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는 평균 0.4명이다.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 중 주간 보육교사 초과 근무자가 1.1명, 단시간 보육교사가 0.1명으로 소수이다. 각 유형별 교사 수는 기관유형 및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주간 보육교사가 연장근무로 시간연장보육을 담당하는 경우, 주간 보육교사 중 1명이 전담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76.7%로 다수이고 주간 보육교사가 순환 근무하는 경우는 23.3%이었다. 기관유형별로 민간개인과 가정,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주간 보육교사 중 1명이 전담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전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III-1-18 참조).

〈표 III-1-18〉 주간 보육교사 연장 근무형태

단위: %(개소)

구분	주간 보육교사 중 전담 근무	주간 보육교사 순환근무	계(수)	구분	주간 보육교사 중 전담 근무	주간 보육교사 순환근무	계(수)
전체	76.7	23.3	100.0(202)	지역규모			
기관 유형				대도시	71.4	28.6	100.0( 77)
국공립	31.6	68.4	100.0( 19)	중소도시	82.2	17.8	100.0( 73)
사회복지법인	62.5	37.5	100.0( 8)	읍면지역	76.9	23.1	100.0( 52)
법인단체 등	37.5	62.5	100.0( 8)	X <sup>2</sup> (df)	2.4(2)		
민간개인	73.8	26.2	100.0( 61)				
가정	91.4	8.6	100.0(105)				
직장	-	100.0	100.0( 1)				
X <sup>2</sup> (df)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나) 근무시간 및 근무일 수

(1) 근무수당 지원 연장반 교사

(가) 연장 근무일수

<표 III-1-19>는 시간연장근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월평균 연장근무 일수를 조사한 것이다. 월평균 연장근무 일수는 평균 12.7일로, 구간별로는 15~21일 이하가 37.4%, 4~5일 20.6% 순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장이 평균 20.0일로 많은 편이고,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은 월평균 10일 정도로 직장 어린이집의 절반 정도이다.

〈표 III-1-19〉 월평균 연장근무 일수

단위: %(명), 시간

구분	3일 이하	4~5일	6~7일	8~14일	15~21일	22일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4.0	20.6	6.5	8.4	37.4	13.1	100.0(107)	12.7
기관 유형								
국공립	25.0	8.3	-	25.0	25.0	16.7	100.0( 12)	11.8
사회복지법인	-	100.0	-	-	-	-	100.0( 2)	5.0
법인단체 등	25.0	50.0	-	-	25.0	-	100.0( 4)	6.0
민간개인	21.2	21.2	3.0	6.1	42.4	6.1	100.0( 33)	12.2
가정	7.3	18.2	10.9	7.3	38.2	18.2	100.0( 55)	13.7
직장	-	-	-	-	100.0	-	100.0( 1)	20.0
X <sup>2</sup> (df)/F				-				1.3
지역규모								
대도시	22.5	12.5	7.5	12.5	30.0	15.0	100.0( 40)	11.7
중소도시	10.8	24.3	-	5.4	48.6	10.8	100.0( 37)	13.6
읍면지역	6.7	26.7	13.3	6.7	33.3	13.3	100.0( 30)	12.7
X <sup>2</sup> (df)/F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나) 연장 근무시간

평일 1일 연장근무 시간은 평균 2.7시간이다. 시간대별로 2시간 31.8%, 3시간 29.9%로 많고, 국공립, 민간개인, 가정, 직장 어린이집은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표 III-1-20 참조).

〈표 III-1-20〉 평일 1일 평균 연장근무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0.6	31.8	29.9	17.8	100.0(107)	2.7
기관 유형						
국공립	16.7	50.0	8.3	25.0	100.0( 12)	2.7
사회복지법인	-	50.0	50.0	-	100.0( 2)	2.5
법인단체 등	75.0	25.0	-	-	100.0( 4)	1.3
민간개인	18.2	33.3	30.3	18.2	100.0( 33)	2.7
가정	20.0	27.3	36.4	16.4	100.0( 55)	2.7
직장	-	-	-	100.0	100.0( 1)	6.0
X <sup>2</sup> (df)/F				-		1.7
지역규모						
대도시	22.5	30.0	37.5	10.0	100.0( 40)	2.5
중소도시	16.2	43.2	21.6	18.9	100.0( 37)	2.7
읍면지역	23.3	20.0	30.0	26.7	100.0( 30)	2.9
X <sup>2</sup> (df)/F				-		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나)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

(가) 출근 시각

시간연장반 교사의 평일 출근시각은 15:30~16:00이 25.0%로 가장 많고 15:00~15:30 19.4%, 16:00 이후 18.9% 순이다. 전체 응답자 중 90% 가까이가 오후 14시 이후에 출근하였다. 시간연장보육이 보통 오후 22시에 종료하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오후 14시에 주로 출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시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도 2.8%로 소수 있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국공립과 직장은 오후 12시에서 14시 사이에 출근하는 비율이 다빈도이고, 민간개인, 가정, 법인단체 등은 절반 이상이 오후 15시 이후에 출근하여 출근시각이 늦은 편이다(표 III-1-21 참조).

〈표 III-1-21〉 평일 출근 시각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8:00 이전	-	-	-	1.3	1.2	-	0.8	0.6	1.2	1.1
8:00~10:00	2.4	12.5	-	2.6	1.2	7.1	2.0	2.4	4.9	1.1
10:00~12:00	1.6	-	7.7	-	-	-	0.4	1.2	-	0.6
12:00~14:00	47.2	20.8	15.4	10.6	6.1	64.3	25.1	17.5	13.6	8.3
14:00~14:30	26.8	20.8	15.4	16.6	9.7	14.3	21.1	12.7	13.6	10.6
14:30~15:00	6.3	8.3	-	7.9	15.8	-	9.3	9.0	12.3	15.0
15:00~15:30	11.8	16.7	15.4	23.2	20.0	7.1	14.6	24.1	17.3	19.4
15:30~16:00	0.8	8.3	15.4	15.9	26.7	7.1	13.4	15.7	18.5	25.0
16:00 이후	3.1	12.5	30.8	21.9	19.4	-	13.4	16.9	18.5	1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27)	(24)	(13)	(151)	(165)	(14)	(247)	(166)	(81)	(49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나) 퇴근시각

한편, 시간연장반 교사의 평일 퇴근 시각은 21:30~22:00이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22:00~22:30이 25.5%, 그 외 시간대는 10% 미만으로 전체의 80% 이상이 21:30~22:30에 퇴근한다. 모든 어린이집 유형에서 21:30~22:00이 다빈도이고, 법인단체등은 23:00~24:00 퇴근 비율이 15.4%로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개인과 가정은 24:00 이후에 퇴근하는 비율도 1% 미만대로 있다(표 III-1-22 참조).

〈표 III-1-22〉 평일 퇴근 시각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개인	가정	직장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전체
20:00 이전	2.4	-	-	2.6	3.0	-	2.4	3.0	1.2	2.4
20:00~21:00	1.6	-	-	1.3	1.2	7.1	1.6	1.8	-	1.4
21:00~21:30	1.6	4.2	-	5.3	3.6	-	2.8	3.0	6.2	3.4
21:30~22:00	65.4	58.3	46.2	49.7	60.0	42.9	56.7	56.6	60.5	57.3
22:00~22:30	25.2	25.0	30.8	29.1	21.2	35.7	26.7	27.1	18.5	25.5
22:30~23:00	3.1	12.5	7.7	8.6	7.9	14.3	6.9	6.0	11.1	7.3
23:00~24:00	0.8	-	15.4	2.6	2.4	-	2.4	1.8	2.5	2.2
24:00 이후	-	-	-	0.7	0.6	-	0.4	0.6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27)	(24)	(13)	(151)	(165)	(14)	(247)	(166)	(81)	(49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다) 토요일 근무

시간연장반 교사가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22.1% 정도이었다.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근무 비율이 53.8%로 높은 편이고, 민간개인이 29.1%로 그 다음이다. 반면에 직장은 7.1%로 낮았다(표 III-1-23 참조).

〈표 III-1-23〉 토요일 근무 여부

단위: %(명)

구분	'근무' 비율	(수)	구분	'근무' 비율	(수)
전체	22.1	(494)	지역규모		
기관 유형			대도시	17.4	(247)
국공립	17.3	(127)	중소도시	26.5	(166)
사회복지법인	16.7	(24)	읍면지역	27.2	(81)
법인단체 등	53.8	(13)			
민간개인	29.1	(151)			
가정	18.8	(165)			
직장	7.1	(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라) 담당 업무

시간연장반 교사가 출근 이후 주로 담당하는 업무를 1, 2순위로 조사하였다. 1순위로 시간연장반 활동 준비가 3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종일반 보조 업무 30.6%이다. 2순위는 시간연장반 활동 준비 25.1%, 저녁 급간식 준비 21.7% 순이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시간연장반 활동 준비 58.9%, 종일반 보조 업무

50.4%로 높은 편이고, 저녁 급간식 준비 34.0%, 하원 지도 및 차량지도, 행정업무처리, 청소 등 잡무가 10% 대이다.

〈표 III-1-24〉 시간연장반 교사의 출근 이후 주요 업무: 1+2순위

단위: %(명)

구분	시간연장반 활동 준비	종일반 보조업무	행정업무처리	하원 지도 및 하원 차량지도	저녁 급간식 준비	청소 설거지 등 잡무	특별활동 수업	부속시설 운영 관리	기타	계(수)
1순위	33.8	30.6	9.5	7.7	12.3	5.1	0.6	0.4	-	100.0(494)
2순위	25.1	19.8	8.3	11.3	21.7	10.9	1.0	0.8	1.0	100.0(494)
1+2순위	58.9	50.4	17.8	19.0	34.0	16.0	0.6	1.2	1.0	(49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시간연장반 교사의 출근 이후 주요 업무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대체로 시간연장반 활동 준비와 종일반 보조업무가 다빈도를 보이나, 국공립은 행정업무처리가 24.4%, 법인단체등은 하원지도 및 하원차량지도가 23.1%, 민간개인과 가정은 저녁급간식 준비가 각각 17.2%, 16.4%로 높았다

〈표 III-1-25〉 제 특성별 시간연장반 교사의 출근 이후 주요 업무: 1순위

단위: %(명)

구분	시간연장반 활동 준비	종일반 보조업무	행정업무처리	하원 지도 및 하원 차량지도	저녁 급간식 준비	청소 설거지 등 잡무	특별활동 수업	부속시설 운영 관리	계(수)
전체	33.8	30.6	9.5	7.7	12.3	5.1	0.6	0.4	100.0(494)
기관 유형									
국공립	27.6	29.9	24.4	7.9	3.9	5.5	0.8	-	100.0(127)
사회복지법인	37.5	29.2	12.5	8.3	4.2	8.3	-	-	100.0( 24)
법인단체 등	30.8	23.1	15.4	23.1	7.7	-	-	-	100.0( 13)
민간개인	37.1	25.2	5.3	9.3	17.2	4.6	-	1.3	100.0(151)
가정	37.0	35.2	1.2	4.2	16.4	5.5	0.6	-	100.0(165)
직장	14.3	50.0	7.1	14.3	7.1	-	7.1	-	100.0( 14)
지역규모									
대도시	32.8	30.4	11.7	6.1	13.0	4.9	0.4	0.8	100.0(247)
중소도시	33.7	32.5	7.2	10.8	11.4	4.2	-	-	100.0(166)
읍면지역	37.0	27.2	7.4	6.2	12.3	7.4	2.5	-	100.0( 8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마) 지원 인력

(1) 추가 인력

시간연장보육 운영을 위해 보육교사 이외에 추가 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16.7%로 소수이었다. 채용한 경우 보조교사와 취사부, 보조인력이 각각 5~6%대로 소수이었다. 주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취사부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Ⅲ-1-26 참조)

〈표 Ⅲ-1-26〉 시간연장반 운영 위한 추가인력 채용

단위: %(명)

구분	보조교사	취사부	보조인력	없음	(수)	구분	보조교사	취사부	보조인력	없음	(수)
전체	6.6	6.6	5.0	83.3	(621)	지역규모					
기관 유형						대도시	7.4	6.0	3.2	84.0	(282)
국공립	6.5	3.6	6.5	84.8	(138)	중소도시	7.2	7.7	7.2	81.0	(221)
사회복지법인	10.0	-	3.3	86.7	(30)	읍면지역	3.4	5.9	5.1	85.6	(118)
법인단체 등	6.3	-	-	93.8	(16)						
민간개인	3.8	7.6	4.3	84.2	(184)						
가정	8.3	8.7	5.4	80.5	(241)						
직장	8.3	8.3	-	83.3	(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2) 대체교사

시간연장반 교사 부재 시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경우는 23.9% 정도이도 51.0%가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표 Ⅲ-1-27 참조).

〈표 Ⅲ-1-27〉 대체교사 지원 여부 및 미지원 시 담당자

단위: %(명)

구분	대체교사 지원 여부				미지원 시 담당자					
	지원	미지원	비해당	계(수)	중일반교사	보조교사	원장	다른시간연장반교사	기타	계(수)
전체	23.9	51.0	25.1	100.0(494)	39.7	1.6	54.0	3.2	1.6	100.0(252)
기관 유형										
국공립	25.2	47.2	27.6	100.0(127)	83.3	1.7	5.0	5.0	5.0	100.0(60)
사회복지법인	20.8	62.5	16.7	100.0(24)	53.3	-	33.3	6.7	6.7	100.0(15)
법인단체 등	23.1	53.8	23.1	100.0(13)	71.4	14.3	14.3	-	-	100.0(7)
민간개인	25.8	50.3	23.8	100.0(151)	36.8	2.6	59.2	1.3	-	100.0(76)
가정	21.2	54.5	24.2	100.0(165)	5.6	-	91.1	3.3	-	100.0(90)
직장	28.6	28.6	42.9	100.0(14)	100.0	-	-	-	-	100.0(4)



(표 Ⅲ-1-27 계속)

구분	대체교사 지원 여부				미지원 시 담당자					
	지원	미지원	비해당	계(수)	종일 반 교사	보조 교사	원장	다른 시간연 장반 교사	기타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23.9	50.2	25.9	100.0(247)	40.3	2.4	50.8	4.0	2.4	100.0(124)
중소도시	21.1	53.6	25.3	100.0(166)	43.8	1.1	52.8	1.1	1.1	100.0( 89)
읍면지역	29.6	48.1	22.2	100.0( 81)	28.2	-	66.7	5.1	-	100.0( 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어린이집 유형별로 모든 유형에서 20%대의 지원 비율을 보이고, 직장이 28.6%로 가장 높다(표 Ⅲ-1-27 참조).

대체교사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54%는 원장이 주로 시간연장반을 담당하고 39.7%는 종일반 교사가 담당한다. 가정과 민간개인은 원장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국공립과 법인단체등은 종일반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바) 수당

(1) 시간연장 근무수당

근무수당 지원 연장반 교사가 초과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을 조사하였다. 52.3%가 시간 계산 없이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받고, 16.8%는 상한선 없이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받으며, 8.4%는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받되 상한선을 두고 있었다. 초과 근무수당이 없는 경우도 21.5%로 다수이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국공립과 법인단체등은 상한선 초과 없이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받는 비율이 50.0%로 높은 편이고, 민간개인 가정 직장에서 초과 근무수당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일수록 초과시간 계산없이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도시는 상한선 없이 초과근무시간만큼 지급받거나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받되, 상한선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표 Ⅲ-1-28 참조).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의 근무수당은 월평균 28만 8천원이다. 금액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만원 이상이 57.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10~15만원은 19.0%으로 그 다음이다. 어린이집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회복지법인은 평균 40만원인 반면, 국공립은 16만 1천원, 법인단체등은 20만원으로 낮은 편이다. 지역별로는 27~30만원 선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표 Ⅲ-1-29 참조).

〈표 III-1-28〉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형태

단위: %(명)

구분	상한선 없이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 상한선 둡	시간 계산없이 일정 금액 일괄 지급	기타	초과 근무수당 없음	계(수)
전체	16.8	8.4	52.3	0.9	21.5	100.0(107)
기관 유형						
국공립	50.0	8.3	41.7	-	-	100.0( 12)
사회복지법인	-	50.0	50.0	-	-	100.0( 2)
법인단체 등	50.0	25.0	25.0	-	-	100.0( 4)
민간개인	12.1	12.1	60.6	-	15.2	100.0( 33)
가정	10.9	3.6	52.7	1.8	30.9	100.0( 55)
직장	-	-	-	-	100.0	100.0( 1)
지역규모						
대도시	22.5	12.5	42.5	-	22.5	100.0( 40)
중소도시	8.1	8.1	62.2	2.7	18.9	100.0( 37)
읍면지역	20.0	3.3	53.3	-	23.3	100.0( 3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표 III-1-29〉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월평균 금액

단위: %(명), 만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 원 미만	10~15 만원 미만	15~20 만원 미만	20~30 만원 미만	30~40 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4	6.0	19.0	1.2	10.7	3.6	57.1	100.0(84)	28.8
기관 유형									
국공립	8.3	16.7	41.7	-	16.7	-	16.7	100.0(12)	16.1
사회복지법인	-	-	-	-	-	-	100.0	100.0( 2)	40.0
법인단체 등	-	-	50.0	-	25.0	-	25.0	100.0( 4)	20.0
민간개인	-	7.1	14.3	-	17.9	3.6	57.1	100.0(28)	29.5
가정	2.6	2.6	13.2	2.6	2.6	5.3	71.1	100.0(38)	32.7
직장	-	-	-	-	-	-	-	-	-
$X^2(df)/F$				-					4.6**
지역규모									
대도시	3.2	6.5	22.6	3.2	12.9	-	51.6	100.0(31)	27.0
중소도시	-	6.7	20.0	-	3.3	6.7	63.3	100.0(30)	30.5
읍면지역	4.3	4.3	13.0	-	17.4	4.3	56.5	100.0(23)	29.1
$X^2(df)/F$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p < .01$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교사 중 17.3% 정도만 만족하고, 80% 이상이 불만족한다고 답하였다. 만족 정도를 4점 척도로 환산하면 1.8점으로 중

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가정과 민간개인어린이집 교사 각각 1.6점, 2.0점으로 만족도가 낮았다(표 Ⅲ-1-30 참조).

〈표 Ⅲ-1-30〉 시간외 근무수당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수)	4점 평균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수)	4점 평균
전체	39.1	43.5	13.0	4.3	100.0(23)	1.8	지역규모						
기관유형							대도시	44.4	44.4	11.1	-	100.0(9)	1.7
민간개인	20.0	60.0	20.0	-	100.0(5)	2.0	중소도시	14.3	57.1	14.3	14.3	100.0(7)	2.3
가정	47.1	41.2	11.8	-	100.0(17)	1.6	읍면지역	57.1	28.6	14.3	-	100.0(7)	1.6
직장	-	-	-	100.0	100.0(1)	4.0	$X^2(df)/F$						1.6
$X^2(df)/F$						5.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p < .05$

(2) 처우개선비

시간연장반 교사 중 94.1%가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았다. 기관유형이나 지역규모별로 큰 차이 없이 92~95%가 지원받고 있었다(표 Ⅲ-1-31 참조).

〈표 Ⅲ-1-31〉 처우개선비 지원 여부 및 금액

단위: %(명), 만원

구분	지원여부		처우개선비 금액							계(수)	평균
	지원 비율	(수)	10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20~25 미만	25~30 미만	30~40 미만	40 이상		
전체	94.1	(492)	11.0	21.6	26.3	11.9	8.0	10.6	10.6	100.0(463)	21.2
기관 유형											
국공립	96.1	(127)	8.2	45.1	31.1	3.3	2.5	8.2	1.6	100.0(122)	16.7
사회복지법인	95.8	(24)	30.4	17.4	21.7	8.7	4.3	8.7	8.7	100.0(23)	16.5
법인단체 등	92.3	(13)	25.0	8.3	50.0	-	-	8.3	8.3	100.0(12)	17.0
민간개인	92.0	(150)	10.9	13.8	17.4	15.9	13.8	15.2	13.0	100.0(138)	24.0
가정	94.5	(164)	9.0	12.3	25.8	17.4	9.0	9.7	16.8	100.0(155)	23.8
직장	92.9	(14)	15.4	15.4	69.2	-	-	-	-	100.0(13)	14.7
$X^2(df)/F$											8.0***
지역규모											
대도시	94.3	(246)	9.5	30.6	29.3	8.6	10.8	6.0	5.2	100.0(232)	19.1
중소도시	94.5	(165)	11.5	12.8	23.7	15.4	7.1	17.9	11.5	100.0(156)	22.1
읍면지역	92.6	(81)	14.7	12.0	22.7	14.7	1.3	9.3	25.3	100.0(75)	25.7
$X^2(df)/F$											8.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p < .001$

처우개선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은 평균 21만 2천원이다. 이를 구간별로 보면, 15~20만원 미만은 26.3%, 10~15만원 미만 21.6% 순이다. 10만원 미만과 40만원 이상도 각각 11.0%, 10.6% 분포하여 교사 간에 지급받는 처우개선비 차이가 크을 알 수 있다.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민간개인어린이집 교사가 24만원, 가정이 23만 8천원으로 많은 반면에 직장은 14만 7천원으로 가장 낮고,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도 각각 16만원 정도로 낮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25만 7천원, 대도시 19만 1천원으로 유의하게 낮았다(표 Ⅲ-1-31 참조).

## 바. 재정 운영

### 1) 운영 지침

#### 가) 보육료

시간연장 보육료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기준 시간은 평일 오후 19시 30분에서 오후 24시, 토요일 오후 15시 30분에서 오후 24시까지이며, 월 60시간까지이다.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단가는 일반아동 시간당 2,800원 월 168,000원, 장애아동 3,800원 월 228,000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5).

〈표 Ⅲ-1-32〉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원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2,800	168,000	기준액×100%
장애아동	3,800	228,000	기준액×100%

자료: 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p.281.

#### 나) 아침저녁급식비 수납한도액

기준보육시간 이외에 급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아침저녁급식비 수납한도액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아침·저녁 급식비는 1식 단위로 수납하고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월 단위 일정액을 수납한도액으로 정하고 있다 1식 기준 1,000~1,745원 사이에 분포한다(표 Ⅲ-1-33 참조). 시군구에 수납한도액 결정을 위임하는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시군구에 따라 1,000~2,000원 사이에 분포한다.

〈표 III-1-33〉 아침저녁 급식비 수납한도액: 2015년 기준

		단위: %(명), 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구분	자치구별	1,745	14,00	1,000	1,000	1,200	1,745	34,900(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군구별	1,000	1,000	1,000	30,000(시) 20,000(군) (월)	100,00 (월)	100,00 (월)	200,00 (월)	1,000

주: 급식비 수납한도액은 1식 기준이며, 월기준액은 별도 표기함.  
 자료: 전국 시도청(2015).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시자료.

다) 지원 예산

(1) 중앙 정부

시간연장형보육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은 2014년 총 50,765백만원이다. 2005년 12,290백만원에서 시간연장형 보육 시범사업이 시행된 2010년 40,764백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후 500~600백억 선을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각 년도).

한편, 2012년부터 예산이 배정된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33,900백만원에서 2014년 41,500백만원으로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각 년도).

〈표 III-1-34〉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예산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건비											
사업량	1,000	1,000	1,000	1,000	5,000	6,000	10,000	13,000	10,000	10,000	
예산	12,290	18,988	26,076	33,574	36,105	40,764	53,654	64,385	49,287	50,765	
보육료											
사업량	-	-	-	-	-	-	-	53,000	53,000	53,000	
예산	-	-	-	-	-	-	-	33,900	33,900	41,500	

주: 시간연장형보육에는 시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 지방정부

일부 지방정부는 시도특수보육시책 사업으로 시간연장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I-1-3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 은평과 강남, 대전, 경기 부천, 충남 보령, 경남 합천 등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수당이나 인건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준보육시간 외에 추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I-1-35〉 시간연장보육 관련 시도특수보육시책 예산

단위: 천원

지역구분	지원내용	지원액	예산구분
서울	은평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시간연장수당, 비담임)	967,590	시구비
	금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4,000	구비
	서초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96,000	구비
	강남 구립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1,000 166,800	구비 구비
대전	대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난방비	99,900	시구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조교사 수당	255,000	시구비
울산	동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7,000	구비
경기	경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4,872,426	시구비
	부천 시간연장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336,000	구비
충북	청주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93,000	구비
	충주 시간연장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120,000	구비
	제천 시간연장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사업	81,000	구비
	증평 시간연장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6,800	구비
충남	천안 시간연장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56,000	구비
	보령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5,400	구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지원	66,000	구비
전북	익산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53,000	구비
	정읍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6,000	구비
경북	영주 시간연장보육 계경비보조	38,520	구비
경남	남해 시간연장보육시설 지원	5,400	구비
	합천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12,000	구비

자료: 보건복지부(2015). 시도특수보육시책 내부자료.

## 2) 시간연장보육 수입 및 지출 규모

시간연장보육 운영에 따른 월 수입을 조사하였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인건비가 월평균 147.1만원이고, 보육료 수입은 36.7만원, 저녁급식비 5.2만원, 기타가 5만원 정도이다. 기관유형별로는 직장과 법인단체 등이 200만원이 넘고, 가정이 113.6만원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저녁급식비도 직장이 9.8만원으로 높은 반면에 가정이 3.4만원으로 적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기타 수입이 많았다(표 III-1-36 참조).

시간연장보육에 따른 항목별 지출비중을 산출하였다. 인건비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6%로 높고, 저녁급식비가 12.6%, 관리운영비 8.6%, 교재교구비 4.1%이다. 항목별 지출 비중은 기관 유형 및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없었다.

〈표 III-1-36〉 시간연장보육 월수입 및 항목별 지출 비중

단위: 만원, %(개소)

구분	월수입				항목별 지출 비중					(수)
	인건비	보육료	저녁 급식비	기타	인건비	저녁 급식비	교재 교구비	관리 운영비	기타	
전체	147.1	36.7	5.2	5.0	74.6	12.6	4.1	8.6	0.1	(621)
기관 유형										
국공립	182.0	33.9	4.7	8.1	74.6	12.2	5.0	8.2	-	(138)
사회복지법인	170.0	30.8	4.7	3.9	79.1	10.3	3.9	6.7	-	( 30)
법인단체 등	215.8	52.7	6.3	2.4	81.0	10.7	3.5	4.8	-	( 16)
민간개인	150.5	47.8	7.5	4.3	73.4	13.3	3.8	9.1	0.3	(184)
가정	113.6	30.1	3.4	4.2	74.5	12.7	3.9	8.9	-	(241)
직장	219.5	22.5	9.8	4.4	77.7	10.2	5.2	7.0	-	( 12)
F	9.8***	0.9	3.2**	1.1	0.9	0.7	1.3	1.0	0.6	
지역규모										
대도시	157.2	42.0	4.6	2.7	75.4	12.3	4.3	8.0	-	(282)
중소도시	142.9	32.7	6.3	7.6	73.7	13.2	4.0	9.1	-	(221)
읍면지역	130.8	31.2	4.4	5.7	74.5	12.1	4.0	8.9	0.5	(118)
F	2.5	0.8	1.7	5.0**	0.5	0.5	0.3	1.0	2.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표 III-1-37〉 시간연장보육 운영비 추가 부담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추가 부담	추가 부담 시 비중								계(수)	평균
	(수)	1~5% 미만	5~10%	10~15%	15~20%	20~30%	30~40%	40% 이상			
전체	62.0 (621)	8.1	12.2	30.1	6.8	23.6	10.6	8.6	100.0(385)	18.2	
기관 유형											
국공립	73.2 (138)	9.9	5.0	15.8	5.0	37.6	15.8	10.9	100.0(101)	22.5	
사회복지법인	70.0 ( 30)	9.5	4.8	23.8	4.8	23.8	23.8	9.5	100.0( 21)	22.6	
법인단체 등	68.8 ( 16)	-	-	54.5	-	-	27.3	18.2	100.0( 11)	25.5	
민간개인	64.1 (184)	5.1	15.3	38.1	5.1	18.6	7.6	10.2	100.0(118)	17.3	
가정	52.7 (241)	9.4	17.3	33.9	11.0	18.9	4.7	4.7	100.0(127)	14.4	
직장	58.3 ( 12)	14.3	14.3	14.3	-	28.6	28.6	-	100.0( 7)	17.4	
$\chi^2(df)/F$	17.7(5)**									3.5**	
지역규모											
대도시	65.6 (282)	8.1	11.9	26.5	6.5	24.9	14.1	8.1	100.0(185)	18.4	
중소도시	59.7 (221)	7.6	13.6	35.6	6.8	19.7	7.6	9.1	100.0(132)	17.6	
읍면지역	57.6 (118)	8.8	10.3	29.4	7.4	27.9	7.4	8.8	100.0( 68)	19.1	
$\chi^2(df)/F$	3.0(2)									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1$

시간연장보육 수입 부족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비를 추가 부담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중 62%가 추가 부담하였고,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이 각각 70% 대로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높았다.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클수록 운영비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Ⅲ-1-37 참조).

어린이집에서 추가 부담하는 경우, 전체 지출액 중 18.2%를 부담하였다. 구간별로는 10~15%가 30.1%로 다빈도이고, 다음으로 20~30%가 23.6%, 5~10%와 30~40%가 각각 10% 정도이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이 22~25%로 많고, 가정어린이집이 14.4%로 가장 적었다. 읍면지역 어린이집이 도시지역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중이 크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표 Ⅲ-1-37 참조).

### 3)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기준 관련 의견

시간연장보육 지정시설인 경우 국공립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의 80%, 민간어린이집은 월 120만원을 지원하고, 시간연장근무수당 교사에게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5).

시간연장보육 인건비 지원수준이 적절한지 원장들의 의견을 물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80% 지원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52.7%로 가장 높고, 시간연장근무수당 월 40만원 지원이 30.9%로 낮았다. 적절성 정도도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4점 평균 2.5점으로 가장 높았다(표 Ⅲ-1-38 참조).

〈표 Ⅲ-1-38〉 시간연장보육 인건비 지원수준의 적절성 개요

구분	단위: %(개소), 점				계(수)	4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80% 지원	14.2	33.2	45.9	6.8	100.0(621)	2.5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월 120만원 지원	19.2	44.8	33.7	2.4	100.0(621)	2.2
시간연장근무수당 월 40만원 지원	24.3	44.8	29.1	1.8	100.0(621)	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이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80% 지원에 대해 직장이 적절성 정도가 평균 3.0점으로 가장 높고,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이 평균 2.0점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이 적절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정원에 따라서는 정원이 적은 어린이집이 적절성 점수



가 높았다.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월 120만원 지원에 대해 직장과 법인 단체 등어린이집이 평균 2.5~2.6점으로 높고, 국공립과 민간개인어린이집이 평균 2.1점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시간연장근무수당 월 40 만원은 기관유형별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표 Ⅲ-1-39 참조).

〈표 Ⅲ-1-39〉 제 특성별 시간연장보육 인건비 지원수준의 적절성

단위: %(개소), 점

구분	국공립 인건비 80%			민간 월 120만원			근무수당 월 40만원			(수)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45.9	6.8	2.5	33.7	2.4	2.2	29.1	1.8	2.1	(621)
기관 유형										
국공립	22.5	3.6	2.0	26.8	3.6	2.1	26.8	3.6	2.1	(138)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26.7	3.3	2.0	43.3	6.7	2.3	43.3	3.3	2.3	( 30)
민간개인	50.0	6.3	2.4	43.8	12.5	2.5	43.8	6.3	2.3	( 16)
가정	53.3	8.2	2.6	28.3	2.7	2.1	31.0	1.6	2.1	(184)
직장	53.9	7.9	2.6	38.6	0.4	2.2	26.6	0.4	2.0	(241)
직장	83.3	8.3	3.0	58.3	-	2.6	25.0	-	2.0	( 12)
X <sup>2</sup> (df)/F			17.4 ***			2.0			1.0	
지역규모										
대도시	41.1	5.0	2.3	27.7	3.5	2.2	22.7	1.4	2.0	(282)
중소도시	47.5	8.1	2.5	35.3	2.3	2.2	31.7	2.3	2.1	(221)
읍면지역	54.2	8.5	2.6	44.9	-	2.3	39.8	1.7	2.2	(118)
X <sup>2</sup> (df)/F			6.4 **			2.3			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시간연장반 근무수당은 보육아동 이용시간이 월 2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5). 이러한 기준에 대해 41.9%만 적절하다고 보았고 50.1%는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공립과 법인단체 등 가정 어린이집과 도시지역일수록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간연장반 근무수당 지원 시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시간은 월 평균 16.9시간이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14.4시간 대도시가 16.5시간으로 가장 짧았다(표 Ⅲ-1-40 참조).

한편, 시간연장보육 보육료 시간당 2,800원에 대해서는 5.3%정도만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94.4%인 다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금액은 시간당 4,584원으로, 기관 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법

인단체등, 직장 어린이집이 시간당 평균 4,700~4,800 원으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법인인 평균 4,271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는 4,462원 정도인 반면,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4,600~4,700원으로 높았다. 정원규모별로는 50명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이 4,500~4,600원으로 높고, 규모가 클수록 시간당 적정 금액이 낮았다(표 III-1-40 참조).

〈표 III-1-40〉 시간연장반 근무수당 지원 기준 및 시간당 보육료의 적절성  
단위: %(명), 시간, 원

구분	근무수당 지원기준(월 20시간)				시간당 보육료(2,800원)				계(수)
	하향 조정	적절	상향 조정	적정 시간	인하 필요	적절	인상 필요	적정 금액	
전체	50.1	41.9	8.1	16.9	0.3	5.3	94.4	4,584	100.0(621)
기관 유형									
국공립	52.9	39.9	7.2	14.4	-	7.2	92.8	4,738	100.0(138)
사회복지법인	43.3	43.3	13.3	16.6	-	6.7	93.3	4,271	100.0( 30)
법인단체 등	50.0	37.5	12.5	16.8	-	25.0	75.0	4,708	100.0( 16)
민간개인	47.3	44.0	8.7	18.6	-	2.7	97.3	4,536	100.0(184)
가정	52.3	41.1	6.6	16.9	0.8	4.1	95.0	4,557	100.0(241)
직장	33.3	50.0	16.7	21.5	-	16.7	83.3	4,800	100.0( 12)
X <sup>2</sup> (df)/F		-		1.0		-		3.0*	
지역규모									
대도시	52.1	39.4	8.5	16.5	0.7	4.3	95.0	4,621	100.0(282)
중소도시	48.9	43.4	7.7	17.1	-	5.9	94.1	4,462	100.0(221)
읍면지역	47.5	44.9	7.6	17.2	-	6.8	93.2	4,721	100.0(118)
X <sup>2</sup> (df)/F		-		0.2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5

## 사. 운영 애로 및 요구

### 1) 시간연장보육 운영 동기

원장 대상으로 시간연장보육 운영 동기를 조사한 결과, 재원아 부모 요구가 43.2%로 많고, 다음으로 지역특성이 32.2%, 원아 확보 8.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조건 7.2%, 정부 참여 권장 6.8%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은 정부 참여 권장과 재원아 부모 요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조건이 각각 20% 대로 운영 동기가 다양하였다. 민간개인 어린이집은 재원아 부모 요구와 지역특성이 각각 40%대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도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Ⅲ-1-41〉 시간연장보육 운영 동기

단위: %(개소)

구분	정부 참여 권장	원아 확보	재원아동 부모 요구	지역 특성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조건	공공형, 서울형 선정조건	기타	계(수)
전체	6.8	8.4	43.2	32.2	7.2	1.9	0.3	100.0(621)
기관 유형								
국공립	25.4	-	28.3	18.1	28.3	-	-	100.0(138)
사회복지법인	10.0	3.3	16.7	70.0	-	-	-	100.0( 30)
법인단체 등	-	18.8	25.0	50.0	6.3	-	-	100.0( 16)
민간개인	1.1	8.2	45.1	41.3	-	3.3	1.1	100.0(184)
가정	0.8	13.7	53.9	29.0	-	2.5	-	100.0(241)
직장	-	-	58.3	-	41.7	-	-	100.0( 12)
지역규모								
대도시	7.8	5.3	42.2	33.3	7.8	3.5	-	100.0(282)
중소도시	8.1	11.8	44.3	27.1	7.7	-	0.9	100.0(221)
읍면지역	1.7	9.3	43.2	39.0	5.1	1.7	-	100.0(1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2) 효과성

### 가) 어린이집 운영에의 도움

<표 Ⅲ-1-42> 는 시간연장보육이 어린이집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다소 도움이 27.4%, 매우 도움 9.8% 로 37.2% 만 도움된다고 답하였고, 도움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39.6%로 의견이 비등하였다. 도움정도는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2.9점으로 중간 수준에 다소 못 미쳤다. 기관유형별로는 가정이 도움된다는 비율이 49.4%로 높고, 다음으로 법인단체등과 직장 어린이집이 40% 정도이었다. 도움정도는 가정과 직장 어린이집이 평균 3.3점으로 높고,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이 각각 2.4점으로 낮았다.

한편, 시간연장보육이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된다고 응답한 경우 그 분야를 알아본 결과, 부모의 어린이집 만족도 향상이 45.9%, 원아 모집 29.0%, 공보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17.3%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 차이를 보여서, 국공립은 공보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41.7%로 높은 반면 민간개인과 가정 어린이집은 원아 모집이 각각 30.0%, 36.1%, 사회복지법인은 재정 운영에 도움된다는 비율이 16.7%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원아 모집과 공보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타 지역보다 높았다(표 Ⅲ-1-43 참조).

〈표 III-1-42〉 시간연장보육의 어린이집 운영에의 도움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음	별로 도움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매우 도움	계(수)	5점 평균
전체	14.0	25.6	23.2	27.4	9.8	100.0(621)	2.9
기관 유형							
국공립	26.1	29.7	26.8	10.9	6.5	100.0(138)	2.4
사회복지법인	23.3	36.7	20.0	13.3	6.7	100.0( 30)	2.4
법인단체 등	25.0	18.8	12.5	43.8	-	100.0( 16)	2.8
민간개인	10.3	29.9	21.7	29.9	8.2	100.0(184)	3.0
가정	8.3	19.9	22.4	35.3	14.1	100.0(241)	3.3
직장	8.3	8.3	41.7	33.3	8.3	100.0( 12)	3.3
X <sup>2</sup> (df)/F			-				10.6***
지역규모							
대도시	16.0	26.2	20.6	28.4	8.9	100.0(282)	2.9
중소도시	12.7	23.5	26.7	26.2	10.9	100.0(221)	3.0
읍면지역	11.9	28.0	22.9	27.1	10.2	100.0(118)	3.0
X <sup>2</sup> (df)/F			4.8(8)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1$

〈표 III-1-43〉 어린이집 운영 도움 분야

단위: %(명)

구분	원아 모집	재정 운영	부모 만족도 향상	공보육 기관 역할 수행	주간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계(수)
전체	29.0	4.8	45.9	17.3	3.0	100.0(231)
기관 유형						
국공립	12.5	-	37.5	41.7	8.3	100.0( 24)
사회복지법인	-	16.7	83.3	-	-	100.0( 6)
법인단체 등	-	-	57.1	28.6	14.3	100.0( 7)
민간개인	30.0	1.4	50.0	18.6	-	100.0( 70)
가정	36.1	7.6	41.2	11.8	3.4	100.0(119)
직장	-	-	80.0	20.0	-	100.0( 5)
지역규모						
대도시	30.5	-	45.7	20.0	3.8	100.0(105)
중소도시	26.8	8.5	45.1	17.1	2.4	100.0( 82)
읍면지역	29.5	9.1	47.7	11.4	2.3	100.0( 4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나) 자녀양육에의 도움

시간연장보육이 맞벌이가구의 자녀양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물었다. 응답자 중 다수인 85%가 도움된다고 답하였고, 도움정도는 5점 척도로 환산하면 4.4점이다. 도움정도는 기관유형별로 차이를 보여서 가정어린이집이 평균

4.6점으로 가장 높고, 법인단체등이 3.9점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표 III-1-44〉 시간연장보육의 맞벌이가구의 자녀양육에의 도움

단위: %(명)

구분	전혀 되지	도움이 없음	별로 되지	도움이 없음	보통	다소 도움	매우 도움	계(수)	5점 평균
전체	1.0		4.3		9.7	26.7	58.3	100.0(621)	4.4
기관 유형									
국공립	2.2		10.9		15.9	29.0	42.0	100.0(138)	4.0
사회복지법인	3.3		-		10.0	43.3	43.3	100.0( 30)	4.2
법인단체 등	6.3		6.3		25.0	18.8	43.8	100.0( 16)	3.9
민간개인	0.5		3.3		9.2	25.0	62.0	100.0(184)	4.4
가정	-		1.7		5.4	23.7	69.3	100.0(241)	4.6
직장	-		8.3		8.3	58.3	25.0	100.0( 12)	4.0
X <sup>2</sup> (df)/F					-				11.2***
지역규모									
대도시	0.7		5.3		8.9	28.0	57.1	100.0(282)	4.4
중소도시	0.9		4.1		11.3	25.3	58.4	100.0(221)	4.4
읍면지역	1.7		2.5		8.5	26.3	61.0	100.0(118)	4.4
X <sup>2</sup> (df)/F									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01

### 3) 운영의 어려움

시간연장보육 운영 시 어려움 1순위는 운영비 추가 부담이 31.9%, 시간연장보육 담당교사 채용이 18.8%, 타 기관 이용 아동의 이른 등원과 유아 및 교사 안전문제가 각각 11.9%, 영아와 유아로 구성된 혼합반 운영 10.6%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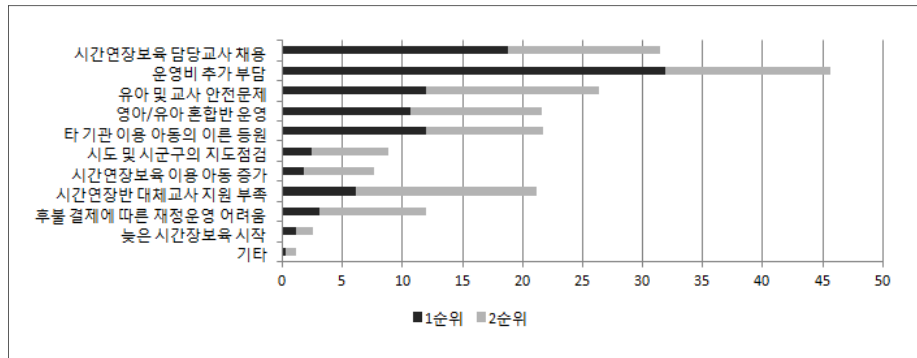
〈표 III-1-45〉 시간연장보육 운영의 어려움: 1+2순위

단위: %(명)

구분	시간연장보육담당교사 채용	운영비 추가 부담	유아 및 교사 안전문제	영아와 유아로 구성된 혼합반 운영	타 기관 이용 아동의 이른 등원	시도 및 시군구의 제도적	시간연장보육이용 아동 증가	시간연장반 대체 교사 지원 부족	시간연장보육료 후불 결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늦은 시간보육 시작	기타	계(수)
1순위	18.8	31.9	11.9	10.6	11.9	2.4	1.8	6.1	3.1	1.1	0.3	100.0(621)
2순위	12.6	13.7	14.5	11.0	9.8	6.4	5.8	15.1	8.9	1.4	0.8	100.0(621)
1+2순위	31.4	45.6	26.4	21.6	21.7	8.8	7.6	21.2	12.0	2.5	1.1	(6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2순위는 시간연장반 대체교사 지원 부족이 15.1%, 유아 및 교사 안전문제 14.5%, 운영비 추가 부담 13.7%, 시간연장보육 담당교사 채용 12.6% 순이었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운영비 추가 부담이 45.6%로 높고, 시간연장보육 담당교사 채용이 31.4%, 유아 및 교사 안전문제 26.4%, 혼합반 운영과 타 기관 이용 아동의 이 큰 등원이 각각 21% 정도를 차지한다.



[그림 III-1-3] 시간연장보육 운영의 어려움: 1+2순위(원장)

<표 III-1-46> 제 특성별 시간연장보육 운영 시 어려움: 1순위

단위: %(개원)

구분	시간연장보육 담당교사 채용	운영비 추가 부담	영아 및 교사 안전문제	혼합반 운영	타 기관 이용 아동의 이 큰 등원	시도 및 시군구의 지도점검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 증가	시간연장반 대체교사 지원 부족	후불 결제에 따른 재정운영 어려움	늦은 시간장보육 시작	기타	계(수)
전체	18.8	31.9	11.9	10.6	11.9	2.4	1.8	6.1	3.1	1.1	0.3	100.0(621)
기관 유형												
국공립	14.5	39.9	28.3	8.0	1.4	-	1.4	2.9	1.4	1.4	0.7	100.0(138)
사회복지법인	16.7	36.7	10.0	13.3	-	3.3	3.3	10.0	6.7	-	-	100.0(30)
법인단체 등	31.3	25.0	6.3	12.5	-	-	6.3	12.5	-	6.3	-	100.0(16)
민간개인	28.8	29.3	7.6	9.2	7.6	4.9	2.7	4.9	3.3	1.6	-	100.0(184)
가정	12.0	29.5	6.6	12.9	24.1	2.1	0.8	7.5	3.7	0.4	0.4	100.0(241)
직장	41.7	25.0	8.3	8.3	-	-	-	16.7	-	-	-	100.0(12)
지역규모												
대도시	17.4	40.1	14.2	8.2	6.7	1.4	1.8	5.7	3.2	0.7	0.7	100.0(282)
중소도시	18.1	26.7	10.9	13.1	15.8	3.6	1.8	5.4	2.7	1.8	-	100.0(221)
읍면지역	23.7	22.0	8.5	11.9	16.9	2.5	1.7	8.5	3.4	0.8	-	100.0(1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표 Ⅲ-1-46>은 시간연장보육 운영의 어려움 1순위를 제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국공립은 운영비 추가 부담과 영유아 및 교사 안전 문제 사회복지법은 혼합반 운영, 법인단체 등과 직장은 시간연장반 대체교사 지원 부족, 민간과 가정은 타 기관 이용 아동의 이혼 등원을 어려움으로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Ⅲ-1-47>은 시간연장 운영 시 어려움으로 지적한 보육교사 채용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늦은 퇴근시간이 48.5%로 높고, 다음으로 낮은 급여 수준이 17.4%, 혼합반 담당 경력자 부재 10.8%, 지역 특성에 따른 지원자 부족 8.4%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지역특성에 따른 지원자 부족이 각각 20%, 18%로 높고, 민간개인과 가정어린이집은 낮은 급여수준이 20%대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늦은 퇴근시간과 혼합반 경력자 부재를 지적한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른 지원자 부족이 31.4%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표 Ⅲ-1-47>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채용 시 애로

단위: %(명)

구분	늦은 퇴근 시간	낮은 급여 수준	자녀양육 유경험자 채용 어려움	혼합반 담당경력자 채용 어려움	지역특성에 따른 지원자 부족	과도한 업무 부담	기타	계(수)
전체	48.5	17.4	0.3	10.8	8.4	0.6	14.0	100.0(621)
기관 유형								
국공립	64.5	2.2	0.7	7.2	9.4	0.7	15.2	100.0(138)
사회복지법인	60.0	3.3	-	6.7	20.0	-	10.0	100.0( 30)
법인단체 등	37.5	6.3	-	12.5	18.8	-	25.0	100.0( 16)
민간개인	44.6	20.7	0.5	11.4	9.8	0.5	12.5	100.0(184)
가정	40.7	26.1	-	12.9	5.0	0.8	14.5	100.0(241)
직장	66.7	16.7	-	8.3	-	-	8.3	100.0( 12)
지역규모								
대도시	54.6	14.9	0.4	12.4	1.8	0.4	15.6	100.0(282)
중소도시	44.3	22.6	0.5	11.3	4.5	0.9	15.8	100.0(221)
읍면지역	41.5	13.6	-	5.9	31.4	0.8	6.8	100.0(1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한편 시간연장반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1, 2순위로 살펴본 결과 1순위로는 혼합반 구성에 따른 보육활동의 어려움이 42.8%로 높고, 저녁 급식 준비 및 배식 등 보육 이외 잡무가 16.6%이다 2순위는 밤 늦은 시간 아동과 교사의 안전 확보가 18.3%로 가장 높았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혼합반 구성에 따른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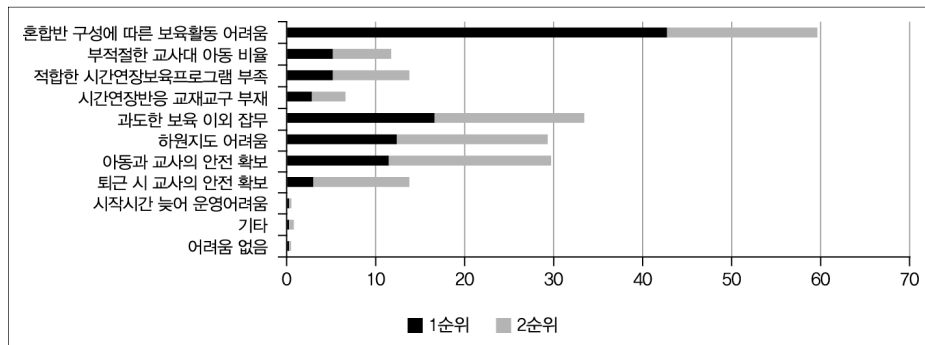
이 59.8%로 가장 높고, 저녁 급식 준비 등 보육 이외 잡무 33.6%, 밤 늦은 시간 아동과 교사의 안전 확보 29.8%, 아동별 하원시간이 달라 하원지도 어려움 29.4%를 차지하였다.

〈표 III-1-48〉 시간연장보육 운영의 어려움: 1+2순위

단위: %(명)

구분	혼합반 구성에 따른 보육활동 어려움	부적절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적합한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 부족	시간연장반용 교재교구 부재	과도한 보육 이외 잡무	하원지도 어려움	아동과 교사의 안전 확보	퇴근 시 교사의 안전 확보	기타	시작시간 늦어 운영 어려움	어려움 없음	계(수)
1순위	42.8	5.2	5.2	2.8	16.6	12.3	11.5	3.0	0.2	0.2	0.3	100.0(601)
2순위	17.0	6.5	8.5	3.7	17.0	17.1	18.3	10.8	0.7	0.3	0.2	100.0(601)
1+2순위	59.8	11.7	13.7	6.5	33.6	29.4	29.8	13.8	0.9	0.5	0.5	(6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그림 III-1-4〕 시간연장보육 운영의 어려움: 1+2순위(시간연장보육교사)

#### 4) 근무만족도

시간연장보육 담당교사의 근무만족도를 근무환경, 업무량 및 업무강도, 급여 및 수당, 처우 네 개 차원으로 알아보았다.

시간연장보육 담당교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에 평균 3.6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사회복지법인과 직장은 4.0점으로 높고, 법인단체등과 가정은 3.3점, 3.4점으로 낮다. 업무량 및 업무 강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 3.4점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직장이 높고, 법인단체등과 가정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처우는 평균 3.2점으로 가장 낮고, 국공립과 직장이 가장 높고, 가정이 가장 낮았다.



〈표 III-1-49〉 시간연장보육 담당교사 근무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근무환경			업무량 및 강도			급여 및 수당			처우			계(수)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전체	39.8	15.8	3.6	36.1	12.8	3.4	30.8	9.8	3.2	30.0	9.5	3.2	100.0(601)
기관 유형													
국공립	46.8	16.5	3.7	48.2	12.2	3.6	41.0	15.1	3.5	43.2	10.1	3.5	100.0(139)
사회복지법인	53.8	23.1	4.0	57.7	11.5	3.8	61.5	15.4	3.9	38.5	19.2	3.7	100.0( 26)
법인단체 등	17.6	17.6	3.3	11.8	17.6	3.2	23.5	11.8	3.3	11.8	11.8	3.2	100.0( 17)
민간개인	41.3	15.2	3.6	34.2	14.1	3.5	26.6	8.7	3.2	27.7	9.8	3.2	100.0(184)
가정	33.6	14.1	3.4	30.0	11.4	3.3	25.5	5.9	3.0	24.5	6.8	3.0	100.0(220)
직장	46.7	26.7	4.0	26.7	20.0	3.7	20.0	20.0	3.6	20.0	20.0	3.5	100.0( 15)
X <sup>2</sup> (df)/F			3.3**			3.9**			9.0***			5.0***	
지역규모													
대도시	41.1	16.4	3.6	35.9	15.3	3.5	31.7	12.5	3.3	30.7	11.8	3.3	100.0(287)
중소도시	41.4	13.3	3.5	36.9	9.9	3.4	30.5	6.9	3.1	30.5	7.4	3.2	100.0(203)
읍면지역	33.3	18.9	3.5	35.1	11.7	3.3	28.8	8.1	3.1	27.0	7.2	3.1	100.0(111)
X <sup>2</sup> (df)/F			0.9			1.6			2.8#			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p < .1, \*\* p < .01, \*\*\* p < .001

5) 향후 운영 및 근무계획

시간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이 향후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62.2%는 계속 운영하고, 34.5%는 운영 여부를 고민 중이며, 3.4%는 운영을 중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표 III-1-50 참조).

〈표 III-1-50〉 시간연장보육 향후 운영 의향

단위: %(명)

구분	중단 예정	운영 여부 고민중	계속 운영	계(수)	구분	중단 예정	운영 여부 고민중	계속 운영	계(수)
기관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	2.9	18.1	79.0	100.0(138)	대도시	2.8	28.7	68.4	100.0(282)
사회복지법인	-	50.0	50.0	100.0( 30)	중소도시	5.0	36.7	58.4	100.0(221)
법인단체 등	6.3	25.0	68.8	100.0( 16)	읍면지역	1.7	44.1	54.2	100.0(118)
민간개인	1.6	37.0	61.4	100.0(184)					
가정	5.4	42.3	52.3	100.0(241)					
직장	-	-	100.0	100.0( 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특히 사회복지법인과 민간개인, 가정은 현재 운영 여부를 고민 중인 경우가 많았다. 법인단체 등과 가정은 중단 예정 비율이 5~6%로 높았으며, 읍면지역일 수록 운영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III-1-50 참조).

한편, 시간연장보육 교사는 향후 근무의향을 질문에 대해 65.6%가 계속 근무 하겠다고 답하였고, 이직 계획이 있는 경우는 6.5%로 소수이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교사가 계속 근무 예정인 경우가 전체 평균보다 높고, 읍면지역 교사들이 이직을 고민 중이라는 응답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았다.

〈표 III-1-51〉 시간연장보육 교사 향후 근무 의향

단위: %(명)

구분	이직 예정	이직 고민 중	계속 근무	계(수)	구분	이직 예정	이직 고민 중	계속 근무	계(수)
전체	6.5	28.0	65.6	100.0(601)					
기관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	5.0	22.3	72.7	100.0(139)	대도시	5.6	26.5	67.9	100.0(287)
사회복지법인	-	30.8	69.2	100.0( 26)	중소도시	7.9	25.6	66.5	100.0(203)
법인단체 등	17.6	17.6	64.7	100.0( 17)	읍면지역	6.3	36.0	57.7	100.0(111)
민간개인	7.1	29.3	63.6	100.0(184)					
가정	6.4	31.4	62.3	100.0(220)					
직장	13.3	20.0	66.7	100.0( 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표 III-1-52〉 시간연장보육 근무 중단 이유

단위: %(명)

구분	급여 불만	업무량/업무강도 부담	소속감 부재	늦은 퇴근시간	부모에게 교사로서 존중받지 못함	기타	계(수)
전체	23.2	19.3	10.6	37.7	7.2	1.9	100.0(207)
기관 유형							
국공립	-	18.4	26.3	44.7	7.9	2.6	100.0( 38)
사회복지법인	12.5		37.5	25.0	12.5	12.5	100.0( 8)
법인단체 등	33.3	16.7	16.7	33.3	-	-	100.0( 6)
민간개인	25.4	22.4	4.5	40.3	4.5	3.0	100.0( 67)
가정	33.7	20.5	3.6	33.7	8.4	-	100.0( 83)
직장	-		40.0	40.0	20.0		100.0( 5)
지역규모							
대도시	25.0	22.8	15.2	29.3	6.5	1.1	100.0( 92)
중소도시	29.4	13.2	4.4	48.5	2.9	1.5	100.0( 68)
읍면지역	10.6	21.3	10.6	38.3	14.9	4.3	100.0( 4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시간연장 보육교사 중 현재 이직을 고민 중이거나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물었다. 늦은 퇴근시간이 37.7%로 높고, 급여 불만이 23.2%, 19.3%는 업무량과 업무강도를 꼽았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국공립과 민간개인 직장에서 늦은 퇴근시간에 응답 비율이 높고, 소속감 부재를 이유로 든 경우도 직장, 사회복지법인, 국공립에서 높은 편이었다(표 III-1-52 참조).

6) 개선사항

시간연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1순위로는 이용시간 합산 방법 개선과 교사 인건비 지원수준 인상, 타 기관 이용 아동 등원 시작시간 조정이 각각 20%대로 비등하고, 영아 보육시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이 18.2% 순이었다. 2순위로는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인상이 20%, 운영비 지원 확대 18.4%, 이용시간 합산방법 개선 15.0%, 영아 보육 시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과 타 기관 이용 아동의 등원시간 조정이 각각 10%대를 나타내었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교사 인건비 지원 수준 인상이 40.3%, 이용시간 합산 방법 개선 39.3%, 영아보육 시 교사대아동비율 조정 28.8%를 차지한다(표 III-1-53 참조).

<표 III-1-53>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위한 개선사항: 1+2순위(원장)

단위: %(명)

구분	영아 보육시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이용 시간 합산 방법 개선	타 기관 이용 아동 등원 시작 시간 조정	교사 인건비 지원수준 인상	교사 교통비 추가 지원	지도점검 완화	보조인력 지원	운영비 지원 확대	부모 부담금 및 별이 맞벌이 기준 강화	시간연장 보육 시작 시간 조정	기타	계(수)
1순위	18.2	24.3	21.1	20.3	2.1	2.9	3.2	6.8	0.2	1.0	-	100.0(621)
2순위	10.6	15.0	10.8	20.0	3.4	6.4	12.9	18.4	0.3	1.4	0.8	100.0(621)
1+2순위	28.8	39.3	31.9	40.3	5.5	9.3	16.1	25.2	0.5	2.4	0.8	(6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표 III-1-54>은 제 특성별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위한 개선사항을 나타낸다 국공립과 직장은 교사 인건비 지원수준 인상, 법인단체 등은 영아보육 시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 민간개인은 운영비 지원 확대 가정은 타 기관이용 아동의 등원시작시간 조정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 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영아 보육시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이 높고, 읍면지역일 수록 타 기관 이용 아동의 등원시작시간 조정이 높았다.

〈표 III-1-54〉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위한 개선사항: 1순위(원장)

단위: %(명)

구분	영아보육시 교사 대 아동 비 율 조 정	이용 시간 합 산 방 법 개 선	타 기 관 이 용 아 동 등 작 시 간 조 정	교사 인 건 비 지 원 수 준 인 상	교사 교 통 비 추 가 지 원	지도 점 검 화	보 조 인 력 지 원	운 영 비 지 원 대 확 대	부 모 부 담 금 상 및 이 기 준 화	시 간 연 장 보 육 시 작 시 간 조 정	계(수)
전체	18.2	24.3	21.1	20.3	2.1	2.9	3.2	6.8	0.2	1.0	100.0(621)
기관 유형											
국공립	21.7	31.2	6.5	30.4	3.6		2.9	2.2	0.7	0.7	100.0(138)
사회복지법인	16.7	33.3	10.0	23.3	-	6.7	6.7	3.3	-	-	100.0( 30)
법인단체 등	37.5	25.0	-	12.5	-	6.3	6.3	6.3	-	6.3	100.0( 16)
민간개인	12.0	26.6	16.3	20.7	3.3	3.8	3.3	12.5	-	1.6	100.0(184)
가정	19.5	17.4	36.9	13.7	0.8	2.9	2.5	5.8		0.4	100.0(241)
직장	25.0	25.0	-	33.3	-	8.3	8.3	-	-	-	100.0( 12)
지역규모											
대도시	22.0	24.8	15.2	23.0	1.8	1.8	2.8	7.4	0.4	0.7	100.0(282)
중소도시	15.8	24.0	24.9	16.3	1.8	4.5	4.5	6.3	-	1.8	100.0(221)
읍면지역	13.6	23.7	28.0	21.2	3.4	2.5	1.7	5.9	-	-	100.0(1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한편, 시간연장보육 교사는 1순위로 교사인건비 지원 수준 상향조정이 36.8%로 높고, 2순위는 시간연장 보육실 별도 마련이 15.0%로 가장 높아서, 1, 2순위를 합산하면 교사 인건비 지원 수준 상향 조정이 50.6%, 시간연장 보육실 별도 마련 27.6%, 보조인력 지원 24.3%로, 교사의 처우 개선 뿐 아니라 별도 공간 확보 및 보조 인력을 통한 근무 환경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III-1-55〉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위한 개선사항

단위: %(명)

구분	교사 인 건 비 지 원 수 준 상 향 조 정	정규 교사 와 동 일 한 인 건 비 인 상	대 체 교 사 지 원 대 확 대	보 조 인 력 지 원	교사 대 아 동 비 율 조 정	아 동 위 한 시 간 연 장 보 육 프 로 그 램 추 가 개 발 및 보 급	교사 위 한 시 간 연 장 보 육 관 련 교 육 확 대 및 다 양 화	시 간 연 장 보 육 실 공 간 별 도 마 련	기 타	시 간 연 장 반 영 시 간 개 선	없 음	계(수)
1순위	36.8	8.5	10.1	10.5	6.7	8.5	5.7	12.6	0.2	0.5	-	100.0(601)
2순위	13.8	9.8	11.3	13.8	10.8	10.5	13.3	15.0	0.8	0.5	0.3	100.0(601)
1+2순위	50.6	18.3	21.4	24.3	17.5	19.0	19.0	27.6	1.0	1.0	0.3	(6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2. 24시간 보육

### 가. 개요<sup>17)</sup>

24시간 보육은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15).

24시간 보육은 야간보육(19:30~익일 07:30) 지원 사업으로 1995년부터 추진하였다. 2007년, 24시간 보육 아동이 5명 이상 10명 이하 시설을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하고, 24시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정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후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각 년도).

24시간 보육은 인건비를 지원한다. 2006년까지 월 보육료의 150%를 지원하다가 2007년 지정 제도로 전환하면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추가하였다.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24시간(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하는데,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정부지원시설은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 민간 지정시설은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2013년에는 민간지정시설 인건비 지원이 12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보건복지부, 각 년도).

### 나. 현황

#### 1) 어린이집 수

24시간 어린이집은 지역 내 야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정부지원 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

2014년 기준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277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중 0.6%의 극소수만 운영하고 있다. 24시간보육 지정시설 제도가 도입된 2007년과 비교하여 2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각각 90여 개소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에서

17)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각 년도)를 정리한 내용임.

운영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07년 20개소에서 매년 운영 기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201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정체되어 있다(보건복지부, 각 년도). 이는 24시간 보육이 다른 특수보육에 비해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서 기피하는 것도 운영 시설수가 감소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운영률을 산출하여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국공립 위탁 시 의무적으로 취약보육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표 Ⅲ-2-1 참조).

〈표 Ⅲ-2-1〉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4	277	69	14	4	95	90	-	5
(비율)	(0.6)	(2.8)	(1.0)	(0.5)	(0.6)	(0.4)		(0.7)
2013	284	65	15	4	103	91		6
2012	268	53	13	3	103	90	-	6
2011	268	48	13	3	104	94	-	6
2010	230	33	12	3	99	80	-	3
2009	138	32	13	3	61	29	-	-
2008	125	23	11	2	58	31	-	-
2007	148	20	6	1	72	49	-	-

주: 24시간 보육은 2007년 지정시설 제도를 실시하여 이후 자료만 생산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 2) 이용 아동 수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2014년 기준 867명이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중 0.06%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소수라고 할 수 있다. 24시간 보육 아동수는 2007년 698명에서 2010년 945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보건복지부, 각 년도).

어린이집 유형 중에서 민간, 가정, 국공립 순으로 이용 아동 수가 많다. 운영률을 보면, 국공립이 0.12%, 가정 0.06%, 사회복지법인과 민간, 직장이 0.05% 순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유형보다 다소 높다. 국공립은 지정시설 제도가 시작된 2007년 43명에서 2010년 93명, 2014년 193명까지 늘었다 이에 반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2010년 각각 488명, 274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이용 아동수가 줄고 있다. 이는 24시간 보육 공급이 줄면서 이용 아동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각 년도).

〈표 III-2-2〉 24시간 보육 아동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4	867	193	55	9	361	230	-	19	
(비율)	(0.06)	(0.12)	(0.05)	(0.02)	(0.05)	(0.06)		(0.05)	
2013	853	165	60	7	371	232		18	
2012	871	167	58	6	395	224	-	21	
2011	900	149	53	10	417	269	-	2	
2010	945	93	75	12	488	274	-	3	
2009	520	45	74	11	274	116	-		
2008	546	49	69	12	300	116	-	-	
2007	698	43	58	10	416	171			

주: 24시간 보육은 2007년 지정시설 제도를 실시하여 이후 통계 자료만 생산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 3) 어린이집별 이용 아동수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중일반 편성 시에는 연령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5).

〈표 III-2-3〉은 24시간 보육 운영 어린이집 64개소를 대상으로 이용 아동수를 조사한 것이다. 24시간 보육은 어린이집 당 평균 4.3명이고, 영아가 1.9명 유아 2.4명으로 유아가 다소 많다. 민간/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이 평균 5.3명으로 많고,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이 4.2명, 가정이 3.1명 순이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영아는 가정이 평균 3.0명, 나머지가 1명 정도로 차이를 보이고, 유아는 민간/법인단체등이 평균 3.3명 가정이 0.1명으로 유의하게 차이난다. 지역별로는 유아만 차이를 보여서 읍면지역이 평균 4.3명으로 많다

〈표 III-2-3〉 어린이집별 이용 아동수

단위: 명(개소)

구분	영아	유아	총유아수	(슈)	구분	영아	유아	총유아수	(슈)
전체	1.9	2.4	4.3	(64)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3	2.8	4.2	(26)	대도시	2.0	2.4	4.5	(41)
민간/ 법인단체등	1.9	3.3	5.3	(24)	중소도시	2.1	1.3	3.4	(15)
가정	3.0	0.1	3.1	(14)	읍면지역	1.1	4.3	5.4	(8)
F	3.8 <sup>*</sup>	11.9 <sup>***</sup>	3.1			0.8	4.3 <sup>*</sup>	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24시간 보육 아동 중 24시간 보육서비스가 필요없는 데도 이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중 9.4%가 있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필요에 의해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10% 정도는 있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각각 20.0%, 12.5%로 높았다

〈표 III-2-4〉 24시간 보육 불필요 아동의 이용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있음	없음	계(수)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9.4	90.6	100.0(64)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사회복지법인	11.5	88.5	100.0(26)	대도시	4.9	95.1	100.0(41)
민간/법인단체등	12.5	87.5	100.0(24)	중소도시	20.0	80.0	100.0(15)
가정	-	100.0	100.0(14)	읍면지역	12.5	87.5	100.0( 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다. 보육 환경

### 1) 지역 특성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을 보면 82.8%가 주거지역이고 10.9%는 상업지역, 4.7% 공단지역이었다. 가정은 주로 주거지역,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상업지역과 공단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상업지역이 각각 12.2%, 12.5%로 높고, 읍면지역은 공단지역이 12.5%, 기타도 12.5%로 높았다(표 III-2-5 참조).

〈표 III-2-5〉 지역 특성

					단위: %(개소)
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단지역	기타	계(수)
전체	82.8	10.9	4.7	1.6	100.0(6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73.1	11.5	11.5	3.8	100.0(26)
민간/법인단체등	83.3	16.7	-	-	100.0(24)
가정	100.0	-	-	-	100.0(14)
지역규모					
대도시	82.9	12.2	4.9	-	100.0(41)
중소도시	93.3	6.7	-	-	100.0(15)
읍면지역	62.5	12.5	12.5	12.5	100.0( 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2) 보육실 유형

24시간 어린이집은 보육 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중 전용 보육실이 있는 경우는 25.0% 정도이고 나머지는 기존 보육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민간/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이나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전용 보육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III-2-6 참조).

〈표 III-2-6〉 24시간 보육실 형태

단위: %(개소)

구분	전용 보육실	기존 보육실	계(수)	구분	전용 보육실	기존 보육실	계(수)
전체	25.0	75.0	100.0(64)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사회복지법인	23.1	76.9	100.0(26)	대도시	22.0	78.0	100.0(41)
민간/법인단체등	37.5	62.5	100.0(24)	중소도시	33.3	66.7	100.0(15)
가정	7.1	92.9	100.0(14)	읍면지역	25.0	75.0	100.0( 8)
X <sup>2</sup> (df)	4.4(2)			X <sup>2</sup> (df)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라. 부모의 의무

### 1) 부모 의무이행 여부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는 주 3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 주 1회 이상 가정 보호해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5).

〈표 III-2-7〉 24시간 보육 이용 부모의 의무이행

단위: %(개소)

구분	부모 대부분 성실 이행	일부 부모 전화, 방문 등 이동과 접촉, 집에 데려가지 않음	계(수)
전체	73.4	26.6	100.0(6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84.6	15.4	100.0(26)
민간/법인단체등	66.7	33.3	100.0(24)
가정	64.3	35.7	100.0(14)
지역규모			
대도시	78.0	22.0	100.0(41)
중소도시	60.0	40.0	100.0(15)
읍면지역	75.0	25.0	100.0( 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이러한 보호자 의무사항에 대해 73.4%는 대부분의 부모가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26.6%는 일부 부모가 전화, 방문 등 아동과 접촉하거나 집에 데려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부모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이 15.4% 정도이나 민간/법인단체등과 가정은 각각 33.3%, 35.7%로 높은 편이고,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II-2-7 참조).

## 2) 부모 의무 미이행 시 조치

24시간 보육 이용 부모 중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부모가 있는 경우, 조치 방법을 알아보았다.

부모와 연락 후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64.7%, 부모와 연락 후 가정에 데려다 주는 경우와 부모와 연락 후 복지시설에 인계한 경우가 17.6%, 시 및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경우는 11.8%이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돌본다고 답하였지만, 가정은 부모에게 연락한 후 복지시설로 인계한 경험이 있었다(표 III-2-8 참조).

〈표 III-2-8〉 부모 의무 미이행 시 조치방법

구분	단위: %(명)				(수)
	부모 연락 후 어린이집에서 돌봄	부모 연락 후 가정에 데려다 줌	부모 연락 후 복지시설 인계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 연락	
전체	64.7	17.6	17.6	11.8	(17)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00.0	-	-	-	(4)
민간/ 법인단체등	62.5	25.0	12.5	25.0	(8)
가정	40.0	20.0	40.0	-	(5)
지역규모					
대도시	88.9	11.1	-	22.2	(9)
중소도시	33.3	16.7	50.0	-	(6)
읍면지역	50.0	50.0	-	-	(2)
정원					
20인 이하	40.0	20.0	40.0	-	(5)
21~50인	100.0	-	-	25.0	(4)
51~80인	60.0	20.0	20.0	-	(5)
81인 이상	66.7	33.3	-	33.3	(3)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마. 프로그램 운영

1) 중점 사항

24시간 어린이집은 보육 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과 조·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 여건 및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을 구비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5).

24시간 보육 운영 시 중점을 두는 사항을 1, 2순위로 알아보았다. 1순위로 가정과 같은 보육환경 조성이 51.6%로 높고, 안전한 보호·돌봄이 39.1%, 나머지는 5% 내외이다. 2순위는 안전한 보호·돌봄이 36.5%로 가장 높고 가정에서와 같은 보육환경 조성 23.8%, 균형 잡힌 급간식 제공 20.6% 순이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안전한 보호·돌봄과 가정에서와 같은 보육환경이 각각 75%로 높고, 균형잡힌 급간식 제공 26.9%, 기본 생활습관지도 14.3% 순이다(표 III-2-9 참조).

〈표 III-2-9〉 24시간 보육 중점사항: 1+2순위

단위: %(개소)

구분	가정과 같은 보육환경 조성	균형잡힌 급간식 제공	안전한 보호 또는 돌봄	야간 프로그램 운영	기본생활 습관 지도	실외놀이 (놀이터 산책 등)	기타	계(수)
1순위	51.6	6.3	39.1	-	1.6	-	1.6	100.0(64)
2순위	23.8	20.6	36.5	3.2	12.7	1.6	1.6	100.0(63)
1+2순위	75.4	26.9	75.6	3.2	14.3	1.6	3.2	(6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표 III-2-10〉 24시간 보육 중점사항: 1순위

단위: %(개소)

구분	가정과 같은 보육환경 조성	균형잡힌 급간식 제공	안전한 보호 또는 돌봄	기본생활습 관 지도	기타	계(수)
전체	51.6	6.3	39.1	1.6	1.6	100.0(6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46.2	7.7	38.5	3.8	3.8	100.0(26)
민간 법인단체등	45.8	8.3	45.8	-	-	100.0(24)
가정	71.4	-	28.6	-	-	100.0(14)
지역규모						
대도시	46.3	4.9	46.3	-	24	100.0(41)
중소도시	60.0	6.7	33.3	-	-	100.0(15)
읍면지역	62.5	12.5	12.5	12.5	-	100.0( 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표 Ⅲ-2-10>은 24시간 보육 시 중점을 두는 사항 1순위를 제 특성별로 분석한 것이다. 가정어린이집은 가정과 같은 보육환경,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기본생활습관 지도와 기타, 민간/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가정과 같은 보육활동과 안전한 보호와 돌봄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2) 참고자료

정부가 2014년에 보급한 시간연장형 보육프로그램의 인지 및 활용 여부를 알아본 결과, 68.8%는 잘 알고 활용하고 있고, 23.4%는 잘 알고 있으나 참고하지 않았으며, 6.3%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하였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과 가정은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활용하는 경우가 70%대로 높은 반면, 민간/법인단체등은 알고 있으나 참고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Ⅲ-2-11 참조).

<표 Ⅲ-2-11> 시간연장형 보육프로그램 인지 및 활용 여부

구분	단위: %(개소)				계(수)
	잘 알고 현재 활용하고 있음	잘 아나, 참고하지 않음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전체	68.8	23.4	6.3	1.6	100.0(6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76.9	19.2	3.8	-	100.0(26)
민간/ 법인단체등	54.2	37.5	8.3	-	100.0(24)
가정	78.6	7.1	7.1	7.1	100.0(14)
지역규모					
대도시	70.7	22.0	4.9	2.4	100.0(41)
중소도시	66.7	26.7	6.7	-	100.0(15)
읍면지역	62.5	25.0	12.5	-	100.0( 8)
정원					
20인 이하	78.6	7.1	7.1	7.1	100.0(14)
21~50인	61.9	33.3	4.8	-	100.0(21)
51~80인	57.1	35.7	7.1	-	100.0(14)
81인 이상	80.0	13.3	6.7	-	100.0(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3) 관리감독

24시간 보육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를 조사하였다. 다수인 81.3%가 지도점검을 받았고, 가정이 92.9%로 높고, 국공립/사회복지법인 84.6%, 민간/법인단체등이 70.8% 순이었다. 도시지역일수록 지도점검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다. 2014

년 기준 지도점검 횟수는 1회가 59.6%, 2회 이상 40.4%이다(표 Ⅲ-2-12 참조).

〈표 Ⅲ-2-12〉 지도점검 지원 여부 및 횟수

단위: %(개소)

구분	지원 여부				지원 횟수		
	받은	받지 않음	비해당	계(수)	1회	2회 이상	계(수)
전체	81.3	17.2	1.6	100.0(64)	59.6	40.4	100.0(52)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84.6	11.5	3.8	100.0(26)	59.1	40.9	100.0(22)
민간 법인단체등	70.8	29.2	-	100.0(24)	58.8	41.2	100.0(17)
가정	92.9	7.1	-	100.0(14)	61.5	38.5	100.0(13)
지역규모							
대도시	85.4	14.6	-	100.0(41)	71.4	28.6	100.0(35)
중소도시	80.0	20.0	-	100.0(15)	25.0	75.0	100.0(12)
읍면지역	62.5	25.0	12.5	100.0( 8)	60.0	40.0	100.0( 5)

주: 비해당은 2015년 24시간보육 지정 또는 2015년 신규 설치된 어린이집을 말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바. 24시간 보육교사

### 1) 보육교사 수

24시간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2014년 300명이다 2007년 199명에서 2012년 314명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보건복지부, 각 년도). 이는 24시간보육 이용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Ⅲ-2-13〉 24시간보육 교사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4	300	37	18	2	125	103	-	15
2013	305	34	18	3	135	102	-	13
2012	314	54	20	3	129	103	-	5
2011	293	38	16	3	130	106	-	-
2010	258	25	16	3	125	88	-	1
2009	120	13	18	3	53	33	-	-
2008	416	76	64	13	194	69	-	-
2007	199	16	22	4	102	55	-	-

주: 24시간 보육은 2007년 지정시설 제도를 실시하여 이후 통계 자료만 생산됨.  
 2008년 이전 통계는 종사자수로 집계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앞서 살펴본 24시간보육 어린이집이나 이용 아동과 같이 민간과 가정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은 2011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표 III-2-13 참조).

### 2) 어린이집 당 교사 수

어린이집에서 24시간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평균 1.6 명으로, 민간/ 법인 단체등과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모두 1.7~1.8명으로 가정 1.2명보다 많았다. 또한 읍면지역이 평균 2.3명, 도시지역이 1.5명 내외 정도이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표 III-2-14〉 24시간 보육교사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총 교사수	계(수)	구분	총 교사수	계(수)
전체	1.6	100.0(64)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7	100.0(26)	대도시	1.5	100.0(41)
민간/ 법인단체등	1.8	100.0(24)	중소도시	1.6	100.0(15)
가정	1.2	100.0(14)	읍면지역	2.3	100.0( 8)
F	2.0		F	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3) 채용 형태

24시간 보육 담당교사 채용 형태를 보면 93.8%가 별도 교사를 채용하고 17.2%는 시간연장보육 교사가 연장 근무하며, 3.1%는 원장이 직접 보육하고 있었다. 가정은 원장이 직접 보육하는 경우가 14.3%로 높고 도시지역도 원장이 담당하는 경우가 2~6% 정도 되었다(표 III-2-15 참조).

〈표 III-2-15〉 24시간 보육 담당교사

단위: %(개소)

구분	교사 별도 채용	시간연장 보육 교사 연장근무	원장 (수)	구분	교사 별도 채용	시간연장 보육 교사 연장근무	원장 (수)
전체	93.8	17.2	3.1 (64)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00.0	19.2	- (26)	대도시	95.1	17.1	2.4 (41)
민간/ 법인단체등	100.0	8.3	- (24)	중소도시	86.7	26.7	6.7 (15)
가정	71.4	28.6	14.3 (14)	읍면지역	100.0	-	- ( 8)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4) 교대 근무시각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원장과 협의 하에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 근무할 수 있다. 교대근무 형태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24시간보육 담당교사의 교대 근무시각은 오후 22 시에서 23시 사이가 33.9%, 오후 23시에서 24시가 25.8%, 오후 22시 이전도 30%가 넘는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인 오후 22시에서 23시가 42.3%로 다빈도이나 가정은 오후 23시에서 24시 사이가 33.3%로 높았다(표 Ⅲ-2-16 참조).

〈표 Ⅲ-2-16〉 24시간보육교사 교대시각

단위: %(개소)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개인/ 법인단체등	가정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21시 이전	3.8	16.7	25.0	12.5	21.4	-	12.9
21~22시 이전	23.1	16.7	8.3	15.0	14.3	37.5	17.7
22~23시 이전	42.3	29.2	25.0	35.0	21.4	50.0	33.9
23~24시 이전	23.1	25.0	33.3	30.0	28.6	-	25.8
24시 이후	7.7	12.5	8.3	7.5	14.3	12.5	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6)	(24)	(12)	(40)	(14)	(8)	(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5) 지원 인력

어린이집 대부분 24시간 보육 담당교사 외 추가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고 21.9%는 취사부, 3.1%는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었다.

〈표 Ⅲ-2-17〉 24시간 보육 담당교사 외 추가인력

단위: %(개소)

구분	보조 교사	취사 부	없음	계(수)	구분	보조 교사	취사 부	없음	계(수)
전체	3.1	21.9	75.0	100.0(64)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	34.6	65.4	100.0(26)	대도시	-	22.0	78.0	100.0(41)
민간/ 법인단체등	-	20.8	79.2	100.0(24)	중소도시	13.3	26.7	60.0	100.0(15)
가정	14.3	-	85.7	100.0(14)	읍면지역	-	12.5	87.5	100.0( 8)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민간/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은 취사부를 채용한 경우가 각각 34.6%, 20.8%이고, 가정은 보조교사가 14.3% 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부분 취사부를 추가 채용하지만, 중소도시 13.3% 정도는 보조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있었다(표 Ⅲ-2-17 참조).

## 사. 재정 운영

### 1)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기준<sup>18)</sup>

#### 가) 인건비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직장, 가정포함) 어린이집 중 야간 또는 24 시간 보육아동이 최대 10명 이하이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도지사로부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시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07:30)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단,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은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병원, 3교대 근무직장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 하에 10명을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부지원시설과 직장어린이집은 월 지급액의 80% 를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하여 지원한다. 민간어린이집의 지원액은 교사 1인당 월 120만원이다.<sup>19)</sup> 이 외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자체 예산으로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야간근무교사의 조·석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

#### 나)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주간이용 어린이집과 야간이용 어린이집이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단,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야간 보육료를 지원한다.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 아동으로 주관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

18) 24시간 보육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기준은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5)를 참고함.

19) 보육아동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하도록 하며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함



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5).

〈표 III-2-18〉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단가

구분	단위: 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야간 보육	406,000	357,000	295,000	220,000	220,000	220,000
24시간보육	609,000	535,500	442,500	330,000	330,000	330,000

주: 야간보육료는 정부지원 단가를 적용함.  
 자료: 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보육료 지원 대상자의 경우 정부 지원단가의 150%까지 정부에서 차등 지원 받고, 그 이상은 부모로부터 월 보육료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 수납할 수 있다. 반면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시·도지사 고시 상한액)를 기준으로 100%까지 추가 수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

다) 지방정부 지원예산

지자체는 시도특수보육시책 사업으로 24시간보육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 경북, 울주, 경기, 전북, 고창 등은 인건비, 서울, 강남은 보육교사 급식비, 충북, 제천은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표 III-2-19〉 24시간보육 관련 시도특수보육시책 예산

지역구분	지원내용	지원액	단위: 천원
			예산구분
서울 강남	구립어린이집 야간 24시간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	1,500	구비
인천 남동	24시간 보육시설 지원	9,600	구비
울산 울산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20,160	시구비
경북 울주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3,912	시구비
경기 경기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인건비	198,737	시구비
충북 제천	24시간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사업	4,800	구비
전북 고창	365일 24시간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34,040	구비

자료: 보건복지부(2015). 시도특수보육시책 내부자료.

2) 24시간보육 수입 및 지출

가) 월 수입

24시간 보육료 월 수입은 평균 132만 2천원이다. 구간별로 보면, 50~100만원 미만인 29.7%, 100~150만원 미만 25.0% 순이다. 민간/법인단체등, 국공립/사회

복지법인, 가정 순으로 월수입이 높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읍면지역은 평균 261만 2천원, 대도시 122만 5천원, 중소도시 89만 8천원으로 읍면지역이 유의하게 많았다(표 III-2-20 참조).

〈표 III-2-20〉 24시간 보육료 월 수입

단위: %(개소), 만원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8.8	29.7	25.0	7.8	18.8	100.0(64)	132.2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30.8	34.6	19.2	-	15.4	100.0(26)	130.8
민간 법인단체등	4.2	25.0	29.2	16.7	25.0	100.0(24)	146.7
가정	21.4	28.6	28.6	7.1	14.3	100.0(14)	109.9
X <sup>2</sup> (df)/F			-				0.3
지역규모							
대도시	17.1	29.3	26.8	7.3	19.5	100.0(41)	122.5
중소도시	26.7	33.3	26.7	13.3	-	100.0(15)	89.8
읍면지역	12.5	25.0	12.5	-	50.0	100.0( 8)	261.2
X <sup>2</sup> (df)/F			-				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p < .01$

〈표 III-2-21〉 24시간 보육료 미납·연체 여부 및 금액

단위: %(개소), 만원

구분	미납 및 연체 여부		미납금액				계(수)	평균
	'있다는 비율	(수)	50만원 미만	52~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1만원 이상		
전체	42.2	(64)	25.9	40.7	11.1	22.2	100.0(27)	141.7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34.6	(26)	11.1	66.7	-	22.2	100.0( 9)	102.4
민간 법인단체등	54.2	(24)	23.1	23.1	23.1	30.8	100.0(13)	208.2
가정	35.7	(14)	60.0	40.0	-	-	100.0( 5)	39.3
X <sup>2</sup> (df)/F					-			3.4*
지역규모								
대도시	43.9	(41)	11.1	55.6	11.1	22.2	100.0(18)	131.3
중소도시	46.7	(15)	71.4	14.3	14.3	-	100.0( 7)	127.6
읍면지역	25.0	( 8)	-	-	-	100.0	100.0( 2)	284.0
X <sup>2</sup> (df)/F					-			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p < .05$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를 기준으로 100%까지 추가 수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 이러한 경우 부모가 보육료를 미납 또는 연체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중 42.2%가 보육료 미납 또는 연체 경험이 있고, 그 금액은 평균 141만 7천원이다. 민간/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이 미납 및 연체 경험이 있다는 어린이집이 54.2%로 높고, 미납 금액 역시 208만 2천원으로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많았다(표 Ⅲ-2-21 참조).

나) 운영비 지출

24시간 보육 운영 시 재정운영 상 부담되는 항목을 1, 2순위로 알아보았다. 1순위는 인건비로 65.6%, 관리운영비 28.1%, 급간식비 6.3%이었다. 2순위로는 관리운영비가 53.3%, 급간식비 26.7%, 인건비 15.0%, 교재교구 및 물품 구입비 5.0% 순이었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관리운영비와 인건비가 각각 80%가 넘고, 급간식비가 30% 정도를 차지한다(표 Ⅲ-2-22 참조).

〈표 Ⅲ-2-22〉 어린이집 재정운영 상 부담되는 비용: 1+2순위

단위: %(개소)					
구분	인건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교재교구 및 물품 구입비	계(수)
1순위	65.6	6.3	28.1	-	100.0(64)
2순위	15.0	26.7	53.3	5.0	100.0(60)
1+2순위	80.6	33.0	81.4	5.0	(6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표 Ⅲ-2-23〉 어린이집 재정운영 상 부담되는 비용: 1순위

단위: %(개소)				
구분	인건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계(수)
전체	65.6	6.3	28.1	100.0(6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76.9	-	23.1	100.0(26)
민간/법인단체등	54.2	12.5	33.3	100.0(24)
가정	64.3	7.1	28.6	100.0(14)
지역규모				
대도시	63.4	7.3	29.3	100.0(41)
중소도시	66.7	6.7	26.7	100.0(15)
읍면지역	75.0	-	25.0	100.0( 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24시간 보육 운영 시 재정운영 상 부담되는 항목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

보았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과 읍면지역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은 급간식비, 대도시 는 관리운영비 부담이 컸다(표 Ⅲ-2-23 참조).

#### 다) 인건비 지원기준의 적절성

먼저, 정부지원시설의 월 지급액 80%의 인건비 지원기준에 대해 적절과 매우 적절이 각각 14.1%, 3.1% 로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를 4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1.8 점 정도이다 직장어린이집의 월 지급액 80%의 인건비 지원기준은 적절하다는 비율이 17.2% 이고, 평균 1.8 점이다. 민간 어린이집의 1인당 월 120만원 인건비 지원기준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17.2%, 매우 적절 1.6%이고, 평균 1.8 점이다(표 Ⅲ-2-24 참조).

〈표 Ⅲ-2-24〉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의 적절성

구분	단위: %(개소), 점									(수)
	정부지원시설 월 지급액 80% 지원			직장어린이집 월 지급액 80% 지원			민간어린이집 1인당 월 120만원 지원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14.1	3.1	1.8	17.2	-	1.8	17.2	1.6	1.8	(6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7.7	3.8	1.7	15.4	-	1.7	19.2	-	1.7	(26)
민간/ 법인단체등	20.8	-	1.8	20.8	-	1.9	12.5	4.2	1.9	(24)
가정	14.3	7.1	1.9	14.3	-	1.8	21.4	-	1.8	(14)
F			0.5			0.2			0.2	
지역규모										
대도시	14.6	-	1.7	17.1	-	1.7	14.6	2.4	1.8	(41)
중소도시	20.0	6.7	1.9	20.0	-	2.0	26.7	-	1.9	(15)
읍면지역	-	12.5	1.9	12.5	-	1.8	12.5	-	1.8	( 8)
F			0.6			0.8			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라) 인건비 미지원

24시간 보육도 시간연장보육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인건비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5). 보육 아동이 1명으로 줄어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한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중 6.3%로 소수이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이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11.5%로 전체 평균보다 높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많았다. 인건비 미지원 기간은 1~2개월이 대부분이었다(부표 Ⅲ-2-1 참조).

## 아. 운영 애로 및 요구

### 1) 운영 동기

24시간보육 운영 동기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필요성 인식이 3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의 참여 권장 25.0%, 재원아 부모의 요구 17.2% 순이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정부의 참여 권장이 34.6%, 민간/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은 원아 확보가 25.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도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필요성 인식이 주요 운영 동기이나, 읍면지역은 재원아 부모의 요구가 62.5%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Ⅲ-2-25 참조).

〈표 Ⅲ-2-25〉 24시간보육 운영 동기

단위: %(개소)

구분	정부의 참여 권장	원아 확보	재원아 부모의 요구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필요성 인식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조건	기타	계(수)
전체	25.0	15.6	17.2	31.3	9.4	1.6	100.0(6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34.6	3.8	11.5	26.9	23.1	-	100.0(26)
민간/ 법인단체등	16.7	25.0	20.8	37.5	-	-	100.0(24)
가정	21.4	21.4	21.4	28.6	-	7.1	100.0(14)
지역규모							
대도시	24.4	17.1	12.2	39.0	7.3	-	100.0(41)
중소도시	26.7	13.3	6.7	26.7	20.0	6.7	100.0(15)
읍면지역	25.0	12.5	62.5	-	-	-	100.0( 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2) 효과성

#### 가) 어린이집 운영에의 도움

24시간 보육이 어린이집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조사하였다(표 Ⅲ-2-26 참조).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32.8%가 도움, 7.8%는 매우 도움으로 40.6%가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도움정도는 5점 척도로 평균 2.9점이다. 민간/법인단체등과 가정 어린이집은 도움된다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읍면지역일수록 도움된다는 비율이 높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표 III-2-26〉 어린이집 운영에의 도움정도

단위: %(개소), 점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음	도움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5점 평균
전체	20.3	21.9	17.2	32.8	7.8	100.0(64)	2.9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38.5	19.2	15.4	15.4	11.5	100.0(26)	2.4
민간/ 법인단체등	8.3	25.0	16.7	45.8	4.2	100.0(24)	3.1
가정	7.1	21.4	21.4	42.9	7.1	100.0(14)	3.2
X <sup>2</sup> (df)/F			-				2.6
지역규모							
대도시	14.6	24.4	22.0	34.1	4.9	100.0(41)	2.9
중소도시	33.3	20.0	6.7	33.3	6.7	100.0(15)	2.6
읍면지역	25.0	12.5	12.5	25.0	25.0	100.0( 8)	3.1
X <sup>2</sup> (df)/F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24시간 보육이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된다고 응답한 경우, 그 분야를 추가로 물었다. 원아모집이 42.3%로 높고, 재정 운영과 부모의 어린이집 만족도 향상, 공보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각각 19.2%로 동일하였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은 재정 운영과 부모의 만족도 향상이 높은 반면, 민간/ 법인단체등과 가정은 원아 모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2-27〉 24시간보육의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 분야

단위: %(개소)

구분	원아 모집	재정 운영	부모의 만족도	어린이집 향상	어린이집이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공보육	계(수)
전체	42.3	19.2	19.2	19.2	19.2	19.2	100.0(26)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	42.9	42.9	42.9	14.3	14.3	100.0( 7)
민간/ 법인단체등	58.3	8.3	8.3	8.3	25.0	25.0	100.0(12)
가정	57.1	14.3	14.3	14.3	14.3	14.3	100.0( 7)
지역규모							
대도시	31.3	25.0	18.8	18.8	25.0	25.0	100.0(16)
중소도시	100.0	-	-	-	-	-	100.0( 6)
읍면지역	-	25.0	50.0	50.0	25.0	25.0	100.0( 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나) 자녀양육에의 도움

24시간 보육이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매우 그렇다 62.5%와 그렇다 18.8%로 동의 비율이 81.3%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동의 정도를 5 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4.3점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민간/법인단체등과 가정의 평균이 4.5점으로 높고,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4.1 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지역규모별로도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높지만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는다(표 III-2-28 참조).

〈표 III-2-28〉 24시간 보육의 취약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효과

단위: %(개소),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1.6	7.8	9.4	18.8	62.5	100.0(64)	4.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	15.4	15.4	15.4	53.8	100.0(26)	4.1
민간/ 법인단체등	4.2	-	4.2	25.0	66.7	100.0(24)	4.5
가정	-	7.1	7.1	14.3	71.4	100.0(14)	4.5
X <sup>2</sup> (df)/F			-				1.3
지역규모							
대도시	-	4.9	9.8	22.0	63.4	100.0(41)	4.4
중소도시	6.7	13.3	13.3	13.3	53.3	100.0(15)	3.9
읍면지역	-	12.5	-	12.5	75.0	100.0( 8)	4.5
X <sup>2</sup> (df)/F			-				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3) 운영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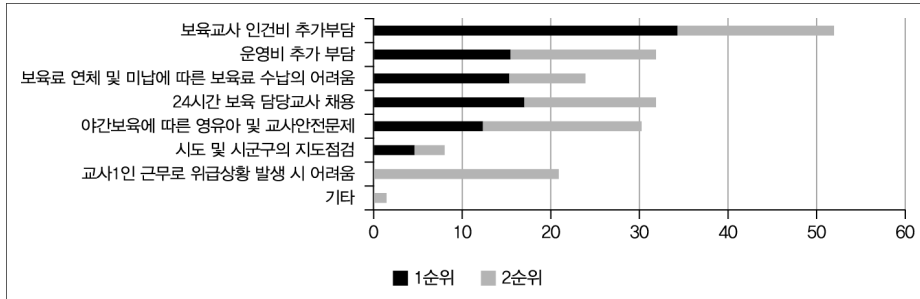
24시간 보육 운영의 어려움으로 1순위는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부담이 34.4%로 가장 높고, 24시간 보육 담당교사 채용 17.2%, 운영비 부담과 추가보육료 연체 및 미납에 따른 수납 어려움이 15.6%, 야간보육에 따른 영유아 및 교사 안전문제 12.5% 순이었다. 2순위는 교사 1인 근무로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어려움이 2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부담과 안전문제가 17.7%, 운영비 부담 16.1% 순이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부담이 52.1%로 높고, 운영비 추가 부담과 24시간 보육교사 채용이 각각 31.7%, 야간보육에 따른 영유아 및 교사 안전문제 30.2%, 추가 보육료 연체 및 미납에 따른 보육료 수납의 어려움 23.7%, 교사 1인 근무로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어려움 21.0% 순이었다(표 III-2-29 참조).

〈표 III-2-29〉 24시간 보육 운영의 어려움: 1+2순위

단위: %(개소)

구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부담	운영비 추가 부담	보육료 연체 및 미납에 따른 수납의 어려움	연체 보육료	24시간 보육 담당교사 채용	야간보육에 따른 영유아 및 교사 안전문제	시도 및 시군구의 지도 점검	교사 1인 근무로 위급상황 발생 시 어려움	기타	계(수)
1순위	34.4	15.6	15.6	17.2	12.5	4.7	-	-	100.0(62)	
2순위	17.7	16.1	8.1	14.5	17.7	3.2	21.0	1.6	100.0(62)	
1+2순위	52.1	31.7	23.7	31.7	30.2	7.9	21.0	1.6	(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그림 III-2-1] 24시간보육 운영의 어려움: 1+2순위

24시간보육 운영의 어려움 1순위를 제 특성별로 분석하였다(표 III-2-30 참조).

〈표 III-2-30〉 24시간 보육 운영의 어려움: 1순위

단위: %(개소)

구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부담	운영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 등) 추가 부담	추가 보육료 연체 및 미납에 따른 수납의 어려움	24시간 보육 담당교사 채용	야간보육에 따른 영유아 및 교사 안전문제	시도 및 시군구의 지도 점검	계(수)
전체	34.4	15.6	15.6	17.2	12.5	4.7	100.0(62)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42.3	11.5	-	23.1	23.1	-	100.0(25)
민간 법인단체등	33.3	12.5	29.2	8.3	4.2	12.5	100.0(23)
가정	21.4	28.6	21.4	21.4	7.1	-	100.0(14)
지역규모							
대도시	36.6	14.6	17.1	14.6	12.2	4.9	100.0(39)
중소도시	26.7	20.0	20.0	20.0	6.7	6.7	100.0(15)
읍면지역	37.5	12.5	-	25.0	25.0	-	100.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24시간보육 운영의 어려움으로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부담이 42.3%, 민간/법인단체등은 추가 보육료 연체 및 미납에 따른 보육료 수납의 어려움 29.2%, 가정은 운영비 추가 부담이 28.6%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 는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부담이 다수를 차지한다(표 Ⅲ-2-30 참조).

#### 4) 향후 운영계획

앞서 살펴본 24시간보육 운영에의 어려움에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계속 운영이 42.2%로 절반에 못 미쳤고 운영 여부를 현재 고민중인 경우가 42.2%, 그만둘 예정이 15.6%이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계속 운영이 53.8%로 높은 반면 가정은 앞으로 그만둘 예정이 21.4%로 높았다. 읍면지역일수록 운영 여부를 현재 고민 중인 경우가 많았다(표 Ⅲ-2-31 참조).

〈표 Ⅲ-2-31〉 24시간 보육 운영 여부 계획

구분	앞으로 그만둘 예정 운영 여부 현재 고민 중 계속 운영			계(수)
	앞으로 그만둘 예정	현재 고민	계속 운영	
전체	15.6	42.2	42.2	100.0(6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5.4	30.8	53.8	100.0(26)
민간/ 법인단체등	12.5	54.2	33.3	100.0(24)
가정	21.4	42.9	35.7	100.0(14)
지역규모				
대도시	14.6	39.0	46.3	100.0(41)
중소도시	20.0	46.7	33.3	100.0(15)
읍면지역	12.5	50.0	37.5	100.0( 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5) 24시간보육 정책 관련 의견

24시간 보육을 취약보육이 아닌, 장애아나 영아 전문어린이집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찬성이 51.6%, 절대 찬성이 9.4%로 절반 이상인 61.0%가 찬성하였다. 찬성 의견은 가정이 64.3%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았으나, 절대 반대 의견도 28.6%로 높은 편이었다(표 Ⅲ-2-32 참조).

〈표 III-2-32〉 24시간보육 전문어린이집 운영 관련 의견

단위: %(개소)

구분	절대 반대	반대	찬성하는 편	절대 찬성	계(수)
전체	21.9	17.2	51.6	9.4	100.0(6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9.2	23.1	50.0	7.7	100.0(26)
민간 법인단체등	20.8	16.7	58.3	4.2	100.0(24)
가정	28.6	7.1	42.9	21.4	100.0(14)
지역규모					
대도시	14.6	19.5	56.1	9.8	100.0(41)
중소도시	46.7	6.7	33.3	13.3	100.0(15)
읍면지역	12.5	25.0	62.5	-	100.0( 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표 III-2-33> 과 <표 III-2-34> 는 24 시간 전문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는 경우와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추가 질문한 것이다.

먼저, 찬성하는 경우 그 이유로 24시간 보육 아동의 체계적인 관리가 30.8%로 높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24 시간 보육 관련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17.9%, 야간보육 시 안전 강화 12.8% 순이다 가정은 24 시간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읍면지역일수록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표 III-2-33 참조).

〈표 III-2-33〉 24시간 전문어린이집 운영 찬성 이유

단위: %(개소)

구분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강화	24시간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24시간 보육 아동 체계적인 관리	24시간 보육 관련 재정의 효율적 운영	야간 보육 시 안전 강화	계(수)
전체	17.9	10.3	10.3	30.8	17.9	12.8	100.0(39)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3.3	6.7	6.7	33.3	26.7	13.3	100.0(15)
민간 법인단체등	20.0	13.3	6.7	40.0	13.3	6.7	100.0(15)
가정	22.2	11.1	22.2	11.1	11.1	22.2	100.0( 9)
지역규모							
대도시	11.1	14.8	3.7	37.0	22.2	11.1	100.0(27)
중소도시	28.6	-	28.6	14.3	14.3	14.3	100.0( 7)
읍면지역	40.0	-	20.0	20.0	-	20.0	100.0( 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24시간 전문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는 낙인효과가 68.0%로

가장 높고, 부모의 어린이집 접근성 저하 28.0%, 기타 4.0% 순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국공립/사회복지법인에서 낙인으로 인한 반대 이유가 높은 편이고 가정어린이집은 부모의 접근성 저하를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II-2-34 참조).

〈표 III-2-34〉 24시간 전문어린이집 운영 반대 이유

구분	낙인효과	부모의 어린이집 접근성 저하	기타	단위: %(개수)
				계(수)
전체	68.0	28.0	4.0	100.0(25)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72.7	27.3	-	100.0(11)
민간 법인단체등	66.7	22.2	11.1	100.0( 9)
가정	60.0	40.0	-	100.0( 5)
지역규모				
대도시	57.1	35.7	7.1	100.0(14)
중소도시	87.5	12.5	-	100.0( 8)
읍면지역	66.7	33.3	-	100.0( 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 3. 시간제 보육

#### 가. 개요<sup>20)</sup>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15).

2013년에는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및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일시보육 시범사업<sup>21)</sup>을 실시하였으나, 맞벌이 부모의 단시간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취업모로 확대하는 시간제보육으로 전환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시간제보육을 본 사업으로 운영하였다(보건복지부, 각 년도).

20) 시간제보육 운영 매뉴얼(보건복지부, 2015) 참고하여 작성함.

21) 일시보육 시범사업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40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 금액은 시간당 4천원으로 2천원은 정부지원 나머지 2천원은 본인이 부담함(보건복지부, 2013).

## 나. 운영 현황

### 1) 운영기관 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지정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고, 사업을 참여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이다.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으로는 시·군·구 내에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지정되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이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이 된다(보건복지부, 2015).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수는 2015년 8월말 기준 총 179개소로, 어린이집이 139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38개소, 기타 기관이 2개소이다. 서울이 46개소, 충북 23개소, 부산 20개소, 대구 13개소로 영유아가 많이 거주하고,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군구 지역까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설치되었다.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총 58명이다. 시군구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이 25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표 III-3-1〉 관리자, 담당기관, 보육반 수

구분	단위: 개소, 명, 반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기관																
전체	179	46	20	13	8	1	6	1	2	23	5	5	4	13	9	9
어린이집	139	22	17	12	8	-	6	1	2	16	5	4	4	12	8	9
육아종합지원센터	38	22	3	1	-	1	-	-	-	7	-	1	-	1	1	-
기타	2	2	-	-	-	-	-	-	-	-	-	-	-	-	-	-
관리자	58	25	7	1	6	1	1	1	1	1	1	2	1	1	2	1
보육반	196	57	23	13	8	1	6	7	2	25	5	5	4	13	10	9

주: 2015년 8월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5). 시간제보육 운영 내부자료.

### 2) 운영 반수

시간제보육 운영 반수는 평균 1.1개반으로, 구간별로 보면, 1개반이 89.6%, 2개반 8.9%, 3개반 이상이 1.4% 정도이다. 제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평균 1.4개반으로 높고, 민간/법인단체등과 가정이 1개반으로 차이가

있다(표 Ⅲ-3-2 참조).

〈표 Ⅲ-3-2〉 운영 반수

단위: %(개소), 반

구분	1개반	2개반	3개반 이상	계(수)	평균	구분	1개반	2개반	3개반 이상	계(수)	평균
전체	89.6	8.9	1.4	100.0(135)	1.1						
제공기관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법인/직장	87.0	10.9	2.2	100.0( 46)	1.2	대도시	85.3	11.8	3.0	100.0( 68)	1.2
민간/법인단체등	100.0	-	-	100.0( 43)	1.0	중소도시	95.9	4.1	-	100.0( 49)	1.0
가정	100.0	-	-	100.0( 21)	1.0	읍면지역	88.9	11.1	-	100.0( 18)	1.1
육아종합지원센터	68.0	28.0	4.0	100.0( 25)	1.4	F					1.9
F					6.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  $p < .001$

### 다. 운영 동기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장을 대상으로 운영 동기를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기관장 중 절반 가까이 되는 46.7%가 정부 정책 협력을 들었고 26.7%는 시간제보육으로 기관 특성화, 11.1% 원아 모집에 도움이 되어서, 8.1%는 정원 미달로 유휴공간 활용을 꼽았다. 나머지는 5% 미만으로 소수이었다. 제공기관별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은 정부정책 협력이 80%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민간/법인단체등과 가정 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 기관으로 특성화가 각각 46.5, 42.9%로 절반 가까이 되고, 원아모집 도움도 각각 18.6%, 23.8%로 많았다(표 Ⅲ-3-3 참조).

〈표 Ⅲ-3-3〉 시간제보육 운영 동기

단위: %(개소)

구분	정부 정책 협력	정원 미달로 유휴공간 활용	시간제 보육으로 기관 특성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도움	원아 모집 도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타	계(수)
전체	46.7	8.1	26.7	2.2	11.1	1.5	3.7	100.0(135)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73.9	4.3	10.9	-	4.3	2.2	4.3	100.0( 46)
민간/법인단체등	11.6	11.6	46.5	4.7	18.6	2.3	4.7	100.0( 43)
가정	9.5	19.0	42.9	4.8	23.8	-	-	100.0( 21)
육아종합지원센터	88.0	-	8.0	-	-	-	4.0	100.0( 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 라. 홍보

시간제보육 홍보는 중앙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제공기관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공기관이 자주 활용하는 홍보방법은 77.8%가 리플릿 및 포스터 배포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홍보물 제작 56.3%, 현수막 및 홍보판과 홈페이지, 전화가 각각 40%대, 지역 맘 카페 30.4%, 가정방문 및 거리홍보 28.1%, 신문 20% 순이었다.

제공기관별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홈페이지, 리플릿 및 포스터 홍보물 제작, 지역 맘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었다 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들보다 홍보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민간/법인단체 등과 가정 어린이집은 현수막 및 홍보판을 많이 활용하는 반면,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직장 어린이집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 없이 현수막 및 홍보판 홍보물 제작 리플릿 및 포스터 배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표 III-3-4 참조).

〈표 III-3-4〉 홍보 방법

단위: %(개소)

구분	현수막 및 홍보판	홈페이지	리플릿 포스터 배포	가정 방문, 거리 홍보	전화	신문	홍보물 제작	지역 맘카페	기타	(수)
전체	45.2	41.5	77.8	28.1	40.7	20.0	56.3	30.4	25.9	(135)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26.1	39.1	76.1	19.6	41.3	8.7	47.8	21.7	32.6	(46)
민간/법인단체등	51.2	23.3	81.4	30.2	37.2	18.6	39.5	23.3	25.6	(43)
가정	61.9	19.0	71.4	61.9	52.4	9.5	71.4	28.6	14.3	(21)
육아종합지원센터	56.0	96.0	80.0	12.0	36.0	52.0	88.0	60.0	24.0	(25)
지역규모										
대도시	42.6	48.5	77.9	22.1	39.7	25.0	61.8	30.9	27.9	(68)
중소도시	44.9	38.8	75.5	34.7	46.9	14.3	49.0	30.6	16.3	(49)
읍면지역	55.6	22.2	83.3	33.3	27.8	16.7	55.6	27.8	44.4	(18)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앞서 살펴본 홍보방법 중 이용자 모집에 효과가 있는 방법을 1, 2순위로 알아 보았다. 먼저, 1순위로 리플릿 및 포스터 배포가 24.4%로 높고 전화와 지역 맘 카페, 현수막 및 홍보판 등이 각각 10%대, 홈페이지 8.1% 정도이었다. 2순위도

리플릿 및 포스터 배포가 22.6%로 높고, 홍보물 제작 18.8%, 현수막 및 홍보판 14.3% 순이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은 리플릿 및 포스터 배포로 47.0%를 차지하고, 홍보물 제작, 현수막 및 홍보판, 전화, 지역 맘카페 등이 각각 20%대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표 III-3-5〉 효과적인 홍보방법: 1+2순위

단위: %(개소)

구분	현수막 및 홍보판	홈페이지	리플릿, 포스터 배포	가정방문· 거리 홍보	전화	신문	홍보물 제작	지역 맘카페	기타	계(수)
1순위	11.1	8.1	24.4	6.7	14.8	3.0	7.4	13.3	11.1	100.0(135)
2순위	14.3	7.5	22.6	6.0	9.8	5.3	18.8	7.5	8.3	100.0(133)
1+2순위	25.4	15.6	47.0	12.7	24.6	8.3	26.2	20.8	19.4	(1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 마. 보육 프로그램 운영

### 1) 보육일지 작성 여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육계획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제보육 교사 대다수가 보육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제공기관에 상관없이 작성하였다는 비율이 90% 정도로 높지만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일수록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육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물었다. 이용 아동 예측의 어려움과 처음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많아서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대체로 비등하였다(표 III-3-6 참조).

<표 III-3-7>은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계획 시 참고자료를 조사한 것이다. 어린이집 일반반에서 사용하는 0-2세 영아 보육프로그램과 표준보육과정이 각각 29.3%, 23.3%로 많고, 일시보육 프로그램이 24.1%, 유아교육사이트 17.3% 순이었다. 일시보육 시범사업 당시 개발된 일시보육프로그램(민성혜 외, 2013)은 주 대상이 만 1~2세이나, 대상 연령에 비해 활동 수준이 높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양미선 외, 2014). 제공기관별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들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반면에 국공립/법인/직장 어린이집은 일시보육 프로그램, 민간/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은 0-2세 영아 보육프로그램, 가정어린이집은 유아교육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도시지역일수록 일시

보육 프로그램, 읍면지역은 유아잡지를 참고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3-6〉 보육일지 작성 여부 및 미작성 이유

단위: %(명)

구분	보육일지 작성 여부			보육일지 미작성 이유			
	매일 작성	가끔 작성	계(수)	이용이동 예측 어려움	처음 이용 많아 프로그램 운영 불가능	이용 아동 운영 기타	계(수)
전체	88.7	11.3	100.0(142)	31.3	37.5	31.3	100.0(16)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87.8	12.2	100.0( 49)	33.3	50.0	16.7	100.0( 6)
민간 법인단체등	88.6	11.4	100.0( 44)	40.0	20.0	40.0	100.0( 5)
가정	90.0	10.0	100.0( 20)	50.0	50.0	-	100.0( 2)
육아종합지원센터	89.7	10.3	100.0( 29)	-	33.3	66.7	100.0( 3)
지역규모							
대도시	90.5	9.5	100.0( 74)	14.3	42.9	42.9	100.0( 7)
중소도시	89.4	10.6	100.0( 47)	40.0	40.0	20.0	100.0( 5)
읍면지역	81.0	19.0	100.0( 21)	50.0	25.0	25.0	100.0( 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전담 교사조사」 결과임.

〈표 III-3-7〉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계획 시 참고자료

단위: %(명)

구분	일시보육 프로그램	0-2세 영아 보육프로그램	표준 보육과정	유아 잡지	유아교육 사이트	계(수)
전체	24.1	29.3	23.3	6.0	17.3	100.0(133)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33.3	29.2	18.8	2.1	16.7	100.0( 48)
민간 법인단체등	10.3	41.0	23.1	12.8	12.8	100.0( 39)
가정	29.4	17.6	23.5	-	29.4	100.0( 17)
육아종합지원센터	24.1	20.7	31.0	6.9	17.2	100.0( 29)
지역규모						
대도시	31.4	30.0	22.9	5.7	10.0	100.0( 70)
중소도시	18.2	25.0	25.0	2.3	29.5	100.0( 44)
읍면지역	10.5	36.8	21.1	15.8	15.8	100.0( 1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전담 교사조사」 결과임.

## 2) 교육 및 모니터링

현재 시간제보육 기관장과 관리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2014년 모니터링을 지원하였다. 시간제보육 기관장 중 41.5% 만 시간제보육 관련 교육 및 모니터링이 질 제고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았고, 적절성 점수는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3.4점이다. 제공기관별로는 모니터링을 운영하는 육아종합



지원센터가 적절하다는 비율이 52.0%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40% 내외 정도이다. 중소도시가 높으나 반수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표 III-3-8 참조).

〈표 III-3-8〉 시간제보육 관련 교육 및 모니터링의 질 제고 효과

단위: %(개소, 명), 점

구분	적합	매우 적합	계(수)	5점 평균	구분	적합	매우 적합	계(수)	5점 평균
시간제보육 기관장					시간제보육교사				
전체	34.1	7.4	100.0(135)	3.4	전체	37.3	2.8	100.0(142)	3.3
제공기관 유형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32.6	6.5	100.0( 46)	3.3	국공립/법인/직장	38.8	2.0	100.0( 49)	3.3
민간/법인단체등	27.9	9.3	100.0( 43)	3.3	민간/법인단체등	31.8	2.3	100.0( 44)	3.2
가정	33.3	9.5	100.0( 21)	3.3	가정	40.0	-	100.0( 20)	3.4
육아종합지원센터	48.0	4.0	100.0( 25)	3.5	육아종합지원센터	41.4	6.9	100.0( 29)	3.5
X <sup>2</sup> (df)/F				0.4	X <sup>2</sup> (df)/F				0.8
지역규모					지역규모				
대도시	33.8	2.9	100.0( 68)	3.3	대도시	32.4	2.7	100.0( 74)	3.3
중소도시	38.8	10.2	100.0( 49)	3.4	중소도시	46.8	2.1	100.0( 47)	3.4
읍면지역	22.2	16.7	100.0( 18)	3.4	읍면지역	33.3	4.8	100.0( 21)	3.4
X <sup>2</sup> (df)/F				0.6	X <sup>2</sup> (df)/F				0.6
반수									
1개반	33.1	8.3	100.0(121)	3.4					
2개반 이상	42.9	-	100.0( 14)	3.4					
X <sup>2</sup> (df)/t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시간제보육 교사도 적합하다는 비율이 40.1%로 적었다. 5점 척도로 평균 3.3점으로 기관장 의견과 거의 비슷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가 높았다.

## 바. 시간제 교사

### 1) 운영 지침<sup>22)</sup>

#### 가) 인력 관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1~3급)을 소지하고 총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이수자 채용을 원칙으로 한

22) 시간제보육 교사 운영 지침은 시간제보육 매뉴얼(보건복지부, 2015) 참고함.

다. 이들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과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보건복지부, 2015).

한편,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관리자는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로, 보육교사 1급 자격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담당 업무는 시간제보육 이용자 상담 및 예약·취소 관리, 시간제보육 이용자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 제공기관 운영지원 홍보안내, 교사 채용 및 관리, 시간제보육과 관련된 업무 등이다(보건복지부, 2015).

## 2) 채용 방법

시간제보육은 전담교사를 별도로 둔다(보건복지부, 2015). 제공기관 중 71.1%가 시간제 전담교사를 별도 채용하고, 나머지 28.1%는 기관에 재직 중인 일반교사를 시간제보육반 교사로 전환하였다.

〈표 III-3-9〉 시간제보육 전담교사 채용 방법

구분	시간제 전담교사 별도 채용	일반 교사 중 시간제보육반 교사로 변경	기타	단위: %(개소)
				계(수)
전체	71.1	28.1	0.7	100.0(135)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73.9	23.9	2.2	100.0( 46)
민간/법인단체등	62.8	37.2	-	100.0( 43)
가정	47.6	52.4	-	100.0( 21)
육아종합지원센터	100.0	-	-	100.0( 25)
지역규모				
대도시	76.5	22.1	1.5	100.0( 68)
중소도시	65.3	34.7	-	100.0( 49)
읍면지역	66.7	33.3	-	100.0( 18)
운영 반수				
1개반	67.8	31.4	0.8	100.0(121)
2개반 이상	100.0	-	-	100.0( 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제공기관별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모두 시간제보육 전담교사를 별도 채용였고, 어린이집 20~50%는 일반 교사를 시간제보육 전담교사로 전환하였다. 가정은 일반교사를 시간제보육교사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고, 국공립/법인/직장과 민간/법인단체등어린이집도 20~40% 정도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타 지역보다 별도 채용한 경우가 많았다(표 III-3-9 참조).

### 3)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 대 영아 비율은 1:5이고, 24개월 미만, 장애아 등이 예약한 경우에는 1:3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제보육반은 초과보육을 허용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15).

교사 대 아동비율(1:5)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43.8%이다. 2014년 36.5%보다 7%p 정도 상승하였다.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2.4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제공기관이나 지역규모, 운영 반수별로도 큰 차이없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50% 내외로 저조하였다(표 III-3-10 참조).

### 4) 교사 기준

시간제보육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기준에 대해 92.6%가 적절하다고 하였고, 적절성 점수는 5점 척도로 평균 3.4점이다(표 III-3-10 참조)

〈표 III-3-10〉 시간제보육 교사 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경력 3년 이상			교사 대 아동 비율(1:5)			(수)
	적절한 편	매우 적절	5점 평균	적절한 편	매우 적절	5점 평균	
전체	45.9	46.7	3.4	31.9	11.9	2.4	(135)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43.5	45.7	3.3	30.4	4.3	2.2	( 46)
민간/법인단체등	46.5	46.5	3.3	27.9	14.0	2.4	( 43)
가정	66.7	23.8	3.1	52.4	4.8	2.5	( 21)
육아종합지원센터	32.0	68.0	3.7	24.0	28.0	2.8	( 25)
F			2.7*			2.6	
지역규모							
대도시	44.1	45.6	3.3	29.4	10.3	2.4	( 68)
중소도시	55.1	40.8	3.4	34.7	16.3	2.6	( 49)
읍면지역	27.8	66.7	3.6	33.3	5.6	2.2	( 18)
F			0.8			1.4	
운영 반수							
1개반	48.8	43.8	3.3	31.4	12.4	2.4	(121)
2개반 이상	21.4	71.4	3.6	35.7	7.1	2.4	( 14)
t			-1.6			0.2	
2014년	44.2	42.3	3.3	25.0	11.5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서문화·양미선(2014).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육진흥원-육아정책연구소.

\*  $p < .05$

2014년 조사보다 적절하는 비율과 적절성 점수 모두 상승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평균 3.7점, 가정어린이집이 평균 3.1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5) 교육 이수

영아 보육 특별직무교육 이수에 대해 43.8%가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2.4점으로 중간 정도이다. 2014년 조사와 비교하여 적절하다는 의견이 감소하였다. 제공기관이나 지역규모, 운영 반수별로도 30~60% 정도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정어린이집 간에 적절성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III-3-11 참조).

〈표 III-3-11〉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이수의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적절한 편	매우 적절	5점 평균	(수)	구분	적절한 편	매우 적절	5점 평균	(수)
전체	31.9	11.9	2.4	(135)					
제공기관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법인/직장	30.4	4.3	2.2	(46)	대도시	29.4	10.3	2.4	(68)
민간/법인단체등	27.9	14.0	2.4	(43)	중소도시	34.7	16.3	2.6	(49)
가정	52.4	4.8	2.5	(21)	읍면지역	33.3	5.6	2.2	(18)
육아종합지원센터	24.0	28.0	2.8	(25)	F			1.4	
F			2.6*		운영 반수				
					1개반	31.4	12.4	2.4	(121)
					2개반 이상	35.7	7.1	2.4	(14)
					t			0.2	
2014년	25.0	11.5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서문화양미선(2014).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육진흥원-육아정책연구소.

\*  $p < .05$

<표 III-3-12>는 시간제보육 교사의 영아보육 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45.8%만 채용 전 영아보육 직무교육을 이수하였고, 37.3%는 채용 후 이수, 16.9%는 이수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보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채용 전에 이수한 경우가 많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교사들은 채용 후 이수한 경우가 많고, 가정은 이수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타 기관보다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도 대도시는 채용 후 이수하였다는 비율이 높고, 중소도시는 이수하지 않은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III-3-12〉 영아보육 교육 이수 여부

단위: %(명)

구분	채용 전 직무교육 이수	채용 후 직무교육 이수	이수하지 않음	계(수)	X <sup>2</sup> (df)
전체	45.8	37.3	16.9	100.0(142)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36.7	49.0	14.3	100.0( 49)	15.5(6)*
민간/법인단체등	59.1	22.7	18.2	100.0( 44)	
가정	60.0	15.0	25.0	100.0( 20)	
육아종합지원센터	31.0	55.2	13.8	100.0( 29)	
지역규모					
대도시	37.8	47.3	14.9	100.0( 74)	7.5(4)
중소도시	55.3	23.4	21.3	100.0( 47)	
읍면지역	52.4	33.3	14.3	100.0( 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전담 교사조사」 결과임.

\*  $p < .05$

## 6) 지원 인력

### 가) 추가 인력

제공기관이 시간제보육으로 보육교사 외에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대다수 기관이 추가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고, 일부 기관에서 보조교사, 청소 인력, 운영 도우미 등을 채용하고 있었다(표 III-3-13 참조).

〈표 III-3-13〉 추가 채용 인력

단위: %(명)

구분	보조교사	운영도우미	청소 인력	기타	추가 인력 없음	계(수)
전체	7.4	2.2	3.7	4.4	83.0	100.0(135)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8.7	-	-	-	91.3	100.0( 46)
민간/법인단체등	2.3	2.3	-	4.7	93.0	100.0( 43)
가정	14.3	4.8	4.8	4.8	71.4	100.0( 21)
육아종합지원센터	8.0	4.0	16.0	12.0	60.0	100.0( 25)
지역규모						
대도시	10.3	2.9	5.9	4.4	76.5	100.0( 68)
중소도시	6.1	2.0	2.0	6.1	85.7	100.0( 49)
읍면지역	-	-	-	-	100.0	100.0( 18)
운영 반수						
1개반	6.6	2.5	3.3	4.1	84.3	100.0(121)
2개반 이상	14.3	-	7.1	7.1	71.4	100.0( 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제공기관별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청소인력과 기타 인력을 채용한 경우가 각각 16.0%, 12.0%, 가정과 국공립/법인/직장 어린이집은 보조교사가 각각 14.3%, 8.7%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이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 나)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대체교사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시간제보육 교사의 대체교사 지원 기준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휴가 등의 이유로 시간제보육 교사의 근무가 어려운 경우, 대체교사 지원을 받은 기관은 29.6%로 1/3 정도이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8.0%로 높지만, 어린이집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공립/법인/직장이 34.8%, 가정 19.0%, 민간/법인단체등 7.0%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 대도시가 높고, 운영 반수가 많은 경우 지원받았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Ⅲ-3-14 참조).

〈표 Ⅲ-3-14〉 대체교사 지원 여부 및 미지원 시 시간제보육 담당자

단위: %(명)

구분	대체교사 지원		대체교사 미지원 시 시간제보육 담당자					계(수)
	있다 비율	(수)	보조교사	일반반 보육교사	원장	관리자	기타	
전체	29.6	(135)	12.6	13.7	44.2	12.6	16.8	100.0(95)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34.8	(46)	26.7	16.7	36.7	6.7	13.3	100.0(30)
민간/법인단체등	7.0	(43)	7.5	15.0	52.5	-	25.0	100.0(40)
가정	19.0	(21)	5.9	11.8	58.8	11.8	11.8	100.0(17)
육아종합지원센터	68.0	(25)	-	-	-	100.0	-	100.0(8)
지역규모								
대도시	44.1	(68)	15.8	15.8	44.7	7.9	15.8	100.0(38)
중소도시	20.4	(49)	10.3	12.8	43.6	15.4	17.9	100.0(39)
읍면지역	-	(18)	11.1	11.1	44.4	16.7	16.7	100.0(18)
운영 반수								
1개반	27.3	(121)	10.2	14.8	46.6	10.2	18.2	100.0(88)
2개반 이상	50.0	(14)	42.9	-	14.3	42.9	-	100.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대체교사 미지원 시 시간제보육반은 원장이 담당하였다는 비율이 44.2%로 높고, 일반반 보육교사와 보조교사, 관리자 등이 각각 13% 내외로 비등하였다. 제공기관별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리자가 담당하고, 민간/법인단체등과

가정어린이집 절반 정도는 원장,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조교사가 맡는 경우가 많았다. 운영반에 따라서는 2개반 이상은 보조교사 1개 받은 원장이 대체하고 있다(표 Ⅲ-3-14 참조).

7) 수당

시간제보육 전담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5.9%로 소수이었다 주로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이나 대도시, 2개반 이상 운영하는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Ⅲ-3-15 참조).

〈표 Ⅲ-3-15〉 시간제보육 전담교사 수당 지급 여부

				단위: %(명)			
구분	지급	미지급	계(수)	구분	지급	미지급	계(수)
전체	5.9	94.1	100.0(135)				
제공기관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법인/직장	13.0	87.0	100.0( 46)	대도시	11.8	88.2	100.0( 68)
민간/법인단체등	2.3	97.7	100.0( 43)	중소도시	-	100.0	100.0( 49)
가정	-	100.0	100.0( 21)	읍면지역	-	100.0	100.0( 18)
육아종합지원센터	4.0	96.0	100.0( 25)	반수			
				1개반	3.3	96.7	100.0(121)
				2개반 이상	28.6	71.4	100.0( 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사. 재정 운영

1) 지원 기준<sup>23)</sup>

가) 인건비 및 운영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리모델링비가 지원된다. 인건비 및 운영비의 경우 지원조건과 인건비 지원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제보육 교사가 1일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인 경우, 국공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호봉별 단가 100%와 4대 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4호봉 단가와 4대 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교사수당 18만원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7만원이 별도 지원된다

23) 시간제보육 운영 매뉴얼(보건복지부, 2015) 참고함.

운영비는 1개반 기준 월 32만원 리모델링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 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정부 기관에 한하여 개소당 2천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5).

〈표 III-3-16〉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원기준

구분	세부 지원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 -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인건비	- 국공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호봉별 단가100% 지원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4호봉 단가 지원,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7만원 별도 지원(요건 충족 시)
	운영비	- 월 32만원 (1개반 기준)
리모델링비	-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정부 기관에 한하여 별도 선정	

자료: 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표 III-3-17〉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지원기준

구분	2015년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관리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다만 지역 내 최초 제공기관 서비스 개시 전월부터 지원 가능)
	인건비	- 지원단가 :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호봉),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운영비	- 월 50만원(1기관) ※ 단, 1곳의 관리기관이 여러 개의 제공기관을 관리하며, 원거리 출장비 등으로 월 50만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호봉)을 적용하되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일 때 해당된다. 관리기관에는 월 5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5).

나) 보육료

시간제보육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6~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별 이용 및 지원시간의 운영기준은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된다(표 III-3-18 참조).

〈표 III-3-18〉 시간제보육 운영 및 지원기준

구 분	시간제보육		
	기본형	맞벌이형	
대상연령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		
이용 부모	양육수당 수급자인 가정양육 가구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지원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보 육 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2천원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	시간당 1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시간제보육 기본형은 양육수당 수급자인 가정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월 40시간의 시간이 제공되며 시간당 4천원의 보육료를 정부와 부모가 각각 2천원씩 부담한다.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맞벌이형은 월 80시간의 시간을 제공한다. 시간당 4천원의 보육료 중 3천원은 정부지원금, 1천원은 부모부담금이다. 단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보건복지부, 2015).

다) 예산

시간제보육의 지원 예산은 2015년 기준 7,507백만원이다. 2013년 일시보육 시범사업과 2014년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시 각각 38억원 정도가 배정되었으나 본 사업 전환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지원 예산이 두배 가까이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각 년도).

〈표 III-3-19〉 시간제보육 예산

구분	2013	2014	2015
시간제보육	3,800	3,800	7,507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2) 수입 및 지출

시간제보육 기관의 월 보육료 수입은 평균 61만원이다. 구간별로 25만원 미만이 31.3%, 다음으로 25~50만원 미만이 23.1%, 100만원 이상이 18.7%, 50~75만원 미만은 15.7%, 75~100만원 미만은 11.2% 순이다. 제공기관별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04.1만원으로 가장 많고, 민간/법인단체 등과 가정이 30만원 선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구간별로는 민간/법인단체 등은 25만원 미만이 50%,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00만원 이상이 52.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지역규모별로도 대도시가 76.1%,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40만원대로 차이를 보였고, 대도시는 100만원 이상이 27.9%로 1/3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운영반 수가 1개 반보다 2개반 이상 운영하는 경우 보육료 수입이 3배 이상 많았다(표 III-3-20 참조).

〈표 III-3-20〉 시간제 보육 월 보육료 수입

구분	25만원 미만	25~50만원 미만	50~75만원 미만	75~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1.3	23.1	15.7	11.2	18.7	100.0(134)	61.0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28.3	15.2	21.7	10.9	23.9	100.0(46)	74.4
민간/법인단체등	50.0	31.0	7.1	9.5	2.4	100.0(42)	31.8
가정	38.1	28.6	23.8	9.5	-	100.0(21)	39.3
육아종합지원센터	-	20.0	12.0	16.0	52.0	100.0(25)	104.1
$X^2(df)/F$							14.0***
지역규모							
대도시	23.5	14.7	20.6	13.2	27.9	100.0(68)	76.1
중소도시	37.5	31.3	12.5	10.4	8.3	100.0(48)	46.2
읍면지역	44.4	33.3	5.6	5.6	11.1	100.0(18)	41.5
$X^2(df)/F$							5.5**
반수							
1개반	35.0	25.8	17.5	11.7	10.0	100.0(120)	48.3
2개반 이상	-	-	-	7.1	92.9	100.0(14)	164.3
$X^2(df)/t$							-6.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표 III-3-21>는 시간제보육료 수입의 주 사용처를 조사한 것이다. 사업운영비와 관리운영비가 각각 70%로 많고, 다음으로 시설비 43.3%, 인건비 15%, 임대료 5.5% 순이다. 제공기관별로 보육료 사용처가 다소 상이하였다. 국공립/법인/직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업운영비로 주로 지출하지만, 민간/법인단체등과 가정은 관리운영비 지출이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사업운영비나 관리운영비, 읍면지역일수록 시설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운영반수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2개반 이상 운영하는 기관이 시설비나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임대료 등으로 지출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III-3-21> 시간제보육료 주 사용처

단위: %(명)

구분	시설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임대료	기타	(수)
전체	43.3	15.0	70.1	74.0	5.5	13.4	(127)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40.5	11.9	71.4	90.5	-	9.5	( 42)
민간/법인단체등	46.3	7.3	73.2	53.7	7.3	14.6	( 41)
가정	42.1	26.3	78.9	68.4	10.5	21.1	( 19)
육아종합지원센터	44.0	24.0	56.0	84.0	8.0	12.0	( 25)
지역규모							
대도시	45.5	22.7	71.2	80.3	4.5	10.6	( 66)
중소도시	36.4	9.1	70.5	72.7	4.5	20.5	( 44)
읍면지역	52.9	-	64.7	52.9	11.8	5.9	( 17)
반수							
1개반	41.6	15.0	69.0	72.6	4.4	12.4	(113)
2개반 이상	57.1	14.3	78.6	85.7	14.3	21.4	( 14)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 아. 운영 애로 및 요구

### 1) 효과성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부모가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마련,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 내 양육 부모 지원, 시간제 취업 부모 지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시간제보육의 부모가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마련에의 효과성에 대해 71.1%가 효과적이라고 했고, 5점 척도로 평균 3.9점이다.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

의 부모 지원에 대해서도 82.2%가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평균 4.1점이다. 시간제 취업 부모 지원은 68.9%만 효과가 있다고 보았고, 평균 3.8 점으로 앞서 살펴본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제공기관 유형이나 지역규모, 운영 반수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III-3-22〉 시간제보육 서비스 효과성

단위: %(명), 점

구분	부모가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마련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양육 부모 지원			시간제 취업 부모 지원			계(수)
	효과적	매우 효과적	5점 평균	효과적	매우 효과적	5점 평균	효과적	매우 효과적	5점 평균	
전체	48.9	22.2	3.9	49.6	32.6	4.1	39.3	29.6	3.8	100.0(135)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50.0	17.4	3.7	41.3	39.1	4.1	43.5	28.3	3.9	100.0( 46)
민간/법인단체등	39.5	30.2	3.9	51.2	27.9	4.0	32.6	30.2	3.7	100.0( 43)
가정	61.9	19.0	4.0	52.4	33.3	4.1	33.3	38.1	4.0	100.0( 21)
육아종합지원센터	52.0	20.0	3.9	60.0	28.0	4.2	48.0	24.0	3.9	100.0( 25)
$X^2(df)/F$			0.5			0.5			0.8	
지역규모										
대도시	52.9	14.7	3.7	50.0	30.9	4.1	44.1	25.0	3.8	100.0( 68)
중소도시	46.9	26.5	4.0	44.9	34.7	4.0	34.7	34.7	3.9	100.0( 49)
읍면지역	38.9	38.9	4.2	61.1	33.3	4.3	33.3	33.3	3.8	100.0( 18)
$X^2(df)/F$			2.6			0.5			0.1	
반수										
1개반	46.3	22.3	3.8	48.8	31.4	4.0	37.2	29.8	3.8	100.0(121)
2개반 이상	71.4	21.4	4.1	57.1	42.9	4.4	57.1	28.6	4.1	100.0( 14)
$X^2(df)/t$			-1.9			-1.6			-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 2) 운영의 어려움

### 가)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운영 어려움을 10개 차원으로 조사하였다. 홍보, 이용자 확보, 회계관리 및 정리 등은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보다 있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영역별로 보면, 홍보의 어려움이 43.7%로 높고, 그 정도도 5점 척도로 평균 3.4점으로 높았다. 이용자 확보의 어려움은 42.2%로 높은 편이나 어려움 정도는 평균 3.1점으로 홍보나 회계관리 및 정리의 어려움보다는 다소 낮았다. 회계관리 및 정리의 어려움은 37.8% 정도이고, 어려움 정도는 평균 3.2 점이었다.

<표 III-3-23> 시간제보육 운영의 어려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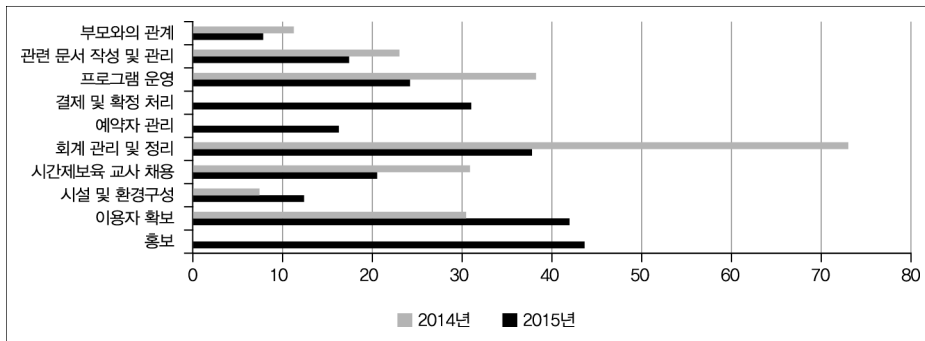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없음	어려움 없음	보통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계(수)	5점 평균	2014년
홍보	4.4	16.3	35.6	25.2	18.5	100.0(135)	3.4	-
이용자 확보	8.1	20.7	28.9	32.6	9.6	100.0(135)	3.1	2.8
시설 및 환경구성	20.0	45.2	22.2	11.1	1.5	100.0(135)	2.3	2.2
시간제보육 교사 채용	13.3	32.6	33.3	16.3	4.4	100.0(135)	2.7	2.8
회계 관리 및 정리	5.2	26.7	30.4	23.0	14.8	100.0(135)	3.2	4.0
예약자 관리	12.6	37.8	33.3	11.1	5.2	100.0(135)	2.6	-
결제 및 확정 처리	9.6	35.6	23.7	23.7	7.4	100.0(135)	2.8	-
프로그램 운영	5.9	35.6	34.1	16.3	8.1	100.0(135)	2.9	2.9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	5.9	41.5	34.8	13.3	4.4	100.0(135)	2.7	2.6
이용 부모와의 관계	11.9	48.9	31.1	5.9	2.2	100.0(135)	2.4	2.3

주: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많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서문화·양미선(2014).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육진흥원·육아정책연구소



[그림 III-3-1] 시간제보육 운영의 어려움 개요: 기관장

<표 III-3-24>는 시간제보육 운영의 어려움을 제 특성별로 분석한 것이다. 10개 영역 중 홍보 및 이용자 확보만 제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홍보는 민간/법인단체 등이 5점 척도로 평균 4.0점으로 가장 높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평균 2.7점으로 차이가 유의하였다. 운영 반수별로도 1개 반을 운영하는 기관이 2개 반 운영 기관보다 홍보에 대한 어려움이 컸다

이용자 확보도 제공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다. 가정어린이집은 5점 평균 3.5점으로 높은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2.4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운영 반수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2개반 이상보다 1개 반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용자 확보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표 III-3-24 참조).

〈표 III-3-24〉 시간제보육 운영의 어려움 1

단위: %(명), 점

구분	홍보			이용자 확보			시설 및 환경구성			교사 채용			계(수)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5점 평균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5점 평균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5점 평균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5점 평균	
전체	25.2	18.5	3.4	32.6	9.6	3.1	11.1	1.5	2.3	16.3	4.4	2.7	100.0(135)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15.2	13.0	3.1	26.1	4.3	2.9	10.9	2.2	2.4	19.6	4.3	2.7	100.0( 46)
민간 법인단체등	27.9	34.9	4.0	41.9	16.3	3.7	7.0	2.3	2.3	7.0	4.7	2.6	100.0( 43)
가정	42.9	19.0	3.6	52.4	9.5	3.5	23.8		2.6	14.3	4.8	2.6	100.0( 21)
육아종합지원센터	24.0		2.7	12.0	8.0	2.4	8.0		1.9	28.0	4.0	2.8	100.0( 25)
X <sup>2</sup> (df)/F			10.9 <sup>**</sup>			11.0 <sup>**</sup>			2.1			0.3	
지역규모													
대도시	23.5	19.1	3.3	29.4	11.8	3.1	8.8		2.3	20.6	5.9	2.9	100.0( 68)
중소도시	22.4	16.3	3.4	32.7	8.2	3.2	14.3		2.3	12.2	4.1	2.5	100.0( 49)
읍면지역	38.9	22.2	3.6	44.4	5.6	3.3	11.1	11.1	2.4	11.1		2.3	100.0( 18)
X <sup>2</sup> (df)/F			0.5			0.2			0.1			2.8	
반수													
1개반	25.6	20.7	3.5	34.7	10.7	3.2	9.9	1.7	2.3	13.2	5.0	2.6	100.0(121)
2개반 이상	21.4		2.5	14.3		2.3	21.4		2.2	42.9		3.0	100.0( 14)
X <sup>2</sup> (df)/t			3.2 <sup>**</sup>			3.2 <sup>**</sup>			0.3			-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표 III-3-25〉 시간제보육 운영의 어려움 2

단위: %(명), 점

구분	회계 관리·정리			예약자 관리			결제 및 확정처리			프로그램 운영			계(수)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5점 평균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5점 평균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5점 평균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5점 평균	
전체	23.0	14.8	3.2	11.1	5.2	2.6	23.7	7.4	2.8	16.3	8.1	2.9	100.0(135)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26.1	19.6	3.3	15.2	6.5	2.7	26.1	8.7	3.0	10.9	10.9	2.9	100.0( 46)
민간 법인단체등	16.3	20.9	3.3	11.6	4.7	2.5	34.9	7.0	3.0	14.0	14.0	3.0	100.0( 43)
가정	28.6	9.5	3.1	9.5	4.8	2.8	9.5	9.5	2.8	28.6		2.9	100.0( 21)
육아종합지원센터	24.0		2.7	4.0	4.0	2.3	12.0	4.0	2.3	20.0		2.6	100.0( 25)
X <sup>2</sup> (df)/F			2.1			1.3			2.4			1.0	
지역규모													
대도시	20.6	11.8	3.0	11.8	7.4	2.6	11.8	10.3	2.6	14.7	4.4	2.7	100.0( 68)
중소도시	24.5	18.4	3.2	10.2	4.1	2.6	34.7	6.1	3.1	22.4	8.2	2.9	100.0( 49)
읍면지역	27.8	16.7	3.4	11.1		2.3	38.9		2.8	5.6	22.2	3.1	100.0( 18)
X <sup>2</sup> (df)/F			1.0			0.7			2.4			1.0	
반수													
1개반	20.7	15.7	3.1	11.6	5.8	2.6	22.3	6.6	2.8	14.0	8.3	2.8	100.0(121)
2개반 이상	42.9	7.1	3.2	7.1		2.3	35.7	14.3	3.1	35.7	7.1	3.1	100.0( 14)
X <sup>2</sup> (df)/t			-0.2			1.2			-0.8			-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회계관리 및 정리, 예약자 관리, 결제 및 확정처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어려움을 제 특성별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국공립/법인/직장과 민간/법인단체 등이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고 있었다. 제공기관별로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의 어려움도 살펴보았다. 가정어린이집은 5점 평균 2.7점으로 높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평균 2.2점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지역규모나 운영 반수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Ⅲ-3-26 참조).

〈표 Ⅲ-3-26〉 시간제보육 운영의 어려움 3

단위: %(명), 점

구분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			이용 부모와의 관계			계(수)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5점평균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5점평균	
전체	13.3	4.4	2.7	5.9	2.2	2.4	100.0(135)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15.2	6.5	2.8	6.5	4.3	2.4	100.0( 46)
민간/법인단체등	18.6	4.7	2.8	7.0	2.3	2.4	100.0( 43)
가정	4.8	4.8	2.7	4.8	-	2.5	100.0( 21)
육아종합지원센터	8.0	-	2.2	4.0	-	2.2	100.0( 25)
X <sup>2</sup> (df)/F			3.0 <sup>*</sup>			0.7	
지역규모							
대도시	8.8	2.9	2.6	5.9	1.5	2.4	100.0( 68)
중소도시	18.4	6.1	2.7	8.2	2.0	2.5	100.0( 49)
읍면지역	16.7	5.6	2.9	-	5.6	2.2	100.0( 18)
X <sup>2</sup> (df)/F			0.8			0.6	
반수							
1개반	12.4	5.0	2.7	6.6	2.5	2.4	100.0(121)
2개반 이상	21.4	-	2.4	-	-	2.2	100.0( 14)
X <sup>2</sup> (df)/t			1.1			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 p < .05

나) 시간제보육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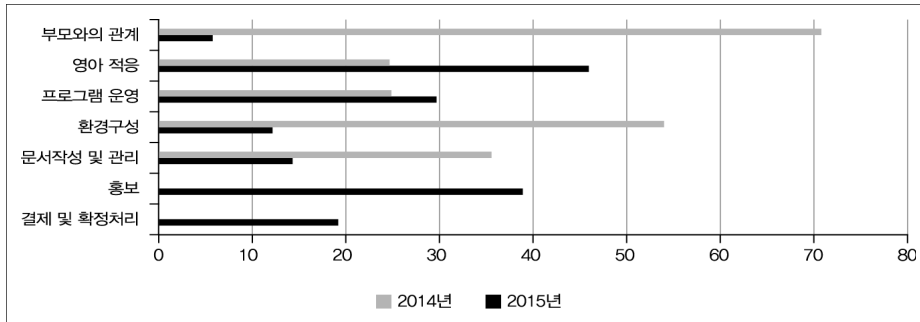
시간제보육 교사에게도 부모와의 관계, 영아 적응, 프로그램 운영, 환경 구성, 문서작성 및 관리, 홍보, 결제 및 확정처리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시간제보육 교사는 영아 적응의 어려움이 45.8%, 홍보가 38.8%, 프로그램 운영 29.6%, 결제 및 확정처리 19.0%, 나머지는 10% 내외 정도이었다.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영아 적응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이 평균 3점 이상으로 시간제보육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항목으로 지적되었고, 나머지는 3점 미만 수준이었다(표 Ⅲ-3-27 참조).

〈표 III-3-27〉 시간제보육 운영의 어려움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없음	어려움 없음	보통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계(수)	평균	2014
부모와의 관계	11.3	50.7	32.4	5.6	-	100.0(142)	2.3	3.8
영아 적응	2.1	16.2	35.9	35.9	9.9	100.0(142)	3.4	2.7
프로그램 운영	1.4	28.2	40.8	21.1	8.5	100.0(142)	3.1	2.8
환경 구성	7.7	45.1	35.2	10.6	1.4	100.0(142)	2.5	3.5
문서작성 및 관리	7.7	35.9	42.3	11.3	2.8	100.0(142)	2.7	3.2
홍보	5.6	19.7	35.9	28.9	9.9	100.0(142)	3.2	-
결제 및 확정처리	15.5	35.2	30.3	14.8	4.2	100.0(142)	2.6	-

주: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많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전담 교사조사」 결과임.  
 서문화·양미선(2014).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육진흥원·육아정책연구소.



〔그림 III-3-2〕 시간제보육 운영의 어려움 개요: 시간제 보육교사

〈표 III-3-28〉 시간제보육 담당교사의 어려움 1

단위: %(명), 점

구분	부모와의 관계			영아 적응			프로그램 운영			환경 구성			계(수)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5점 평균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5점 평균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5점 평균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5점 평균	
전체	5.6	-	2.3	35.9	9.9	3.4	21.1	8.5	3.1	10.6	1.4	2.5	100.0(142)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4.1	-	2.2	22.4	14.3	3.2	16.3	10.2	3.0	8.2	2.0	2.4	100.0( 49)
민간/법인단체등	4.5	-	2.5	34.1	11.4	3.4	20.5	6.8	3.0	13.6	2.3	2.7	100.0( 44)
가정	15.0	-	2.4	60.0	5.0	3.6	20.0	5.0	3.1	10.0	-	2.5	100.0( 20)
육아종합지원센터	3.4	-	2.2	44.8	3.4	3.3	31.0	10.3	3.2	10.3	-	2.4	100.0( 29)
$X^2(df)/F$			2.0			0.7			0.3			1.0	
지역규모													
대도시	5.4	-	2.2	31.1	12.2	3.3	20.3	6.8	2.9	9.5	-	2.4	100.0( 74)
중소도시	6.4	-	2.4	42.6	10.6	3.5	19.1	10.6	3.2	12.8	2.1	2.7	100.0( 47)
읍면지역	4.8	-	2.4	38.1	-	3.1	28.6	9.5	3.3	9.5	4.8	2.6	100.0( 21)
$X^2(df)/F$			1.6			1.3			1.7			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전담 교사조사」 결과임.



<표 III-3-28>에서 <표 III-3-29>는 제 특성별 시간제보육 교사의 운영 애로를 나타낸다.

7개 영역 대부분 제공기관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어려움 정도가 유사하였으나 홍보만 제공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홍보의 어려움에 대해 민간/법인단체등과 가정 어린이집이 평균 3.6점, 3.7점으로 높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2.6점으로 차이가 유의하였다.

<표 III-3-29> 시간제보육 담당교사의 어려움 2

단위: %(명), 점

구분	문서작성 및 관리			홍보			결제 및 확정처리			계(수)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5점 평균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5점 평균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5점 평균	
전체	11.3	2.8	2.7	28.9	9.9	3.2	14.8	4.2	2.6	100.0(142)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10.2	2.0	2.5	18.4	6.1	2.9	12.2	4.1	2.5	100.0( 49)
민간/법인단체등	9.1	4.5	2.9	38.6	18.2	3.6	25.0	4.5	2.8	100.0( 44)
가정	-	-	2.5	55.0	10.0	3.7	10.0	-	2.4	100.0( 20)
육아종합지원센터	24.1	3.4	2.7	13.8	3.4	2.6	6.9	6.9	2.4	100.0( 29)
X <sup>2</sup> (df)			1.4			9.4***			1.1	
지역규모										
대도시	10.8	1.4	2.5	27.0	8.1	3.1	13.5	5.4	2.5	100.0( 74)
중소도시	8.5	6.4	2.8	31.9	12.8	3.4	14.9	2.1	2.6	100.0( 47)
읍면지역	19.0	-	2.8	28.6	9.5	3.2	19.0	4.8	2.7	100.0( 21)
X <sup>2</sup> (df)			1.6			1.3			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전담 교사조사」 결과임.

\*\*\* p < .001

### 3) 시간제보육 교사 근무만족도

시간제보육 교사의 근무만족도를 근로환경, 업무강도, 급여 및 처우 3개 항목으로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불만족보다 높았다

<표 III-3-30> 시간제보육교사 근무만족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 평균	2014년
근로환경	0.7	7.8	27.0	45.4	19.1	100.0(141)	3.7	3.7
업무강도	4.3	14.2	38.3	30.5	12.8	100.0(141)	3.3	3.3
급여 및 처우	2.8	6.4	31.9	43.3	15.6	100.0(141)	3.6	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전담 교사조사」 결과임.

서문화양미선(2014).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육진흥원-육아정책연구소.

먼저 근로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64.5%로 높고 다음으로 급여 및 처우 58.9%, 업무강도가 43.3%로 가장 낮았다.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여도 근로환경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높다. 2014년 조사와 비교하여 근로환경과 급여 및 처우 만족도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업무강도는 낮아졌다. 이는 이용자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다(표 Ⅲ-3-30 참조).

〈표 Ⅲ-3-31〉 시간제보육교사 근무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근로환경			업무강도			급여 및 처우			계(수)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전체	45.4	19.1	3.7	30.5	12.8	3.3	43.3	15.6	3.6	100.0(141)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44.9	20.4	3.8	30.6	10.2	3.3	40.8	16.3	3.7	100.0( 49)
민간/법인단체등	44.2	23.3	3.8	32.6	20.9	3.5	46.5	20.9	3.7	100.0( 43)
가정	50.0	10.0	3.7	40.0	10.0	3.5	55.0	10.0	3.7	100.0( 20)
육아종합지원센터	44.8	17.2	3.7	20.7	6.9	2.9	34.5	10.3	3.3	100.0( 29)
X <sup>2</sup> (df)/F			0.3			2.2			1.1	
지역규모										
대도시	41.9	21.6	3.7	28.4	13.5	3.3	40.5	14.9	3.6	100.0( 74)
중소도시	53.2	12.8	3.7	31.9	10.6	3.4	42.6	19.1	3.7	100.0( 47)
읍면지역	40.0	25.0	3.8	35.0	15.0	3.5	55.0	10.0	3.6	100.0( 20)
X <sup>2</sup> (df)/F			-			0.5			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전담 교사조사」 결과임.

<표 Ⅲ-3-31>은 시간제보육교사 근무만족도를 제 특성별로 분석한 것이다 먼저,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민간/법인단체등과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교사가 가장 높고,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업무강도와 급여 및 처우는 민간/법인단체등과 가정 어린이집과 읍면지역일수록 높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국공립/법인/직장의 경우 이용 아동수가 다른 기관에 비해 많아 업무강도에 대한 만족도가 40.8%, 27.6%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민간/법인단체 등과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일반교사가 시간제보육교사로 전환된 경우가 많고, 일반 교사보다 시간제보육교사 처우가 높기 때문에 급여 및 처우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 4) 향후 운영 계획

앞서 살펴본 운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

을 중단할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기관 중 78.5%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지만, 20%는 현재 운영 여부를 고민 중이고, 소수이나 1.5%는 앞으로 운영을 중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제공기관별로도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하였다. 특히 도시지역이나 1개 반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운영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III-3-32〉 시간제보육 계속 운영 여부

				단위: %(명)				
구분	계속 운영	운영 여부 고민 중	앞으로 중단 예정	계(수)	구분	계속 운영	운영 여부 고민 중	앞으로 중단 예정
전체	78.5	20.0	1.5	100.0(135)				
제공기관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법인/직장	73.9	23.9	2.2	100.0( 46)	대도시	77.9	20.6	1.5
민간 법인단체등	74.4	23.3	2.3	100.0( 43)	중소도시	77.6	20.4	2.0
가정	71.4	28.6	-	100.0( 21)	읍면지역	83.3	16.7	-
육아종합지원센터	100.0	-	-	100.0( 25)	반수			
					1개반	76.9	21.5	1.7
					2개반 이상	92.9	7.1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표 III-3-33〉 향후 운영 중단 이유

								단위: %(명)	
구분	홍보	이용자 확보	인력관리	결제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타	계(수)		
전체	3.4	31.0	6.9	17.2	17.2	24.1	100.0(29)		
제공기관 유형									
국공립/법인/직장	-	25.0	-	33.3	25.0	16.7	100.0(12)		
민간 법인단체등	9.1	36.4	18.2	9.1	-	27.3	100.0(11)		
가정	-	33.3	-	-	33.3	33.3	100.0( 6)		
육아종합지원센터	-	-	-	-	-	-	-		
지역규모									
대도시	-	40.0	6.7	20.0	13.3	20.0	100.0(15)		
중소도시	9.1	18.2	9.1	18.2	18.2	27.3	100.0(11)		
읍면지역	-	33.3	-	-	33.3	33.3	100.0( 3)		
반수									
1개반	3.6	32.1	7.1	17.9	14.3	25.0	100.0(28)		
2개반 이상	-	-	-	-	100.0	-	100.0( 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에 관한 기관장조사」 결과임.

시간제보육 운영에 대해 현재 고민 중이거나 운영 중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다. 이용자 확보가 31.0%로 가장 많고 결제 및 회계 관리와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운영이 각각 17.2%, 인력관리 6.9%, 홍보 3.4% 순이었다. 기타 이유도 24.1%로 많았다(표 Ⅲ-3-33 참조).

## 4. 정책 시사점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및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교사 근로조건 및 처우, 재정 지원 및 운영, 애로 및 요구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가. 시간연장보육

첫째, 시간연장보육은 기존 보육시간 외에 시간연장이 필요한 영유아에게만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 2013년 누리과정이 3~4 세로 확대로 시간연장 보육료가 전계층에게 지원되면서 이용 아동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시간연장보육은 부모의 근로시간 다양화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맞벌이 가구 자녀 비율은 평균 88.2% 정도이다. 장시간 보육은 영유아의 건강 및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장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연장보육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둘째, 모든 어린이집이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기보다 거점형 등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간연장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률이 2014년 기준 10.1%이다. 교사대 아동 비율이 1:5임을 감안할 때 한 어린이집당 1명 정도만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시간연장보육 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보육료를 감안할 때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셋째, 정원 내에서 타 기관 이용 아동을 보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추가 보육료 수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타 기관 이용 아동이 등원하기 시작하는 시각은 오후 18시에서 19시와 오후 17시와 18시 사이가 각각 38.2%, 32.6%로 기준 시작시간보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빨리 등원하고 있었다. 특히 민간개인과 지정어린이집의 경우 오후 17시 이전에 등원한다는 비율이 10%가 넘는다. 시간연

장보육 운영의 어려움으로 가정 24.1%와 민간개인 7.6%가 타 기관 이용 아동의 이른 등원을 꼽았고, 개선사항으로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 타 기관 이용 아동,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에는 오후 19시 30분까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받고, 유치원 이용 유아는 방과후과정이 끝나는 오후 17~18시까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시간연장보육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시간연장보육 관련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지원받은 교사는 10.3%로 소수이고, 지원을 받았어도 평균 1.3회이었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절반 가까이 되는 47.6%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시간연장보육 연수를 직무교육으로 개발하고, 담당교사 채용조건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간연장보육 관련 교사 연수에 참여한 비율은 43.3%로 절반이 안되고, 사회복지법인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는 20~30%대로 낮았다. 관련 연수를 이수한 경우 주관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61.2%로 가장 높고 어린이집 연합회 31.5%, 한국보육진흥원 25.4% 순이었다. 또한 시간연장보육 관련 교사연수 미참여 이유로 교사교육 관련 정보 부족이 23.8%, 교사교육 부재 26.7%, 교육 일정이 근무시간과 중복돼서 26.1%로 많았다.

여섯째, 시간연장보육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한다. 시간연장보육교사 중 대체교사를 지원받는 비율은 23.9%로 1/4이 안된다. 대체교사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54%는 원장, 39.7%는 종일반 교사가 담당하였다. 특히 가정과 민간개인은 원장이 많고, 국공립과 법인단체등은 종일반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일곱째, 단시간 시간연장보육교사 채용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시간연장보육교사 1일 근무시간은 평균 8시간 정도이다. 보통 오후 14시 이후에 출근하여 오후 22시에서 오후 23시 사이에 퇴근하였다. 시간연장반 교사가 출근하여 시간연장보육이 시작 전까지 맡은 업무는 시간연장반 활동 준비가 58.9%, 종일반 보조 업무 50.4%, 저녁 급간식 준비 34.0%, 하원 지도 및 차량지도, 행정업무처리, 청소 등 잡무가 10% 대로 대부분 종일반 지원 업무이었다. 정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여덟째, 시간연장 보육료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단가는 일반아동 시간당 2,800원, 장애아동 3,800원이며 월 60시간까지 지원할 경우, 각각 월 168,000원, 228,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시간연장보육 운영에 따라 운영비를 어린이집에서 추가 부담한다는 비율은 62.0%이고, 전체 운영비 중에서

18.2% 즉, 20%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다. 시간연장보육 운영의 어려움으로 45.6%가 운영비 추가 부담을 꼽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간연장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용 아동수는 정원대비 10% 정도에 그치므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지원받더라도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시간당 보육료 2,800원의 적절성에 대해 대다수인 94.4%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적정 금액으로 4,584원을 제시하였다.

## 나. 24시간보육

첫째, 24시간보육은 지정제에서 전문어린이집 형태로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개소 당 영유아 3명 정도만 보육하고 있다. 24시간 보육을 전문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운영에 61.0%가 찬성하였다. 찬성 이유는 24시간 보육 아동의 체계적인 관리가 30.8%,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 17.9%, 야간보육 시 안전 강화 12.8%이고, 반대 이유는 낙인효과 68.0%, 부모의 어린이집 접근성 저하 28.0%, 기타 4.0% 순이다.

둘째, 24시간보육 지정 시 전용보육실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4시간보육은 보육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기존 보육실을 그대로 이용하고, 25% 정도만 전용보육실이 있었다. 24시간보육은 낮 시간 동안의 보육활동과 다른 수면과 휴식이 추가 되므로 환경이 이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24시간 보육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익월 보육료 지원을 중단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24시간 보육료는 정부가 150% 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200% 까지 부모로부터 보육료를 추가 수납할 수 있다. 24시간 보육료 미납 및 연체된 경우는 42.2%로 절반 정도이고, 그 금액은 평균 141 만 7천원이다. 민간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이 미납 및 연체 경험이 있다는 어린이집이 54.2%로 높고, 미납 금액 역시 208만 2천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 다. 시간제보육

첫째, 시간제보육은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정부는 시군구에 1개소씩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설치하겠다는 목표 하에 제공기관수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시

간제보육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기관을 늘리고, 현재 운영 중인 기관은 접근성 및 보육환경, 서비스 질 등 평가를 거쳐 운영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시간제보육 운영 반수는 2개 반 이상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수를 늘리기보다는 제공기관의 시간제보육 반을 2개 반 이상으로 하여 운영에 효율성과 프로그램의 질 유지를 도모한다.

셋째, 시간제보육 지역사회 내 중심으로 활성화한다. 홍보방법으로 77.8% 가 리플릿 및 포스터 배포가 사용되었고, 홍보물 제작 56.3%, 현수막 및 홍보판과 홈페이지, 전화가 각각 40%대, 지역 맘 카페 30.4%, 가정 방문 및 거리 홍보 28.1%, 신문 20% 순이었다. 이 중에서 이용자 모집에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은 리플릿 및 포스터 배포로 47.0%이고, 홍보물 제작, 현수막 및 홍보판, 전화, 지역 맘카페 등이 각각 20%대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넷째, 보육일지는 시간제보육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로 개선한다. 시간제보육 교사 대다수가 보육일지를 매일 작성하지만, 이용 아동 예측의 어려움과 처음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많아서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섯째, 시간제보육 교육 및 모니터링을 정례화한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장 중 41.5% 정도가 시간제보육 관련 교육 및 모니터링이 질 제고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답하였다. 시간제보육 교사는 적합하다는 비율이 40.1%로 기관장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여섯째, 시간제보육 교사의 영아보육 직무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한다. 시간제보육교사 채용 기준으로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이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45.8%만 채용 전 영아보육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37.3%는 채용 후 이수, 16.9%는 이수하지 않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법인/직장은 이수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14% 내외이지만, 가정과 민간/법인단체등은 각각 25.0%, 18.2%로 높았다.

일곱째, 시간제보육 교사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한다. 휴가 등의 이유로 시간제보육 교사의 근무가 어려운 경우, 대체교사 지원을 받은 기관은 1/3 정도이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8.0%로 많지만, 어린이집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공립/법인/직장이 34.8%, 가정 19.0%, 민간/법인단체등 7.0%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 대도시가 높고, 운영반수가 많은 경우 지원받았다는 비율이 높았다.

## IV.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현황과 요구

제4장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관련 법 및 제도,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방과후과정 및 엄마품 돌봄교실 운영 기관장과 담당 교사의 애로 및 요구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운영 현황과 운영시간, 프로그램, 교사 근로조건 및 처우, 재정 지원 및 운영, 어려움 및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 1. 유치원 방과후과정

#### 가. 개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2 조는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에 따라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법제처 홈페이지 2015.2.26. 인출)<sup>24)</sup>.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은 종일반 또는 종일제로 불려왔다. 2005년 부터 시행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종일제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반일제는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 시간연장제는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홈페이지 2015.2.26. 인출). 2012년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개념이 삭제되고,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구분하여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 활동 및 돌봄활동을 방과후 과정으로 명확화하였다. 방과후과정은 명칭이 변경 되었으나 종전의 종일제와 운영방식은 동일하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

24) 유아교육법 제13조는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교육감은 방과후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7 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홈페이지).



방과후 과정(종일제)이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문서상으로 다루어진 것은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1992)이다.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은 종일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각 유치원에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993년 유치원 종일반이 시범 운영되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전국 공사립유치원으로서의 확대를 추진하였다(김은설 외, 2010). 1997년 말, 초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 유치원 수업과정의 하나로 종일제를 명시하여 종일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7)은 2004년에 제정한 유아교육법에 맞추어 하루의 교육과정은 반일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 등 다양한 교육시간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나. 운영 현황

1) 운영 및 이용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2014년 기준 총 8,577 개원으로 전체 유치원의 97.2%에 해당한다. 2007년 82.6%에서 2009년 95%를 상회하였고, 이후 97~98%대를 유지하고 있다(최은영 외, 2014). 이는 부모의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요구가 늘면서 방과후과정 운영률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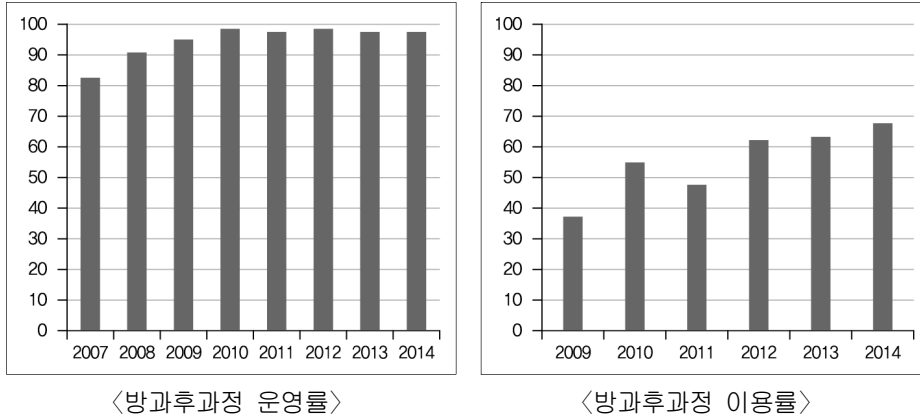
〈표 IV-1-1〉 방과후과정 운영율

단위: %(개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4	97.2	96.6	99.2	98.1	97.6	98.4	97.7	95.9	93.3	97.1	99.2	98.3	93.9	98.1	95.3	97.2	97.5	98.2
(수)	(8,577)	(854)	(392)	(368)	(402)	(303)	(259)	(188)	(28)	(2,074)	(382)	(338)	(475)	(516)	(525)	(696)	(665)	(112)
2013	98.0	97.1	98.7	99.7	97.3	96.9	99.6	99.0	96.0	97.7	99.7	97.9	98.4	97.3	95.1	98.9	99.1	98.2
2012	98.1	96.5	98.1	99.4	98.2	96.7	98.4	98.3	-	98.6	99.7	97.3	98.3	96.9	94.9	99.0	98.9	100.0
2011	97.6	95.6	97.0	99.7	97.1	96.5	95.0	99.4	-	98.1	99.5	97.4	98.3	100.0	95.3	98.3	99.0	99.1
2010	98.1	96.3	99.2	100.0	99.7	100.0	94.5	99.4	-	97.5	100.0	100.0	98.7	100.0	100.0	100.0	100.0	99.1
2009	95.5	92.2	99.7	99.7	99.5	100.0	81.1	99.4	-	96.6	86.5	92.0	97.5	100.0	98.6	99.0	88.6	99.1
2008	90.9	89.5	99.7	95.9	92.1	100.0	68.1	100.0	-	94.0	74.2	76.8	96.1	100.0	94.8	92.2	78.7	99.1
2007	82.6	84.5	98.4	72.2	71.4	95.3	52.7	46.3	-	85.6	44.6	58.8	88.7	100.0	55.8	60.1	68.3	90.1

주: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 =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수 / 총 유치원 수) × 100  
 자료: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3-2014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이를 시도별로 보면, 17개 시도 중 부산의 방과후과정 운영률이 99.2%로 가장 높고, 대구, 광주, 충북, 전북, 제주 지역은 98%대, 인천, 대전, 경기, 경북, 경남 지역은 97%, 나머지는 95~96% 정도이다(표 IV-1-1 참조).



[그림 IV-1-1] 연도별 방과후과정 운영률 및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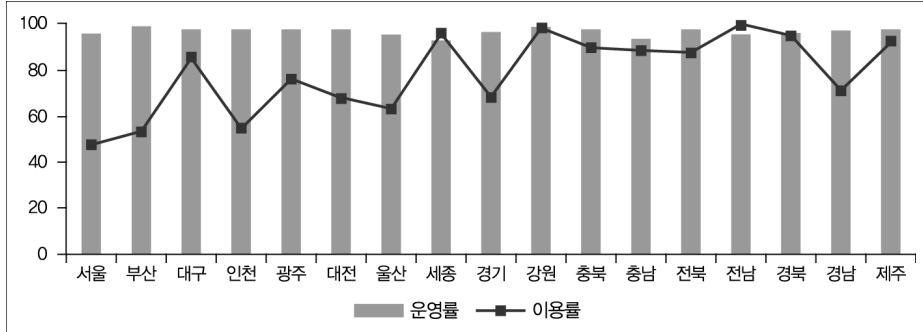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률은 2014년 기준 67.5%로 유치원 이용 유아 중 과반수 이상이 방과후과정을 이용하고 있다. 2006년 25.4%에서 2010년 54.8%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2년 60%대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2012년 5세 누리과정 시행되면서 방과후과정비가 전 계층에게 지원됨에 따라 이용 유아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시도별로는 전남과 강원이 98~99%로 이들 지역의 유치원 이용 유아 대부분이 방과후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2014년 기준 세종, 강원, 전남, 경북은 95% 이상의 유아들이 방과후과정을 이용하고 있다.

<표 IV-1-2> 방과후과정 이용률

단위: %, 명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4	67.5	47.5	52.9	85.5	54.6	76.2	68.8	63.8	96.6	69.0	98.7	90.9	89.2	88.1	99.4	96.0	71.4	92.4
유아수	40176	4360	2322	29548	22042	16975	17250	11819	1717	10495	15081	15892	23265	20517	18845	35781	34973	4894
2013	62.8	43.9	48.2	77.9	49.4	75.3	61.7	59.7	101.1	54.4	89.2	84.8	68.6	91.1	85.7	91.0	72.5	89.8
2012	62.0	37.7	47.5	64.2	39.0	67.0	53.1	50.0	-	50.2	80.9	81.4	68.1	90.2	85.7	76.4	71.0	83.6
2011	47.4	32.7	41.5	51.9	32.2	61.9	49.7	36.7	-	37.8	74.2	70.5	59.5	72.0	82.8	64.0	53.4	75.6
2010	54.8	33.1	34.7	38.5	28.6	60.2	44.0	32.4	-	34.2	65.3	60.7	81.3	81.6	86.8	72.3	46.9	76.0
2009	37.2	25.0	42.3	33.1	23.5	42.9	33.6	28.3	-	30.3	51.2	51.1	49.3	74.7	62.8	46.6	40.4	56.9
2006	25.4	14.9	16.8	13.8	17.1	21.6	11.5	11.5	-	25.3	29.4	40.4	37.4	34.6	31.4	13.4	21.2	66.0

주: 방과후 과정 이용률 = (방과후 과정 등록 취원아 수 / 총 취원아 수) × 100  
 자료: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3-2014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그림 IV-1-2] 시도별 방과후과정 운영률과 이용률: 2014년

## 2) 학급 편성 및 유아 수

방과후과정 학급 편성은 지역이나 유치원 실정에 따라 '독립편성 전일반' 또는 '오후 재편성 방과후과정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독립편성 전일반'은 일반 학급을 방과후 과정까지 연속하여 운영하는 학급이며, 오후 재편성 방과후 과정반은 일반 학급 유아를 대상으로 오후에 학급을 재편성하여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학급을 말한다(교육부, 2015).

본 조사에 참여한 유치원 중 59.7%가 오후 재편성반 형태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머지 중 37.2%는 독립편성 전일반, 3.1%는 독립편성 전일반과 오후 재편성반 둘다 운영하는 경우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공립 병설과 공립 단설은 독립 편성 전일반이 오후 재편성반보다 다소 많고, 사립은 주로 오후 재편성반으로 편성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일수록 독립편성 전일반 도시지역일수록 오후 재편성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과후과정의 학급 편성 유형별 학급수를 보면, 독립 편성 전일반은 평균 3.2 학급, 오후 재편성반은 평균 2.9학급으로 비슷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독립 편성반은 공립 단설이 5.3학급, 공립 병설이 1.6학급으로 공립 단설이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에서 독립편성 전일반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오후 재편성반은 공립단설이 공립병설보다,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많았다.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 수는 독립 편성 전일반이 평균 61.7명, 오후 재편성반이 평균 61.6명으로 비슷하였다. 독립 편성 전일반의 경우 공립 단설은 평균 110.6명, 공립 병설은 27.1명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도시지역이 많았다. 오후 재편성반은 공립 단설과 사립이 각각 70~80명 정도로 많고, 공립 병설이 25.8명

으로 이 또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독립편성 전일반과 동일하게 도시지역 유치원의 방과후과정반 이용 유아가 많았다(표 IV-1-3 참조).

〈표 IV-1-3〉 방과후과정반 학급 편성, 학급 및 유아 수

단위: %(개원), 학급, 명

구분	방과후과정반 학급 편성				학급 및 유아 수					
	독립 편성 전일반	오후 재편성 반	둘다 운영	계(수)	독립편성 전일반		오후 재편성반		합계	
					학급 수	총 유아 수	학급 수	총 유아수	학급 수	총 유아수
전체	37.2	59.7	3.1	100.0(452)	3.2	61.7	2.9	61.6	3.1	63.8
기관유형										
공립병설	52.9	44.5	2.6	100.0(155)	1.6	27.1	1.4	25.8	1.6	27.7
공립단설	57.7	42.3	-	100.0( 26)	5.3	110.6	4.2	79.8	4.8	97.6
사립	26.2	70.1	3.7	100.0(271)	4.6	89.5	3.3	73.7	3.8	81.3
X <sup>2</sup> (df)/F			-		81.6***	69.9***	32.8***	42.1***	90.1***	101.2***
지역규모										
대도시	15.3	81.6	3.1	100.0(163)	3.5	74.9	2.8	62.0	3.0	66.8
중소도시	38.5	57.4	4.1	100.0(148)	4.2	81.8	3.2	70.0	3.8	77.9
읍면지역	61.0	36.9	2.1	100.0(141)	2.5	43.1	2.5	46.9	2.5	45.6
X <sup>2</sup> (df)/F			-		12.4***	139***	2.7	4.6*	13.6***	18.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한편, 교사조사에서 방과후과정반 교사가 담당하는 학급은 오후 재편성반이 독립 편성 전일반보다 다소 많고, 공립 병설 교사는 독립 편성 전일반 공립 단설과 사립은 오후 재편성반을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도시지역 교사는 오후 재편성반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읍면지역은 독립 편성 전일반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과후과정반 연령 구성을 보면, 단일 연령과 혼합 연령 학급이 각각 50.7%, 49.3%로 비등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공립 병설은 혼합 연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만, 공립 단설은 단일 연령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사립은 단일 연령과 혼합 연령이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도시지역은 단일 연령 학급이 많지만 읍면지역은 혼합 연령이 많았다.

방과후과정 교사가 담당하는 유아는 평균 20.3명으로 사립이 23.0명 공립 단설 19.3명, 공립 병설 16.9명 순이다.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서 대도시가 23.5명, 중소도시 21.0명, 읍면지역 16.3명이었다(표 IV-1-4 참조).

〈표 IV-1-4〉 담당 학급유형 및 연령 구성, 학급 당 유아수

단위: %(개원), 명

구분	담당 학급유형			연령 구성			학급 당 유아수
	독립 편성 전일반	오후 재편성반	계(수)	단일연령	혼합연령	계(수)	
전체	43.1	56.9	100.0(371)	50.7	49.3	100.0(371)	20.3
기관 유형							
공립 병설	54.4	45.6	100.0(147)	36.1	63.9	100.0(147)	16.9
공립 단설	48.0	52.0	100.0( 25)	80.0	20.0	100.0( 25)	19.3
사립	34.2	65.8	100.0(199)	57.8	42.2	100.0(199)	23.0
X <sup>2</sup> (df)/F	14.4(2)**			25.2(2)***			40.8***
지역규모							
대도시	24.4	75.6	100.0(119)	52.1	47.9	100.0(119)	23.5
중소도시	44.9	55.1	100.0(136)	65.4	34.6	100.0(136)	21.0
읍면지역	60.3	39.7	100.0(116)	31.9	68.1	100.0(116)	16.3
X <sup>2</sup> (df)/F	31.3(2)***			28.3(2)***			39.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 3) 휴업일 및 토요일, 방학 운영 현황

방과후 과정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치원의 실정, 학부모의 요구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일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방학 중 운영은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교육부, 2015).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거점 형태의 ‘행복한 울타리 방과후과정 유치원(25)을 운영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3).

방학기간 중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은 85%로 다수이지만 토요일과 휴업일은 각각 15.0%, 6.2%로 일부이며 방학·토요일·휴업일 모두 운영하지 않는다는 유치원도 13.3%로 많았다. 방학기간 중 방과후과정 유치원은 공립 단설이 92.3%, 공립 병설 87.7%, 사립 82.7% 순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토요일은 사립이 22.5%로 운영률이 단연 높고, 공립 병설과 공립 단설은 3~7%로 극히 일부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토요일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휴업일은 공립 단설이 15.4%로 높고 공립 병설과 사립은 각각 7.7%, 4.4%로 저조하였다. 지역규모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25) 행복한 울타리 방과후 과정 유치원은 인근 유치원과 연계하여 토요일 및 방학 중(학년말 방학 포함)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권장한다(경기도교육청, 2013).

〈표 IV-1-5〉 휴업일, 토요일, 방학기간 중 방과후과정 운영 여부

단위: %(개원), 명

구분	운영 여부					운영 시 이용 유아수					
	휴업일	토요일	방학	모두 미운영	수	휴업일		토요일		방학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6.2	15.0	85.0	13.3	(452)	23.4	(28)	4.1	(68)	38.2	(384)
기관 유형											
공립 병설	7.7	3.2	87.7	11.0	(155)	9.8	(12)	1.0	(5)	21.5	(136)
공립 단설	15.4	7.7	92.3	7.7	(26)	22.8	(4)	3.5	(2)	74.8	(24)
사립	4.4	22.5	82.7	15.1	(271)	37.3	(12)	4.4	(61)	44.4	(224)
$X^2(df)/F$			-			1.5		0.5		54.1***	
지역규모											
대도시	5.5	26.4	87.1	10.4	(163)	22.8	(9)	4.2	(43)	44.2	(142)
중소도시	6.8	11.5	79.7	18.2	(148)	17.0	(10)	3.0	(17)	41.0	(118)
읍면지역	6.4	5.7	87.9	11.3	(141)	31.2	(9)	6.0	(8)	28.5	(124)
$X^2(df)/F$			-			0.3		0.5		9.9***	

주: 운영 여부는 중복 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01$ 

또한 방학기간, 토요일, 휴업일에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유아를 알아보았다. 방학기간에는 평균 38.2명, 토요일 평균 4.1명, 휴업일 평균 23.4명이었다. 방학기간은 공립 단설이 평균 74.8명으로 많고,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토요일은 사립과 공립 단설이 평균 4명 정도로 공립 단설은 규모에 비해 이용 아동수가 매우 적었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다소 많았다. 휴업일은 사립이 37.3명, 공립 단설 22.8명으로 공립 병설 9.8명보다 2~3배 가까이 많고, 특히 읍면지역 유아들이 휴업일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 다. 운영시간

방과후과정 운영시간은 방과후과정 담당교사가 배치된 경우 오후 18시 이후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 1) 시작시간

누리과정이 1일 3~4시간 운영해야 하므로, 방과후과정은 그 이후 시간부터 시작된다. 방과후과정 시작시간은 오후 14시에서 15시 사이가 51.3%, 오후 13시에서 14시가 42.9%로 거의 대부분이 오후 13시에서 15시 사이에 방과후과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기관별로 보면, 공립은 오후 13시에 시작하는 비율이 69.7%로 높지만, 공립 단설과 사립은 오후 14시에서 15시 사이가 각각 57.7%, 64.9%로 과반수이었다. 특히 사립 중 6.3%는 오후 15시 이후에 시작하기도 하였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오후 14시에서 15시 사이가 62.0%로 다수이나, 읍면 지역은 오후 13시에서 14시 사이가 53.2%, 중소도시는 오후 13시에서 14시 사이와 오후 14시에서 15시 사이가 각각 44.6%, 47.3%로 비등하였다(표 IV-1-6 참조).

〈표 IV-1-6〉 방과후과정반 시작시각

단위: %(개원)

구분	기관 유형			지역규모			전체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3:00 이전	3.9	-	1.1	0.6	2.7	2.8	2.0
13:00-14:00	69.7	42.3	27.7	32.5	44.6	53.2	42.9
14:00-15:00	26.5	57.7	64.9	62.0	47.3	43.3	51.3
15:00-16:00	-	-	5.9	4.9	4.7	0.7	3.5
16:00 이후	-	-	0.4	-	0.7	-	0.2
계(수)	100.0(155)	100.0(26)	100.0(271)	100.0(163)	100.0(148)	100.0(141)	100.0(4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2) 종료시각

방과후과정 종료시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오후 17시에서 18시 사이로 지역 교육청마다 그 기준이 다소 상이하다. 방과후과정을 마치는 시각은 오후 17시 이후 시간대별로 각각 25.9%, 29.0%, 24.6%로 일정 수의 유아가 하원하고 있었다(표 IV-1-7 참조).

〈표 IV-1-7〉 방과후과정반 종료시각

단위: %(개원)

구분	기관 유형			지역규모			전체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6:00 이전	1.9	-	0.4	0.6	-	2.1	0.9
16:00-17:00	25.8	3.8	6.3	1.8	12.8	25.5	12.8
17:00-18:00	42.6	34.6	15.5	8.0	33.1	39.0	25.9
18:00-19:00	21.9	26.9	33.2	34.4	31.1	20.6	29.0
19:00-20:00	3.2	30.8	36.2	36.8	22.3	12.8	24.6
20:00 이후	4.5	3.8	8.5	18.4	0.7	-	6.9
계(수)	100.0(155)	100.0(26)	100.0(271)	100.0(163)	100.0(148)	100.0(141)	100.0(4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기관유형별로는 공립 병설은 오후 17시에서 18 시 사이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립은 오후 19시에서 20시 사이가 36.2%, 오후 18시에서 19시 33.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대도시는 오후 18시 이후가 90%로 다수이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오후 17시에서 19시 사이에 50~60% 정도 된다

### 3) 주요 하원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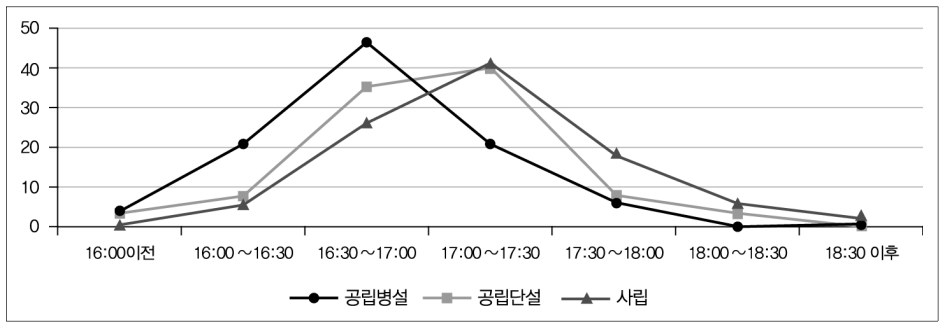
담당교사 대상으로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의 주 하원시각을 조사한 결과, 오후 16시 30분에서 17시, 오후 17시에서 17시 30분 사이가 각각 35.0%, 33.2%로 대다수의 유아가 이 시각에 하원하고 있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공립 병설은 오후 16시 30분에서 17시 사이에 절반 정도인 46.9%가 하원하고, 30분 전후로 각각 20% 정도의 유아가 하원하고 있었다. 공립 단설과 사립은 이보다 30분 늦은 오후 16시에서 17시 30분 사이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IV-1-8 참조).

〈표 IV-1-8〉 방과후과정 주요 하원시간

단위: %(명)

구분	기관 유형			지역규모			전체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6:00 이전	3.4	4.0	0.5	0.8	2.9	1.7	1.9
16:00~16:30	21.1	8.0	5.5	3.4	15.4	16.4	11.9
16:30~17:00	46.9	36.0	26.1	26.9	36.0	42.2	35.0
17:00~17:30	21.1	40.0	41.2	42.9	30.1	26.7	33.2
17:30~18:00	6.8	8.0	18.1	17.6	11.8	9.5	12.9
18:00~18:30	-	4.0	6.0	5.0	2.9	2.6	3.5
18:30 이후	0.7	-	2.5	3.4	0.7	0.9	1.6
계(수)	100.0(147)	100.0(25)	100.0(199)	100.0(119)	100.0(136)	100.0(116)	100.0(37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그림 IV-1-3]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의 주요 하원시간



#### 4) 적정 하원시간

방과후과정 담당교사가 생각하는 적정 하원시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VI-1-9>와 같이, 교사 41.8%가 하원시각으로 오후 17시에서 17시 30분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았고, 25.3%는 오후 18시에서 18시 30분, 나머지 시간대는 소수이었다. 기관유형별로도 오후 17시에서 17시 30분 사이가 다빈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는 오후 18시에서 18시 30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7%로 공립 교사보다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교사는 적정 하원시간으로 오후 17시에서 17시 30분이 40~50% 대로 높지만 대도시는 오후 18시에서 18시 30분이 42.0%로 많았다(표 IV-1-9 참조).

<표 IV-1-9> 방과후과정반 적정 하원시간

단위: %(명)

구분	기관 유형			지역규모			전체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6:00 이전	0.7	4.0	1.0	-	2.2	0.9	1.1
16:00-6:30	6.8	-	10.6	3.4	13.2	7.8	8.4
16:30-17:00	9.5	4.0	4.0	4.2	7.4	6.9	6.2
17:00-17:30	52.4	52.0	32.7	26.9	41.9	56.9	41.8
17:30-18:00	8.2	4.0	10.1	9.2	12.5	4.3	8.9
18:00-18:30	17.0	24.0	31.7	42.0	18.4	16.4	25.3
18:30-19:00	2.0	-	3.5	2.5	2.2	3.4	2.7
19:00 이후	3.4	12.0	6.5	11.8	2.2	3.4	5.7
계(수)	100.0(147)	100.0(25)	100.0(199)	100.0(119)	100.0(136)	100.0(116)	100.0(37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라. 이용 대상

##### 1) 맞벌이 가구 비율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 중 맞벌이가구 자녀는 67.7%로 과반수 정도이었다. 사립이 73.2%로 가장 많고, 공립 병설과 단설이 60% 내외 정도이고, 도시지역일 수록 맞벌이가구 자녀가 이용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한편, 방과후과정 학급당 맞벌이가구 비율은 평균 67.7%로 약 30% 정도는 부모가 취업 외의 다른 이유로 방과후과정을 이용하고 있었다. 공립 단설과 사립의 맞벌이 가구 유아 비율이 75% 정도로 높고, 공립 병설은 57.1%로 낮았으며,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맞벌이 비율이 높았다(표 IV-1-10 참조).

〈표 IV-1-10〉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

단위: %(개원)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전체	67.7	(452)			
기관유형			지역규모		
공립병설	59.3	(155)	대도시	73.4	(163)
공립단설	60.1	( 26)	중소도시	67.5	(148)
사립	73.2	(271)	읍면지역	61.4	(141)
X <sup>2</sup> (df)/F	18.8***		X <sup>2</sup> (df)/F	9.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01$

## 2)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 판정

방과후과정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취업모나 다자녀가구 등의 유아가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각 유치원이 방과후과정 이용자 선정 시 적용하는 기준을 보면, 맞벌이 가구가 59.3%로 높고, 다음으로 저소득 가구와 한부모 가구, 다자녀가구가 30%대, 다문화가구와 조손가구가 20%대, 장애부모 가구 17% 순이다(표 IV-1-11 참조).

〈표 IV-1-11〉 방과후과정 유아 선정 시 기준

단위: %(개원)

구분	맞벌이 가구	저소 득가 구	한부 모 가구	조손 가구	장애 부모 가구	다자 녀 가구	돌봄 취약 가구	장애 영유 아 가구	다문 화가 정	기타	기준 없음	수
전체	59.3	38.7	35.2	21.9	17.0	30.3	9.5	10.2	25.0	1.8	39.6	(452)
기관유형												
공립병설	45.8	38.1	31.6	16.8	18.1	28.4	8.4	12.3	25.8	1.3	51.6	(155)
공립단설	65.4	50.0	42.3	23.1	26.9	38.5	19.2	15.4	38.5	-	34.6	( 26)
사립	66.4	38.0	36.5	24.7	15.5	30.6	9.2	8.5	23.2	2.2	33.2	(271)
지역규모												
대도시	73.6	46.6	42.3	26.4	21.5	38.7	11.0	12.3	31.3	4.3	25.2	(163)
중소도시	58.8	39.2	35.8	20.3	16.9	27.0	9.5	9.5	23.0	0.7	40.5	(148)
읍면지역	43.3	29.1	26.2	18.4	12.1	24.1	7.8	8.5	19.9	-	55.3	(141)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기관유형별로 보면, 맞벌이 가구는 공립 단설과 사립이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기준은 대체로 공립 단설이 다른 기관유형보다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기준으로 적용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표 IV-1-12>는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 선정기준을 마련할 경우 우선 적용해야 할 기준을 1,2순위로 조사한 것이다. 1순위로 맞벌이 가구가 75.9%로 많고, 저소득가구가 11.7%, 나머지는 3% 내외 정도이었다 2순위는 저소득가구가 41.6%, 한부모 가구 22.4%, 조손가구 11.3%, 나머지는 5% 내외로 적었다. 1,2순위를 합산하면, 맞벌이 가구가 82.1%로 다빈도이고, 저소득가구 53.3%, 한부모 가구 25.9%, 조손가구 12.6%, 돌봄취약가구 8.4%, 장애부모가구 7.1% 순이다.

<표 IV-1-12> 방과후과정 유아 선정 시 우선순위: 1+2순위

단위: %(개원)

구분	맞벌이 가구	저소 득 가구	한부 모 가구	조손 가구	장애 부모 가구	다자 녀 가구	돌봄 취약 가구	장애 영유 아 가구	다문 화 가정	중요우 선순위 없음	계
1순위	75.9	11.7	3.5	1.3	2.7	0.9	2.4	0.4	0.7	0.4	100.0(452)
2순위	6.2	41.6	22.4	11.3	4.4	5.3	6.0	0.7	2.2	-	100.0(452)
1+2순위	82.1	53.3	25.9	12.6	7.1	6.2	8.4	1.1	2.9	0.4	(4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마. 프로그램 운영

### 1) 운영 지침

#### 가) 방과후과정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특수성과 유치원의 실정 및 유아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상 연령별 집단 구성 방식이나 프로그램 운영 형태 등을 다양하게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방과후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뿐 아니라 안전, 영양 및 건강을 위한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방과후 과정의 오후 일과는 오전의 교육활동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지식 및 기능 위주 교육을 하기보다는, 편안한 휴식과 함께 바깥놀이와 개별 유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놀이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교육부, 2015).

방과후 과정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의 육아부담과 사교육비 경감 목적의 교육과 돌봄 통합서비스로, 심화프로그램과 특성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성화프로그램은 전문 강사 또는 해

당 유치원 교사가 교육부에서 개발한 생활체육, 문화예술, 과학창의 언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유치원 프로그램은 5개 생활영역별(신체·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학습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교육부, 2015).

〈표 IV-1-13〉 방과후과정 교육내용 예

종류	정의	프로그램 예
심화 프로그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오후에 심화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	·교육과정 주제와 연계한 현장체험 ·교육과정 미술활동과 연계한 실외 놀이활동
	교육과정이나 방과후 과정에서 각 유치원별로 '특정주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꾸준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자연체험학습 활동 ·지역사회자원 활용 활동 ·테마별 미술활동 ·기초체력증진 활동 ·요리 탐구 활동 ·문화·예술 공연 체험 활동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우리부가 기개발·보급한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세대간 지혜나눔 전문인력 지원)	·세계시민교육/인성교육/근로정신함양교육 ·에너지교육/과학창의교육/창의성교육 ·전통예술교육/한국문화정체성교육/통일교육 ·녹색성장교육/경제소비자교육 ·재난대비생활안전교육/보건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국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 이외에 유아발달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기초한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언어 관련 분야별 활동 프로그램	·문화예술분야(음악, 미술, 문화체험 등) ·생활체육분야(체육, 게임, 요가 등) ·과학창의분야(수·과학 활동, 퍼즐, 블록, 그룹 게임 등) ·언어분야(독서, 문화구역, 동시짓기 등)

자료: 교육부(2015).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나)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교육부는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으로 부처가 개발하거나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일부 유치원이 방과후과정을 특성화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2014년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IV-1-14>와 같이,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은 유아1인당1일1개1시간 이내에서 기본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후 과정에서만 실시하여야 하며, 특성화 프로그램비는 참여 유아 수, 강사료, 실시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수익자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며, 학부모 동의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5).

〈표 IV-1-14〉 특성화프로그램 비용 기준

단위: 천원

분야 프로그램	생활체육		문화예술		과학창의		언어	
	일반 체육	무용/ 발레	음악	미술	과학	블록/ 교구	모국어	영어
월 재료비 및 강사비								
재료비(A)	-	-	-	6	6	10	8	10
강사비 <sup>1)</sup>	120	120	120	120	120	140	120	140
유아1인당 월강사비(B) <sup>2)</sup>	6	6	6	6	6	7	6	7
합계(A+B)	6	6	6	12	12	17	14	17

주: 1) 강사비는 월 4회 1인 기준임.

2) 유아 1인당 월강사비는 1학급 20명 기준임.

자료: 교육부(2015).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내부자료.

## 2) 중점 교육 내용

유치원 원장 대상으로 방과후과정 운영 시 중점을 두는 교육내용을 1, 2 순위로 조사하였다. 1순위로 특성화프로그램이 33.8%, 누리과정 심화확장 활동 30.8%, 유치원 자체 특화프로그램 13.5%, 나머지는 5~8% 정도이다 2순위는 특성화프로그램과 유치원 자체 특화프로그램이 각각 19% 정도이고, 누리과정 심화 확장활동과 돌봄, 실외활동이 16% 정도, 교육부 개발보급교육프로그램 12.0% 순이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특성화프로그램이 53.1%로 가장 높고, 누리과정 심화활동이 46.9%, 유치원 자체 특화프로그램 32.7%, 돌봄 23.5%, 실외활동 21.0%, 교육부 개발 보급 교육프로그램 20.8% 순으로 유치원마다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1-15 참조).

〈표 IV-1-15〉 방과후과정 중점 교육내용: 1+2순위(원장)

단위: %(개원)

구분	누리과정 심화확장 활동	유치원 자체 특화프로 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실외 활동	현장 학습	교육부 개발보급 교육프로 그램	돌봄	기타	계(수)
1순위	30.8	13.5	33.8	5.5	-	8.8	7.5	-	100.0(452)
2순위	16.1	19.2	19.3	15.5	1.0	12.0	16.0	0.2	100.0(452)
1+2순위	46.9	32.7	53.1	21.0	1.8	20.8	23.5	0.2	(4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앞서 살펴본 방과후과정 운영 시 중점활동을 방과후과정 담당교사에게도 질문하였다. 1순위로 프로그램 운영이 33.4%, 돌봄(휴식 및 간식) 30.7%, 자유선택

활동과 생활지도, 개인학습지도가 각각 10%대이었고, 2순위는 돌봄(휴식 및 간식) 25.9%, 프로그램 운영 24.0%, 자유선택 활동 22.4%, 생활지도 16.2%, 개인학습지도 11.3% 순이었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휴식 및 간식)이 각각 56~57%로 높고, 다음으로 자유선택활동, 생활지도, 개인학습지도 순이다(표 IV-1-16 참조).

〈표 IV-1-16〉 방과후과정 중점 활동: 1+2순위(교사)

구분	프로그램 운영	돌봄(휴식 및 간식)	자유선택 활동	생활지도	개인학습 지도	기타	계(수)
1순위	33.4	30.7	13.7	12.1	10.0	-	100.0(371)
2순위	24.0	25.9	22.4	16.2	11.3	0.3	100.0(371)
1+2순위	57.4	56.6	36.1	28.3	21.3	0.3	(37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3)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 가) 운영 여부 및 과목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표 IV-1-17>에 제시하였다

〈표 IV-1-17〉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과목

구분	운영 여부		특성화프로그램 과목								
	운영 비율	(수)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수 과학	독서 논술	요리 다도	기타	(수)
전체	91.8	(452)	67.5	51.8	81.4	62.4	48.0	7.5	2.4	4.3	(514)
기관 유형											
공립 병설	92.3	(155)	74.1	48.3	83.9	47.6	48.3	7.7	2.8	4.9	(143)
공립 단설	92.3	( 26)	95.8	33.3	100.0	50.0	45.8	4.2	-	-	( 24)
사립	91.5	(271)	60.9	55.6	78.2	72.2	48.0	7.7	2.4	4.4	(248)
지역규모											
대도시	88.3	(163)	60.4	47.2	70.8	66.0	40.3	6.3	-	2.1	(144)
중소도시	92.6	(148)	75.2	54.0	86.9	68.6	51.8	4.4	2.2	3.6	(137)
읍면지역	95.0	(141)	67.2	54.5	87.3	52.2	52.2	11.9	5.2	7.5	(134)

주: 운영 시 과목은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과목은 체육이 81.4%로 가장 많고, 음악 67.5%, 영어 62.4%, 미술 51.8%, 수과학 48.0% 순으로 예체능 과목과 영어에 치

증되어 있었다. 특히 영어는 사립과 도시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 운영시간

방과후과정 교사 대상으로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의 1일 운영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61.7분으로 1시간 정도이었다. 시간대별로 보면, 1~2시간 미만이 57.1%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1시간 미만이 34.7%, 2시간 이상도 8.2%이었다. 기관유형 및 지역규모별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중소도시가 48.7분으로 가장 짧고, 읍면지역이 67.7분으로 가장 길었다(표 IV-1-18 참조).

〈표 IV-1-18〉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운영시간

단위: %(개원), 분

구분	운영 여부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시간			
	운영비율	(수)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평균 (수)
전체	88.7	(371)	34.7	57.1	8.2	61.7 (329)
기관 유형						
공립 병설	88.4	(147)	44.6	50.0	5.4	61.7 (130)
공립 단설	92.0	( 25)	52.2	47.8	0.0	63.2 ( 23)
사립	88.4	(199)	25.0	63.6	11.4	59.9 (176)
$X^2(df)/F$	0.3(2)			18.6(4)**		7.8***
지역규모						
대도시	85.7	(119)	31.4	61.8	6.9	56.0 (102)
중소도시	94.1	(136)	32.8	58.6	8.6	48.7 (128)
읍면지역	85.3	(116)	40.4	50.5	9.1	67.7 ( 99)
$X^2(df)/F$	6.3(2)*			2.9(4)		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다)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이유

〈표 IV-1-19〉는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이유를 조사한 것이다.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 62.2%로 다수이고, 학부모가 원해서도 31.3%로 많았다. 나머지는 소수이었다. 한편, 공립 병설과 공립 단설은 사립보다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지만, 사립은 학부모가 원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립의 경우, 이용 부모 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단 의 하나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19〉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이유

단위: %(개원)

구분	학부모 원해서	방과후과정반 업무부담	교사 경감	원아모집 도움	다양한 교육기회제공	국가지원금 운영 어려움	기타	계(수)
전체	31.3	2.2	3.1	62.2	1.0	0.2	100.0(415)	
기관 유형								
공립 병설	28.0	-	2.8	69.2	-	-	100.0(143)	
공립 단설	29.2	4.2	4.2	62.5	-	-	100.0( 24)	
사립	33.5	3.2	3.2	58.1	1.6	0.4	100.0(248)	
지역규모								
대도시	32.6	3.5	4.2	57.6	2.1	-	100.0(144)	
중소도시	35.0	2.2	2.9	59.1	0.7	-	100.0(137)	
읍면지역	26.1	0.7	2.2	70.1	-	0.7	100.0(1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4) 장학 및 컨설팅

##### 가) 지원 여부 및 분야

방과후과정에 대해 장학 및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는 28.3%로 적었다 기관 유형 중 공립 단설이 60.0%로 많고, 공립 병설과 사립이 각각 20%대로 적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35.3%로 높고, 읍면지역 26.7%, 대도시 21.8% 순이다

〈표 IV-1-20〉 방과후과정 관련 장학 및 컨설팅 참여 여부 및 영역

단위: %(명)

구분	지원 여부		장학 및 컨설팅 영역									계(수)
	'지원 비율	(수)	교수 학습 지도	생활 지도	교재 교구 제작	교육 계획 안 작성	행정 및 사무 관리	부모교 육 및 부모 상담	교사 역할	안전 관리 위급 시 대처	기 타	
전체	28.3	(371)	35.2	12.4	1.9	11.4	11.4	2.9	13.3	9.5	1.9	100.0(105)
기관 유형												
공립 병설	29.3	(147)	44.2	9.3	2.3	2.3	20.9	2.3	4.7	11.6	2.3	100.0( 43)
공립 단설	60.0	( 25)	46.7	26.7	-	6.7	13.3	-	6.7	-	-	100.0( 15)
사립	23.6	(199)	23.4	10.6	2.1	21.3	2.1	4.3	23.4	10.6	2.1	100.0( 47)
$\chi^2(df)$	14.6(2)**											
지역규모												
대도시	21.8	(119)	42.3	15.4	-	19.2	3.8	-	11.5	3.8	3.8	100.0( 26)
중소도시	35.3	(136)	27.1	12.5	2.1	6.3	14.6	4.2	20.8	10.4	2.1	100.0( 48)
읍면지역	26.7	(116)	41.9	9.7	3.2	12.9	12.9	3.2	3.2	12.9	-	100.0( 31)
$\chi^2(df)$	5.9(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p < .01$



한편, 장학 및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 그 분야는 교수 학습지도가 35.2%로 높고, 교사역할과 생활지도, 교육계획안 작성, 행정 및 사무관리가 각각 10%대로 비등하였다. 공립 병설과 단설 유치원은 교수학습지도가 40%대로 높고, 공립 병설은 행정 및 사무관리가 20.9%, 공립 단설은 생활지도가 26.7%로 높았다. 반면에 사립은 교수학습지도와 교사역할, 교육계획안 작성 등이 20%대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도 차이를 보여서,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교수학습지도가 40%대로 높은 반면, 중소도시는 교수학습지도와 교사역할이 20%대로 비등하였다(표 IV-1-20 참조).

나) 장학 및 컨설팅 요구

정기적인 장학 및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 53.6%가 필요, 8.1%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여 과반수인 61.7%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필요정도를 4점 척도로 환산하면 4점 만점에 평균 2.6점으로 중간 정도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공립 단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로 타 기관유형보다 높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지역규모별로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표 IV-1-21 참조).

〈표 IV-1-21〉 장학 및 컨설팅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4점 평균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4점 평균
전체	5.9	32.3	53.6	8.1	100.0(371)	2.6							
기관 유형							지역규모						
공립병설	6.8	34.7	48.3	10.2	100.0(147)	2.6	대도시	6.7	30.3	57.1	5.9	100.0(119)	2.6
공립단설	4.0	16.0	60.0	20.0	100.0( 25)	3.0	중소도시	5.9	33.1	50.7	10.3	100.0(136)	2.7
사립	5.5	32.7	56.8	5.0	100.0(199)	2.6	읍면지역	5.2	33.6	53.4	7.8	100.0(116)	2.6
X <sup>2</sup> (df)/F			11.6(6)			2.7	X <sup>2</sup> (df)/F			2.5(6)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5) 지도점검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교육부, 2015)에 따르면, 방과후 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 유치원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 점검 혹은 지도·점검 시 사용하는 점검 세부 내용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성화활동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이 외에 운영시간 인력 채

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방과후 과정 시행에 있어서 주요 점검 사항은 특성화활동의 적절한 시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운영 전반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면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표 IV-1-22 참조).

〈표 IV-1-22〉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도·점검 내용

세부 내용
1. 원아 1일 1개 1 시간 이내의 특성화활동 운영
2. 교육과정 운영이후 방과후 과정 운영
3. 특성화활동비 적정 산정 여부
4. 특성화 활동 미참여 유아 지도를 위한 교사 및 교실 배치
5. 특성화 프로그램 선정·운영 시 학부모 의견 수렴 및 반영
6.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계획 작성 여부(외부강사에 의한 특성화활동 포함)
7. 방과후 과정 인력 채용의 적합성 계약서 작성 등
8. 방과후 과정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의 예산 집행 적정성

자료: 교육부(2015).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 바.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 1) 운영 지침

방과후 과정 전담인력은 방과후 지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운용능력을 갖춘 전문교사로서 유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활동을 계획, 지도하여 유아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교육부, 2015).

전담인력은 정규 교원, 기간제 교원, 강사 등으로 구분된다. 정규 교원은 정교사를 방과후 과정 교사로 임용한 경우이고, 기간제 교원은 계약제 방과후 과정 강사를 채용한 경우, 강사는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필요하여 원장이 채용한 자로 전일제 강사, 방과후 과정 강사 등을 말한다. 이 외에도 세대간 지혜 나눔 3세대 하모니 등 그 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교육부, 2015).

### 2) 교사 유형

방과후과정반을 담당하는 교사는 방과후 전담교사가 79.2%로 다수이고, 기본 교육과정 교사가 연장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41.8%, 유급 자원봉사자 29.9%, 보조교사 15.3%이었다.

기관유형별로도 방과후 전담교사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공립 병설은 유급 자원봉사자가 43.2%, 공립 단설은 기본교육과정 교사가 30.8%, 사립은 기본교육과정 교사가 53.1%, 보조교사 20.3%, 유급자원봉사자 23.2%로 다양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전체 비율과 유사하나, 읍면지역일수록 유급 자원봉사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표 IV-1-23 참조).

〈표 IV-1-23〉 방과후과정반 담당교사 유형

단위: %(개원)

구분	방과후 전담교사	기본교육과정 교사	보조교사	유급 자원봉사자	원장·원감 및 실무원	기타	수
전체	79.2	41.8	15.3	29.9	0.9	5.5	(452)
기관 유형							
공립 병설	83.2	23.9	8.4	43.2	-	9.0	(155)
공립 단설	92.3	30.8	3.8	19.2	3.8	11.5	( 26)
사립	75.6	53.1	20.3	23.2	1.1	3.0	(271)
지역규모							
대도시	87.7	30.1	14.7	23.3	1.2	3.1	(163)
중소도시	75.0	50.7	19.6	29.7	-	4.7	(148)
읍면지역	73.8	46.1	11.3	37.6	1.4	9.2	(141)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3) 방과후과정 관련 연수

#### 가) 참여 여부

방과후과정 관련 연수에 참여했다는 비율은 53.6%, 공립 단설 교사가 60%, 사립과 공립 병설이 각각 54.8%, 51.0%이며, 대도시가 68.9%, 읍면지역 50%, 중소도시 43.4% 순이다(표 IV-1-24 참조).

연수에 참여한 경우, 연수 주관기관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48.0%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공사립유치원연합회가 7.8%, 교육부가 1.6%로 소수이다. 사립 유치원 교사는 공사립유치원 연합회가 주관하는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대도시 지역 교사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연수에 많이 참여하였다(표 IV-1-24 참조).

〈표 IV-1-24〉 방과후과정 관련 교사 연수 참여 여부 및 연수 주관기관

단위: %(명)

구분	참여 여부		연수 주관기관				계(수)
	참여 비율	계(수)	교육부	교육청·교육지원청	공사립유치원 연합회	기타	
전체	53.6	100.0(371)	1.6	48.0	7.8	24	(199)
기관 유형							
공립 병설	51.0	100.0(147)	0.7	47.6	4.1	2.7	( 75)
공립 단설	60.0	100.0( 25)	-	56.0	8.0	-	( 15)
사립	54.8	100.0(199)	2.5	47.2	10.6	2.5	( 48)
X <sup>2</sup> (df)	0.9(2)		2.2(2)	0.7(2)	4.9(2)	-	
지역규모							
대도시	68.9	100.0(119)	3.4	62.2	7.6	2.5	( 82)
중소도시	43.4	100.0(136)	1.5	36.8	6.6	2.9	( 59)
읍면지역	50.0	100.0(116)	-	46.6	9.5	1.7	( 58)
X <sup>2</sup> (df)	17.5(2) <sup>***</sup>		-	16.6(2) <sup>***</sup>	0.7(2)	-	

주: 연수 주관기관은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p < .001

나) 미참여 이유

방과후과정 관련 연수 또는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표 IV-1-25 참조).

〈표 IV-1-25〉 방과후과정 관련 교육 및 연수 미참여 이유

단위: %(명)

구분	교육연수 정보 부족	교사연수 기회 부족	희망연수 프로그램 부족	교육일정과 근무시간과 겹침	교육강원감	교육신청기간 놓쳐서	대체교사 미지원	교사연수 부담	유치원 허락하지 않음	다른 교사교육 참여	기타	무응답	계(수)
전체	23.8	15.1	5.2	37.2	2.3	4.1	5.8	0.6	0.6	1.2	3.5	0.6	100.0(172)
기관 유형													
공립 병설	34.7	13.9	4.2	30.6	1.4	4.2	5.6	-	-	1.4	2.8	1.4	100.0( 72)
공립 단설	10.0	10.0	-	60.0	-	-	-	-	-	-	20.0	-	100.0( 10)
사립	16.7	16.7	6.7	40.0	3.3	4.4	6.7	1.1	1.1	1.1	2.2	-	100.0( 90)
지역규모													
대도시	16.2	18.9	5.4	35.1	5.4	10.8	2.7	2.7	2.7	-	-	-	100.0( 37)
중소도시	20.8	14.3	3.9	42.9	1.3	1.3	6.5	-	-	2.6	5.2	1.3	100.0( 77)
읍면지역	32.8	13.8	6.9	31.0	1.7	3.4	6.9	-	-	-	3.4	-	100.0( 5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교육일정과 근무시간이 겹쳐서가 37.2%, 교육연수 정보 부족 23.8%, 교사연수 기회 부족 15.1%, 대체교사 미지원 및 희망 연수프로그램 부재가 각각 5% 정도 되었다. 공립 병설은 교육연수 정보 부족, 공립 단설은 교육일정과 근무시간이 겹쳐서, 사립은 교사연수 기회 부족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였다. 또한 읍면 지역일수록 교육연수 정보 부족이 많고, 도시지역은 교육일정과 근무시간이 겹쳐서, 특히 대도시는 교사 연수기회 부족이 타 지역보다 많았다

#### 4) 방과후과정 교사 근로조건 및 처우

##### 가) 근무시간

##### (1) 연장근무교사

기본 교육과정반 교사의 연장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9시간이었다. 근무시간 대별로 보면, 2시간이 35.7%, 1시간 31.8%로 1~2시간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기관유형별로는 공립 단설과 사립이 1일 평균 2시간 정도인 반면 공립 병설이 평균 1.4시간으로 차이가 유의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다소 길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표 IV-1-26 참조).

〈표 IV-1-26〉 기본 교육과정반 교사의 연장근무 시간

구분	단위: %(명), 시간					계(수)	평균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상		
전체	7.0	31.8	35.7	17.8	7.8	100.0(129)	1.9
기관 유형							
공립 병설	15.7	56.9	17.6	7.8	2.0	100.0( 51)	1.4
공립 단설	-	25.0	37.5	37.5	-	100.0( 8)	2.1
사립	14	14.3	48.6	22.9	12.9	100.0( 70)	2.3
$X^2(df)/F$			-				10.2***
지역규모							
대도시	-	26.9	38.5	30.8	3.8	100.0( 26)	2.1
중소도시	7.3	32.7	34.5	14.5	10.9	100.0( 55)	2.0
읍면지역	10.4	33.3	35.4	14.6	6.3	100.0( 48)	1.7
$X^2(df)/F$			-				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p < .001$

##### (2)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 (가) 출근시각

방과후과정 전담교사의 평일 근무시간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출근시간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가 43.0%, 오전 9시에서 10시와 오전 10에서 11시, 오후 14시에서 오후 15시 사이가 각각 10% 정도로 고루 분포하였다.

〈표 IV-1-27〉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평일 출근시각

단위: %(명)

구분	기관유형			지역규모			전체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8:00 이전	1.0	5.9	3.1	2.2	4.9	-	2.5
8:00-9:00	17.7	47.1	61.2	51.6	38.3	36.8	43.0
9:00-10:00	11.5	11.8	11.6	14.0	13.6	5.9	11.6
10:00-11:00	17.7	23.5	7.0	18.3	14.8	1.5	12.4
11:00-12:00	10.4	5.9	1.6	5.4	6.2	4.4	5.4
12:00-13:00	10.4	5.9	3.9	5.4	2.5	13.2	6.6
14:00-15:00	26.0	-	1.6	-	11.1	26.5	11.2
15:00 이후	5.2	-	10.1	3.2	8.6	11.8	7.4
계(수)	100.0(96)	100.0(17)	100.0(129)	100.0(93)	100.0(81)	100.0(68)	100.0(2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공립 단설과 사립은 오전 8시에서 9시가 다수이나, 공립 병설은 오후 14시에서 15시 사이가 26%로 높고, 읍면지역은 오후 14시에서 15시 사이가 26.5%로 다빈도이고, 오후 15시 이후도 11.8%로 높았다(표 IV-1-27 참조).

(나) 퇴근시각

한편, 평일 퇴근시간은 오후 18시에서 19시 사이에 수렴하였다. 오후 18시에서 19시 사이가 40.1%, 오후 17시에서 18시 28.5%, 오후 19시에서 20시 22.3% 순이다.

〈표 IV-1-28〉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평일 퇴근시각

단위: %(명)

구분	기관유형			지역규모			전체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7:00 이전	7.3	5.9	0.8	2.2	3.7	5.9	3.7
17:00-18:00	58.3	41.2	4.7	6.5	25.9	61.8	28.5
18:00-19:00	29.2	35.3	48.8	46.2	48.1	22.1	40.1
19:00-20:00	4.2	11.8	37.2	33.3	19.8	10.3	22.3
20:00 이후	1.0	5.9	8.5	11.8	2.5	-	5.4
계(수)	100.0(96)	100.0(17)	100.0(129)	100.0(93)	100.0(81)	100.0(68)	100.0(2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공립 병설과 단설은 이보다 1시간 이른 오후 17시에서 18시가 각각 58.3%, 41.2%로 다빈도이고, 사립은 오후 18시에서 19시와 오후 19시에서 20시가 각각 48.8%, 37.2%로 높았다. 또한 읍면지역은 오후 17시에서 18시가 61.8%, 도시지역은 오후 18시에서 19시 사이가 40%대로 높았다(표 IV-1-28 참조).

나) 고용 형태 및 자격

(1) 고용 형태

조사에 참여한 방과후과정반 전담교사의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53.3%, 계약직(기간제) 37.2%, 시간제 9.1%이었다. 공립 병설과 단설은 계약직(기간제)이 각각 69.8%, 64.7%, 사립은 정규직이 86.8%로 높았다. 또한 도시지역은 정규직, 읍면지역은 계약직(기간제)나 시간제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았다(표 IV-1-29 참조).

〈표 IV-1-29〉 방과후과정반 전담교사 고용 형태

단위: %(명)

구분	정규 직	계약직 (기간제)	시간 제	기 타	계(수)	구분	정규 직	계약직 (기간제)	시간 제	기 타	계(수)
전체	53.3	37.2	9.1	0.4	100.0(242)						
기관 유형						지역규모					
공립 병설	11.5	69.8	17.7	1.0	100.0( 96)	대도시	64.5	35.5	-	-	100.0( 93)
공립 단설	35.3	64.7	-	-	100.0( 17)	중소도시	56.8	33.3	8.6	1.2	100.0( 81)
사립	86.8	9.3	3.9	-	100.0(129)	읍면지역	33.8	44.1	22.1	-	100.0( 6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2) 경력 인정 여부 및 범위

방과후과정 전담교사가 기본교육과정 교사와 동일하게 경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본 결과, 78.1%가 경력이 인정된다고 답하였다. 사립은 91.5%로 높지만 공립 병설과 단설은 각각 61.5%, 70.6%로 낮고,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경력 인정 비율은 정교사 대비 평균 87.5%로 100%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구간별로 보면, 76~100%가 79.4%로 다수이고, 26~50% 11.6%, 나머지는 5% 내외로 소수이었다. 공립 단설이 100% 인정받는 반면, 동일한 공립 기관이지만 공립 병설은 72.7%로 낮았다. 사립은 93.7% 정도 되었다. 지역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V-1-30 참조).

〈표 IV-1-30〉 방과후과정 전담교사의 경력 인정 여부 및 인정 정도

단위: %(명)

구분	경력 인정여부		정교사 대비 경력 인정 비율					평균
	경력 인정	(수)	0~25%	26~50%	51~75%	76~100%	계(수)	
전체	78.1	(242)	3.7	11.6	5.3	79.4	100.0(189)	87.5
기관 유형								
공립 병설	61.5	( 96)	11.9	27.1	3.4	57.6	100.0( 59)	72.7
공립 단설	70.6	( 17)	-	-	-	100.0	100.0( 12)	100.0
사립	91.5	(129)	-	5.1	6.8	88.1	100.0(118)	93.7
X <sup>2</sup> (df)/F	29.6(2)	***		-				23.3 ***
지역규모								
대도시	80.6	( 93)	4.0	8.0	5.3	82.7	100.0( 75)	89.4
중소도시	87.7	( 81)	1.4	11.3	5.6	81.7	100.0( 71)	89.4
읍면지역	63.2	( 68)	7.0	18.6	4.7	69.8	100.0( 43)	81.2
X <sup>2</sup> (df)/F	13.5(2)	**		-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3) 적정 자격

시도 교육청마다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방과후과정을 운영 기관장 대상으로 적정 자격기준을 조사하였다. 자격제한이 필요없다는 의견은 2.7%로 소수이고, 대다수가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자격별로 보면, 유치원 정교사 2급이 86.5%, 보육교사 1급과 유치원 정교사 1급, 보육교사 2급이 20%대로 비등하고, 나머지 자격은 10% 미만이다.

〈표 IV-1-31〉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적정 자격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정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2급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방과후 지도사	자격제한 필요 없음	(수)
전체	23.7	86.5	25.2	20.4	4.4	2.0	0.2	7.7	2.7	(452)
기관 유형										
공립 병설	21.3	87.1	19.4	15.5	3.2	-	-	1.9	1.3	(155)
공립 단설	46.2	88.5	11.5	11.5	-	-	-	-	-	( 26)
사립	22.9	86.0	29.9	24.0	5.5	3.3	0.4	11.8	3.7	(271)
지역규모										
대도시	27.0	90.8	27.0	19.6	3.1	1.8	0.6	5.5	3.7	(163)
중소도시	23.6	80.4	27.0	26.4	6.1	3.4	-	9.5	2.7	(148)
읍면지역	19.9	87.9	21.3	14.9	4.3	0.7	-	8.5	1.4	(141)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공립 단설은 유치원 정교사가 46.2%, 사립은 방과후지도사가 11.9%로 전체 응답 비율보다 높고, 도시지역이 유치원 정교사 1급과 2급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표 IV-1-31 참조).

다) 담당 업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방과후과정반 교사는 방과후과정 시작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과후과정반 운영시간 외에 전담교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살펴본 결과, 1순위로 방과후과정반 수업정리가 46.7%로 절반 가까이 이고, 행정업무 24.0%, 기본교육과정반 수업 보조 14.0% 순이다. 2순위로 방과후과정반 수업준비가 23.1%로 높고, 기본교육과정반 수업보조가 19.1%, 등하원지도와 행정업무가 각각 14% 정도이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방과후과정반 수업준비가 69.8%, 행정업무가 38.0%, 기본교육과정반 수업보조 33.1%, 등·하원지도 18.6%, 급간식지도와 등·하원 차량지도가 13% 내외 정도이었다(표 IV-1-32 참조).

〈표 IV-1-32〉 방과후과정반 운영시간 외 담당 업무: 1+2순위

단위: %(명)

구분	방과후과정반 수업준비	기본교육과정반 수업보조	특별활동수업담당	등·하원지도	등·하원 차량지도	급·간식지도	행정업무	도서실 등·부속설 운영관리	청소 등 업무 외 잡무	기타	계(수)
1순위	46.7	14.0	1.2	4.5	4.5	3.7	24.0	-	0.8	0.4	100.0(242)
2순위	23.1	19.1	3.3	14.1	8.3	9.9	14.0	4.1	1.7	2.5	100.0(242)
1+2순위	69.8	33.1	4.5	18.6	12.8	13.6	38.0	4.1	2.5	2.9	(2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라) 지원 인력

방과후과정을 위해 전담교사 외에 추가 인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추가 인력이 없다는 비율은 29.0% 정도이고, 나머지는 채용하고 있었다. 추가 채용한 경우, 52.0%는 유급 자원봉사자, 17.3%는 취사부/조리사, 15.7%는 보조교사, 7.7%는 행정실무자이다. 공립 병설과 단설은 유급자원봉사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립 단설은 행정실무 채용 비율이 15.4%로 높았다. 사립은 보조교사와 취사부/조리사가 각각 21.8%, 24.7%로 높았다. 또한 중소도시는 보조교사가 많고, 읍면지역은 유급자원봉사자가 많았다. 대도시는 추가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표 IV-1-33 참조).

〈표 IV-1-33〉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외에 추가 인력 채용 여부

단위: %(개원)

구분	행정 실무	보조 교사	취사부/ 조리사	유급 자원 봉사자	차량기 사 및 인솔자	청소 원	기타	추가 인력	채용 없음	(수)
전체	7.7	15.7	17.3	52.0	1.8	0.7	2.9	29.0		(452)
기관 유형										
공립 병설	3.2	7.1	4.5	65.2	-	-	3.2	26.5		(155)
공립 단설	15.4	3.8	15.4	69.2	-	-	7.7	23.1		( 26)
사립	9.6	21.8	24.7	42.8	3.0	1.1	2.2	31.0		(271)
지역규모										
대도시	3.7	17.2	20.2	47.9	1.2	1.2	1.2	31.3		(163)
중소도시	12.8	22.3	18.9	48.6	1.4	0.7	5.4	27.7		(148)
읍면지역	7.1	7.1	12.1	60.3	2.8	-	2.1	27.7		(1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표 IV-1-34> 는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대상으로 지원 인력과 그 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표 IV-1-34〉 지원 인력 여부 및 유형

단위: %(명)

구분	지원 여부		지원인력 유형								(수)	
	'있다'는 비율	(수)	보조 교사	3세대 하모 니	자원 봉사 자	실습 생	인턴	보육 지원 인력	방과후 전담 교사	시간제 기간제 교사		기타
전체	35.8	(371)	34.6	52.6	10.5	3.0	5.3	4.5	6.8	3.0	3.0	(133)
기관 유형												
공립 병설	39.5	(147)	22.4	56.9	17.2	-	-	3.4	10.3	6.9	-	( 58)
공립 단설	36.0	( 25)	22.2	77.8	11.1	11.1	-	11.1	11.1	-	-	( 9)
사립	33.2	(199)	47.0	45.5	4.5	4.5	10.6	4.5	3.0	-	6.1	( 66)
X <sup>2</sup> (df)	1.5(2)											
지역규모												
대도시	37.8	(119)	37.8	51.1	4.4	4.4	8.9	8.9	-	-	4.4	( 45)
중소도시	36.8	(136)	42.0	44.0	20.0	4.0	4.0	4.0	6.0	4.0	2.0	( 50)
읍면지역	32.8	(116)	21.1	65.8	5.3	-	2.6	-	15.8	5.3	2.6	( 38)
X <sup>2</sup> (df)	0.7(2)											

주: 지원 인력유형은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지원 인력이 있는 경우는 35.8%이고 공립 병설이 공립 단설이나 사립보다 지원 인력이 있다는 비율이 높고, 도시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여건이 나았다.

지원인력이 있는 경우 유형은, 3세대 하모니가 52.6%, 보조교사가 34.6%, 자원봉사자 10.5%, 나머지는 5% 내외로 소수이다. 공립 병설과 단설은 지원인력으로 3세대 하모니가 많고, 사립은 보조교사가 많았다

마) 수당

(1) 연장근무 교사

(가) 지급 여부 및 금액

유치원 원장 대상으로 기본교육과정 교사의 연장 근무 시 수당을 알아보았다. 기본교육과정 교사가 연장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하는 유치원은 39.2%이고, 사립이 46.5%로 공립 병설 13.5%, 공립 단설 25.0%보다 많고, 중소지역이나 읍면지역이 대도시보다 많았다. 또한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평균 15 만원이 다(표 IV-1-35 참조).

〈표 IV-1-35〉 기본교육과정 교사 연장 근무 시 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

단위: %(개원), 만원

구분	지급 여부		지급 시 금액						평균	(수)
	'지급' 비율	(수)	5만 미만	5-10 만 원 미만	10-15 만 원 미만	15-20 만 원 미만	20-25 만 원 미만	25만원 이상		
전체	39.2	(189)	0.5	5.3	17.5	2.6	4.8	3.7	15.0	(74)
기관 유형										
공립 병설	13.5	(37)	-	-	-	-	-	2.7	100.0	(5)
공립 단설	25.0	(8)	-	-	-	-	-	-	-	(2)
사립	46.5	(144)	0.7	6.9	22.9	3.5	6.3	4.2	13.6	(67)
지역규모										
대도시	36.7	(49)	-	10.2	20.4	-	4.1	-	9.7	(18)
중소도시	40.0	(75)	1.3	1.3	22.7	4.0	6.7	1.3	13.4	(30)
읍면지역	40.0	(65)	-	6.2	9.2	3.1	3.1	9.2	21.6	(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한편 연장근무 교사를 대상으로 근무수당 지급 여부 및 형태를 조사한 결과, 45%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았고 29.2%는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받으며, 14.2%는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받되 상한선 두고, 9.2%는 상한선 없이 초과근무 시간만큼 받고 있었다.

공립 단설은 초과근무 수당이 없다는 비율이 12.5%로 다른 기관유형보다 적

었다. 대신, 상한선 없이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하거나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하되 상한선을 두는 경우가 각각 37.5%로 높았다. 사립은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44.9%로 높았다 특히 대도시 절반 이상이 초과근무 수당이 없었다(표 IV-1-36 참조).

〈표 IV-1-36〉 연장근무에 따른 근무 수당 형태

단위: %(명)

구분	상한선 없이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	초과근무 지급하되 상한선을 둘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일괄 지급	기타	없음	계(수)
전체	9.2	14.2	29.2	2.5	45.0	100.0(120)
기관 유형						
공립 병설	18.6	25.6	9.3	4.7	41.9	100.0( 43)
공립 단설	37.5	37.5	-	12.5	12.5	100.0( 8)
사립	-	4.3	44.9	-	50.7	100.0( 69)
지역규모						
대도시	7.7	7.7	26.9	3.8	53.8	100.0( 26)
중소도시	9.8	13.7	33.3	3.9	39.2	100.0( 51)
읍면지역	9.3	18.6	25.6	-	46.5	100.0( 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2) 초과 근무수당 만족도

교사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경우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대체로 만족이 51.5%, 매우 만족 7.6%로 응답 교사 중 59.1% 정도만 만족하고, 만족 정도는 4점 척도로 환산하여 평균 2.6점이었다. 공립 단설이 71.4% 이고, 나머지는 50~60% 정도이며,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높았다. 만족 정도는 기관유형 및 지역규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V-1-37 참조).

〈표 IV-1-37〉 초과 근무수당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불만족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4점 평균	구분	전혀 불만족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4점 평균
전체	4.5	36.4	51.5	7.6	100.0(66)	2.6							
기관유형							지역규모						
공립병설	8.0	32.0	56.0	4.0	100.0(25)	2.6	대도시	-	33.3	50.0	16.7	100.0(12)	2.8
공립단설	-	28.6	71.4	-	100.0( 7)	2.7	중소도시	3.2	35.5	58.1	3.2	100.0(31)	2.6
사립	2.9	41.2	44.1	11.8	100.0(34)	2.6	읍면지역	8.7	39.1	43.5	8.7	100.0(23)	2.5
X2(df)/F		-				0.2	X2(df)/F		-				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3)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가)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 및 금액

다음은 방과후과정 전담교사에게 처우개선비 지원 여부와 금액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중 45.9%만 처우개선비를 받고, 사립 교사가 공립 병설이나 단설보다 받는 경우가 72.9%로 높으며,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받는 경우가 많았다 (표 IV-1-38 참조).

처우개선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은 월평균 37.7만원이다. 구간별로는 30~50만원 이하가 42.3%로 다빈도이고, 10~30만원 이하가 27%, 50~100만원 이하 26.1% 순이다. 사립이 41.5만원, 공립 병설과 공립 단설이 16만원 선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35만원 정도,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40만원 정도로 5만원 정도 차이는 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IV-1-38〉 처우개선비 지원 여부 및 수준

단위: %(명), 만원

구분	지원 여부		처우개선비 지원 시 금액					(수)	평균
	받음	(수)	10만원 이하	10~30만원 이하	30~50만원 이하	50~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전체	45.9	(242)	3.6	27.0	42.3	26.1	0.9	(111)	37.7
기관 유형									
공립 병설	12.5	( 96)	25.0	75.0	-	-	-	( 12)	16.5
공립 단설	29.4	( 17)	-	100.0	-	-	-	( 5)	16.9
사립	72.9	(129)	1.1	17.0	50.0	30.9	1.1	( 94)	41.5
$X^2(df)/F$	82.8(2)	***							19.4 ***
지역규모									
대도시	57.0	( 93)	3.8	30.2	26.4	37.7	1.9	( 53)	39.3
중소도시	53.1	( 81)	4.7	23.3	62.8	9.3	-	( 43)	34.6
읍면지역	22.1	( 68)	-	26.7	40.0	33.3	-	( 15)	40.9
$X^2(df)/F$	21.9(2)	***							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p < .001$

(나) 처우개선비 만족도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 대체로 만족 50.5%, 매우 만족 11.7%로 62.2%가 만족하였다. 만족 정도는 4점 평균 2.3 점이다 기관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 교사가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으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처우개선비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 월평균 46.9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현재 지원받는 처우개선비보다 10만원 정도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있

었다. 또한 사립이 52.1만원으로 높고, 공립 병설과 단설은 각각 35만원과 25만원으로 차이가 있으며, 대도시는 40만원 선인데 반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50만원으로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표 IV-1-39 참조).

〈표 IV-1-39〉 교사 처우개선비 만족도 및 적정 수준

단위: %(명), 점, 만원

구분	처우개선비 만족도					계(수)	4점 평균	적정수준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별로 않음	만족하지 전혀 않음	만족하지 전혀 않음			평균	(수)
전체	11.7	50.5	31.5	6.3	100.0(111)	2.3	46.9	(42)	
기관 유형									
공립 병설	8.3	25.0	58.3	8.3	100.0( 12)	2.7	35.0	( 8)	
공립 단설	20.0	20.0	60.0	-	100.0( 5)	2.4	25.0	( 3)	
사립	11.7	55.3	26.6	6.4	100.0( 94)	2.3	52.1	(31)	
$\chi^2(df)/F$			-			1.4	11.9***		
지역규모									
대도시	11.3	52.8	32.1	3.8	100.0( 53)	2.3	40.3	(19)	
중소도시	9.3	51.2	32.6	7.0	100.0( 43)	2.4	53.1	(17)	
읍면지역	20.0	40.0	26.7	13.3	100.0( 15)	2.3	50.2	( 6)	
$\chi^2(df)/F$			-			0.2	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사. 재정 지원

### 1) 교육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유아 중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즉, 기본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에 8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표 IV-1-40〉 방과후과정비 지원액

단위: 원

구분	2009~2011	2012~2015
공립	30,000	50,000
사립	50,000	70,000

주: 방과후 과정비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반(1일 8시간 이상 시설운영)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으로 2011년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2012년 3,4세는 전년도와 동일 기준, 5세는 누리과정 시행으로 전액 지원, 2013년 3-5세 전액 지원 함.

자료: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I.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외(2014). 영유아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II. 육아정책연구소.

〈표 IV-1-41〉 방과후과정 예산 및 유아교육예산 대비 지원 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종일 반비	종일제 환경 개선비	종일제 보조인 력지원	종일제 영미 지원	계	종일 반 지원 비율	방과후 과정비	방과후 과정 환경 개선비	방과후 과정 보조인 력지원	방과후 과정 운영비 지원	계	방과후 과정 지원 비율	방과후 과정비	방과후 과정 환경 개선비	방과후 과정 보조인 력지원	계	방과후 과정 지원 비율	방과후 과정비	방과후 과정 환경 개선비	방과후 과정 보조인 력지원	계	방과후 과정 지원 비율		
전체	63,852	18,338	50,590	45,931	178,711	11.9	291,623	7,333	33,665	44,413	377,034	12.5	511,558	3,809	32,194	547,561	15.4	321,083	2,171	34,474	357,728	6.7		
서울	7,250	2,200	3,089	2,904	15,443	11.1	43,114	-	3,246	-	46,360	13.4	60,057	-	3,338	63,395	16.9	31,047	-	3,381	34,428	4.9		
부산	5,523	1,000	2,880	3,209	12,612	15.0	13,443	500	1,851	1,526	17,320	10.6	22,836	500	1,882	25,218	12.8	17,535	250	1,567	19,352	7.1		
대구	4,779	800	1,831	1,424	8,834	14.7	18,340	250	599	1,150	20,339	16.3	21,770	250	676	22,696	15.1	20,517	-	-	20,517	10.4		
인천	4,082	485	2,999	2,013	9,579	12.2	15,405	166	468	-	16,039	7.5	20,755	389	500	21,644	12.1	15,605	206	-	15,811	7.0		
광주	559	290	2,671	586	4,106	8.7	14,481	-	1,088	487	16,056	17.1	13,962	-	1,138	15,100	16.4	13,111	-	-	13,111	8.0		
대전	3,471	527	2,726	1,910	8,634	18.1	16,640	15	731	2,520	19,906	19.9	15,502	-	770	16,272	14.5	12,289	-	713	13,002	8.2		
울산	1,633	360	2,293	695	4,981	13.8	7,006	200	1,169	6,338	14,713	22.0	14,789	40	914	15,743	17.4	9,424	35	933	10,392	8.7		
세종	-	-	-	-	-	-	387	150	138	404	1,079	16.0	2,754	100	206	3,060	8.3	1,702	-	257	1,959	1.8		
경기	8,489	1,000	6,315	5,520	21,324	5.9	56,193	-	9,201	10,243	75,637	11.0	190,312	-	9,200	199,512	20.7	76,417	-	13,500	89,917	6.6		
강원	2,505	829	3,227	2,086	8,647	12.9	12,918	390	1,018	702	15,028	16.0	15,218	-	-	15,218	11.7	11,151	-	-	11,151	5.2		
충북	2,917	847	4,195	2,149	10,108	16.4	12,602	579	1,640	11,589	26,410	19.6	13,760	-	1,681	15,441	13.2	10,601	-	1,651	12,252	6.4		
충남	2,573	1,387	1,760	365	6,085	8.0	10,559	1,650	2,485	2,970	17,664	12.1	23,130	580	1,022	24,732	16.1	12,761	-	2,009	14,770	6.5		
전북	4,010	898	310	6,214	11,432	15.0	14,659	2,400	2,112	6,720	25,891	15.9	21,855	1,000	1,643	24,498	14.8	15,416	800	814	17,030	8.0		
전남	3,143	1,634	5,494	3,493	13,764	14.1	9,556	573	2,116	-	12,245	8.5	25,740	520	2,092	28,352	14.8	13,679	540	2,144	16,363	5.6		
경북	5,526	4,727	4,953	6,080	21,286	17.8	23,304	210	3,322	11,323	38,159	14.0	24,273	-	3,545	27,818	10.8	28,103	-	3,787	31,890	7.8		
경남	6,871	1,074	4,656	6,660	19,261	14.9	21,814	250	2,434	4,782	29,280	12.5	17,291	250	3,274	20,815	7.0	28,131	250	3,259	31,640	8.5		
제주	521	280	1,191	623	2,615	15.1	2,429	180	282	-	2,891	8.0	7,554	180	313	8,047	22.4	3,594	90	460	4,144	5.6		

주: 해당 예산에 대한 지자체 전입금은 포함되지 않음. 방과후 과정 지원액 비율=(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액 / 유아교육예산)×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유아정책연구소(각년도),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방과후과정 교육비는 국·공립이 5만원, 사립 7만원이다. 2011년까지 공립 3만원, 사립 5만원이었으나 20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각각 5만원 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이후 지원액이 동결되었다.

## 2) 예산 지원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에 대한 지원액은 2014년 기준 총 357,728 백만원으로 총 유아교육 예산 대비 6.7%에 해당한다. 2013년 547,561 백만원에서 2천억 정도가 줄었다. 총 예산대비 방과후과정 지원율은 대구가 10.4%로 높고, 울산 8.7%, 경남 8.5%, 대전 8.2% 등의 순이며, 서울이 4.9%로 가장 낮았다(표 IV-1-41 참조).

### 아. 운영 애로 및 요구

#### 1) 효과성

##### 가) 유치원 운영에의 도움

방과후과정이 유치원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조사한 결과, 도움이 29.0%, 매우 도움이 42.0%로 71%가 도움된다고 답하였고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4.0점이다

〈표 IV-1-42〉 방과후과정의 유치원 운영 도움정도

단위: %(개원), 점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음	별로 도움되지 않음	보통	도움	매우 도움	계(수)	5점 평균
전체	2.7	8.4	17.9	29.0	42.0	100.0(452)	4.0
기관 유형							
공립 병설	0.6	5.2	11.0	21.3	61.9	100.0(155)	4.4
공립 단설	7.7	3.8	11.5	50.0	26.9	100.0( 26)	3.8
사립	3.3	10.7	22.5	31.4	32.1	100.0(271)	3.8
$\chi^2(df)/F$			-				16.7***
지역규모							
대도시	2.5	8.6	23.9	28.2	36.8	100.0(163)	3.9
중소도시	4.7	9.5	12.8	31.8	41.2	100.0(148)	4.0
읍면지역	0.7	7.1	16.3	27.0	48.9	100.0(141)	4.2
$\chi^2(df)/F$			13.9(8)				2.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01$



공립 병설이 공립 단설이나 사립보다 도움된다는 비율이 높고, 도움정도도 유의하게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읍면지역일수록 도움된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IV-1-42 참조).

나) 도움 분야

방과후과정이 유치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 그 분야에 대해 추가 질문한 결과, 부모의 유치원 만족도 향상이 64.2%, 원아 모집 16.2%,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기여 13.7%, 재정 운영에의 도움 5.9% 순이었다. 공립 병설과 단설은 원아 모집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역사회 기여가 사립보다 높고, 사립은 부모의 유치원 만족도 향상이 높았다. 또한 읍면지역일수록 원아 모집에 도움된다는 비율이 높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역사회 기여는 반대로 도시지역이 높았다(표 IV-1-43 참조).

〈표 IV-1-43〉 방과후과정의 유치원 운영 도움 분야

단위: %(개원)

구분	원아 모집	재정 운영	부모의 유치원 만족도 향상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기여	계(수)
전체	16.2	5.9	64.2	13.7	100.0(321)
기관 유형					
공립 병설	20.9	-	61.2	17.8	100.0(129)
공립 단설	20.0	-	65.0	15.0	100.0( 20)
사립	12.2	11.0	66.3	10.5	100.0(172)
$\chi^2(df)$			-		
지역규모					
대도시	11.3	5.7	64.2	18.9	100.0(106)
중소도시	15.7	8.3	60.2	15.7	100.0(108)
읍면지역	21.5	3.7	68.2	6.5	100.0(107)
$\chi^2(df)$			12.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다) 자녀양육에의 도움정도

<표 IV-1-44> 는 유치원 원장 대상으로 방과후과정이 맞벌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다소 도움이 24.1%, 매우 도움이 69.2%로 93.3%가 도움된다고 답하였고, 도움정도는 5점 평균 4.6점으로 높았다. 또한 공립 병설과 사립은 90%를 상회하나 공립 단설은 88.4%로 낮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 IV-1-44〉 방과후과정의 맞벌이 부모 자녀양육 도움정도

단위: %(개원), 점

구분	전혀 되지	도움 않음	별로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매우 도움	계(수)	5점 평균
전체	0.2		1.1	5.3	24.1	69.2	100.0(452)	4.6
기관 유형								
공립 병설	0.6		0.6	6.5	27.7	64.5	100.0(155)	4.5
공립 단설	-		3.8	7.7	19.2	69.2	100.0( 26)	4.5
사립	-		1.1	4.4	22.5	72.0	100.0(271)	4.7
$X^2(df)/F$								1.4
지역규모								
대도시	-		0.6	4.9	25.2	69.3	100.0(163)	4.6
중소도시	0.7		2.0	4.1	24.3	68.9	100.0(148)	4.6
읍면지역	-		0.7	7.1	22.7	69.5	100.0(141)	4.6
$X^2(df)/F$				-				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2) 어려움

방과후과정 운영 시 어려움 1순위로 방과후과정반 교사 채용이 29.6%, 교육청 지정 운영시간 준수와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 급증이 각각 24.3%, 23.0%, 교육청의 지나친 지도감독 11.9%순이다. 2순위도 1순위와 유사하게 방과후과정반 교사 채용과 교육청 지정 운영시간 준수 24%정도, 교육청의 지나친 지도감독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 급증이 17% 정도이다. 1,2순위를 합산하면, 방과후과정반 교사 채용이 54.2%, 교육청 지정 운영시간 준수 48.6%, 교육청의 지나친 지도감독 28.9%로 높았다(표 IV-1-45 참조).

〈표 IV-1-45〉 방과후과정 운영 시 어려움: 1+2순위

단위: %(명)

구분	방과후 과정반 교사 채용	교육청 지정 운영 시간 준수	교육청 지나친 지도 감독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 급증	외부학원 이용유아 관리 감독	운영비 및 인건비 부담	업무 과중	시설 및 차량 부족	기타	없음	계(수)
1순위	29.6	24.3	11.9	23.0	6.9	1.5	0.9	0.4	0.9	0.4	100.0(452)
2순위	24.6	24.3	17.0	17.0	12.6	1.3	0.9	0.4	1.5	0.2	100.0(452)
1+2순위	54.2	48.6	28.9	40.0	19.5	2.8	1.8	0.8	2.4	0.6	(4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표 IV-1-46>은 방과후과정 운영 시 어려움을 제 특성별로 분석한 것이다.

<표 IV-1-46> 제 특성별 방과후과정 운영 시 어려움: 1순위

단위: %(명)

구분	방과후과정반 운영 위한 교사 채용	교육청 지정 운영시간 준수	교육청 지정 교지지도점	방과후과정반 유아 급증	외부학원 유아 관리 감독	운영비 및 인건비 부담	업무과중	시설 및 차량 부족	기타	없음	계(수)
전체	29.6	24.3	11.9	23.0	6.9	1.5	0.9	0.4	0.9	0.4	100.0(452)
기관 유형											
공립 병설	41.3	23.2	5.2	15.5	8.4	1.9	1.9	0.6	1.3	0.6	100.0(155)
공립 단설	46.2	30.8	-	11.5	7.7	3.8	-	-	-	-	100.0( 26)
사립	21.4	24.4	17.0	28.4	5.9	1.1	0.4	0.4	0.7	0.4	100.0(271)
지역규모											
대도시	20.2	26.4	16.0	26.4	9.8	0.6	-	0.6	-	-	100.0(163)
중소도시	25.0	24.3	12.8	27.7	4.1	3.4	0.7	-	0.7	1.4	100.0(148)
읍면지역	45.4	22.0	6.4	14.2	6.4	0.7	2.1	0.7	2.1	-	100.0(1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공립 병설과 공립 단설은 방과후과정반 운영 위한 교사 채용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반면, 사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 유아 급증과 교육청 지정 운영시간 준수, 방과후과정반 운영 위한 교사 채용 등을 지적하였다 지역별로는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읍면지역은 방과후과정반 운영 위한 교사 채용에 대한 어려움이 타 지역보다 높았다(표 IV-1-46 참조).

한편, 방과후과정반 담당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1, 2순위로 살펴보면 <표 IV-1-47>와 같다

<표 IV-1-47> 방과후과정반 운영 시 어려운 점: 1+2순위

단위: %(명)

구분	혼합연령 학급 구성 따른 교육활동 계획 및 실행	방과후 과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부족	기본교육과정반과 교육활동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과정반 전용 교재 교구와 전용 교실 부족	다양한 업무로 인한 교육 활동 안정적 운영 어려움	유아 인원 대비 인력 부족	외부 학원 이용 유아의 일정 관리	기타	없음	계(수)
1순위	18.1	5.7	11.9	6.2	18.9	29.1	8.9	0.5	0.8	100.0(371)
2순위	9.1	13.7	13.7	12.4	23.7	14.0	11.0	1.9	0.3	100.0(371)
1+2순위	27.2	19.4	25.6	18.6	42.6	43.1	19.9	2.4	1.1	(37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1순위는 유아 인원 대비 인력 부족이 29.1%로 높고 다양한 업무로 인한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 어려움이 18.9%, 혼합연령 학급 구성에 따른 교육활동 계획 및 실행의 어려움 18.1%, 기본교육과정반 교육활동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 11.9% 순이다. 2순위로는 다양한 업무로 인한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이 23.7%로 높고, 나머지는 대부분 10%대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유아 수 대비 인력 부족이 43.1%, 다양한 업무로 인한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 42.6%, 혼합연령 학급 구성에 따른 교육활동 계획 및 실행과 기본 교육과정반 교육활동과 중복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이 각각 27.2%, 25.6% 순이었다(표 IV-147 참조).

### 3) 개선사항

유치원 원장 대상으로 방과후과정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1순위로 보조인력 지원과 운영비 지원 확대가 각각 24.3%, 23.9%로 높고 수요에 따른 운영시간 탄력 조정이 17.0%,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수준 인상 12.8%, 방과후과정비 지원대상 조정 9.7%, 이용 아동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 마련 5.5%, 나머지는 3% 내외 정도이었다. 2순위로는 운영비 지원 확대가 23.0%, 수요에 따른 운영시간 탄력 조정과 보조인력 지원이 약 19.1% 정도,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 수준 인상 15.7%,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기준 완화 8.9% 순이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운영비 지원 확대가 46.9%로 높고, 보조인력 지원 43.1%, 수요에 따른 운영시간 탄력 조정 36.1%,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인상 28.5%, 방과후과정비 지원대상 조정과 특성화프로그램 운영기준 완화가 10% 대 정도이었다(표 IV-148 참조).

〈표 IV-1-48〉 방과후과정 개선사항: 1+2순위(원장)

단위: %(개원)

구분	보조인력 지원	담당교사 자격 기준 완화	운영비 지원 확대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 수준 인상	방과후과정비 지원 대상 조정	이용 아동선정 기준 마련	수요에 따른 운영 시간 탄력 조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기준 완화	방과후과정 교사 연수 및 처우 개선	방과후과정 교실 확보	계(수)
1순위	24.3	2.7	23.9	12.8	9.7	5.5	17.0	3.5	0.2	0.2	100.0(452)
2순위	18.8	1.7	23.0	15.7	5.6	6.4	19.1	8.9	0.2	0.2	100.0(452)
1+2순위	43.1	4.4	46.9	28.5	15.3	11.9	36.1	12.4	0.4	0.4	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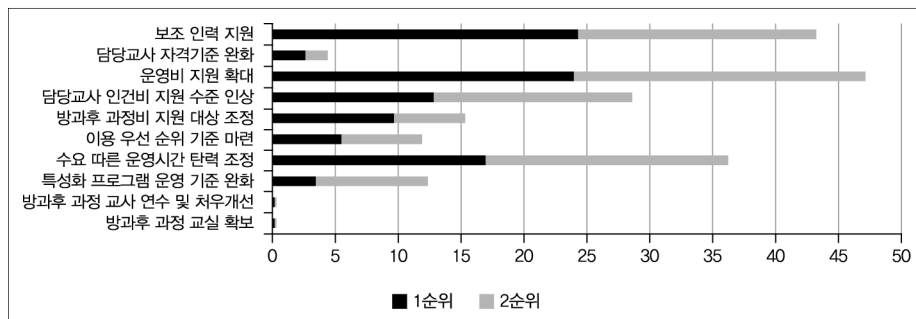
방과후과정 개선사항 1순위를 제 특성별로 분석하면, 공립 병설은 보조인력, 공립 단설은 보조인력 지원과 방과후과정비 지원대상 조정, 사립은 운영비 지원 확대와 수요에 따른 운영시간 조정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표 IV-1-49 참조).

〈표 IV-1-49〉 제 특성별 방과후과정 개선사항: 1순위

단위: %(개원)

구분	보조인력 지원	담당교사 자격기준 완화	운영비 지원 확대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 수준 인상	방과후과정비 지원대상 조정	이용 우선 순위 기준 마련	수요 따른 운영시간 탄력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기준 완화	방과후과정 교사 연수 및 처우개선	방과후과정 교실 확보	계(수)
전체	24.3	2.7	23.9	12.8	9.7	5.5	17.0	3.5	0.2	0.2	100.0(452)
기관 유형											
공립 병설	32.9	4.5	16.8	14.8	9.7	5.2	14.8	0.6	-	0.6	100.0(155)
공립 단설	26.9	3.8	11.5	-	26.9	15.4	15.4	-	-	-	100.0( 26)
사립	19.2	1.5	29.2	12.9	8.1	4.8	18.5	5.5	0.4	-	100.0(271)
지역규모											
대도시	17.8	3.1	23.9	12.9	8.6	4.9	22.7	5.5	0.6	-	100.0(163)
중소도시	23.6	2.0	23.0	14.9	13.5	5.4	13.5	4.1	-	-	100.0(148)
읍면지역	32.6	2.8	24.8	10.6	7.1	6.4	14.2	0.7	-	0.7	100.0(1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그림 IV-1-4] 방과후과정 개선사항: 1+2순위(원장)

한편, 방과후과정반을 담당하는 교사는 개선사항 1순위로 방과후과정 교사 인건비 현실화가 24.3%로 높고, 방과후과정 교사 고용안전성 제고 17.8%, 보조인력지원 확대가 16.2%, 방과후과정 교사업무부담 경감 및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 확대가 10% 정도 순이었다 2 순위로는 보조인력 지원확대와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이 15% 정도, 방과후과정 교사인건비 현실화와 방과후과

정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 확대가 12~13% 정도로 높았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방과후과정 교사 인건비 현실화가 37.7%로 높고, 방과후과정 교사 고용 안정성 제고와 교사 업무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보급,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 확대가 22~23%대로 비등하였다(표 IV-1-50 참조).

〈표 IV-1-50〉 방과후과정 개선사항: 1+2순위(교사)

단위: %(명)

구분	방과후과정교사고용안정성제고	방과후과정교사전문성향상	방과후과정교사인건비현실화	방과후과정교사의업무부담경감	보조력지원대확대	예산의안정적확보및지원대확대	교육간통일된운영지침	다양하고질높은프로그램개발보급	외학이용아유관리감독강화	기타	없음	계(수)
1순위	17.8	8.4	24.3	10.2	16.2	10.0	2.4	8.6	1.3	0.8	-	100.0(371)
2순위	7.0	10.5	13.4	13.0	16.1	12.1	6.2	15.1	4.9	1.4	0.3	100.0(371)
1+2순위	24.8	18.9	37.7	23.2	32.3	22.1	8.6	23.7	6.2	2.2	0.3	(37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2. 유치원 돌봄교실

2절에서는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개요와 운영 현황 및 요구 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 규정 등을 살펴보고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135개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운영 형태와 학급 유형, 맞벌이 가구 비율 운영시간, 애로 및 요구,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 가. 개요

온종일 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돌봄 및 교육서비스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는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서민들이 자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교육부, 2015).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 및 ‘돌봄교실’에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2004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 탁아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을 도입하였다. 이듬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06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였다. 2009년에는 돌봄 기능을 추가하고, 유아교육과 아동 보호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야간까지 운영하는 종일 돌봄교실이 시범 운영되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운영시간을 연장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을 시범 운영하였다(김홍원, 2013).

2010년에는 야간돌봄 전담유치원 150개교가 운영되었고(교육부 2015), 2011년에는 유치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실시되었다. 이전까지 방과후 과정을 통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주로 방과후 오후 21시까지만 운영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저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은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 시설 간 연계 활용도 전무한 실정이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에 기존에 실시 중인 돌봄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시간대를 확대하여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보육강사를 채용하여 아이들에게 식사는 물론 다양한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단위 운영과 유·초등 연계 운영 등 운영모형을 다양화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모형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자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1년부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다음의 운영 방향을 기초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연중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위해 돌봄 강사의 유자격자 채용 및 연수, 지도를 강화하며, 지역여건이나 학부모의 실수요에 따라 돌봄 교실을 운영하며, 예산 지원은 아침 저녁 돌봄 등 운영 여부와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다.

## 나. 운영 현황

### 1) 기관 수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수는 2015년 2월 기준 979개원이다. 이 중 국공립이 386개원, 사립이 593개원으로 사립이 많이 운영한다. 2014년에는 국공립이 381개원, 사립이 782개원으로 국공립은 변동이 없으나 사립은 200개원 정도 운영기관 수가 줄었다(표 IV-2-1 참조).

〈표 IV-2-1〉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현황

단위: 개원, %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년	979	52	53	39	24	15	50	84	12	133	33	84	46	43	50	191	68	2
국공립	386	10	13	-	-	12	11	10	12	61	23	67	34	23	36	70	3	1
운영률	0.08	0.05	0.17			0.10	0.12	0.13	0.44	0.06	0.08	0.28	0.09	0.07	0.09	0.15	0.01	0.01
아침	140	9	13	-	-	11	6	10	3	6	5	20	7	2	31	17	-	-
야간	167	-	-	-	-	-	4	-	3	40	10	34	10	14	1	48	2	1
온종일	79	1	-	-	-	1	1		6	15	8	13	17	7	4	5	1	-
사립	593	42	40	39	24	3	39	74	-	72	10	17	12	20	14	121	65	1
운영률	14.5	6.2	12.9	15.9	9.7	1.7	23.1	64.3	-	7.0	9.6	18.7	9.1	13.0	12.6	50.6	26.0	5.0
아침	139	11	9	9	4		16	37	-	19		2	1	2	5	23	1	-
야간	286	7	12	30	8	3	14	34	-	33	9	12	3	15	2	51	52	1
온종일	168	24	19		12		9	3	-	20	1	3	8	3	7	47	12	-
2014년																		
국공립	381	9	24	-	6	5	10	11	2	53	20	53	45	18	32	81	9	3
운영률	0.08	0.05	0.34	-	0.04	0.04	0.11	0.14	0.10	0.05	0.07	0.22	0.12	0.05	0.08	0.18	0.02	0.03
사립	782	46	66	78	89	15	65	77	1	73	11	14	11	21	13	133	66	3
운영률	19.5	6.7	21.6	33.6	35.9	9.0	38.7	68.1	33.3	7.3	11.1	16.7	8.3	13.7	12.3	57.8	26.9	13.6

자료: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2014년 2월, 2015년 2월 공시자료)

돌봄 유형별로는 국공립은 아침돌봄이 140개원, 야간돌봄 167개원, 온종일돌봄 79개원이고, 사립도 아침돌봄 139개원, 야간돌봄 286개원, 온종일돌봄 168개원으로 국공립과 사립 모두 야간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많다. 전체 유치원 중 운영비율을 보면, 국공립은 0.08%, 사립 14.5%로 사립의 운영률이 높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하면 사립의 운영률이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경북과 경기도가 각각 191개원, 133개원으로 가장 많다. 세종과 제주가 각각 12개원, 2개원으로 적다. 전체 어린이집 대비 운영 비율은 세종이 0.44%로 가장 높고 다음은 충북 0.28% 순이다. 한편, 사립유치원은 경북이 121개원으로 단연 많고, 경기, 울산 등이 70여 개원으로 많은 편이다. 이를 다시 운영비율로 보면, 울산과 경북이 각각 64.3%, 50.6%로 높고, 나머지는 10~20% 선이다(표 IV-2-1 참조).

## 2) 돌봄 유형

돌봄교실은 아침돌봄, 저녁돌봄, 온종일돌봄 3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조사대상 중 온종일 돌봄과 저녁돌봄이 각각 47.4%, 45.9%로 다수를 차지하며, 아침



돌봄이 6.8%로 적었다. 기관 유형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공립 병설은 아침돌봄이 17.6%로 타 유형보다 높은 편이고 사립은 저녁돌봄이 50.5%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을 운영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IV-2-2 참조).

〈표 IV-2-2〉 돌봄교실 운영형태

단위: %(개원)

구분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온 종일	계(수)	구분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온 종일	계(수)
전체	6.8	45.9	47.4	100.0(133)					
기관 유형					지역규모				
공립 병설	17.6	23.5	58.8	100.0( 17)	대도시	13.8	48.3	37.9	100.0( 29)
공립 단설	-	43.5	56.5	100.0( 23)	중소도시	1.5	40.3	58.2	100.0( 67)
사립	6.5	50.5	43.0	100.0( 93)	읍면지역	10.8	54.1	35.1	100.0(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3) 학급 및 학급당 유아 수

#### 가) 학급 및 유아 수

##### (1) 아침돌봄

먼저 아침돌봄의 운영 학급 수는 평균 1.3개 학급이다. 구간별로 보면 1개 학급이 88.9%로 다수를 차지하고, 2개와 3개 이상 학급이 각각 5.6%로 소수이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읍면지역이 평균 1.7개 학급으로 중소도시 1.2개, 대도시 1.0개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아침돌봄 이용 유아수는 기관당 평균 17.7명으로, 기관유형 및 지역규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공립병설과 단설이 사립보다 학급당 유아수가 다소 많고, 읍면지역일수록 학급당 유아 수가 많았다(표 IV-2-3 참조).

##### (2) 저녁돌봄

저녁돌봄 운영 학급수는 평균 1.3개 학급으로 아침돌봄과 동일하였다. 구간별로, 1개 학급이 87.1%로 많고, 2개 7.3%, 4개 이상 4.0%, 3개 1.6% 순이었다. 운영 학급 수는 기관 유형 및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나, 공립 단설이 평균 1.6개, 공립 병설 1.4개, 사립 1.2개 순이었다.

저녁돌봄 이용 유아수는 기관당 평균 24.2명으로 아침돌봄 이용 유아수보다 많았다. 공립 단설이 평균 33.2명, 사립이 21.7명으로 10명 이상 차이가 나고 중

소도시가 평균 26.7명, 대도시가 20.9명으로 차이를 보였다(표 IV-2-3 참조).

〈표 IV-2-3〉 아침·저녁돌봄 운영 학급 및 유아 수

단위: %(개원), 명

구분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 학급 수					유아 수	운영 학급 수					유아 수	
	1개	2개	3개 이상	계(수)	평균		1개	2개	3개	4개 이상	계(수)		평균
전체	88.9	5.6	5.6	100.0(72)	1.3	17.7	87.1	7.3	1.6	4.0	100.0(124)	1.3	24.2
기관유형													
공립병설	84.6	-	15.4	100.0(13)	1.5	22.5	85.7	-	7.1	7.1	100.0(14)	1.4	25.4
공립단설	92.3	7.7	0.0	100.0(13)	1.1	20.4	82.6	8.7	-	8.7	100.0(23)	1.6	33.2
사립	89.1	6.5	4.3	100.0(46)	1.2	15.6	88.5	8.0	1.1	2.3	100.0(87)	1.2	21.7
X <sup>2</sup> (df)/F		-			0.7	1.7		-				2.1	3.0
지역규모													
대도시	100.0	-	-	100.0(15)	1.0	13.3	92.0	-	8.0	-	100.0(25)	1.2	20.9
중소도시	90.0	7.5	2.5	100.0(40)	1.2	17.9	80.3	13.6	-	6.1	100.0(66)	1.3	26.7
읍면지역	76.5	5.9	17.6	100.0(17)	1.7	21.1	97.0		3.0	100.0(33)	1.2	21.7	
X <sup>2</sup> (df)/F					3.6*	1.4						0.5	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5

나) 학급 당 유아 수

아침돌봄 학급 당 유아 수는 평균 15.1명이다. 공립 단설이 타 기관보다 5명 정도 많다. 한편, 저녁돌봄의 학급 당 유아 수는 20.3명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공립 단설이 평균 23.4명으로 가장 많고, 공립 병설이 14.6명으로 적다. 또한 중소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유아 수가 많으나 소 편이다(표 IV-2-4 참조).

〈표 IV-2-4〉 학급당 유아 수

단위: 명(명)

구분	아침돌봄		저녁돌봄		구분	아침돌봄		저녁돌봄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15.1	(57)	20.3	(126)					
기관유형					지역규모				
공립병설	13.8	(13)	14.6	(21)	대도시	15.6	(15)	20.8	(26)
공립단설	19.1	(12)	23.4	(25)	중소도시	14.7	(26)	22.1	(59)
사립	14.0	(32)	20.9	(80)	읍면지역	15.1	(16)	17.6	(41)
X <sup>2</sup> (df)/F	1.5		2.6		X <sup>2</sup> (df)/F	0.05		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다) 학급당 적정 유아수

돌봄 담당교사가 인식한 1인당 적정 유아수는 3세 평균 7.4명, 4세 10.2명, 5세 12.3명, 혼합연령 학급 12.9명으로 연령에 비례하였다. 이는 기관유형별로 차이를 보여서, 모든 연령 학급에서 공립 단설이 교사 1인당 적정 유아수가 가장 많고, 공립 단설이 적다

〈표 IV-2-5〉 돌봄교실 교사 1인당 적정 유아수

						단위: 명(명)					
구분	3세	4세	5세	혼합학급	(수)	구분	3세	4세	5세	혼합학급	(수)
전체	7.4	10.2	12.3	12.9	(135)						
기관유형						지역규모					
공립병설	6.1	8.8	11.1	10.3	(23)	대도시	8.0	10.4	13.3	14.9	(32)
공립단설	9.3	13.3	16.5	15.1	(26)	중소도시	7.0	10.1	12.1	12.4	(61)
사립	7.2	9.6	11.4	12.9	(86)	읍면지역	7.6	10.1	11.9	12.1	(42)
F	4.3*	6.7**	9.2***	4.4*		F	0.7	0.04	0.6	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4) 휴업일 및 토요일, 방학 운영

가) 운영 여부 및 유아 수

<표 IV-2-6>는 방학기간 중 돌봄교실 운영 여부 및 운영 요일별 운영 비율과 운영 시 이용 유아수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방학기간 중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89.5%로 대부분 운영하고 토요일은 34.6%, 휴업일은 9.0%로 약 1/10 정도 기관만 운영하였다 휴업일을 비롯한 토요일, 방학기관 모두 미운영 한다는 비율은 6.0% 정도 되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휴업일은 공립, 토요일은 사립의 운영 비율이 높았다 방학 중 운영 비율은 공립 병설이 94.1%, 공립 단설 91.3%, 사립 88.2% 순이다 미운영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지역규모별로는 휴업일은 중소도시 토요일은 도시지역일수록, 방학기간은 읍면지역일수록 운영 비율이 높았다.

한편, 휴업일, 토요일 및 방학기간 중 돌봄교실 이용 유아수는 휴업일이 기관당 평균 11.6명, 토요일 평균 4.4명, 방학 평균 24.1명이었다. 방학기간은 공립 병설이 평균 33.6명, 공립 단설 평균 29.9명, 사립 20.8명 순으로 차이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휴업일과 토요일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2-6〉 휴업일, 토요일, 방학기간 중 돌봄교실 운영 여부

단위: %(개원), 명

구분	운영 여부					이용 유아 수					
	휴업일	토요일	방학	미운영	(수)	휴업일		토요일		방학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9.0	34.6	89.5	6.0	(133)	11.6	(12)	4.4	(46)	24.1	(119)
기관유형											
공립병설	17.6	-	94.1	5.9	(17)	6.3	(3)	-		33.6	(16)
공립단설	17.4	4.3	91.3	4.3	(23)	18.0	(4)	2.0	(1)	29.9	(21)
사립	5.4	48.4	88.2	6.5	(93)	9.6	(5)	4.5	(45)	20.8	(82)
F						1.3		0.2		3.4*	
지역규모											
대도시	6.9	44.8	86.2	3.4	(29)	12.5	(2)	3.4	(13)	23.3	(25)
중소도시	10.4	32.8	89.6	7.5	(67)	9.3	(7)	5.0	(22)	26.3	(60)
읍면지역	8.1	29.7	91.9	5.4	(37)	16.3	(3)	4.5	(11)	20.8	(34)
F						0.5		0.3		0.7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5$

나) 미운영 이유

토요일 미운영 이유를 보면, 원아가 없다가 75.9%로 다수이고, 수요는 있으나 인원이 적어서 학급을 구성하지 못하였거나 수요는 충분하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각각 9.2%, 8.0%이었다. 공립 단설은 이용 원아가 없다, 공립 병설은 수요는 충분하나 인력이 없다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2-7〉 토요일 미운영 이유

단위: %(개원)

구분	이용 원아 없음	수요 있으나 인원이 적음	수요 충분하나 인력 부족	기타	계(수)	구분	이용 원아 없음	수요 있으나 인원이 적음	수요 충분하나 인력 부족	기타	계(수)
전체	75.9	9.2	8.0	6.9	100.0(87)						
기관유형						지역규모					
공립병설	70.6	-	11.8	17.6	100.0(17)	대도시	81.3	12.5	-	6.3	100.0(16)
공립단설	81.8	13.6	4.5	-	100.0(22)	중소도시	75.6	13.3	8.9	2.2	100.0(45)
사립	75.0	10.4	8.3	6.3	100.0(48)	읍면지역	73.1	-	11.5	15.4	100.0(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이용 원아가 없다는 이유를 주로 들고, 읍면

지역은 수요는 충분하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표 IV-2-7 참조).

## 다. 운영시간

2015년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시간 관련 지침을 살펴보고, 돌봄교실 운영 기관 및 전담교사를 대상으로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시작시각과 적정시각 등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sup>26)</sup>.

### 1) 운영 지침

유치원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22시까지이다. 아침돌봄은 보통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간까지, 저녁돌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 정도까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학부모의 실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IV-2-8>과 같이, 광주와 경기 지역의 경우 저녁돌봄 종료시간이 오후 9시로 타 지역보다 1시간 정도 이른다.

〈표 IV-2-8〉 엄마품 온종일 돌봄 운영 현황

구분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남
아침	07:00~09:00	-	07:00~09:00	-	-	-
저녁	19:00~22:00	-	17:00~21:00	-	-	-
온종일	-	07:00~22:00		07:00~21:00	07:00~22:00	07:00~22:00

주: 각 시도 교육청이 공시한 온종일돌봄교실 운영계획에서 운영시간 공시한 시도만 제시  
 자료: 각 시도 교육청(2015): 온종일돌봄교실 운영계획.

유치원 돌봄교실은 토요일과 방학 중에도 수요가 있을 경우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수요 부족 등으로 단독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거점 유치원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시작시간

#### 가) 아침돌봄

아침돌봄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가 86.0%로 다수이고, 8시 이후가 14.0%

26) 유치원 돌봄교실은 전담교사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시간에 대해 교사가 원장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교사 조사결과 중심으로 제시함.

정도이었다. 사립 중 90.6%가 7~8시에 돌봄을 시작하여 타 기관에 비해 운영시간이 일렀고, 읍면지역은 8시 이후에 시작하는 비율이 31.3%로 시작시간이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늦었다(표 IV-2-9 참조).

〈표 IV-2-9〉 아침돌봄 시작시각

단위: %(명)

구분	기관유형			지역규모			전체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7:00~8:00	84.6	75.0	90.6	93.3	92.3	68.8	86.0
8:00 이후	15.4	25.0	9.4	6.7	7.7	31.3	14.0
계(수)	100.0(13)	100.0(12)	100.0(32)	100.0(15)	100.0(26)	100.0(16)	100.0(5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나) 저녁돌봄

저녁돌봄 시작시각은 오후 17시에서 18시가 58.7%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다음은 오후 18시에서 19시가 24.6%이다 17시 이전에 저녁돌봄을 시작하는 기관도 11.9% 정도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공립 병설의 23.8%가 오후 17시 이전에 시작하여 다른 유형에 비해 시작시간이 이르고, 사립은 오후 18시 이후가 41.3%로 높았다(표 IV-2-10 참조).

〈표 IV-2-10〉 저녁돌봄 시작시각

단위: %(명)

구분	기관유형			지역규모			전체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7:00 이전	23.8	8.0	10.0	3.8	10.2	19.5	11.9
17:00~18:00	76.2	76.0	48.8	38.5	71.2	53.7	58.7
18:00~19:00	-	16.0	33.8	38.5	18.6	24.4	24.6
19:00 이후	-	-	7.5	19.2	-	2.4	4.8
계(수)	100.0(21)	100.0(5)	100.0(80)	100.0(26)	100.0(59)	100.0(41)	100.0(1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3) 종료시간

저녁돌봄 종료시각은 오후 20시에서 21시가 2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후 22시 이후가 27.0%, 19시에서 20시가 21.4% 순이다. 오후 19시 이전에 종료하는 비율은 7.1%로 적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공립 병설은 오후 19시에서 20시가 38.1%로 가장 높고, 오후 22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기관이 없어서 다른 유형에 비해 종료시각이 이른 편이다. 반면 사립은 오후 22시 이후가 38.8%로 높고,

오후 21시에서 22시가 17.5%로 오후 21시 이후에 종료하는 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역규모별로 대도시는 22시 이후가 50.0%로 타 지역에 비해 종료시각이 늦은 편이다(표 IV-2-11 참조).

〈표 IV-2-11〉 저녁돌봄 종료시각

단위: %(명)

구분	기관유형			지역규모			전체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9:00 이전	9.5	16.0	3.8	3.8	6.8	9.8	7.1
19:00~20:00	38.1	20.0	17.5	-	27.1	26.8	21.4
20:00~21:00	33.3	40.0	22.5	15.4	30.5	31.7	27.8
21:00~22:00	19.0	12.0	17.5	30.8	18.6	4.9	16.7
22:00 이후	-	12.0	38.8	50.0	16.9	26.8	27.0
계(수)	100.0(21)	100.0(25)	100.0(80)	100.0(26)	100.0(59)	100.0(41)	100.0(1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4) 주요 하원시간

저녁돌봄 이용 유아의 주요 하원시간대는 오후 18시 30분에서 19시 사이가 31.0%, 오후 18시에서 18시 30분 21.4%, 19시 30분에서 20시 17.5%로 오후 18시에서 20시 사이에 다수가 하원하고 있었다.

〈표 IV-2-12〉 저녁돌봄 주요 하원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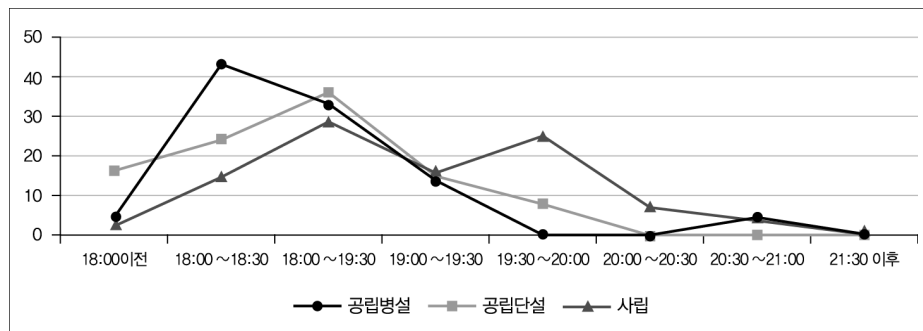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기관유형			지역규모			전체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8:00 이전	4.8	16.0	2.5	3.8	8.5	2.4	5.6
18:00-18:30	42.9	24.0	15.0	-	28.8	24.4	21.4
18:30-19:00	33.3	36.0	28.8	19.2	33.9	34.1	31.0
19:00-19:30	14.3	16.0	16.3	11.5	11.9	24.4	15.9
19:30-20:00	-	8.0	25.0	42.3	15.3	4.9	17.5
20:00-20:30	-	-	7.5	11.5	-	7.3	4.8
20:30-21:00	4.8	-	3.8	7.7	1.7	2.4	3.2
21:30 이후	-	-	1.3	3.8	-	-	0.8
계(수)	100.0(21)	100.0(25)	100.0(80)	100.0(26)	100.0(59)	100.0(41)	100.0(1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기관유형별로는 공립 병설 76.2%와 공립 단설 60.0%가 오후 18시에서 19시 사이에 하원하는데 반해, 사립은 오후 19시 이후가 53.9%로 하원시간이 공립보다 늦다. 사립의 저녁돌봄 종료시각이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늦은 것도 아동의

하원시간이 전반적으로 늦기 때문이다. 지역규모별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오후 18시에서 19시가 각각 62.7%, 58.5%로 다빈도인 반면 대도시는 17시 이후가 76.8%이며, 21시 30분 이후에 하원 하는 비율도 3.8%로 하원시간대가 늦은 편이다(표 IV-2-12 참조).



[그림 IV-2-1] 저녁돌봄 이용 유아의 주요 하원시간

### 5) 적정 운영시간

#### 가) 아침돌봄

돌봄 교실 운영시간에 이어 적정 운영시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아침돌봄 적정시간에 대해 교사 중 79.3%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고, 14.8%는 오전 8시에서 9시, 오전 7시 이전도 소수이나 5.2% 정도를 차지하였다.

<표 IV-2-13> 아침돌봄 적정 시작시각: 교사

구분	기관유형			지역규모			전체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07:00 이전	-	7.7	5.8	6.3	4.9	4.8	5.2
07:00~08:00	65.2	73.1	84.9	84.4	77.0	78.6	79.3
08:00~09:00	34.8	19.2	8.1	6.3	18.0	16.7	14.8
09:00 이후	-	-	1.2	3.1	-	-	0.7
계(수)	100.0(23)	100.0(26)	100.0(86)	100.0(32)	100.0(61)	100.0(42)	100.0(1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기관유형별로도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공립 단설과 병설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가 사립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오전 7시 이전,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가 높았다

나) 저녁돌봄

저녁돌봄 적정 종료시각에 대해 원장과 교사에게 질문하였다. 먼저 원장은 오후 20시에서 21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40.6%, 오후 21시에서 22시가 29.3%, 오후 19시에서 20시가 22.6% 순이다. 기관유형별로는 공립 병설은 오후 7시에서 8시, 공립 단설은 오후 20시에서 21시, 사립은 오후 20시에서 21시와 오후 21시에서 22시 사이가 다빈도이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일수록 늦은 시각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대도시는 오후 21시에서 22시, 중소도시는 20시에서 21시, 읍면지역은 오후 19시에서 20시와 오후 20시에서 21시 사이가 다빈도를 나타내었다(표 IV-2-14 참조).

〈표 IV-2-14〉 저녁돌봄 적정 종료시각: 원장

단위: %(개원)

구분	기관유형			지역규모			전체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8:00 이전	-	4.3	-	-	1.5	-	0.8
18:00-19:00	-	13.0	1.1	-	3.0	5.4	3.0
19:00-20:00	52.9	30.4	15.1	6.9	23.9	32.4	22.6
20:00-21:00	29.4	52.2	39.8	37.9	46.3	32.4	40.6
21:00-22:00	11.8	-	39.8	51.7	22.4	24.3	29.3
22:00 이후	5.9	-	4.3	3.4	3.0	5.4	3.8
계(수)	100.0(17)	100.0(23)	100.0(93)	100.0(29)	100.0(67)	100.0(37)	100.0(1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표 IV-2-15〉 저녁돌봄 적정 종료시각: 교사

단위: %(명)

구분	기관유형			지역규모			전체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8:00 이전	26.1	11.5	4.7	-	8.2	19.0	9.6
18:00-19:00	4.3	7.7	4.7	6.3	6.6	2.4	5.2
19:00-20:00	47.8	15.4	11.6	6.3	26.2	16.7	18.5
20:00-21:00	13.0	46.2	33.7	25.0	34.4	35.7	32.6
21:00-22:00	8.7	15.4	36.0	46.9	19.7	23.8	27.4
22:00 이후	-	3.8	9.3	15.6	4.9	2.4	6.7
계(수)	100.0(23)	100.0(26)	100.0(86)	100.0(32)	100.0(61)	100.0(42)	100.0(1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한편, 저녁돌봄 전담교사는 32.6%가 오후 20시에서 21시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오후 21시에서 22시와 오후 19시에서 20시가 각각 27.4%, 18.5%, 나머지는 10% 미만으로 적었다. 다니는 기관별로 보면, 공립병설은 오후 19시에서 20시, 공립 단설은 오후 20시에서 21시, 사립은 오후 20시에서 21시, 오후 21시에서 22시가가 다빈도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가장 늦은 오후 21시에서 22시가 46.9%로 많은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오후 20시에서 21시가 각각 34.4%, 35.7%로 높았다(표 IV-2-15 참조).

## 라. 이용 대상

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과 유치원의 여건에 맞게 돌봄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단, 돌봄 대상 유아 선정 시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1) 맞벌이 가구 비율

아침돌봄 이용 유아 중 맞벌이 자녀 비율은 평균 92.7%로 대부분이 맞벌이 가구 자녀들이었다. 기관유형이나 지역규모, 기관 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나, 공립 병설보다 공립 단설이나 사립이 높고, 도시지역일수록 맞벌이 자녀가 많았다.

〈표 IV-2-16〉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

단위: %(개원)

구분	아침돌봄		저녁돌봄		구분	아침돌봄		저녁돌봄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전체	92.7	(72)	92.0	(124)					
기관유형					지역규모				
공립병설	90.3	(13)	89.7	(14)	대도시	95.4	(15)	94.9	(25)
공립단설	92.8	(13)	88.0	(23)	중소도시	92.5	(40)	89.7	(66)
사립	93.3	(46)	93.5	(87)	읍면지역	90.7	(17)	94.4	(33)
X <sup>2</sup> (df)/F	0.1		0.9		X <sup>2</sup> (df)/F	0.2		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저녁돌봄은 맞벌이 가구 자녀 비율이 평균 92%로 아침돌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사립이 93.3%로 90%미만의 공립보다 높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높으며, 기관규모가 클수록 맞벌이가구 자녀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표 IV-2-16 참조).

## 2) 돌봄서비스 이용 유아 판정

돌봄서비스 이용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과반수인 65.4%가 서류를 받았다. 공립 단설과 병설이 각각 87%, 76.5%로 높고 사립은 절반이 조금 넘는 58.1%만 서류를 받고 있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표 IV-2-17 참조).

〈표 IV-2-17〉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판단 서류 제출 여부 및 종류

단위: %(개원)

구분	서류 제출 여부		증빙서류 종류			
	받는다는 비율	(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취업증빙자료 <sup>1)</sup>	소득증빙자료 <sup>2)</sup>	(수)
전체	65.4	(133)	39.1	80.5	3.4	(87)
기관유형						
공립병설	76.5	(17)	23.1	92.3	15.4	(13)
공립단설	87.0	(23)	15.0	100.0	5.0	(20)
사립	58.1	(93)	51.9	70.4	-	(54)
X <sup>2</sup> (df)	7.9(2)*		10.0(2)**	-	-	
지역규모						
대도시	58.6	(29)	58.8	76.5	5.9	(17)
중소도시	73.1	(67)	30.6	89.8	-	(49)
읍면지역	56.8	(37)	42.9	61.9	9.5	(21)
X <sup>2</sup> (df)	3.6(2)		4.4(2)	-	-	

주: 증빙서류 종류는 중복 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한편, 증빙서류로는 취업증빙자료가 80.5%로 가장 많고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 39.1%, 소득증빙자료가 3.4%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취업증빙자료를 받지만, 공립 병설은 소득증빙자료, 사립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로 받고, 대도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고 있었다.

## 마. 프로그램 운영

### 1) 교실 형태

아침돌봄 또는 저녁돌봄 운영 시 기존 교실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83.5%로 다수이며, 전용 교실은 16.5% 정도이었다 기관유형별로 공립 단설이 전용 교실이 21.7%로 높고, 다음으로 사립 16.1%, 공립 병설 11.8% 순이었다 읍면지역일수록 전용교실을 마련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전용 교실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용교실 마련 시 예산 부담 주체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자체 부담이 77.3%, 정부 지원 36.4%로 대부분 자체 예산으로 전용교실을 마련하고 있었다(표 IV-2-18 참조).

〈표 IV-2-18〉 돌봄교실 형태 및 전용교실 확보 시 예산

단위: %(개원)

구분	돌봄교실 형태			전용교실 확보 시 예산 부담 주체 <sup>1)</sup>		
	전용교실	기존 교실	계(수)	정부 지원	자체 부담	(수)
전체	16.5	83.5	100.0(133)	36.4	77.3	(22)
기관유형						
공립병설	11.8	88.2	100.0( 17)	100.0	-	( 2)
공립단설	21.7	78.3	100.0( 23)	40.0	60.0	( 5)
사립	16.1	83.9	100.0( 93)	26.7	93.3	(15)
지역규모						
대도시	3.4	96.6	100.0( 29)	-	100.0	( 1)
중소도시	14.9	85.1	100.0( 67)	40.0	60.0	(10)
읍면지역	29.7	70.3	100.0( 37)	36.4	90.9	(11)

주: 1)은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2) 중점 활동

돌봄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점 활동을 1, 2순위로 조사하였다.

〈표 IV-2-19〉 돌봄교실 중점 활동: 1+2순위

단위: %(명)

구분	프로그램 운영	돌봄(휴식 및 간식)	자유선택 활동	생활 지도	개인 학습지도	(수)
1순위	1.5	70.4	12.6	15.6	-	100.0(135)
2순위	8.9	17.7	35.5	29.6	8.1	100.0(135)
1+2순위	10.4	88.1	48.1	45.2	8.1	(1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1순위는 휴식 및 간식을 포함한 돌봄이 70.4%로 가장 높고, 생활지도와 자유선택활동이 10%대, 프로그램 운영은 1.5%로 매우 낮았다 2순위로는 자유선택활동이 35.5%로 높고, 생활지도 29.6%, 돌봄 17.7% 순이었다. 1, 2순위를 합산하

면, 돌봄교실이 유치원의 돌봄기능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돌봄(휴식 및 간식)이 88.1%로 높고, 자유선택활동 48.1%, 생활지도 45.2% 순이었다(표 IV-2-19 참조).

### 3) 장학 및 컨설팅

#### 가) 지원 여부 및 분야

돌봄교실에 대한 장학 및 컨설팅을 받은 경우는 48.9%로 절반 정도이고 지원 횟수는 평균 1회 정도이다. 공립 병설과 대도시에서 지원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V-2-20 참조).

〈표 IV-2-20〉 장학 및 컨설팅 경험 여부

				단위: %(명), 회			
구분	경험 있음	(수)	평균	구분	경험 있음	(수)	평균
전체	48.9	(135)	1.6				
기관유형				지역규모			
공립병설	56.5	( 23)	1.3	대도시	59.4	( 32)	1.5
공립단설	46.2	( 26)	1.6	중소도시	47.5	( 61)	1.5
사립	47.7	( 86)	1.6	읍면지역	42.9	( 42)	1.7
F			1.1	F			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장학 또는 컨설팅을 받은 경우 그 분야는, 안전관리 및 위급시 대처 43.9%로 높고, 생활지도와 교수학습 지도가 10%대, 나머지는 10% 미만이었다.

〈표 IV-2-21〉 장학 또는 컨설팅 분야

									단위: %(명)
구분	교수학습 지도	생활 지도	교육계획안 작성	부모교육 및 상담	안전관리· 위급시 대처	돌봄운영 전반	기타	계(수)	
전체	10.6	16.7	6.1	6.1	43.9	9.1	7.6	100.0(66)	
기관유형									
공립병설	-	15.4	7.7	7.7	38.5	7.7	23.1	100.0(13)	
공립단설	8.3	8.3	-	-	66.7	16.7	-	100.0(12)	
사립	14.6	19.5	7.3	7.3	39.0	7.3	4.9	100.0(41)	
지역규모									
대도시	21.1	21.1	5.3	-	36.8	10.5	5.3	100.0(19)	
중소도시	6.9	20.7	3.4	6.9	44.8	6.9	10.3	100.0(29)	
읍면지역	5.6	5.6	11.1	11.1	50.0	11.1	5.6	100.0(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기관유형별로는 사립이 공립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장학 및 컨설팅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교수학습지도에 대한 장학 및 컨설팅 지원, 읍면지역은 교육계획안과 부모교육 및 상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나) 장학 및 컨설팅 요구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장학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7.0%로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필요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6 점이다 기관유형 및 지역규모별로 필요정도는 유의하지 않으나, 공립 단설이 평균 2.7점으로 높고, 공립 병설이 평균 2.5점으로 낮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2.7점으로 높은 반면에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2.5점으로 낮았다(표 IV-2-22 참조).

〈표 IV-2-22〉 돌봄교실 운영 위한 장학 및 컨설팅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불필 요	불필 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4점 평균	구분	전혀 불필 요	불필 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4점 평균
전체	5.9	37.0	49.6	7.4	100.0(135)	2.6							
기관유형							지역규모						
공립병설	8.7	39.1	47.8	4.3	100.0( 23)	2.5	대도시	9.4	37.5	46.9	6.3	100.0( 32)	2.5
공립단설	0.0	38.5	50.0	11.5	100.0( 26)	2.7	중소도시	6.6	29.5	54.1	9.8	100.0( 61)	2.7
사립	7.0	36.0	50.0	7.0	100.0( 86)	2.6	읍면지역	2.4	47.6	45.2	4.8	100.0( 42)	2.5
X <sup>2</sup> (df)/F			-			0.4	X <sup>2</sup> (df)/F			-			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바. 돌봄 교사

### 1) 돌봄교사 유형

돌봄 강사는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5). 하지만 지역 여건 및 유치원 실정에 따라 담임교사나 방과후 과정 담당 교사가 돌봄 교실을 담당할 수도 있다.

돌봄강사는 돌봄교실 전담강사가 69.2%로 많고, 기본교육과정 교사 57.9%, 방과후과정반 교사 25.6%, 유급 자원봉사자 15.0%, 보조교사 9.8% 순이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공립 병설은 기본교육과정 교사와 돌봄강사가 각각 58.8%, 52.9%, 공립 단설과 사립은 돌봄강사가 각각 78.3%, 69.9%로 많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보조교사

중소도시는 유급 자원봉사자 비율이 높았다(표 IV-2-23 참조).

〈표 IV-2-23〉 돌봄교사 유형: 원장

단위: %(개원)

구분	돌봄강사	방과후과정 교사	기본교육 과정 교사	보조교사	유급 자원봉사자	기타 (수)
전체	69.2	25.6	57.9	9.8	15.0	6.8 (133)
기관유형						
공립병설	52.9	29.4	58.8	-	35.3	11.8 (17)
공립단설	78.3	39.1	47.8	8.7	21.7	4.3 (23)
사립	69.9	21.5	60.2	11.8	9.7	6.5 (93)
지역규모						
대도시	72.4	27.6	69.0	10.3	-	6.9 (29)
중소도시	68.7	23.9	58.2	4.5	22.4	4.5 (67)
읍면지역	67.6	27.0	48.6	18.9	13.5	10.8 (37)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표 IV-2-24〉 제 특성별 돌봄교실 담당 교사 수

단위: 명(개원)

구분	돌봄강사	방과후 과정반	기본교육 과정 교사	보조교사	유급 자원봉사자	기타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1.3 (92)	2.2 (34)	2.8 (77)	1.2 (13)	1.5 (20)	1.4 (9)
기관유형						
공립병설	1.2 (9)	2.4 (5)	1.1 (10)	-	1.7 (6)	1.0 (2)
공립단설	1.3 (18)	2.3 (9)	2.8 (11)	1.0 (2)	1.4 (5)	1.0 (1)
사립	1.3 (65)	2.2 (20)	3.2 (56)	1.2 (11)	1.3 (9)	1.7 (6)
F	0.2	0.1	3.4	0.4	0.3	0.4
지역규모						
대도시	1.2 (21)	1.6 (8)	2.5 (20)	1.3 (3)	-	1.5 (2)
중소도시	1.4 (46)	2.5 (16)	3.1 (39)	1.3 (3)	1.6 (15)	1.0 (3)
읍면지역	1.3 (25)	2.3 (10)	2.7 (18)	1.0 (7)	1.0 (5)	1.8 (4)
F	0.8	1.1	0.5	1.3	2.5	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한편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교사 수를 보면, 기본교육과정 교사가 평균 2.8명, 방과후과정반 교사 평균 2.2명, 유급 자원봉사자 평균 1.5명, 돌봄강사 평균 1.3명, 보조교사 평균 1.2명 순이다. 기본교육과정 교사는 사립이 평균 3.2명으로 많았다. 한편, 돌봄강사나 방과후과정반 교사, 보조교사, 유급자원봉사자 등은 기관유형이나 지역규모별 차이가 없었다(표 IV-2-24 참조).

## 2) 방학기간 담당 교사

<표 IV-2-25>는 돌봄 전담교사를 대상으로 방학기간 여부 및 기간, 기간 중 담당교사를 조사한 것이다. 교사 중 절반 정도인 47.4% 만 방학이 있다고 답하였고, 그 기간은 평균 4.6일이었다. 이 비율은 공립 병설과 사립이 공립 단설보다 높고, 대도시 지역 유치원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2-25> 돌봄교실 방학 유무 및 기간, 담당 교사 유형

단위: %(개원)

구분	방학		방학기간 담당 교사 유형					(수)	
	'방학 있다' 비율	방학 기간	기존 돌봄 강사	기본교육과정·방과후과정반 교사	기본교육과정·방과후과정 교사·돌봄강사	외부 강사 별도 채용	시간제·기간제 돌봄교사 별도 채용		유급자원 봉사
전체	47.4	4.6	29.4	20.2	42.9	1.7	4.2	1.7	(119)
기관유형									
공립병설	52.9	4.6	31.3	25.0	25.0	6.3	12.5	-	( 16)
공립단설	30.4	5.2	33.3	19.0	33.3	4.8	9.5	-	( 21)
사립	50.5	4.4	28.0	19.5	48.8	-	1.2	2.4	( 82)
$X^2(df)/F$	3.2(2)	1.5			-				
지역규모									
대도시	55.2	4.1	32.0	12.0	56.0	-	-	-	( 25)
중소도시	44.8	4.8	25.0	20.0	41.7	1.7	8.3	3.3	( 60)
읍면지역	45.9	4.5	35.3	26.5	35.3	2.9	-	-	( 34)
$X^2(df)/F$	0.9(2)	1.1			-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한편, 방학기간 중 담당교사는 기본 교육과정 또는 방과후과정 교사, 돌봄강사가 42.9%로 다수를 차지하고, 기존 돌봄강사가 29.4%, 기본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반 교사가 20.2%, 나머지는 5% 미만으로 소수이었다.

공립 병설과 공립 단설은 기존 돌봄강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사립은 기본교육과정, 방과후과정교사, 돌봄강사가 교대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주로 기본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교사, 돌봄강사가 교대로 담당하지만, 읍면지역은 기본 돌봄강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3) 돌봄교실 관련 연수

#### 가) 참여 여부

아침·저녁돌봄 담당교사 중 돌봄교실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40.0% 정도 이었다. 기관별로는 사립유치원과 대도시 돌봄교실 담당교사 연수를 이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V-2-26 참조).

〈표 IV-2-26〉 돌봄교실 관련 연수 주관 기관

단위: %(명)

구분	교육부	교육청 교육 지원청	공사립 유치원 연합회	기타	없음	(수)	구분	교육부	교육청 교육 지원청	공사립 유치원 연합회	기 타	없 음	(수)
전체	1.5	37.0	3.0	1.5	60.0	(135)							
기관유형							지역규모						
공립병설	-	30.4	-	-	69.6	(23)	대도시	3.1	50.0	9.4	-	46.9	(32)
공립단설	-	34.6	-	-	65.4	(26)	중소도시	1.6	31.1	1.6	1.6	65.6	(61)
사립	2.3	39.5	4.7	2.3	55.8	(86)	읍면지역	-	35.7	-	2.4	61.9	(42)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연수를 이수한 경우, 연수를 주관한 기관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37.0%, 공사립유치원 연합회 3.0%, 교육부 1.5% 순이었다. 기관유형 및 지역규모별로도 전체 비율과 유사하지만, 특히 사립유치원과 대도시 지역 교사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연수를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다.

#### 나) 미참여 이유

돌봄교실 관련 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이유를 추가로 물었다 교사 연수 자체가 적어서가 33.4%, 교육 일정이 근무시간과 겹쳐서가 29.6%, 교사연수 정보 부재가 25.9% 순이다. 나머지는 5% 미만 수준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사립 간 차이를 보였는데, 공립은 교사연수 자체가 적어서가 40% 대로 높은 반면, 사립은 교육 일정이 근무시간과 겹쳐서가 39.6%, 유치원이 허락하지 않아서도 2.1%로 소수 있었다. 지역규모별로 대도시는 교육일정이 근무시간과 겹쳐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0.0%,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교사연수 자체가 적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V-2-27 참조).

〈표 IV-2-27〉 돌봄교실 관련 연수 미참여 이유

단위: %(명)

구분	교사 연수 정보 부재	교사 연수 자체가 적어서	희망 연수 프로그램 부재	교육 일정이 근무 시간과 겹쳐서	교육신청 기간 놓쳐서	대체 교사 지원받지 못해서	유치원 허락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25.9	33.4	1.2	29.6	3.7	2.5	1.2	2.5	100.0(81)
기관유형									
공립병설	31.3	43.8	-	12.5	6.3	6.3	-	-	100.0(16)
공립단설	23.5	41.2	5.9	17.6	-	5.9	-	5.9	100.0(17)
사립	25.0	27.1	-	39.6	4.2	-	2.1	2.1	100.0(48)
지역규모									
대도시	13.3	33.4	-	40.0	13.3	-	-	-	100.0(15)
중소도시	30.0	32.5	2.5	30.0	-	2.5	-	2.5	100.0(40)
읍면지역	26.9	34.6	-	23.1	3.8	3.8	3.8	3.8	100.0(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4) 돌봄교사 근로조건 및 처우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교사 유형은 돌봄 전담강사 또는 지역여건 및 유치원 실정에 따라 담임교사 및 방과후과정 담당교사가 연장 근무하는 형태가 있다. 본 조사에 참여한 돌봄교실 담당교사 135명 중 기본 교육과정 교사가 42.2%, 돌봄 전담강사 28.9%, 방과후과정반 교사 18.5%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고용형태, 지원인력, 담당 업무, 수당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근무시간

###### (1) 연장근무 교사

기본 교육과정반 교사가 연장하여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경우, 1일 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평균 2.2시간이다. 시간대별로는 3시간이 25.6%로 가장 많고 2시간 22.0%, 1시간 미만 20.7% 이다 기관유형별로 연장 근무시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공립 단설이 평균 2.9시간으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길고 4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비율은 35.3%로 장시간 초과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평균 2.2~2.3시간으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표 IV-2-28 참조).

〈표 IV-2-28〉 연장 근무교사 1일 평균 초과 근무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0.7	12.2	22.0	25.6	19.5	100.0(82)	2.2
기관유형							
공립병설	14.3	21.4	14.3	35.7	14.3	100.0(14)	2.1
공립단설	17.6	5.9	29.4	11.8	35.3	100.0(17)	2.9
사립	23.5	11.8	21.6	27.5	15.7	100.0(51)	2.0
X <sup>2</sup> (df)/F			-				1.7
지역규모							
대도시	22.7	9.1	18.2	27.3	22.7	100.0(22)	2.3
중소도시	20.5	10.3	25.6	25.6	17.9	100.0(39)	2.2
읍면지역	19.0	19.0	19.0	23.8	19.0	100.0(21)	2.3
X <sup>2</sup> (df)/F			-				0.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2) 돌봄 전담교사

(가) 출근시각

돌봄 전담강사 출근시각은 오전 8시 이전이 20.5%로 이들 중 다수는 아침돌봄강사로 추측된다. 오후 17시에서 18시 사이가 41.0%, 오후 18시에서 19시가 23.1%로 많았다. 즉, 이들은 저녁돌봄 강사라고 볼 수 있다.

〈표 IV-2-29〉 돌봄강사 출근시각

단위: %(명)

구분	기관유형			지역규모			전체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07:00 이전	-	-	3.1	-	5.9	-	2.6
07:00-08:00	-	25.0	18.8	33.3	17.6	7.7	17.9
08:00-12:00	-	25.0	-	-	5.9	-	2.6
12:00-17:00	66.7	-	9.4	-	17.6	15.4	12.8
17:00-18:00	33.3	50.0	40.6	44.4	29.4	53.8	41.0
18:00-19:00	-	-	28.1	22.2	23.5	23.1	23.1
계(수)	100.0(3)	100.0(4)	100.0(32)	100.0(9)	100.0(17)	100.0(13)	100.0(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기관유형별로 공립 병설은 모든 교사가 오후 12시에서 18시 사이에 출근하고 공립 단설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가 25%, 절반은 오후 17시에서 18시 사이에 출근하고 있었다. 사립 또한 공립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의 경우 출근시간대가 고루 분포하나,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오전과 오후로 구분되어 있다(표 IV-2-29 참조).

(나) 퇴근시각

돌봄 전담강사 퇴근시각은 오후 22시 이후가 43.6%로 많고, 오후 20시에서 21시가 23.1%, 오후 21시에서 22시가 20.5% 순이다. 오후 18시에서 20시 사이는 10% 미만으로 소수이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사립은 오후 22시 이후 퇴근한다는 비율이 50.0%로 퇴근이 늦은 편이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의 돌봄 전담강사는 오후 22시 이후가 69.2%로 높다(표 IV-2-30 참조).

〈표 IV-2-30〉 돌봄강사 퇴근시각

단위: %(명)

구분	기관유형			지역규모			전체
	공립 병설	공립 단설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8:00 이전	-	-	6.3	11.1	-	7.7	5.1
18:00-19:00	-	25.0	-	-	5.9	-	2.6
19:00-20:00	33.3	-	3.1	-	5.9	7.7	5.1
20:00-21:00	33.3	50.0	18.8	11.1	41.2	7.7	23.1
21:00-22:00	33.3	-	21.9	55.6	11.8	7.7	20.5
22:00 이후	-	25.0	50.0	22.2	35.3	69.2	43.6
계(수)	100.0(3)	100.0(4)	100.0(32)	100.0(9)	100.0(17)	100.0(13)	100.0(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나) 고용 형태 및 자격

(1) 고용 형태

<표 IV-2-31>은 돌봄 전담강사를 채용한 경우 고용 형태를 조사한 것이다.

〈표 IV-2-31〉 돌봄 전담강사 고용형태

단위: %(개원)

구분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시간제 교사	계(수)	구분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시간제 교사	계(수)
전체	23.0	25.4	51.6	100.0(122)					
기관 유형					지역규모				
공립 병설	18.2	9.1	72.7	100.0( 11)	대도시	30.8	38.5	30.8	100.0( 26)
공립 단설	8.3	25.0	66.7	100.0( 24)	중소도시	17.2	20.3	62.5	100.0( 64)
사립	27.6	27.6	44.8	100.0( 87)	읍면지역	28.1	25.0	46.9	100.0( 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돌봄 전담강사로 시간제 교사 형태가 51.6%로 절반 정도이며, 기간제 교사 25.4%, 정규교사 23.0% 순이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전체 비율과 유사하지만, 공립 병설은 시간제 교사가 72.7%로 높고, 사립은 기간제와 정규 교사가 각각

27.6%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는 정규교사와 기간제, 시간제가 각각 30%대로 비등하지만 타 지역은 시간제교사 비율이 높았다

조사에 참여한 돌봄 전담교사의 고용형태는 계약직 및 기간제가 48.7%로 가장 높고, 시간제가 35.9%, 정규직은 15.4%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 공립은 정규직은 없고, 모두 계약직이나 시간제인 반면 사립은 정규직이 18.8%로 높았다.

(2) 적정 자격

원장이 인식하는 돌봄강사의 적정 자격은, 유치원 정교사 2급이 5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보육교사 1급 48.9%, 보육교사 2급 44.4%, 유치원 정교사 1급 25.6% 순이었다. 또한 사회복지사 2급이나 방과후지도사에 대한 응답이 각각 9.8%, 필요 없다는 응답도 7.5%으로, 돌봄강사 자격에 대한 인식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립 병설에서 유치원 정교사 1급과 보육교사 1급 응답 비율이 높으며, 사회복지사 3급이나 자격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사립에서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치원 정교사 2급은 높고, 보육교사 1급은 낮은 반면 필요 없다는 응답은 높았으며,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보육교사 3급, 사회복지사 및 방과후 지도사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도시에 비해 높았다(표 IV-2-32 참조).

〈표 IV-2-32〉 돌봄강사 적정 자격

단위: %(개원)

구분	유치원 정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방과후 지도사	필요 없음	(수)
	1급	2급	1급	2급	3급	2급	3급			
전체	25.6	58.6	48.9	44.4	10.5	9.8	4.5	9.8	7.5	(133)
기관유형										
공립병설	41.2	64.7	82.4	41.2	17.6	11.8	-	11.8	-	( 17)
공립단설	30.4	47.8	52.2	47.8	4.3	4.3	-	-	-	( 23)
사립	21.5	60.2	41.9	44.1	10.8	10.8	6.5	11.8	10.8	( 93)
지역규모										
대도시	27.6	65.5	37.9	48.3	3.4	3.4	0.0	6.9	13.8	( 29)
중소도시	26.9	58.2	53.7	46.3	10.4	13.4	4.5	10.4	6.0	( 67)
읍면지역	21.6	54.1	48.6	37.8	16.2	8.1	8.1	10.8	5.4	( 37)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다) 담당 업무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동안 담당하는 업무를 1, 2순위로 조사하였다 1 순위는 기본 교육과정반 또는 방과후과정반 담임이 36.3%로 가장 높고 돌봄교실 수업준비 25.9%, 도서실 등 부속시설 운영관리 14.1% 순이다. 2순위로는 도서실 등 부속시설 운영관리가 38.5%, 등·하원 지도 15.5%, 돌봄교실 수업 준비 13.4% 순이다. 1, 2순위를 합하면, 부속시설 운영 관리가 52.6%, 기본 교육과정반 또는 방과후과정반 담임 44.4%, 돌봄교실 수업 준비 39.3%, 등·하원 지도 24.4% 순이다. 기본 교육과정반이나 방과후과정반 수업 보조와 행정업무도 10% 내외이었다(표 IV-2-33 참조).

〈표 IV-2-33〉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근무시간 담당 업무: 1+2순위

단위: %(명)

구분	돌봄교실 수업 준비	기본교육과정반/방과후과정반 수업 보조	기본교육과정반 또는 방과후과정반 담임	특별활동수업 담당	등·하원 지도	행정업무	부속시설 운영 관리	청소수업외 업무	수업 외 업무 없음	기타	계(수)
1순위	25.9	5.2	36.3	2.2	8.9	2.2	14.1	2.2	2.2	0.7	100.0(135)
2순위	13.4	7.4	8.1	3.0	15.5	7.4	38.5	4.5	0.8	1.5	100.0(135)
1+2순위	39.3	12.6	44.4	5.2	24.4	9.6	52.6	6.7	3.0	2.2	(1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라) 지원 인력

〈표 IV-2-34〉는 돌봄교사를 지원하는 인력을 조사한 것이다.

〈표 IV-2-34〉 돌봄교사 지원인력

단위: %(명)

구분	보조 교사	3세대 하모니	자원 봉사자	실습생	인턴	다른 돌봄강사	기본교육과정/방과후과정 교사	보조 인력	기타	(수)
전체	57.8	19.3	4.8	2.4	2.4	6.0	9.6	9.6	4.8	(83)
기관유형										
공립병설	42.9	50.0	7.1	-	-	7.1	7.1	7.1	-	(14)
공립단설	50.0	21.4	-	-	-	21.4	21.4	-	-	(14)
사립	63.6	10.9	5.5	3.6	3.6	1.8	7.3	12.7	7.3	(55)
지역규모										
대도시	52.2	21.7	-	8.7	4.3	4.3	13.0	4.3	13.0	(23)
중소도시	64.7	17.6	5.9	-	2.9	5.9	8.8	8.8	2.9	(34)
읍면지역	53.8	19.2	7.7	-	-	7.7	7.7	15.4	-	(26)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지원 인력으로 보조교사가 57.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세대 하모니가 19.3%, 나머지는 10% 미만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공립 병설이 3세대 하모니가 50.0%로 높고, 공립 단설은 돌봄 강사와 기본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교사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사립은 주로 보조교사의 지원받으며 취사부 등 지원은 12.7%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는 보조교사 지원 비율이 높고, 읍면지역은 취사부 등이 높았다.

마) 수당

(1) 연장 근무수당

(가) 지급 여부 및 금액

돌봄강사로 방과후과정반 혹은 기본교육과정반 교사가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무나 당직 형태이므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기본 교육과정반 교사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기관은 83.1%로 높았다. 공립 단설, 대도시 소재 기관일수록 지급한다는 경우가 많았다. 초과 근무수당 지급 시 금액은 평균 19만 9천원으로 방과후과정반 교사보다 1만 7천원 정도 많았다. 공립 병설과 읍면지역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많았다.

〈표 IV-2-35〉 연장 또는 당직근무 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

단위: %(개원), 원

구분	기본 교육과정반 교사			방과후과정반 교사		
	'지급한다' 비율	(수)	평균	'지급한다' 비율	(수)	평균
전체	83.1	(77)	199,362.9	67.6	(34)	182,772.7
기관유형						
공립병설	80.0	(10)	242,142.9	80.0	( 5)	75,000.0
공립단설	100.0	(11)	192,772.7	66.7	( 9)	60,000.0
사립	80.4	(56)	194,204.5	65.0	(20)	264,307.7
F			0.2			2.9
지역규모						
대도시	90.0	(20)	221,823.5	87.5	( 8)	282,857.1
중소도시	87.2	(39)	172,454.5	62.5	(16)	131,100.0
읍면지역	66.7	(18)	241,541.7	60.0	(10)	146,000.0
F			0.8			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한편, 방과후과정반 교사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67.6%로 기관유형별로는 공립 병설이 80.0%인데 반해 공립 단설과 사립은 65% 내외로 약

15%p 정도 낮았다. 또한 도시지역일수록 지급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방과후과정반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금액은 약 18만 3천원 정도로, 사립이 26만 4천원으로 6~7만원대의 공립 단설이나 병설보다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가 28만원 선으로 높았다(표 IV-2-35 참조).

<표 IV-2-36>은 연장 근무교사에게 초과근무 수당 지급형태를 조사한 것이다. 초과 근무수당 지급 시 상한선을 두고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하는 경우가 40.0%, 초과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일괄 지급받거나 수당이 없는 경우가 각각 20.0%, 상한선 없이 초과 근무시간만큼 지급하는 경우는 16.9% 이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공립 병설은 상한선을 두고 초과 근무시간만큼 지급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수당이 없는 경우가 10% 미만으로 낮은 편인 반면, 사립은 초과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비율이 30.8%, 초과 근무 수당이 없는 경우가 28.2%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수당이 없다는 비율이 35.3%, 읍면지역은 수당이 없다는 비율이 11.8%로 낮은 반면, 상한선을 두고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한다는 비율은 52.9%로 높은 편이었다.

〈표 IV-2-36〉 초과 근무수당 지급형태

단위: %(명)

구분	상한선 없이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 상한선 있음	시간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일괄 지급	기타	수당 없음	계(수)
전체	16.9	40.0	20.0	3.1	20.0	100.0(65)
기관유형						
공립병설	33.3	50.0	8.3	-	8.3	100.0(12)
공립단설	21.4	71.4	-	-	7.1	100.0(14)
사립	10.3	25.6	30.8	5.1	28.2	100.0(39)
지역규모						
대도시	17.6	17.6	23.5	5.9	35.3	100.0(17)
중소도시	12.9	45.2	22.6	3.2	16.1	100.0(31)
읍면지역	23.5	52.9	11.8	-	11.8	100.0(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나) 초과 근무수당 만족도

연장 근무교사가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55.4%이고, 이를 4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2.5점이다. 기관유형 및 지역규모별로 만족 정도가 평균 2.2~2.6점 사이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V-2-37〉 초과 근무수당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계(수)	4점 평균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계(수)	4점 평균
전체	6.2	49.2	36.9	7.7	100.0(65)	2.5							
기관유형							지역규모						
공립병설	-	66.7	25.0	8.3	100.0(12)	2.4	대도시	5.9	41.2	47.1	5.9	100.0(17)	2.5
공립단설	7.1	64.3	28.6	0.0	100.0(14)	2.2	중소도시	6.5	41.9	41.9	9.7	100.0(31)	2.6
사립	7.7	38.5	43.6	10.3	100.0(39)	2.6	읍면지역	5.9	70.6	17.6	5.9	100.0(17)	2.2
X <sup>2</sup> (df)/F			-			1.2	X <sup>2</sup> (df)/F						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2) 돌봄 전담교사

돌봄교실 교사 중 처우개선비를 받지 않는 경우가 92.3%로 대부분이고 나머지 중 5.1%는 50만원 이상, 2.6%는 10~30만원 이하 정도를 받고 있었다. 돌봄교실 교사가 지급받는 처우개선비는 월평균 57만원이다. 기관유형별로는 사립 9.4%, 대도시 33.3% 교사가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 있었다

사. 재정 지원 및 운영

1) 지원 현황

온종일 돌봄 교실 예산은 유형(아침, 저녁, 온종일) 및 참여 유아 수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매년 원당 지원액을 정하고,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연중 1~2회로 나누어 예산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기준 원당 3,500 만원을 지원하는데, 상·하반기에 1,75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지원 예산은 돌봄교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인건비는 돌봄 전담 강사 및 보조인력 인건비가 포함되며, 운영비는 급·간식비, 교통비, 보험가입비, 냉·난방비, 프로그램 운영비, 학습자료 구입비, 전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도별 예산 지원규모를 보면, 대구는 2015년 기준 총 863,000천원으로 원당 아침돌봄 1,600천원, 저녁돌봄 3,900천원을 지원한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15). 인천은 예산이 총 528,000천원으로 아침돌봄이 원당 7,000천원, 저녁돌봄 14,000천원, 온종일 20,000천원을 지원한다(인천광역시교육청, 2015). 광주의 경우 지원액이 타 지역보다 많아서 아침돌봄이 원당 12,000천원, 야간돌봄 18,000천원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15).

<표 IV-2-38>은 2015년 정부지원 예산 규모를 조사한 것이다 지원 예산은 지원 당 평균 약 1,433만원이며, 1천~2천 5백만원이 37.6%, 500만~1천만원 18.8%, 2천 5백~5천 18.0% 순이다. 지원받지 않았다는 경우도 13.5%이었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가 2,090.2만원,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각각 1,200만원 정도로 차이가 있었다. 기관 유형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38> 2015년 돌봄교실 지원 예산

단위: %(개원), 만원

구분	미지원	500만원 이하	500만~1천만원	1천2천 5백만원	2천 5백~5천	계(수)	평균	F
전체	13.5	12.0	18.8	37.6	18.0	100.0(133)	1,433.2	
기관유형								
공립병설	29.4	0.0	17.6	41.2	11.8	100.0( 17)	1,120.6	
공립단설	21.7	4.3	34.8	26.1	13.0	100.0( 23)	1,294.3	1.1
사립	8.6	16.1	15.1	39.8	20.4	100.0( 93)	1,524.7	
지역규모								
대도시	3.4	10.3	6.9	51.7	27.6	100.0( 29)	2,090.2	
중소도시	16.4	11.9	23.9	32.8	14.9	100.0( 67)	1,233.3	6.8**
읍면지역	16.2	13.5	18.9	35.1	16.2	100.0( 37)	1,28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1$

## 2) 지원 예산의 충분성

정부 지원 예산의 충분성에 대해 매우 부족 39.8%, 부족 31.6%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충분 정도는 5점 척도로 평균 2.0 점이다

<표 IV-2-39> 지원 예산의 충분성

단위: %(개원), 점

구분	매우 부족	부족	(수)	평균	구분	매우 부족	부족	(수)	평균
전체	39.8	31.6	(133)	2.0	지역규모				
기관유형					대도시	24.1	44.8	( 29)	2.2
공립병설	41.2	23.5	( 17)	2.1	중소도시	44.8	29.9	( 67)	1.9
공립단설	30.4	21.7	( 23)	2.5	읍면지역	43.2	24.3	( 37)	2.0
사립	41.9	35.5	( 93)	1.8	$X^2(df)/F$				0.8
$X^2(df)/F$				3.8*					

주: 충분 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충분하다는 의미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5$

기관유형별로 보면, 공립 단설이 평균 2.5점으로 충분 정도가 높고 사립이 평균 1.8점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V-2-39 참조).

<표 IV-2-40>은 정부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유치원이 추가 부담하는 금액을 조사한 것이다. 유치원 중 71.6%가 예산을 추가 부담하고, 사립 81.9%, 대도시 80.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치원이 추가 부담하는 경우, 총 돌봄교실 예산 대비 비중을 보면 평균 44.7%이다. 구간대별로는 25%미만이 45.6%로 다수이고, 76~100% 27.9%, 26~50% 23.5%, 51~75% 2.9% 순이었다. 중소도시의 추가 부담 비중이 평균 55.9%로 타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IV-2-40> 정부지원금 외 유치원 추가 부담 여부 및 비중

단위: %(개원)

구분	추가 부담 여부		총 돌봄교실 예산 대비 유치원 추가 부담 비중				계(수)	평균
	'부담' 비율	(수)	1~25%	26~50%	51~75%	76~100%		
전체	71.6	(95)	45.6	23.5	2.9	27.9	100.0(68)	44.7
기관유형								
공립병설	54.5	(11)	66.7	-	-	33.3	100.0( 6)	40.8
공립단설	25.0	(12)	0.0	33.3	-	66.7	100.0( 3)	83.3
사립	81.9	(72)	45.8	25.4	3.4	25.4	100.0(59)	43.1
$\chi^2(df/F)$	-				-			1.9
지역규모								
대도시	80.0	(20)	56.3	31.3	6.3	6.3	100.0(16)	29.2
중소도시	70.0	(50)	34.3	22.9	2.9	40.0	100.0(35)	55.9
읍면지역	68.0	(25)	58.8	17.6	-	23.5	100.0(17)	36.4
$\chi^2(df/F)$	0.9(2)				-			4.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5$

### 3) 지원 예산 관련 의견

다음은 정부의 돌봄교실 지원 예산 관련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먼저, 시도별로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에 80.4%가 동의하고, 동의 정도는 4점 평균 3.2점으로 높은 편이다. 다음은 학급 수나 이용 유아수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67.7%가 동의하고, 4점 평균 2.9점으로 동의 정도는 중간 정도이다(표 IV-2-41 참조).

이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돌봄교실 지원기준이 동일해

야 한다는 의견은 동의 비율이 70~80%대 정도이며, 동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급 수나 이용 유아수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동의 비율이 50~60% 대로, 돌봄교실 지원기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낮지만 동의 정도는 기관유형 및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없었다(표 IV-2-42 참조).

〈표 IV-2-41〉 돌봄교실 지원 예산에 관련한 의견 개요

단위: %(개원),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4점 평균
돌봄교실 지원기준(지원금액 등) 동일	9.0	10.5	30.8	49.6	100.0(133)	3.2
학급 수나 이용 유아 수에 따라 차등 지원	13.5	18.8	36.1	31.6	100.0(133)	2.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표 IV-2-42〉 제 특성별 돌봄교실 지원 예산에 관련 의견

단위: %(개원), 점

구분	시도 교육청 간 재정여건 달라도 지원기준 동일			동일 지역 내에서 돌봄교실 학급 수나 유아 수에 따라 차등지원			계(수)
	다소	매우	4점 평균	다소	매우	4점 평균	
전체	30.8	49.6	3.2	36.1	31.6	2.9	100.0(133)
기관유형							
공립병설	35.3	47.1	3.1	47.1	41.2	3.2	100.0( 17)
공립단설	34.8	39.1	2.9	30.4	47.8	3.2	100.0( 23)
사립	29.0	52.7	3.3	35.5	25.8	2.7	100.0( 93)
$\chi^2(df)/F$	-		1.6	-		2.9	
지역규모							
대도시	31.0	44.8	3.1	20.7	27.6	2.5	100.0( 29)
중소도시	29.9	55.2	3.3	40.3	35.8	3.0	100.0( 67)
읍면지역	32.4	43.2	3.1	40.5	27.0	2.8	100.0( 37)
$\chi^2(df)/F$	-		1.3	8.3(6)		2.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4) 돌봄교실 수입

돌봄교실 이용 시 추가 수납 여부와 항목 및 금액 등을 조사하였다. 다수인 83.5%가 추가 수납하지 않았다. 수납하는 경우 간식비 12.8%, 학습자료비 3.0%, 기타 2.3% 정도이다. 공립 단설이 수납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로 간식비를 수납하였다.

추가 수납금액은 간식비가 평균 2,029.4원, 학습자료비 평균 18,750.0원, 기타 26,666.7원이다. 이는 기관유형, 지역 규모별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2-43〉 추가 수납 항목 및 금액

단위: %(개원), 원

구분	추가 수납 항목					수납 금액		
	간식비	학습자료비	기타	받지 않음	(수)	간식비	학습자료비	기타
전체	12.8	3.0	2.3	83.5	(133)	2,029.4	18,750	26,666
기관유형								
공립병설	17.6	5.9	-	82.4	( 17)	1,416.7	30,000	-
공립단설	26.1	4.3	4.3	65.2	( 23)	2,100.0	20,000	45,000
사립	8.6	2.2	2.2	88.2	( 93)	2,206.3	12,500	17,500
F						0.7	0.9	1.6
지역규모								
대도시	6.9	6.9	-	89.7	( 29)	1,700.0	12,500	-
중소도시	14.9	3.0	3.0	80.6	( 67)	1,930.0	25,000	25,000
읍면지역	13.5	-	2.7	83.8	( 37)	2,360.0	-	30,000
F						0.4	1.9	0.02

주: 추가수납 항목은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아. 운영 애로 및 요구

#### 1) 운영 동기

돌봄교실 운영 동기는 지역사회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함이 51.1%로 절반을 차지하고, 재원 원아 부모의 요구 29.3%, 정부(교육부, 교육청 등)의 참여 권장 12.0%, 원아 확보 7.5% 순이다.

〈표 IV-2-44〉 돌봄교실 운영 동기

단위: %(개원)

구분	정부(교육부 등) 참여 권장	교육청	원아 확보	재원 원아 부모 요구	지역사회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 배려	계(수)
전체	12.0		7.5	29.3	51.1	100.0(133)
기관유형						
공립병설	11.8		5.9	41.2	41.2	100.0( 17)
공립단설	30.4		4.3	21.7	43.5	100.0( 23)
사립	7.5		8.6	29.0	54.8	100.0( 93)
지역규모						
대도시	10.3		3.4	34.5	51.7	100.0( 29)
중소도시	11.9		9.0	32.8	46.3	100.0( 67)
읍면지역	13.5		8.1	18.9	59.5	100.0(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기관유형별로는, 공립 단설은 정부 참여 권장이 30.4%로 타 기관보다 높고, 사립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 배려가 54.8%로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일수록 정부 참여 권장이 높고, 도시지역일수록 원아 부모 요구가 높았다(표 IV-2-44 참조).

## 2) 도움정도

돌봄교실이 유치원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조사하였다. 어느 정도 도움이 33.8%, 매우 도움 30.1%로 63.9%가 도움된다고 답하였다. 도움정도는 5점 척도로 평균 3.7점으로 높은 편이다. 도움정도는 기관유형별로 차이를 보여서 공립 병설이 평균 4.4점, 공립 단설이 3.1점이다(표 IV-2-45 참조).

〈표 IV-2-45〉 돌봄교실의 유치원 도움정도

구분	단위: %(개원), 점					계(수)	5점 평균	
	전혀 되지 않음	도움 않음	별로 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도움			매우 도움
전체	3.0		13.5	19.5	33.8	30.1	100.0(133)	3.7
기관유형								
공립병설	-		5.9	11.8	23.5	58.8	100.0( 17)	4.4
공립단설	4.3		39.1	13.0	26.1	17.4	100.0( 23)	3.1
사립	3.2		8.6	22.6	37.6	28.0	100.0( 93)	3.8
X <sup>2</sup> (df)/F				-				6.5**
지역규모								
대도시	-		6.9	31.0	48.3	13.8	100.0( 29)	3.7
중소도시	4.5		13.4	16.4	26.9	38.8	100.0( 67)	3.8
읍면지역	2.7		18.9	16.2	35.1	27.0	100.0( 37)	3.7
X <sup>2</sup> (df)/F				-				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1$

〈표 IV-2-46〉은 돌봄교실이 유치원 운영에 도움된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도움분야를 조사한 것이다. 부모의 유치원 만족도 개선이 67.1%로 높고, 지역사회 기여 18.8%, 원아 모집 12.9% 순이다. 기관유형별로 공립 단설은 원아 모집이 20.0%, 공립 병설은 부모 만족도 개선이 78.6%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일수록 지역사회 기여, 도시지역이 부모 만족도 개선이 높았다.

〈표 IV-2-46〉 돌봄교실의 운영 도움 분야

단위: %(개원)

구분	원아 모집	재정 운영	부모 만족도 개선	지역 사회 기여	계(수)	구분	원아 모집	재정 운영	부모 만족도 개선	지역 사회 기여	계(수)
전체	12.9	1.2	67.1	18.8	100.0(85)						
기관유형						지역규모					
공립병설	7.1	-	78.6	14.3	100.0(14)	대도시	16.7	5.6	66.7	11.1	100.0(18)
공립단설	20.0	-	60.0	20.0	100.0(10)	중소도시	11.4	-	72.7	15.9	100.0(44)
사립	13.1	1.6	65.6	19.7	100.0(61)	읍면지역	13.0	-	56.5	30.4	100.0(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3)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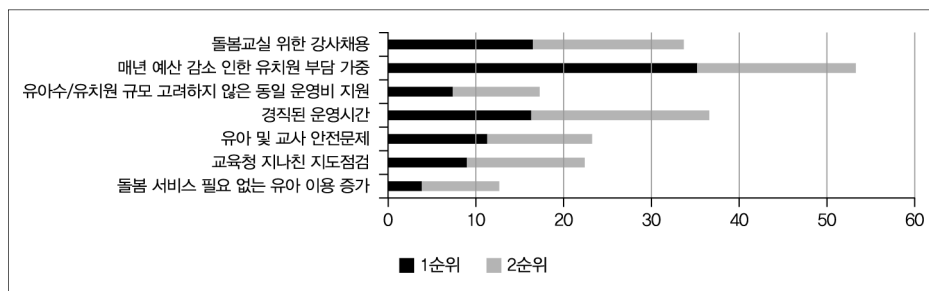
돌봄교실 운영 시 어려움을 1, 2순위로 조사한 결과 1순위로 매년 예산 감소로 인한 유치원 부담 가중이 35.3%로 높고, 경직된 운영시간과 돌봄교실 위한 강사 채용이 각각 16.5%, 유아 및 교사 안전 문제 11.3% 순이고, 나머지는 10% 미만이었다. 2순위는 경직된 운영 시간이 20.3%, 나머지는 10% 대이었다.

〈표 IV-2-47〉 돌봄교실 운영 시 어려움: 1+2순위

단위: %(개원)

구분	돌봄교실 위한 강사채용	매년 예산 감소 인한 유치원 부담 가중	유아수/유치원 규모 고려하지 않은 동일 운영비 지원	경직된 운영 시간	유아 및 교사 안전 문제	교육청 지나친 지도점검	돌봄 서비스 필요 없는 유아 이용 증가	계(수)
1순위	16.5	35.3	7.5	16.5	11.3	9.0	3.8	100.0(133)
2순위	17.3	18.1	9.8	20.3	12.0	13.6	9.0	100.0(133)
1+2순위	33.8	53.4	17.3	36.8	23.3	22.6	12.8	(1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그림 IV-2-2〕 돌봄교실 운영 시 어려움: 1+2순위

1, 2순위를 합산하면, 예산 감소로 인한 유치원의 부담 가중이 53.4%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경직된 운영 시간 36.8%,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 채용 33.8%, 유아 및 교사의 안전문제 23.3%, 교육청의 지나친 지도점검 22.6% 순이다(표 IV-2-47 참조).

<표 IV-2-48>은 돌봄교실 운영시 어려움 1순위를 제 특성별로 분석한 것이다. 기관유형별로는 공립 병설은 돌봄교실 위한 강사 채용과 매년 예산 감소로 인한 유치원 부담 가중, 공립 단설은 유아와 교사 안전 문제, 사립은 매년 예산 감소로 인한 유치원 부담 가중이 다빈도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는 경직된 운영시간,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매년 예산 감소로 인한 유치원 부담 가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V-2-48> 제 특성별 돌봄교실 운영 시 어려움: 1순위

단위: %(개원)

구분	돌봄교실 위한 강사 채용	매년 예산 감소 유치원 부담 가중	유아수/유 치원 규모 고려 하지 않은 동일 운영 비 지원	경직된 운영 시간	유아 교사 안전 문제	교육청 지나친 지도 점검	돌봄 서비스 필요 없음 유아 이용 증가	계(수)
전체	16.5	35.3	7.5	16.5	11.3	9.0	3.8	100.0(133)
기관유형								
공립병설	29.4	29.4	11.8	5.9	17.6	-	5.9	100.0( 17)
공립단설	21.7	8.7	-	26.1	39.1	-	4.3	100.0( 23)
사립	12.9	43.0	8.6	16.1	3.2	12.9	3.2	100.0( 93)
지역규모								
대도시	20.7	20.7	6.9	27.6	13.8	10.3	-	100.0( 29)
중소도시	14.9	43.3	4.5	11.9	9.0	10.4	6.0	100.0( 67)
읍면지역	16.2	32.4	13.5	16.2	13.5	5.4	2.7	100.0(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한편, 돌봄교실 담당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1순위가 보조인력 부족 33.3%, 2순위는 간식, 생활지도, 하원지도에 의한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 어려움이 23.7%로 가장 높았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보조인력 부족이 48.9%, 간식, 생활지도, 하원지도로 인한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 어려움이 43.7%, 혼합학급에 따른 어려움이 38.5% 순이고, 돌봄교실에 적합한 프로그램 부족이 23.0% 으로 다음으로 높았다(표 IV-2-49 참조).



<표 IV-2-49> 돌봄교실 운영시 어려운 점: 1+2순위(교사)

단위: %(명)

구분	혼합 급 따 교 학 동 계 획 및 실 행	돌 봄 교 실 적 합 한 프 로 그 램 부 족	기 본 교 육 과 정 과 후 교 육 과 정 과 미 충 분 운 영	돌 봄 교 실 전 용 시 설 및 교 구 부 족	간 식 제 공, 도 지 도 인 한 교 육 활 동 의 어 려 움	보 조 인 력 부 족	외 부 학 원 이 용 의 어 려 움	기 타	어 려 움 없 음	계(수)
1순위	20.0	9.6	4.4	3.0	20.0	33.3	6.7	3.0	-	100.0(135)
2순위	18.5	13.4	6.7	11.8	23.7	15.6	8.1	0.7	0.7	100.0(135)
1+2순위	38.5	23.0	11.1	14.8	43.7	48.9	14.8	3.7	0.7	(1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자. 개선사항

유치원 원장 대상으로 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1, 2순위로 조사하였다. 1순위로 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증액이 42.1%, 2 순위로는 운영상의 효율성 및 융통성 제고가 24.0%로 높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돌봄교실 운영 시 어려움과 맥락을 같이 한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증액 60.9%과 운영상의 효율성 및 융통성 제고 39.8%, 보조 인력 지원 25.6%, 돌봄강사 인건비 인상 24.8%, 규모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원 13.5% 등의 순이었다(표 IV-2-5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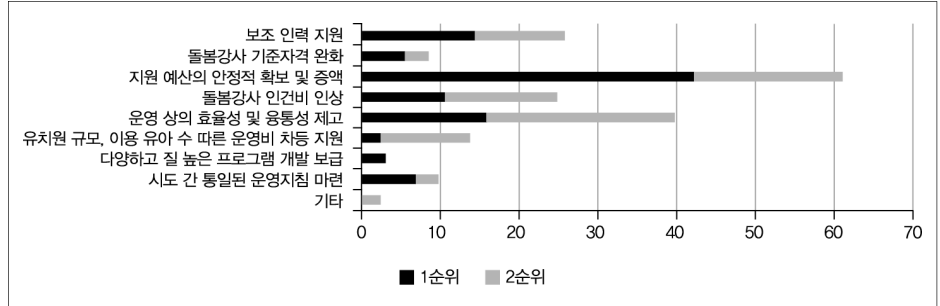
<표 IV-2-50> 돌봄교실 활성화 위한 개선사항: 1+2순위(원장)

단위: %(개원)

구분	보 조 인 력 지 원	돌 봄 강 사 자 격 기 준 완 화	지 원 예 산 의 안 정 적 확 보 및 증 액	돌 봄 강 사 인 건 비 인 상	운 영 상 의 효 율 성 및 융 통 성 제 고	유 치 원 규 모 이 용 수 에 따 른 운 영 비 차 등 지 원	다 양 하 고 질 높 은 프 로 그 램 개 발 보 급	시 도 간 통 일 된 지 침 마 련	기 타	계(수)
1순위	14.3	5.3	42.1	10.5	15.8	2.3	3.0	6.8	-	100.0(133)
2순위	11.3	3.0	18.8	14.3	24.0	11.2	-	3.0	2.2	100.0(133)
1+2순위	25.6	8.3	60.9	24.8	39.8	13.5	3.0	9.8	2.2	(1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표 IV-2-51>은 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1순위 응답에 대해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그림 IV-2-3] 돌봄교실 활성화 위한 개선사항: 1+2순위(원장)

<표 IV-2-51> 제 특성별 돌봄교실 활성화 위한 개선사항: 1순위

단위: %(개원)

구분	보조 인력 지원	돌봄교사 기준자격 완화	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증액	돌봄교사 인건비 인상	운영의 효율성 및 융통성 제고	유치원 규모, 이용 유아 수 따른 운영비 차등 지원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도간 통일된 운영지침 마련	기타
전체	14.3	5.3	42.1	10.5	15.8	2.3	3.0	6.8	100.0(133)
기관유형									
공립병설	23.5	5.9	35.3	23.5	-	-	-	11.8	100.0( 17)
공립단설	13.0	4.3	17.4	4.3	34.8	4.3	13.0	8.7	100.0( 23)
사립	12.9	5.4	49.5	9.7	14.0	2.2	1.1	5.4	100.0( 93)
지역규모									
대도시	20.7	13.8	37.9	6.9	13.8	-	-	6.9	100.0( 29)
중소도시	11.9	3.0	44.8	9.0	17.9	4.5	3.0	6.0	100.0( 67)
읍면지역	13.5	2.7	40.5	16.2	13.5	-	5.4	8.1	100.0(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한편, 돌봄교실 담당교사가 인식하는 개선사항은 <표 IV-2-52>에 제시하였다. 1순위가 돌봄교사 인건비 현실화로 26.7%이고,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 확대가 20.0%, 보조인력 지원 확대가 17.0%, 돌봄교사 고용 안정성 제고 10.4% 순이었다. 2순위는 보조인력 지원 확대가 2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 확대 17.8% 이었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돌봄교사 인건비 현실화가 40.7%, 보조인력 지원 확대와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 확대가 각각 37.8%, 돌봄교사 고용안정성 제고가 20.0%, 돌봄교실 별도 공간 마련이 18.5% 순이다. 돌봄 교사들은 주로 인건비 및 예산 지원에 따른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IV-2-52〉 돌봄교실 개선사항: 1+2순위(교사)

단위: %(명)

구분	돌봄교사 고용안정 제고	돌봄교사 전문성 향상	돌봄교사 인건비 현실화	돌봄교사 업무 부담감	보조 인력 지원	예산 적 확 보 및 지 원 대	교육 통 일 된 영 치 교 육 지 원	프 로 그 램 개 발 보 조	외 부 유 아 관 리 강 화	돌 봄 교 실 영 향 위 공 공 마 련	기 타	개 선 항 목 없 음	계(수)
1순위	10.4	5.2	26.7	5.9	17.0	20.0	0.7	4.4	-	8.1	1.5		100.0(135)
2순위	9.6	2.9	14.0	7.4	20.8	17.8	3.7	8.9	2.2	10.4	1.5	0.7	100.0(135)
1+2순위	20.0	8.1	40.7	13.3	37.8	37.8	4.4	13.3	2.2	18.5	3.0	0.7	(1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 3. 정책 시사점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돌봄교실 운영 현황과 운영시간, 이용 대상,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교사 근로조건 및 처우, 재정지원 및 운영, 애로 및 요구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가. 방과후 과정

첫째, 전계층에게 지원되는 방과후과정비 지원 기준을 부모의 취업 등으로 방과후과정이 필요한 유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과정 이용률은 2014년 기준, 전체 이용률이 67.5%로 2006년 25.4%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는 2012년 누리과정 시행 이후 방과후과정비가 전계층에게 지원됨에 따라 방과후과정이 필요없는 유아까지도 이용하게 된 것이다. 방과후과정 운영 애로로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 급증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방학기간 동안의 방과후과정 운영을 의무화한다 방과후과정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유치원 실정이나 학부모의 요구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일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학기간 중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85% 정도이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아가 방학이나 공휴일 등의 여부에 상관없이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다.

셋째, 방과후과정 이용 자격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방과후과정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취업모나 다자녀가구 등의 유아가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 선정 시 적용하는 기준은 맞벌이 가구가 59.3%, 저소득 가구와 한부모 가구, 다자녀가구가 30%대, 다문화가구와 조손가구가 20%대, 장애부모 가구 17% 순이었다. 자격기준 마련 시 적합한 자격으로, 맞벌이 가구가 82.1%, 저소득가구 53.3%, 한부모가구 25.9%, 조손가구 12.6%, 돌봄취약가구 8.4%, 장애부모가구 7.1%를 꼽았다.

넷째,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방과후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로 운영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중 88.7%가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평균 61.7분이었다. 구간별로 1시간 미만은 34.7%이고 1~2시간이 57.1%, 2시간 이상이 8.2%로 과반수 이상이 1시간 이상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섯째,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방과후과정 운영 시 교사 중 57.4%는 프로그램 운영, 56.6%는 돌봄, 36.1%는 자유선택활동, 28.3%는 생활지도, 21.3%는 개인학습지도 등을 중점 활동으로 실행하고 있으나,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여섯째, 방과후과정 교사대상 연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과정 담당 교사 중 53.6% 정도만 연수에 참여하였고, 공립 단설 교사 60%, 사립과 공립 병설이 각각 54.8%, 51.0%, 대도시가 68.9%, 읍면지역 50%, 중소도시 43.4% 순이었다.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교육일정과 근무시간이 겹쳐서가 37.2%, 교육연수 정보 부족 23.8%, 교사연수 기회 부족 15.1%, 대체교사 미지원 및 희망 연수프로그램 부재가 각각 5% 이었다.

일곱째, 방과후과정 교사의 근무조건 및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과정 교사 중 56.2%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고 78.1%만 경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경력 인정 비율도 100%가 아닌 87.5% 정도이었다. 방과후과정반 운영 시간 이외의 근무시간에는 행정업무가 38%, 기본 교육과정반 수업보조 33.1%, 등·하원지도 18.6%, 급간식지도와 등·하원 차량지도가 13% 내외 정도가 방과후과정반과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기본교육과정 교사가 연장 근무하는 경우, 45% 정도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29.2%는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받거나, 14.2%는 초과 근무시간만큼 지급하되 상한선을 두거나 9.2%는 상한선 없이 초과 근무시간만큼 지급받고 있었다.

## 나. 온종일 돌봄교실

첫째, 연령별 학급당 유아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침돌봄 학급 당 유아 수는 평균 15.1명이다. 공립 단설이 타 기관보다 5명 정도 많다. 한편, 저녁돌봄의 학급 당 유아수는 20.3명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공립 단설이 평균 23.4명으로 가장 많고, 공립 병설이 14.6명으로 적다. 또한 중소도시가 읍면 지역에 비해 다소 유아수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적정 유아수로 3세 평균 7.4명, 4세 10.2명, 5세 12.3명, 혼합연령 학급 12.9명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유아수가 적었다.

둘째,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돌봄교실의 운영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나, 저녁돌봄 이용 유아가 주로 하원하는 시간은 오후 18시 30분에서 19시 사이가 31.0%, 오후 18시에서 18시 30분 21.4%, 19시 30분에서 20시 17.5%로, 오후 18시에서 20시 사이에 대다수가 하원하고 있었다. 오후 21시 30분 이후는 1% 대로 소수이었다 따라서 기관별로 유아 하원시간에 맞춰 종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돌봄교실 운영 시 어려움으로 원장 22.2%가 경직된 운영시간을 지적한 바 있다.

셋째, 돌봄교실 이용자 우선 선정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맞벌이 가구 자녀 비율은 아침돌봄이 92.7%, 저녁돌봄 92.0%로 높았다. 그러나 돌봄서비스 이용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빙 서류를 제출받는다는 비율은 65.4%로 과반수이고, 공립 단설이 87%, 공립 병설 76.5%, 사립 58.1% 정도이었다. 증빙서류로는 취업증빙자료가 80.5%로 가장 많고,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 39.1%, 소득 증빙자료가 3.4%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취업증빙자료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공립 병설은 소득증빙자료가 상대적으로 많고, 사립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높았다.

넷째, 전용교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침돌봄 또는 저녁돌봄 운영 시 기존 교실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83.5%, 전용교실은 16.5% 정도이었다. 특히, 공립 단설이 전용 교실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용교실을 확보한 경우, 비용은 대부분 자체 예산이었다. 돌봄교실은 기본 교육과정이나 방과후과정과 달리 돌봄 기능이 강화된 서비스이므로, 이에 적합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돌봄교실에 대한 장학 및 컨설팅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돌봄교실에 대한 장학 및 컨설팅을 받은 경우는 48.9%로 절반 정도이고, 평균 1.6회를

지원받았다. 도움 받은 분야는 안전관리 및 위급 시 대처가 43.9%, 생활지도와 교수학습 지도가 각각 16.7%, 10.6%, 돌봄 운영 전반 9.1%, 나머지는 각각 6.1% 정도이었다. 장학 및 컨설팅 필요성에 대해 57.0%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공립 단설과 중소도시 소재 유치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섯째, 돌봄 강사 연수 활성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아침·저녁돌봄 담당 교사 중 돌봄교실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40.0% 정도이었다. 사립과 대도시 돌봄교실 담당교사가 연수를 이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참여 이유로 교사 연수 자체가 적어서가 33.4%, 교육 일정이 근무시간과 겹쳐서가 29.6%, 교사연수 정보 부재가 25.9% 순이다.

일곱째, 돌봄 강사는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돌봄강사 적정 자격은, 유치원 정교사 2급이 58.6%, 보육교사 1급 48.9%, 보육교사 2급 44.4%, 유치원 정교사 1급 25.6% 등의 순이다 돌봄 강사 자격기준으로 보육교사 3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덟째, 기본 교육과정반이나 방과후과정 교사가 연장 근무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본교육과정반 교사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기관은 83.1%, 방과후과정반 교사는 67.6% 정도이었다 돌봄교실 담당교사 중 초과 근무수당 지급 시 상한선을 두고 초과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받는 경우는 40.0%로 높고, 초과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일괄 지급받거나 수당이 없는 경우가 20.0% 정도이었다. 상한선 없이 초과근무시간만큼 지급하는 경우는 16.9%로 기관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였다.

아홉째,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학급 수나 이용 유아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유치원 당 평균 1,433만원이고, 지원 예산 부족으로 유치원이 추가 부담하는 경우는 71.6% 정도이었다. 돌봄교실 총 예산 중 추가 부담 비중은 평균 44.7%로 절반 정도를 유치원에서 부담하고 있었다. 공립 병설과 사립이 40% 정도이나 공립 단설은 83.3%로 두 배 가량 높았다. 학급 수나 이용 유아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67.7%가 동의하고, 동의정도는 4점 평균 2.9점이었다.

## V.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어린이집 시간연장형보육 즉, 시간연장보육과 24시간보육, 시간제 보육,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온종일 돌봄교실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애로 및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정책 제언은 어린이집 맞춤형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2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제시하였다.

### 1. 기본 방향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은 맞춤형보육, 유치원은 방과후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어린이집 맞춤형보육과 유치원 돌봄서비스를 내실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0~2세 무상보육과 3~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전계층에 보육료·교육비가 지원되면서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장시간 보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족 특성이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한다.

둘째,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돌봄교실은 기준 보육·교육시간 외에 제공된다는 이유로 평가(인증)에서 제외되고 있다. 아동의 안전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셋째, 어린이집 시간연장형보육과 시간제보육,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담당교사는 일반 교사들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하다. 인건비 지원 수준을 인상하고, 지원 인력을 확대한다

넷째,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프로그램 매뉴얼과 시간제보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하다 영유아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교사교육을 의무화한다

## 2.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내실화 방안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즉 시간연장보육과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방안은 보육서비스별로 제시하였고, 정책 방안은 국가 재정이나 보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V-2-1〉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정책제언 요약 및 추진 시기

구분	내용	추진시기
시간 연장 보육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운영	단기
	시간연장보육 보육료 인상	단·중장기
	타 기관 아동의 기준 시작시간 이전에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부모가 부담	단기
	시간연장형보육 프로그램 홍보 강화	단기
	시간연장보육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시행	단기
	시간연장보육 대체교사 지원 확대	단기
	시간연장보육 교사 시간제교사로 전환	단기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중장기
	시간연장보육 연수 특수직무교육 개발, 채용조건으로 설정	중장기
월급여 시간연장반 교사 인건비 지원수준 개선	중장기	
24시간 보육	24시간 실수요자 검증체계 마련	단기
	24시간보육 이용 아동 보호자 의무 이행 기준 개정	단기
	24시간 지정조건에 전용보육실 설치 의무화	단기
	보육료 미납 아동에 대해 익월 보육료 지원 조정	단기
	추가 인력 지원	단기
	24시간보육 전담어린이집으로 운영체계 개편	중장기
	요보호 24시간보육 이용 아동 및 가족 위한 연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중장기
시간제 보육	수요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확대, 기존 기관 재평가하여 재배치	단기
	공보육 기관 중심으로 확대	단기
	제공기관당 시간제보육반 2개반 기본적으로 배치	단기
	시간제보육 관련 교육 및 모니터링 활성화	단기
	영아보육 직무교육 이수 의무 강화	단기
	시간제보육 교사 대체교사 지원 확대	단기
	지역사회 중심의 홍보 활성화	단기
	맞춤형지원체계 도입 시 맞춤형 이용 아동(긴급보육바우처 15H)로 대상 확대	단기
	시간제보육 운영일과 운영시간 확대	중장기
1회 이용시간 4시간으로 제한	중장기	



## 가. 시간연장보육

### 1) 단기 방안

첫째, 모든 어린이집이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기보다 거점형 등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시간연장보육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률은 2014년 기준 10.1%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5임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1개소당 영유아 1명 정도만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 있다. 시간연장보육 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료를 고려하면 재정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업이다. 서문희·양미선 외(2011)는 시간연장보육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운영 모델로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모델은 종일보육과 시간연장보육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로, 시간연장보육을 상시 이용하는 아동을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5년 7월부터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sup>27)</sup>. 서울시의 모델은 종일보육은 개별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시간연장보육만 지정된 어린이집에 모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조사결과 시간연장보육 어린이집 원장들은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부록 표 III-1-1 참조), 시간연장보육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문희 외(2012)가 제안한 거점형을 검토해 볼 만하다

둘째, 시간연장보육 보육료를 인상한다.

시간연장보육료는 현재 시간당 2,800원으로 시간제보육료 시간당 4,000 원보다 낮다. 더구나 시간연장보육료에는 저녁급식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시간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 대부분 운영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본 조사결과, 어린이집 과반수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추가 부담하였고 부담하는 비중은 운영비 중 18.2%이었다. 시간연장보육 운영의 어려움으로 45.6%가 운영비 추가 부담을 꼽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또 시간연장보육 정원충

27) 서울시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사업 개요(서울시 2015년)

- 1) 개념: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해당시설 주간보육 아동뿐만 아니라 시간연장보육이 필요한 다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에게도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 2) 운영체계: 연령대별 반 구성, 별도 교사 채용, 시간연장보육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 3) 지원내용: 교사 인건비 100%, 시간연장프로그램 운영비 매월 반당 20만원, 취사부 수당 매월 30만원, 차량운행비(차량운행 시) 매월 50만원

족률이 10% 수준으로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더라도 보육료 단가가 낮고, 수입 또한 적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시간연장보육 보육료 인상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 94.4%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고, 적정 금액으로 4,584원을 제안하였다. 0~5세 무상보육과 함께 시간연장 보육료가 전계층에 지원되는 현 체제에서 국가 재정 고려없이 보육료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1단계는 3,500원까지 인상하고<sup>28)</sup>, 2단계는 시간제보육료인 시간당 4,000원, 3단계는 시간연장보육 비용을 산정하여 현실화한다.

셋째, 정원 내에서 타 기관 이용 아동을 보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추가 보육료를 수납한다.

타 기관 이용 아동이 등원하기 시작하는 시각은 오후 18시에서 19시와 오후 17시에서 18시 사이가 각각 38.2%, 32.6%로 기준 시작시간보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빨리 등원한다. 특히 민간개인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오후 17시 이전에 등원하는 비율이 10%가 넘는다. 이들 어린이집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채용 경험이 있는 아동이거나 재원 아동의 형제인 경우가 많아서 거절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간연장보육 운영의 어려움으로 가정 24.1%와 민간개인 7.6%가 타 기관 이용 아동의 이른 등원을 선택한 것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타 기관 이용 아동, 즉, 다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오후 19시 30분까지 보육료를 지원받고, 유치원 이용 유아는 방과후과정이 끝나는 오후 17~18시까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정부가 이른 등원으로 발생하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원에 해당한다. 정원 내에서 시간연장보육 기준 시작시간(19:30)보다 이른 등원은 부모의 필요에 의한 서비스 이용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보육료는 부모가 부담하도록 한다.

넷째,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2014년 시간연장형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듬해 어린이집에 보급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시간연장형 보육프로그램 매뉴얼을 알고 있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41.7% 정도이고, 알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다는 40.1%,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잘 모르는 경우와 잘 모르는 경우가 18%가 넘는다. 시간연장형 보육프로그램 매뉴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교사 교

28) 서문희·양미선(2012)의 연구에 따르면 시간연장보육 이용 부모 중 시간연장보육 보육료가 저렴하다고 응답한 부모는 평균 3,740.7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함

육을 활성화하여 현장 적용을 독려한다.

다섯째, 시간연장보육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실시한다.

시간연장보육 관련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지원받은 교사는 10.3%로 소수이고, 지원받은 경우도 평균 1.3회로 적었다.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받은 어린이집은 적었지만, 47.6%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시간연장보육은 늦은 밤 시간에 운영된다는 이유로 평가인증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나 영양, 안전, 회계 등에 국한되어 있어 보육 서비스 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시간연장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안)을 평가인증 3차 지표(보건복지부, 2014)와 본 연구의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발하였다. 시간연장보육 모니터링 지표(안)은 운영시간, 교사대 아동비율, 급간식, 프로그램, 보육환경, 교사 처우, 가정과의 연계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정방법은 확인/미확인으로 평가한다.

〈표 V-1-2〉 시간연장보육 모니터링 지표(안)

지표	확인
1. 시간연장보육은 정규 보육시간(7:30~19:30) 이후인 19:30에 시작한다	
2.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준수한다. (장애아, 0세아가 포함된 경우 1:3으로 조정 가능)	
3.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저녁 급간식이 제공된다.	
4.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수준과 흥미를 반영한 보육 환경을 제공한다	
5. 시간연장반 보육일지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일과운영이 융통성 있게 이루어진다	
6. 시간연장보육 교사를 위한 공간, 가구, 비품이 마련되어 있다.	
7. 시간연장보육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숙지하고 있다.	
8. 교사와 부모 간 영유아에 대한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시간연장보육 모니터링 지표(안) 개발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연장보육은 기본 보육시간이 종료된 오후 19시 30분 이후에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이므로(보육사업안내, 2015),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둘째, 시간연장보육반은 대부분 혼합반이므로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시간연장보육은 보호와 돌봄 기능이 강화된 서비스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일과가 편안하고 균

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적인 보호자의 역할뿐 아니라 영유아가 흥미를 느끼는 보육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별도의 시간연장보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종일반과 보육실과 교재교구, 비품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보육교사는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간 및 물품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오후 24시까지 운영되는 시간연장보육은 교사와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본 조사에서도 시간연장보육 운영의 어려움으로 유아 및 교사의 안전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보육교사는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영유아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영유아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고, 이에 대한 소통이 부모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시간연장보육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한다.

시간연장보육 교사가 휴가 및 교육 참여 등의 사유로 대체교사를 지원받는 비율은 23.9%이고, 대체교사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종일반 교사가 시간연장반을 담당하고 있었다. 가정과 민간개인 어린이집은 주로 원장이 담당하고, 국공립과 법인단체등은 종일반 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대체교사 지원 대상은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나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를 우선 지원한다. 시간연장보육 교사 대부분 1년 미만 근무자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 지원사업 계획 시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 사업량을 별도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시간연장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시간연장보육 교사의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 시간연장보육 교사는 시간제교사로 전환한다.

월급여지원 시간연장반 보육교사의 1일 근무시간은 평균 8시간 정도이다 보통 오후 14시 이후에 출근하여 오후 22시에서 오후 23시 사이에 퇴근하고 있다. 시간연장근무 보육교사가 출근하여 시간연장보육 시작 전까지 맡은 업무는 시간연장반 활동 준비가 58.9%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 외에 종일반 보조 업무가 50.4%, 저녁 급간식 준비 34.0%, 하원 지도 및 차량지도, 행정업무처리, 청소 등 잡무가 10% 대로 종일반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보육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간연장보육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간연장반 보육교사는 6시간 단시간 보육교사로 전환한다.

## 2) 중장기 방안

첫째, 시간연장보육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 2013년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된 시간연장 보육료가 전계층에게 지원되면서 이용 아동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시간연장보육은 부모의 근로시간 다양화 등의 지원 수단으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맞벌이 가구 자녀 비율은 평균 88.2% 정도이다. 장시간 보육은 영유아의 건강 및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장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연장보육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둘째, 시간연장보육 연수는 특수직무교육으로 개발하여 담당교사 채용조건으로 한다.

시간연장보육 관련 교사 연수 이수 비율은 43.3% 정도이고, 사회복지법인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는 20~30%대로 저조하였다. 시간연장보육 관련 교사연수를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교사교육 관련 정보 부족과 교사교육 부재, 교육 일정이 근무시간과 중복돼서가 높았다. 시간연장보육은 야간보육이라는 특수성으로 주간교사와는 다른 역할수행이 요구된다. 즉, 발달적 특성이나 요구가 다른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혼합반이며, 위급상황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요구되는 대처능력 등 시간연장보육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보육교사 특수직무교육에 '시간연장보육 직무교육'을 신설하여 시간연장보육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 시키도록 한다. 또한 시간제보육과 유사하게 시간연장보육 교사 채용 시 특수직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다.

셋째, 월급여 시간연장반 교사 인건비 지원수준을 개선한다.

민간어린이집 월급여 시간연장반 교사 인건비는 2013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정부지원 시설의 시간연장반 교사 인건비는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단가가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하여 어린이집에서 느끼는 인건비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소폭이라도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인건비 지원수준을 인상한다.

## 나. 24시간 보육

### 1) 단기방안

첫째, 24시간보육 실수요자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24시간 보육은 부모와 격리된 아동의 정서상 문제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성 확보, 시설 허위 아동 및 교사 등록 야간 시간 운영 등의 문제로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4시간 보육이 반드시 필요한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군구 보육정책위원회에 '24시간보육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수요자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24시간 보육 이용 아동의 보호자 의무 이행 기준을 개정한다.

현재,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는 주 3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하고 주 1회 이상 가정에서 보호해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기관 중 26.6%는 일부 부모가 전화 및 방문 등 아동과 접촉하거나 집에 데려가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 24시보육은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이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주5일 근무보다는 3교대 근무, 자영업 격일 근무 등 근무가 정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부모가 정기적으로 토요일에 아동을 하원시켜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주 1회 이상 가정에서 보호하게 하되, 부모의 가정형편이나 근로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을 집으로 데려가는 요일을 부모가 지정하도록 한다.

셋째, 24시간보육 지정조건에 전용보육실 설치를 의무화한다.

24시간보육은 보육 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어린이집에서 기존 보육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전용 보육실을 갖춘 어린이집은 25% 정도이었다 24시간보육은 낮 시간 동안의 보육활동과 다른 수면과 휴식이 주가 되므로 환경이 이에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용 보육실 설치기준을 24시간보육 어린이집 지정조건으로 설정하여 24시간보육 이용 아동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에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비용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한다.

넷째, 부모부담 보육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익월 보육료 지원을 중단한다.

24시간 보육료는 정부가 15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200%까지 부모로부터 보육료를 추가 수납할 수 있다. 24시간 보육료 미납 및 연체된 경우는 42.2%이고 그 금액은 평균 141만 7천원이었다. 민간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이 미납 및 연체 경험이 있는 경우가 54.2%로 높았고, 미납 금액 역시 208만 2천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보육료 미납 및 연체가 누적될 경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어린이집에서 떠맡아야 하며 그 피해는 다른 아동에게까지 미친다. 24시간보육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

24시간보육은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로 24시간보육 아동의 아침 급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24시간보육 운영 어린이집 중 취사부를 채용한 경우는 21.9%, 보조교사는 3.1%로 대부분 지원 인력 없이 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아침 급식 제공 및 등원 준비를 위한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

## 2) 중장기 방안

첫째, 24시간보육은 지정제에서 전담어린이집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한다.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2014년 기준 277 개소이고 이용 아동수는 867 명으로 어린이집 1개소 당 3명 정도만 보육하고 있다. 24시간보육 운영 대안으로 지정제에서 전담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61.0%가 찬성하였다. 찬성 이유로는 24시간 보육 아동의 체계적인 관리가 30.8%,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24시간 보육 관련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각각 17.9%, 야간보육 시 안전 강화가 12.8%이었다. 반면에, 반대 이유로는 낙인 효과가 68.0%로 가장 높고, 부모의 어린이집 접근성 저하 28.0%, 기타 4.0% 순이었다. 현재 영아전담어린이집과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전담어린이집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4시간 보육을 전담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경우 24시간보육에 적절한 보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고, 추가 인력 지원 등이 가능하여 현 체제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담어린이집으로의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인 접근성 문제는 아동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집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둘째, 24시간보육 이용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연계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는 주 3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 주 1회 이상 가정에서 보호해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5). 본 조사에 참여한 24시간보육 어린이집 중 73.4%는 부모 대부분이 성실히 이행한다고 답하였지만, 26.6%는 일부 부모가 전화, 방문 등 아동과 접촉 또는 집에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모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지시설에 연계하거나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돌보고 있었다. 아동이 원가족에 의한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일시보호소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 다. 시간제보육

### 1) 단기방안

첫째, 수요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접근성 및 보육환경, 서비스 질 등의 평가를 거쳐 제공기관을 재배치한다.

시간제보육 사업은 2014년 99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 230개까지 늘렸고, 2016년에는 38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군구별로 1개 이상 배치하겠다는 목표로 제공기관을 확대하였으나, 2015년 8월 기준 시간제보육 1개반 당 이용 아동은 평균 2.7명<sup>29)</sup>으로 저조하고, 지역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5). 본 조사에서도 일부 제공기관이 이용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운영 여부를 고민 중이거나 운영 중단을 계획하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제공기관의 접근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은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지정하고 연도내 배정된 물량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설치기준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시간제보육 이용 시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 접근성이나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수준 등은 간과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원 예산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이용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전국 균형 배치의 사업

29) 2015년 시간제보육반 196개반의 총 이용건수 8,083건을 기준으로 산출함



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영유아 가구 밀집지역, 대중교통이나 도보 이용이 용이한 지역, 문화센터나 사회복지시설, 상업시설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둘째, 공보육 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시간제보육은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비정형적·비정기적인 특수성으로 부모들의 제공기관에 대해 신뢰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별로 운영 동기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 정책 협력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정원 미달로 유휴 공간을 활용하거나 원아 모집에 도움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양미선 외, 2013, 2014)에 따르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이용 부모들의 만족도가 낮아서 시간제보육 서비스 만족도 또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일부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입소 전 적응기관으로 시간제보육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정 내 양육지원'이라는 시간제보육 사업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셋째, 시간제보육반은 2개반을 기본적으로 배치한다.

본 조사에서 시간제보육 월 보육료가 1개반보다 2개반이 3 배 이상 많아 운영 효율성이 더 높았고, 시간제보육 홍보 및 이용자 확보도 2개반보다 1개반을 운영하는 기관장들이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시간제보육반을 기본적으로 2개반씩 배치하는 경우, 연령 및 정기적/비정기적 이용 아동별로 보육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에 교대 근무가 가능하며, 시간제교사들 간의 상호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제공기관 설치 시 기본적으로 기관당 2개반 이상을 설치한다.

넷째, 시간제보육 관련 교육 및 모니터링을 활성화 한다.

시간제보육 관련 교육은 연초에 관리자와 제공기관장, 보육교사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운영 지침 중심의 교육으로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시간제보육 모니터링이 2013년 실시되었으나, 2014년에는 추진되지 않았다. 시간제보육 관련 교육 및 모니터링의 질 제고 효과에 대해 시간제보육 기관장 41.5%, 시간제보육교사 41.2%는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시간제보육은 2014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5년 본 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시간제보육이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이 관리되기 위해서는 교육 및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운영지침 전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제공기관장, 관리자, 보육교사 등 피교육자별로 특성화하고, 분기별로 실시한다. 또한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한다.

다섯째, 시간제보육 교사의 영아보육 직무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한다.

시간제보육 교사 채용 시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이수를 기본조건으로 하였으나, 이를 이수하지 않은 교사들이 16.9%나 되었다. 2014년 조사(서문희·양미선, 2014)보다 낮아진 수치이나 시간제보육 교사로 채용되어 보육업무를 맡고 있는 상태에서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처음 이용하는 아동이 많아 적응의 어려움이 있으며 혼합연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 특수성이 있으므로 영아보육 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여섯째, 시간제보육 교사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한다.

시간제보육 교사의 대체교사 지원 기준은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휴가, 교육 등의 이유로 시간제보육 교사가 근무가 어려운 경우, 대체교사 지원을 받은 기관은 29.6%로 1/3 정도이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교사가 지원을 받은 경우는 68.0%로 높지만, 어린이집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대도시이거나 운영반 수가 많을수록 지원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다. 시간제 보육교사도 휴가, 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데 현 체계에서는 사실상 대체교사 지원을 받기 어렵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 대상을 시간제보육 교사로 확대하여 시간제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공기관 보육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 준다.

일곱째, 시간제보육 홍보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성화한다.

시간제보육 홍보 방법으로 리플릿 및 포스터 배포가 77.8%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홍보물 제작 56.3%, 현수막 및 홍보판과 홈페이지, 전화가 각각 40%대, 지역 맘 카페 30.4%, 가정 방문 및 거리 홍보 28.1%, 신문 20% 순이었다. 이 중에서 이용자 모집에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은 리플릿 및 포스터 배포이었고, 다음은 홍보물 제작, 현수막 및 홍보판, 전화, 지역 맘카페 등이었다. 2014년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당시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고, 일부 지역에서는 제공기관이 없어서 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시간제보육 홍보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제공기관이 설치된 지역의 실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한다.

여덟째,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시행 시 시간제보육반 이용 대상을 맞춤형 이용 아동으로 확대한다.

2016년 8월부터 실시되는 맞춤형 보육지원 체제 개편에 따라 맞춤형 이용 시 긴급보육바우처(15H)가 추가로 지원된다. 맞춤형 아동이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시 편리성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부모의 사정으로 타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제보육반에서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 2) 증장기방안

첫째, 시간제보육 운영일과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시간제보육은 현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나, 기관의 특성, 지역의 요구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이나 야간 시간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운영할 경우, 어린이집의 토요일 휴일보육 수요를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어린이집 운영 시작시간인 오전 7시 30분으로 앞당기거나 오후 2시 30분 정도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둘째, 시간제보육 1회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제한한다.

시간제보육 1일 이용시간은 평균 3.5시간으로 최대 이용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5).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 중 일부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기간 동안 종일보육 형태로 정기적으로 장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아동이 고정적으로 장시간 이용할 경우, 정작 시간제보육이 긴급하게 필요한 아동이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시간제보육 신청 시 이용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고 보육 서비스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신청하도록 한다.

## 3. 유치원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본 절에서는 유치원 방과과정과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방안은 국가 재정이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V-3-1〉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정책제언 요약 및 추진 시기

구분	내용	추진시기
방과후 과정	방과후과정 이용 자격기준 마련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단기
	방과후과정 장학 및 컨설팅, 모니터링 정례화	단기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도감독 강화	단기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정례화	단기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보조인력 지원 확대	중·장기
온종일 돌봄교 실	지역 및 이용 유아 특성 등을 고려한 운영시간 탄력 조정	단기
	돌봄교실 이용 자격기준 마련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단기
	돌봄교실 장학 및 컨설팅 정례화	단기
	돌봄교실 담당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의무화	단기
	연령별 학급당 유아 수 기준 마련 돌봄교실 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	중·장기

## 가. 방과후과정

### 1) 단기 방안

첫째, 실수요 중심으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방과후과정 이용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방과후과정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취업모나 다자녀가구 등의 유아가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별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 선정 시 적용하는 기준을 보면, 맞벌이 가구, 저소득 가구, 한부모 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조손가구, 장애부모 가구 순이었다. 방과후과정 이용 아동 선정기준 마련 시 적정 기준을 조사한 결과, 맞벌이 가구 82.1%, 저소득가구 53.3%, 한부모가구 25.9%, 조손가구 12.6%, 돌봄취약가구 8.4%, 장애부모가구 7.1% 순으로 답하였다.

어린이집의 경우, 맞벌이 가구 자녀 등 10 여 가지의 자격을 마련하여 입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sup>30)</sup>. 따라서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 선정기준 또한 부모의 소득이나 가족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격을 선정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둘째, 방과후과정 장학 및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정례화한다.

방과후과정 관련 장학 및 컨설팅을 지원받은 유치원은 28.3% 정도로, 주로

30)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에는 다음의 자격이 포함되어 있음(보건복지부, 2015).

공립 단설이나 중소도시 소재 유치원이 지원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장학 및 컨설팅을 지원받는 분야는 교수·학습지도, 교사역할과 생활지도, 교육계획안 작성, 행정 및 사무관리 순으로 교육과정 운영 관련 분야가 대부분이었다. 정기적인 장학 및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대상 교사 중 절반 정도가 찬성하였고, 공립 단설 교사의 필요 정도가 높았다. 방과후과정은 정규 교육과정 이후 시간에 운영되고, 혼합 연령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므로 정기적으로 장학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방과후 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안)을 지표(안)을 개발하였다. 제3주기 유치원 평가지표(교육부, 2014)와 교육부(2015)의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등을 참고하였다. 지표(안)은 운영 및 편성, 교사, 교육과정, 환경, 가정연계 5개 영역 총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확인·미확인으로 평정한다.

방과후과정 모니터링 지표(안)의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일 4~5 시간은 반드시 누리과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누리과정 실시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둘째, 각 시도 교육청이 마련한 방과후과정 담당교사의 자격 기준에 따라 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셋째, 방과후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은 교육계획안에 담겨있어야 하고, 계획안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방과후 과정 시에는 오전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활동 개별 유치원에서 개발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교육부가 개발·보급하였던 프로그램 혹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유아가 방과후과정에서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실내 환경 조성 및 실외 놀이 전용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교육부, 2015). 다섯째, 유아의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부모와 교사가 서로 전

1순위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li> <li>·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li> <li>·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li> <li>·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li> <li>·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li> <li>·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 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li> </ul>

달함으로써 가정과 기관에서 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방과후 과정 활동에 대하여 부모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V-3-2〉 유치원 방과후 과정 모니터링 지표(안)

구분	지표	확인
운영 및 편성	1. 누리과정 4~5시간 운영 후 방과후 과정을 시작한다. 2. 방과후과정 이용 중 원외 활동(학원 이용)을 하거나 일찍 하원하는 유아가 없다. 3. 시도교육청 지침의 교사 : 아동 비율에 맞게 학급을 편성하고 있다.	
교사	4.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 적정 자격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교육 과정	5. 유아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방과후 과정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한다. ※ 외부강사에 의한 특성화활동 포함 6. 특성화활동 위주가 아닌 바깥놀이 누리확장·심화 활동이나 휴식 안전 건강 등 돌봄 위주의 활동으로 운영한다. 7. 특성화활동의 운영원칙을 준수한다. ※ 운영원칙: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주당 5개 이내) 8. 부모가 부담하는 특성화활동비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있다. 9. 특성화활동 미참여 유아를 위해 교사를 배치하고 공간을 제공한다	
환경	10. 휴식이나 수면이 가능한 아늑한 실내공간과 관련 비품이 마련되어 있다	
가정 연계	11. 교사와 부모가 유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셋째, 방과후과정이 특성화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매년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침(교육부, 2015)을 마련하여 유치원 현장이 이에 따라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과정 운영 시 주요 활동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특성화프로그램을 중점 교육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정부는 방과후과정이 특성화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2013년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1일 평균 60.7분 동안 방과후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과목 수도 운영기준보다 많으며 부모에게 수업료까지 추가 부담시키고 있었다. 유치원 측에서는 유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만족도 향상을 통한 원아 모집에 도움을 받기 위해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부모 부담 경감은 물론, 방과후과정 운영 취지에 따라 운영하도록 정부는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넷째,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정례화한다.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중 절반 정도만 관련 연수에 참여하였다.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로 교육일정과 근무시간이 겹쳐서가 37.2%로 가장 많았고, 교육연수 정보 부족 23.8%, 교사연수 기회 부족 15.1% 순이었다. 방과후과정은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로 기본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돌봄서비스 관련 교사교육이 필수적이다.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과후과정 담당교사로 배정 시 사전에 연수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섯째, 방과후과정 교사의 근로조건 및 처우를 개선한다.

방과후과정 전담 교사 중 과반수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80% 정도만 경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경력 인정 비율도 100%가 아닌 87.5%이었다. 방과후과정반 운영 이외의 근무시간에는 행정업무, 기본교육과정반 수업보조 등·하원지도, 급간식지도와 등·하원 차량지도 등 방과후과정반과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기본교육과정 교사가 연장 근무하는 경우, 절반 정도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초과 근무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29.2%는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받거나, 14.2%는 초과 근무시간만큼 지급하되 상한선을 두거나 9.2%는 상한선 없이 초과 근무시간만큼 지급받고 있었다.

방과후과정 전담교사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본 교육과정 교사에 준하여 경력을 인정하고, 방과후과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중심으로 업무 배정하여 근무 환경 및 만족도를 개선한다. 또한 연장 근무교사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방과후과정 지도 점검 시 이를 점검 항목에 추가한다.

여섯째, 보조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방과후과정 담당교사가 인력 지원을 받은 경우는 35.8% 정도이고, 지원인력은 주로 3세대 하모니, 보조교사, 자원봉사 등이었다. 방과후과정은 주로 오후 재편성 학급으로 운영되고, 혼합 연령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방과후과정 이용 아동의 하원시간이 달라서 하원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교사 혼자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방과후과정 이용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담당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3세대 하모니 지원을 확대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정기적으로 모집하여 보조인력이 부족한 유치원에 배치한다.

## 2) 증장기 방안

첫째, 방과후과정비 지원을 전 계층 지원에서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한다.

2012년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방과후과정비가 전 계층에 지원됨에 따라 방과후과정 이용률이 2011년 47.4%에서 2012년 62.0%로 급상승 하였고, 2014년에는 67.5%로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보편화되면서 지원받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부모들 사이에 만연하였고, 유치원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면서 방과후과정이 필요없는 유아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다.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으로, 이에 부합하는 유아가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기본 교육활동 외의 추가적인 교육활동이나 돌봄활동이 필요한 유아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나. 유치원 돌봄교실

#### 1) 단기 방안

첫째, 지역 및 이용 유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유치원 돌봄교실, 특히 저녁돌봄은 시도 교육청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오후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저녁돌봄 이용 유아의 주요 하원시간대가 오후 18시에서 20시 사이에 수렴하고, 오후 21시 이후는 5% 내외로 소수이었다. 돌봄교실 이용 유아가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교사가 돌봄교실을 지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수요에 따라 종료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의 경우, 24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영유아가 오후 20시 30분에서 21시 30분 사이에 하원하고 있어 오후 22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시간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이 돌봄교실 운영시간 기준을 지침대로 고수하기 보다는 지역특성이나 돌봄교실 이용 유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종료시간을 조정하도록 한다.

둘째, 돌봄교실 이용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돌봄교실 이용 유아 중 맞벌이 가구 자녀는 아침돌봄이 92.7%, 저녁돌봄은



92.0%로, 대부분 부모 취업 등으로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8%는 취업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유치원이 돌봄서비스 지원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는 65.4% 정도이었다. 유치원에서 받는 증빙서류는 취업증빙자료가 80.5%,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 39.1%, 소득 증빙자료 3.4% 순이었다. 이처럼 유치원이 자체 판단하여 부모의 취업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으로 돌봄교실 자격 여부를 결정할 경우, 기관이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증빙자료 범위도 제시한다.

셋째, 돌봄교실에 대한 장학 및 컨설팅을 정례화 한다.

돌봄교실 관련 장학 및 컨설팅을 받은 유치원은 조사대상 중 절반 정도이고, 지원을 받은 경우 평균 1.6회이었다. 지원분야는 안전관리 및 위급 시 대처 생활지도와 교수학습 지도, 돌봄 운영 전반 순이었다. 돌봄교사 과반수가 돌봄교실 관련 장학 및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공립 단설과 중소도시 소재 돌봄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대부분의 유치원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장학 및 컨설팅을 지원받고 있으나, 돌봄교실은 돌봄 기능이 강화된 서비스로 교육과정과 지원 영역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돌봄교실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학 및 컨설팅을 개발하고, 상하반기 2회 정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돌봄 강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의무화한다.

아침·저녁돌봄 담당교사 중 돌봄교실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40.0%로, 사립과 대도시 돌봄교실 담당교사의 연수 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교사 연수 자체가 적어서, 교육 일정이 근무시간과 겹쳐서, 교사연수 정보 부재 순이었다. 돌봄교실 전담교사 대상의 돌봄기능이 강화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담당교사 채용 및 배치 시 연수에 참여하도록 한다.

## 2) 증장기 방안

첫째, 연령별 학급당 유아수 기준을 마련한다.

17개 시도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원이 20명에서 필요 시 25명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돌봄 학급 당 유아 수는 평균 15.1명, 저녁돌봄 학급 당 유아수는 20.3명이었다. 돌봄교실 담당교사들은 적정 유아수로 3세 평균 7.4명, 4세 10.2명, 5세 12.3명,

혼합연령 학급 12.9명으로 연령에 비례하여 유아수도 늘어났다 돌봄교실은 돌봄이 주 기능이므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본 교육과정이나 방과후과정보다 낮춰야 한다. 동일 시간대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5로 돌봄교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유아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돌봄교실의 경우, 연령 단독반보다는 혼합연령 학급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3세를 고려하여 학급 당 유아수를 15명으로 축소하여 운영한다.

둘째, 돌봄교실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온종일 돌봄교실 예산은 유형(아침, 저녁, 온종일) 및 참여 유아 수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교육 재정 악화로 매년 돌봄교실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 따라 지원 여부나 규모는 차이가 크다. 본 조사결과, 유치원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평균 1,433만원으로 기관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 또한 유치원 대부분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고, 지원 예산 부족으로 유치원 70% 정도가 운영비를 추가 부담하였고, 총 운영비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유치원은 돌봄교실 운영을 기피하고 있다.

최근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의 다양화로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원 예산 부족에 따른 유치원의 재정 부담 가중으로 운영률이 감소할 경우, 부모의 양육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 양육 부담 경감 차원에서 돌봄교실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한다.

#### 4. 맺는 말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등 시간연장형 보육과 시간제보육, 유치원의 방과후과정과 온종일 돌봄교실 등의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기관장과 교사의 운영 애로 및 요구 등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영유아 맞춤형보육과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 취업모의 고용형태(직종 및 종사상 위치) 및 근로시간의 변화 추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등·하원시간 영유아 취업모의 출퇴근시간과 영유아 자녀 등·하원시간 간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고,

어린이집 맞춤형보육(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등)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온종일 돌봄교실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관련법 및 제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 각종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운영 및 이용 현황과 제공기관의 기관장과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특히 시간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영유아 맞춤형보육(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돌봄교실의 단·중장기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과 24시간보육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온종일돌봄교실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며, 실수요자 자격 조건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증빙 서류 범위를 확정한다. 또한 이들 서비스들이 정규 보육·교육 시간 외에 추가로 서비스됨에 따라 평가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므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과 24시간보육,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온종일돌봄교실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채용 조건에 연수 이수를 포함시킨다. 또한 정규 교사들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므로, 인건비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며, 보조인력 등의 지원을 활성화한다.

우리나라의 보육·유아교육 정책은 그간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시간연장형보육과 시간제보육,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온종일돌봄교실 등의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강달금·임명희·조희진·이경선(2002). 시간연장형보육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한국아동 edu-care 연구소
- 강문희·김매희·이경희·정정옥(2000). 야간 및 24시간보육 실태 및 요구도 조사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22, 27-56.
- 경기도교육청(2013.2).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 경상남도교육청(2015). 2015 엄마품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계획
- 광주광역시교육청(2015). 2015년 돌봄유치원 선정 운영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07).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10).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 보도자료(2010.12.13.).
- 교육과학기술부(2012). 3~4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완료 보도자료(2012.2.27).
- 교육과학기술부(2012). 3월부터 전국 1,700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보도자료(2012.1.30.).
- 교육부(1992). 제5차 유치원교육과정
- 교육부(2014). 엄마품 돌봄교실 운영 계획. 내부자료
- 교육부(2014). 제 3주기 유치원 평가지표
- 교육부(2015). '15학년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추진 계획안.
- 교육부(2015). 방과후과정 지도점검 내부자료
- 교육부(2015.3).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 구철희·민성혜·권미경(2013). 일시보육프로그램. 한국보육진흥원
-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근혜·홍순옥(2013). 엄마품 온종일 돌봄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한국영유

- 아보육학회, 83, 179-199.
- 김동례·백영애·김지영(2010). 시간연장형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도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0(2), 59-77.
- 김설아(2015).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이용실태와 인식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오은진·한지영(2014).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설·유해미·김선화(2010)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이윤진·김경미(2011). 2010-2011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경기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황성온·정영혜(2012).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경상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희·이경아·서화숙·최현진(2004). 특수(시간연장형) 보육 수요조사 및 정책 대안 연구. 여성부·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종숙·민무숙·김영옥·신선미·김난주·권소영(2013).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전략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진·윤상용(2015). 맞춤형보육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_24시간 보육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90, 131-157.
- 김혜경·류왕효(2006).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스트레스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5, 207-225.
- 김홍원·양애경·이성원·정영모·임봉조·전수민(2012).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실태 및 성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2013).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Issue paper, 1.
- 나정·김미숙(2005). 통합형 취학전 교육(Edu-care) 운영 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 32(3), 181-204.
- 노은호·김정주(201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종일반 운영관리 비교연구, 11(3),

107-125.

- 대구광역시교육청(2015). 2015년 엄마품 돌봄유치원 운영 및 공모 계획
- 문무경·김문정(2008). 유치원 종일반 운영 실태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문미옥·조부경·이연승·신은수·김영실·안진경·김지영(2008). 종일제 프로그램의 편성·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54, 53-78.
- 민성혜·김경은·박옥영·박정아(2013). 일시보육 활동 프로그램.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배지희·봉진영·조미영(2010).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종일반 교사의 인식 및 어려움. 14(2), 101-124.
- 백선정·이지선(2015). 경기도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개선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법제처(2015). 영유아보육법.
- 법제처(2015). 유아교육법
- 보건복지부(2013). 일시보육 운영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5). 시간제보육 운영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5). 시도특수보육시책.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차 지표 시범사업용.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5). 2015 시간제보육 성과보고회 자료집
- 서문희·양미선(2012). 시간연장보육 이용 실태 및 수요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2013). 시간연장보육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4), 259-276.
- 서문희·양미선(2014).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육진흥원·육아

- 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권미경·이미화·이완정·김혜진(2011).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권미경·장현실(2013). 일시보육 성과 분석. 한국보육진흥원·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울특별시(2015).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 계획 내부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2014). 2014학년도 유치원 엄마품은종일돌봄교실 운영 계획.
- 서원경·최석란(2005). 보육교사와 영아의 애착 증진을 위한 야간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42(9), 253-277.
- 서현·윤경아(2012). 시간연장 보육을 받는 유아의 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2(5), 347-373.
- 서현·윤경아(2012). 시간연장 학급에서 영아 교사 부모의 적응 양상. 열린유아교육연구, 18(4), 231-261.
- 송경섭(2013). 어린이집 유형별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실태 및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요구-서울, 경기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3(2), 25-45.
- 신윤정·유재언·김혜영·윤자영(2014). 동아시아 국가 가족 정책 비교 연구-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미선·김길숙·손창균·임지희(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박진아·손창균·임지희(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서문희·김정민(2014).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2014.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서문희·이규림·김정민(2014). 시간제보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서문희·이혜민(2013).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오은진·박성정·민현주·김난주·송창용·김지현(2008).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육구 조사연구. 여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은진·이한나(2013). 기혼여성의 직업 이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2(1), 133-161.
- 유희정·홍승아·김지혜·이슬·동제연·이향란(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영환(2015). 시간제보육 현황과 발전 방안 육아정책연구, 9(1), 75-93.
- 이진경·옥선화(2009). 첫 자녀 출산 여부와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유배우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10(3), 59-83.
- 이희선(2006). 부모의 변인에 따른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관한 인식, 6(1), 99-115
- 인천광역시교육청(2015). 인천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계획.
- 장영인·최영신(2008). 시간제보육의 필요성과 그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53, 79-105.
- 전광현·순덕기·이숙영·천영희·오경희·최진희(2006). 24 시간 보육시설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국 시도청(2015).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시자료
- 정영순·어윤경·임유진(2012). 취업모 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전일제와 시간제 비교. 한국사회정책, 19(3), 215-245.
- 조선주·유희정·강민정·오현경(2010).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시간연장보육 활성화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재선·문유경·김영택·임연규·손창균·조은주·강은수(2014).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2-2013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3-2014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충청북도교육청(2015). 유치원 돌봄 교실 운영 계획.
- 통계청(2014). 지역별 고용조사 부가조사 결과분석 보도자료.
- 표갑수(1996). 사회복지측면에서 본 24 시간 보육의 필요성과 전망 한국영유아보육학, 5, 113-133.
- 현대경제연구원(2014). 경제포럼.
- Care Inspectorate(2013) Care Inspectorate service-lists and annual return data.

[참고 웹사이트]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main.html>).
-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http://e-childschoolinfo.mest.go.kr>).
- 핀란드 헬싱키 시 홈페이지(<http://www.hel.fi/www/Helsinki>).
- <http://app.msf.gov.sg/Policies>.
- <http://app.msf.gov.sg/Research-Room/Research-Statistics/Childcare-Centres-Places-Offered-and-Children-Pla>
-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853.xhtml>.
- <http://www.aceprif.org/images/public/biblio/ressourcespe/drees-etude-offre-accueil-03ans-2013.pdf>.
- [https://www.childcarelink.gov.sg/ccls/uploads/MCYS-Choosing\\_110310\\_FA.pdf](https://www.childcarelink.gov.sg/ccls/uploads/MCYS-Choosing_110310_FA.pdf).
- [https://www.childcarelink.gov.sg/ccls/uploads/Subsidy\\_Brochure\(ECDA\).pdf](https://www.childcarelink.gov.sg/ccls/uploads/Subsidy_Brochure(ECDA).pdf).

## Abstract

### **Measures to Reinforce Customized Child Care Service for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 Centered on time-extended child care services and hourly child care services provided by child care centers and after-class programs and child care classes provided by kindergartens -

Mi-sun Yang, Yun-Jin Bae , Jung-Min Ki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measures to expand and reinforce customized child care services for infants and toddlers and after-class child care services by identifying the operation status and the usage status and difficulties and needs arising from operating time-extended and hourly child care services such as the time-extended child care and the 24-hour child care serviced by child care centers, and after-school programs, full day child care class and etc. serviced by kindergartens, and develop a monitoring index accordingly.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preceding studies, collected and analyzed related laws, systems and statistical data, and analyzed existing data such as the National Child Care Actual Conditions Survey (2009, 2012), the Employment Survey, and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Furthermore, we hav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with directors of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directors of central support centers for childcare, and respective class teachers, and developed a monitoring index for the time-extended child care serviced by child care centers and the after-school program serviced by kindergartens.

Our proposal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is as follows:

First, we need to set-up an eligibility criteria on assistance for the time-extended child care service to be provided only for infants and toddlers requiring a care service that exceeds the standard child care time, raise the

hourly wage for the hourly child care service to 4,000 won per hour level and gradually adjust the rate to a realistic level that reflects the rise in price. When developing the project to support substitute teachers,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expand its support on time-extended child care substitute teachers by setting-up separate support centers for time-extended child care teachers. Furthermore, these support centers should serve as the hub of operation to ensure a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time-extended child care service and to maximize the efficiency in the use of the government's fund, and support the labor cost by extending the work time of hourly child care teachers to six hours which is an appropriate time to operate the time-extended child care service. Moreover, it is necessary to require mandatory consulting and monitoring on time-extended child care services because blind spots often exist for the quality management since the time-extended child care service is exempt from the accreditation system, and although inspections are held, the area of inspection is limited to matters such as nutrition, safety, accounting and etc. Lastly, we suggest to newly establish an 'in-service training course for time-extended child care' in the special in-service training course program for child care teachers to maintain and develop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to perform time-extended child care activities.

Second, we propose to increase the number of institutions providing hourly child care services centered on areas with demand, then reassign these institutions following an assessment on its accessibility, the child care environment, the service quality and etc. More than two hourly child care classes should be assigned per institution. Furthermore, we should conduct more active trainings and monitoring related to the hourly child care, reinforce the requirement of hourly child care teachers to complete their in-service trainings on infants and toddlers' child care, expand support on substitute teachers to substitute hourly child care teachers and actively hold promotions on the hourly child care service at the community level. Lastly, in the mid to long term, we propose to expand operation days and hours of

the hourly child care service.

Third, we should set-up an eligibility criteria to qualify for the after-school program, and enforce a mandatory submission of supporting evidences, and reinforce inspections on after-school programs to prevent the program from being centered on specialized educational programs. Furthermore, trainings for teachers in charge of the after-school program should be held on a regular basis, and the working condition and staffs' working satisfaction should be improved by recognizing the experience for the teacher in charge of the after-school program in proportion to the level of experience of teachers in charge of the basic curriculum class if the after-school teacher works for more than 8 hours a day, and by assigning tasks centered on task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after-school program.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differentiated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 who must receive additional educational activities other than the basic education activity or a child care service to receive priority support, flexibly adjust the operation hour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 of kindergartens, and set-up an eligibility criteria to qualify for the child care class and enforce a mandatory submission of supporting evidences. Lastl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mandatory trainings for teachers in charge of the child care class, and supervise and provide consulting for child care classes on a regular basis.

## 부 록

---

부록 1. 부록 표

부록 2. 조사표



## 부록 1. 부록 표

〈부표 III-2-1〉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운영에 대한 찬반

단위: %(명)

구분	절대 반대	반대하는 편	찬성하는 편	절대 찬성	계(수)	평균
전체	16.1	53.6	26.1	4.2	100.0(621)	2.2
기관 유형						
국공립	18.1	44.9	27.5	9.4	100.0(138)	2.3
사회복지법인	13.3	66.7	13.3	6.7	100.0( 30)	2.1
법인단체 등	31.3	37.5	18.8	12.5	100.0( 16)	2.1
민간개인	14.1	57.1	25.5	3.3	100.0(184)	2.2
가정	15.4	56.0	27.4	1.2	100.0(241)	2.1
직장	25.0	41.7	33.3	-	100.0( 12)	2.1
지역규모						
대도시	16.0	53.5	27.0	3.5	100.0(282)	2.2
중소도시	16.3	52.5	26.7	4.5	100.0(221)	2.2
읍면지역	16.1	55.9	22.9	5.1	100.0(118)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부표 III-2-2〉 인건비 미지원 여부 및 기간

단위: %(명)

구분	인건비 미지원 여부		미지원 기간(개월)		
	있음	(수)	1개월	2개월	계(수)
전체	6.3	(64)	50.0	50.0	100.0(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1.5	(26)	66.7	33.3	100.0(3)
민간 법인단체등	-	(24)			
가정	7.1	(14)	-	100.0	100.0(1)
지역규모					
대도시	2.4	(41)	-	100.0	100.0(1)
중소도시	13.3	(15)	50.0	50.0	100.0(2)
읍면지역	12.5	( 8)	100.0	-	10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부표 III-2-3〉 24시간 담당교사 채용 시 고려사항: 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 경력	결혼 여부	자녀양육 경험 여부	연령	인성	기타	계(수)
전체	35.0	5.0	28.3	11.7	15.0	5.0	100.0(60)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48.0	4.0	16.0	8.0	16.0	8.0	100.0(25)
민간 법인단체등	26.1	8.7	34.8	13.0	13.0	4.3	100.0(23)
가정	25.0	-	41.7	16.7	16.7	-	100.0(12)
지역규모							
대도시	30.8	7.7	25.6	15.4	12.8	7.7	100.0(39)
중소도시	35.7	-	42.9	-	21.4	-	100.0(14)
읍면지역	57.1	-	14.3	14.3	14.3	-	100.0( 7)
정원							
20인 이하	25.0	-	41.7	16.7	16.7	-	100.0(12)
21~50인	25.0	10.0	45.0	5.0	10.0	5.0	100.0(20)
51~80인	42.9	-	7.1	21.4	21.4	7.1	100.0(14)
81인 이상	50.0	7.1	14.3	7.1	14.3	7.1	100.0(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부표 III-2-4〉 24시간 보육 중점사항: 2순위

단위: %(명)

구분	가정에 서와 같은 보육환 경 조성	균형잡 힌 급간식 제공	안전한 보호 또는 돌봄	야간 프로그램 운영	기본생 활습관 지도	실외놀 이(놀이 터, 산책 등)	기타	계(수)
전체	23.8	20.6	36.5	3.2	12.7	1.6	1.6	100.0(6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9.2	26.9	30.8	7.7	11.5	3.8	-	100.0(26)
민간 법인단체등	33.3	12.5	37.5	-	12.5	-	4.2	100.0(24)
가정	15.4	23.1	46.2	-	15.4	-	-	100.0(13)
지역규모								
대도시	25.0	22.5	30.0	5.0	12.5	2.5	2.5	100.0(40)
중소도시	26.7	20.0	33.3	-	20.0	-	-	100.0(15)
읍면지역	12.5	12.5	75.0	-	-	-	-	100.0( 8)
정원								
20인 이하	15.4	23.1	46.2	-	15.4	-	-	100.0(13)
21~50인	23.8	14.3	28.6	4.8	23.8	-	4.8	100.0(21)
51~80인	28.6	14.3	42.9	7.1	-	7.1	-	100.0(14)
81인 이상	26.7	33.3	33.3	-	6.7	-	-	100.0(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부표 III-2-5〉 어린이집 재정운영 상 부담되는 비용: 2순위

단위: %(명)

구분	인건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교재 물품	교구 및 구입비	계(수)
전체	15.0	26.7	53.3		5.0	100.0(60)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2.0	16.0	68.0		4.0	100.0(25)
민간/ 법인단체등	17.4	26.1	47.8		8.7	100.0(23)
가정	16.7	50.0	33.3		-	100.0(12)
지역규모						
대도시	15.8	23.7	55.3		5.3	100.0(38)
중소도시	14.3	50.0	35.7		-	100.0(14)
읍면지역	12.5	-	75.0		12.5	100.0( 8)
정원						
20인 이하	16.7	50.0	33.3		-	100.0(12)
21~50인	5.0	30.0	60.0		5.0	100.0(20)
51~80인	21.4	-	71.4		7.1	100.0(14)
81인 이상	21.4	28.6	42.9		7.1	100.0(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부표 III-2-6〉 24시간 보육 운영의 어려움: 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교 사 인건비 추가 부담	운영비 관리운 영비 급간식 비 등 추가 부담	추가 보육료 및 연체 미납에 따른 보육료의 수납의 어려움	24시간 보육교 용 사 채 용	야간보 육에 따른 영유아 및 교사 안전문 제	시도 및 시군구 의 지도 점검	교사 1인 근무로 위급상 황 발생 시 대처 어려움	기타	계(수)
전체	17.7	16.1	8.1	14.5	17.7	3.2	21.0	1.6	100.0(62)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20.0	12.0	4.0	12.0	20.0	4.0	24.0	4.0	100.0(25)
민간/ 법인단체등	8.7	13.0	17.4	21.7	26.1	-	13.0	-	100.0(23)
가정	28.6	28.6	-	7.1	-	7.1	28.6	-	100.0(14)
지역규모									
대도시	15.4	12.8	10.3	17.9	12.8	2.6	25.6	2.6	100.0(39)
중소도시	26.7	20.0	6.7	6.7	20.0	6.7	13.3	-	100.0(15)
읍면지역	12.5	25.0	-	12.5	37.5	-	12.5	-	100.0( 8)
정원									
20인 이하	28.6	28.6	-	7.1	-	7.1	28.6	-	100.0(14)
21~50인	15.8	10.5	26.3	10.5	26.3	-	5.3	5.3	100.0(19)
51~80인	7.1	7.1	-	21.4	21.4	7.1	35.7	-	100.0(14)
81인 이상	20.0	20.0	-	20.0	20.0	-	20.0	-	100.0(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부표 IV-1-1〉 방과후과정 중점 활동: 1순위

단위: %(명)

구분	프로그램 운영	돌봄(휴식 및 간식)	자유선택 활동	생활지도	개인학습 지도	계(수)
전체	33.4	30.7	13.7	12.1	10.0	100.0(371)
기관 유형						
공립 병설	34.0	28.6	8.2	19.0	10.2	100.0(147)
공립 단설	24.0	40.0	12.0	24.0	-	100.0( 25)
사립	34.2	31.2	18.1	5.5	11.1	100.0(199)
X <sup>2</sup> (df)			-			
지역규모						
대도시	31.9	32.8	15.1	10.1	10.1	100.0(119)
중소도시	37.5	32.4	12.5	9.6	8.1	100.0(136)
읍면지역	30.2	26.7	13.8	17.2	12.1	100.0(116)
X <sup>2</sup> (df)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부표 IV-1-2〉 방과후과정반 운영 시 어려운 점(1순위)

단위: %(명)

구분	혼합연령 구성에 따른 교육활동 계획 및 실행	방과후 과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부족	기본 교육 과정 반 교육 활동 과 목 미 충 족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과정 반 전용 교재 교구 와 전용 교실 부족	다양한 업무 로 인 한 교육 활동 안 정 적 운영 어 려 움	유아 인 원 대 인 력 부 족	외부 학 원 이 용 의 유 아 관 리	기타	없음	계(수)
전체	18.1	5.7	11.9	6.2	18.9	29.1	8.9	0.5	0.8	100.0(371)
기관 유형										
공립 병설	31.3	6.8	8.8	7.5	17.0	24.5	3.4	-	0.7	100.0(147)
공립 단설	4.0	12.0	12.0	4.0	12.0	32.0	16.0	8.0	-	100.0( 25)
사립	10.1	4.0	14.1	5.5	21.1	32.2	12.1	-	1.0	100.0(199)
X <sup>2</sup> (df)					-					
지역규모										
대도시	15.1	5.9	13.4	6.7	21.8	24.4	12.6	-	-	100.0(119)
중소도시	11.0	6.6	12.5	3.7	23.5	33.1	8.1	0.7	0.7	100.0(136)
읍면지역	29.3	4.3	9.5	8.6	10.3	29.3	6.0	0.9	1.7	100.0(116)
X <sup>2</sup> (df)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부표 IV-2-1〉 돌봄교실 중점 활동: 1순위

단위: %(명)

구분	프로그램 운영	돌봄(휴식 및 간식)	자유선택활동	생활지도	계(수)
전체	1.5	70.4	12.6	15.6	100.0(135)
기관 유형					
공립 병설	-	73.9	8.7	17.4	100.0( 23)
공립 단설	-	69.2	7.7	23.1	100.0( 26)
사립	2.3	69.8	15.1	12.8	100.0( 86)
지역규모					
대도시	-	78.1	12.5	9.4	100.0( 32)
중소도시	3.3	63.9	19.7	13.1	100.0( 61)
읍면지역	-	73.8	2.4	23.8	100.0( 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부표 IV-2-3〉 돌봄교실 개선 사항: 1순위

단위: %(명)

구분	돌봄교사 고용 안정성 제고	돌봄교사 전문성 향상	돌봄교사 인건비 현실화	돌봄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보조인력 지원 확대	예산안정적 확보 및 지원 확대	교육청 간 통일된 운영 지침	프로그램 개발 보급	돌봄교실 운영 위한 별도 공간 마련	기타	계(수)
전체	10.4	5.2	26.7	5.9	17.0	20.0	0.7	4.4	8.1	1.5	100.0(135)
기관 유형											
공립 병설	26.1	-	26.1	8.7	21.7	8.7	-	-	4.3	4.3	100.0( 23)
공립 단설	15.4	11.5	3.8	3.8	23.1	11.5	-	3.8	23.1	3.8	100.0( 26)
사립	4.7	4.7	33.7	5.8	14.0	25.6	1.2	5.8	4.7	-	100.0( 86)
지역규모											
대도시	-	3.1	31.3	12.5	15.6	28.1	-	6.3	3.1	-	100.0( 32)
중소도시	11.5	3.3	24.6	3.3	21.3	16.4	1.6	6.6	9.8	1.6	100.0( 61)
읍면지역	16.7	9.5	26.2	4.8	11.9	19.0	-	-	9.5	2.4	100.0( 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사 조사」 결과임.

〈부표 IV-2-4〉 휴일 중 돌봄교실 담당자: 휴업일

단위: %(명)

구분	기존 돌봄강사	기본교육과정 · 방과후과정반 교사	기본교육과정 · 방과후과정교사와 돌봄강사	시간제·기간제 돌봄교사 채용	계(수)
전체	16.7	25.0	41.7	16.7	100.0(12)
기관 유형					
공립 병설	-	33.3	66.7	-	100.0( 3)
공립 단설	-	50.0	-	50.0	100.0( 4)
사립	40.0	-	60.0	-	100.0( 5)
지역규모					
대도시	50.0	-	50.0	-	100.0( 2)
중소도시	14.3	14.3	42.9	28.6	100.0( 7)
읍면지역	-	66.7	33.3	-	100.0( 3)
정원규모					
100명 이하	25.0	25.0	50.0	-	100.0( 4)
101~150명 이하	20.0	40.0	40.0	-	100.0( 5)
151~200명 이하	-	-	-	100.0	100.0( 2)
201명 이상	-	-	100.0	-	100.0( 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부표 IV-2-5〉 휴일 중 돌봄교실 담당자: 토요일

단위: %(명)

구분	기존 돌봄강 사	기본교육과정 · 방과후과정반 교사	기본교육과정 · 방과후과정반 교사와 돌봄강사	유급 자원 봉사	기타	계(수)
전체	19.6	34.8	41.3	2.2	2.2	100.0(46)
기관 유형						
공립 단설	-	100.0	-	-	-	100.0( 1)
사립	20.0	33.3	42.2	2.2	2.2	100.0(45)
$X^2(df)$						
지역규모						
대도시	23.1	15.4	61.5	-	-	100.0(13)
중소도시	9.1	45.5	36.4	4.5	4.5	100.0(22)
읍면지역	36.4	36.4	27.3	-	-	100.0(11)
$X^2(df)$						
정원규모						
100명 이하	12.5	37.5	50.0	-	-	100.0( 8)
101~150명 이하	23.1	30.8	46.2	-	-	100.0(13)
151~200명 이하	14.3	42.9	28.6	7.1	7.1	100.0(14)
201명 이상	27.3	27.3	45.5	-	-	100.0(11)
$X^2(df)$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원장 조사」 결과임.

## 부록 2. 조사표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시간연장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조사표 번호			시도	구시군 읍면동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연장보육 운영 실태 및 내실화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사관련 문의 :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배윤진 부연구위원(02-398-7745, byj@kicce.re.kr)

김정민 연구원(02-398-7757, cjdwnsk@kicce.re.kr)

시도번호		지역구분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정원	_____명	현원	_____명



6. 귀 어린이집이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1 가지 선택)

- ① 정부(시도 및 시군구청 등)의 참여 권장      ② 원아 확보      ③ 재원아 부모의 요구
- ④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필요성 인식(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야간근무부모 등)      ⑤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위탁 조건
- ⑥ 공공형, 서울형 선정조건      ⑦ 기타( )

**Ⅲ. 시간연장보육 보육교사에 관한 질문**

1. 귀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보육 담당 교사는 모두 몇 명입니까?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 문항 2으로)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 문항 2-1으로)
( )명	( )명

2. (문항 7에서 '월급여 시간연장반 교사가 있는 경우' 시간연장반 교사별로 교사 자격과 근무시간 월급여 등을 각각 적어 주십시오.

고용형태	교사 자격	근무시간		월 급여
	① 보육교사 1급    ② 보육교사 2급 ③ 보육교사 3급    ④ 기타 )	출근시간 (※ 24시간 기준으로 기입)	퇴근시간 (※ 24시간 기준으로 기입)	(※ 세전금액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시간연장반 교사 1		시    분	시    분	만원
시간연장반 교사 2		시    분	시    분	만원
시간연장반 교사 3		시    분	시    분	만원

-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 시간연장 보육교사 별도 채용한 경우
-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2-1. (문항 1에서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가 있는 경우'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 하는 곳에 ✓표 하고, 각각 몇 명인지 교사 수를 적어 주십시오

① 주간 보육교사 초과근무  ( )명       ② 단시간 보육교사  ( )명

2-1-1. (문항 2-1에서 '주간 보육교사 초과근무 응답한 경우' 주간 보육교사가 초과근무하는 경우 근무 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주간 보육교사 1명이 전담하여 초과근무    ② 주간 보육교사가 요일 달리하여 근무(당직 근무)

2-1-2. (문항 2-1에서 '주간 보육교사 초과근무' 응답한 경우) 주간 보육교사가 초과 근무하는 경우 1일 평균 몇 시간 정도 초과 근무합니까?

1일 평균 ( )시간

2-2. (문항 2-1에서 '단시간 보육교사' 응답한 경우) 시간연장반 교사로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 교사별로 교사 자격과 근무시간, 월급여 등을 각각 적어 주십시오

고용형태	교사 자격	근무시간		월 급여
	① 보육교사 1급    ② 보육교사 2급 ③ 보육교사 3급    ④ 기타 )	출근시간 (※ 24시간 기준으로 기입)	퇴근시간 (※ 24시간 기준으로 기입)	(※ 세전금액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단시간 보육교사 1		시    분	시    분	만원
단시간 보육교사 2		시    분	시    분	만원
단시간 보육교사 3		시    분	시    분	만원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시간연장보육 운영에 관한 교사조사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조사표 번호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시간연장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시간연장보육 운영 실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시간연장보육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설문내용 문의 :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배윤진 부연구위원(02-398-7745, byj@kicce.re.kr)  
김정민 연구원(02-398-7757, cjdwnsk@kicce.re.kr)

기관 주소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	---------------------



4. (문항 1-3 에서 시간연장반 교사 응답한 경우) 귀하는 현재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습니까?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① 받음(월 원) ② 받지 않음

5. 다음은 시간연장반 교사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칸에 √ 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체 교사회에 참여하는 편이다.					
2) 나는 교사 회식이나 워크샵 등에 참여하는 편이다.					
3) 나는 교사로서 종일반 교사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					

### II-2. 시간연장 근무하는 종일반 교사에 관한 질문

1. (문항 1-3에서 종일반 교사가 연장 근무하는 경우) 귀하는 월평균 몇 일 정도 연장 근무합니까?  
 (※ 당직 근무시간(1일 8시간 기준) 내에 시간연장반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 근무에 포함되지 않음)  
 월 평균 ( )일 연장 근무
- 1-1. 귀하는 정규 근무시간(8시간) 외에 1일 평균 몇 시간 정도 연장 근무합니까? 평일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1일 평균 ( )시간 연장 근무
2. 귀하는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어떤 형태로 받으십니까?(1가지 선택)  
 ①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 문항 2-1로)  
 ②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하되 상한선을 둠(☑ 문항 2-1로)  
 ③ 시간 계산없이 일정 금액 일괄 지급(☑ 문항 2-1로)  
 ④ 기타( ) ⑤ 초과근무수당 없음
- 2-1. (문항 2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는 시간외 수당을 월 평균 어느 정도 받으십니까?  
 월 평균 ( )원
- 2-2. 귀하는 시간외 수당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만족

### II-3. 공통 질문

6. 귀하는 시간연장보육 담당교사로서 근무만족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연장근무 교사는 수당에 대해 응답함)

구분	① 매우 불만	② 불만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 근무 환경					
2) 업무량 및 업무강도					
3) 급여(또는 수당)					
4) 처우(휴가 교육 수당 등)					

### III. 시간연장반 교사 전문성 향상

1. 귀하는 시간연장보육 관련 교사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 정도 참여하였습니까?  
 (※ 2015년 기준으로 응답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포함됩니다.)  
 ① 참여한 적 있음(☑ 2015년 회) (☑ 문항 1-1로) ② 참여한 적 없음(☑ 문항 1-2로)

1-1. (문항 1에서 ①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가 참여한 교육의 주관기관은 어디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① 한국보육진흥원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어린이집 연합회     ④ 기타(                    )

1-2. (문항 1에서 ② 참여한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 시간연장보육 관련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연장보육 관련 교사교육이 있는지 잘 몰라서    ② 시간연장보육 관련 교사교육 자체가 없어서  
 ③ 연수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④ 교육일정이 근무시간과 겹쳐서  
 ⑤ 교육 수강인원이 마감되어서    ⑥ 교육 신청기간을 놓쳐서  
 ⑦ 대체교사를 지원받지 못해서    ⑧ 교사 연수비가 없어서  
 ⑨ 기관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⑩ 기타(                    )

2. 귀하가 담당하는 시간연장보육반에 대해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2015년에 받아 본 적이 있다면, 몇 회 받았습니까?

- ① 받아본 적 있음(☞ 2015년 총                    회)    ② 받아본 적 없음

3. 귀하는 시간연장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컨설팅 또는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필요하지 않음    ③ 필요함    ④ 매우 필요함

**IV.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 운영**

1. 귀 어린이집이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 운영 시 가장 중점을 두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 ① 자유선택활동    ② 안전한 보호 또는 돌봄    ③ 개인 학습지도(학습지 등)  
 ④ 프로그램 운영    ⑤ 생활지도    ⑥ 실외놀이(놀이터, 산책 등)  
 ⑦ 기타(                    )

2. 귀하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개발한 시간연장보육형 프로그램 매뉴얼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고 현재 활용하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으나 활용하지는 않음  
 ③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는 못함    ④ 잘 모름

3. 시간연장보육반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가 포함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유아로만 편성할 경우에는 1:7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① 부적절	② 부적절	③ 적절	매우 ④ 적절
1) 교사대 아동 비율 1:5				
2) 유아로만 편성 시 1:7				

**IV. 기타**

1. 귀하는 시간연장보육이 맞벌이부모(취업 한부모 포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귀하가 시간연장보육반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2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번	2순위: (                    )번
------------------------------	------------------------------

- ① 혼합반 구성에 따른 보육활동의 어려움    ② 높은 교사대 아동비율  
 ③ 시간연장보육에 적합한 프로그램 부족    ④ 시간연장반용 교재교구 부재  
 ⑤ 저녁급식 준비 및 배식, 정리 등    ⑥ 아동마다 하원시간이 다른 데 따른 하원지도의 어려움  
 ⑦ 밤늦은 시간 아동과 교사의 안전 확보    ⑧ 퇴근 시 교사의 안전 확보  
 ⑨ 기타(                    )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24시간보육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조사표 번호	시도	구시군 읍면동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보육 운영 실태 및 내실화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어린이집 24시간보육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사관련 문의 :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김정민 연구원(02-398-7757, cjdwnsk@kicce.re.kr)

시도번호		지역구분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정원	_____명	현원	_____명
어린이집 명			



## I. 어린이집 일반 사항

※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칸에 ✓표 하거나 응답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 어린이집의 시설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④ 민간개인어린이집                      ⑤ 가정어린이집                      ⑥ 직장어린이집  
 ⑦ 부모협동어린이집

2. 귀 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현원은 8월 기준으로 적어 주십시오)

정원: (                      )명	현원: (                      )명
-------------------------------	-------------------------------

3. 귀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주거지역(아파트, 주택 등)                      ② 상업지역                      ③ 공단지역  
 ④ 산업단지 지역                      ⑤ 기타(                      )

## II. 24시간보육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

1. 귀 어린이집이 24시간 보육을 운영하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1 가지 선택)

- ① 정부(시도 및 시군구청 등)의 참여 권장                      ② 원아 확보                      ③ 재원아 부모의 요구  
 ④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필요성 인식(야간근로부모,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등)                      ⑤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위탁 조건  
 ⑥ 공공형, 서울형 선정조건                      ⑦ 기타(                      )

2. 귀 어린이집에서 24시간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모두 몇 명입니까?

이용 아동수(2015년 8월 기준)		전체
영아: (                      )명	유아 이상: (                      )명	총 (                      )명

2-1. 24시간보육 아동의 가족 특성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하는 보기에 각각 인원 수를 적어 주십시오.

보기	맞벌이 야간근무	한부모 야간근무	한부모가족_취업모 (주간 근무)	한부모가족_취업부 (주간 근무)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                      )
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2. 24시간보육 이용 아동 중 24시간 보육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는 아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24시간 보육 아동 중 몇 명입니까?

- ① 있음 ☞ (                      )명                      ② 없음

3. 귀 어린이집은 24시간보육을 전용 보육실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기존 보육실에서 운영합니까?

- ① 24시간보육 전용 보육실                      ② 기존 보육실                      ③ 기타(                      )

4. 24시간보육 이용 아동 부모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아동과 접촉하거나 최소한 주 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야 합니다. 24시간보육 아동 부모가 부모로서의 보호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부분의 부모가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② 일부 부모가 전화, 어린이집 방문 등 아동과 접촉하지만 집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 있음 (☞ 문항 43-1로)  
 ③ 일부 부모는 전화 또는 어린이집 방문 조차 하지 않고 있음 (☞ 문항 4-1로)

4-1. (4번 질문에서 자녀를 집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 자녀를 집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 귀 어린이집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중복 응답 가능)

- ① 부모에게 자녀 데려가라고 연락하고, 부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돌본다  
 ② 부모에게 자녀 데려가라고 연락하고, 부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아동을 가정에 데려다 준다  
 ③ 부모에게 자녀 데려가라고 연락하고, 부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돌보다가 아동복지시설로 인계한다  
 ④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⑤ 기타(                      )



**V. 24시간보육 재정운영에 관한 질문**

1. 귀 어린이집은 24시간 보육료 수입이 월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 )원
2. 24시간보육 아동 중 부모 부담 보육료를 미납 또는 연체하는 아동이 있습니까?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보육료 미납한 경우가 있다면 미납 금액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① 미납 또는 연체 아동 있음 ☞ 미납 시 ( )원  
 ② 미납 또는 연체 아동 없음
3. 24시간보육 운영비 중 귀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에 가장 부담을 주는 비용은 무엇입니까? 2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각각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 )번	2순위 ( )번
----------	----------

- ① 인건비(24시간보육 교사 급여 또는 연장근무수당 등)    ② 급간식비(아침·저녁급간식비)  
 ③ 관리운영비(난방비 및 전기료 등)    ④ 교재교구 및 물품 구입비(휴지, 색종이 등)  
 ⑤ 기타( )

4. 현재 24시간보육 지정 시설 중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지급액의 80%,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월 지급액의 80%, 민간어린이집은 1인당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귀하는 다음의 24 시간보육 인건비 지원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적절	④ 매우 적절
1) 정부지원시설 월 지급액의 80%				
2) 직장어린이집 월 지급액의 80%(정부지원시설 인건비기준 적용 시설)				
3) 민간어린이집 1인당 월 120만원				

5. 24시간 보육의 경우 2명 이상을 보육할 경우에만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보육 아동이 1명으로 줄어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다면 몇 개월 정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2015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음 ☞ ( ) 개월 지원받지 못함    ② 없음
6. 귀 어린이집은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 24시보육 부모 보육료 또는 24시간 운영비(냉난방비, 야간근무교사 조식식비, 교재교구비 등) 등을 별도로 지원받고 있습니까? 2015년 8월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항목을 모두 v표 해 주십시오.  
 ① 부모 부담 추가 보육료     ② 냉난방비  
 ③ 야간근무교사 조식식비     ④ 시설 환경개선비(수면실 등 증개축, 개보수비)  
 ⑤ 교재교구비     ⑥ 기타( )  
 ⑦ 없음
7. 귀 어린이집은 24시간보육에 대한 지도점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적이 있다면 2014년 기준으로 몇 회 지도점검을 받았습니까?  
 ① 지도점검 받음 ☞ 2014년 기준 ( )회    ② 지도점검 받지 않음  
 ③ 비해당(2015년 24시간보육 지정 또는 2015년 신규 설치된 어린이집)

**VI. 기타**

1. 귀하는 24시간 보육이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기관장 조사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현황과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사관련 문의 :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김정민 연구원(02-398-7757, cjdwnsk@kicce.re.kr)

기관명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응답자 명	
기관 유형	① 국공립 ⑤ 가정	② 사회복지법인 ⑥ 직장	③ 법인단체 ⑦ 부모협동 ④ 민간개인 ⑧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번호		지역규모	① 특광역시의 동    ② 시도의 동 ③ 특광역시 또는 시도의 읍면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교사 조사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현황과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사관련 문의 :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김정민 연구원(02-398-7757, cjdwnsk@kicce.re.kr)

기관명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응답자 명	
소속기관 유형	① 국공립 ⑤ 가정	② 사회복지법인 ⑥ 직장	③ 법인단체 ④ 민간개인 ⑦ 부모협동 ⑧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번호		지역규모	① 특광역시외의 동 ② 시도의 동 ③ 특광역시 또는 시도의 읍면





8. 귀하는 시간제보육 담당업무에 대해 근무만족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① 매우 불만	② 불만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 근로 환경					
2) 업무 강도					
3) 급여 및 처우					

9. 귀하는 시간제보육 담당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불만	② 불만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 교사 수당 18만원					
2)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7만원					

10. 귀하는 시간제보육 이용자가 적거나 없는 경우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십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부담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부담됨                      ⑤ 매우 부담됨

11. 귀하는 평일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휴계시간을 1일 평균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                      )시간 (                      )분 (☞ 휴계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문항 14-1로 ↓)

11-1. (문항 11에서 휴계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가 휴계시간을 갖는 동안 시간제보육 아동은 주로 누가 보육합니까?

- ① 다른 시간제보육 교사                      ② 일반반 보육교사                      ③ 원장  
 ④ 시간제보육 관리자                      ⑤ 원장 또는 센터장                      ⑥ 지원인력  
 ⑦ 기타(                      )

12. 시간제보육을 담당하면서 다음의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려움 별로 없다	⑤ 전혀 어려움 없다
1) 시간제보육 부모와의 관계					
2) 시간제보육 영아의 적응					
3)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4) 시간제보육 환경 구성					
5)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					
6) 홍보					
7) 결제 및 확정 처리					

13. 귀 기관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접근성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 적합

**VI. 교사 인적사항**

※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운영에 관한 조사(교사)와 동일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기관조사(원장)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조사표 번호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방과후과정(에듀케어)과 엄마품 돌봄교실 운영 실태, 애로 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방과후과정(에듀케어)과 엄마품 돌봄교실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사내용 문의 :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배윤진 부연구위원(02-398-7745, byj@kicce.re.kr)  
김정민 연구원(02-398-7757, cjdwnsk@kicce.re.kr)

기관 주소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	---------------------







7. 귀 유치원이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 선택)
- ① 학부모 요구
  - ② 방과후과정반 교사의 업무 경감(휴게시간 확보 등)
  - ③ 원아 모집에 도움
  - ④ 유아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⑤ 국가지원금 만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 ⑥ 기타( )

**II-4. 방과후과정 담당교사에 관한 질문**

1. 귀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반을 담당하는 교사는 총 몇 명입니까?  
 (※ 기본 교육과정 교사가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총 ( ) 명
2. 귀 유치원은 방과후과정반 운영을 위해 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① 모든 방과후과정반 담당교사 별도 채용  
 ② 일부는 방과후과정반 담당교사 별도 채용, 나머지는 기본 교육과정 교사가 담당(☑ 문항 2-1로)  
 ③ 별도 채용없이 기본 교육과정 교사가 담당(☑ 문항 2-1로)  
 ④ 기본교육과정 교사가 주로 담당하고 보조교사(인력) 별도 채용(☑ 문항 2-1로)  
 ⑤ 기타( )
- 2-1. (문항 2에서 기본교육과정 교사가 연장 근무하는 경우) 기본 교육과정반 교사가 방과후과정반을 담당하는 경우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까? 지급한다면, 월 평균 얼마입니까?  
 ① 미지급                      ② 지급(월평균:                      원)                      ③ 기타( )
3. 귀 유치원은 방과후과정반 교사를 어떠한 형태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고용형태를 모두 √표 하고 교사 수를 각각 적어 주십시오.  
 ① 방과후 전담교사 ( )명                       ② 방과후 시간제 교사 ( )명  
 ③ 방과후 기간제 교사 ( )명                       ④ 보조교사 ( )명  
 ⑤ 유급 자원봉사자(예: 하모니 등) ( )명                       ⑥ 기타(무엇:                      )( )명
- 3-1. (문항 3에서 ①~④에 응답한 경우) 방과후과정 교사 수에 따라 교사자격과 근무시간, 월급 등을 적어 주십시오.

고용형태	교사 자격		근무시간		월급 (※ 세전금액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① 유치원 1급 정교사 ③ 보육교사1급 ⑤ 보육교사3급 ⑦ 기타( )	② 유치원 2급 정교사 ④ 보육교사2급 ⑥ 사회복지사 ⑧ 자격없음	출근시간 (※ 24시간 기준으로 기입)	퇴근시간 (※ 24시간 기준으로 기입)	
방과후 전담교사 1			시    분	시    분	만원
방과후 전담교사 2			시    분	시    분	만원
방과후 전담교사 3			시    분	시    분	만원
방과후 시간제 교사			시    분	시    분	만원
방과후 기간제 교사			시    분	시    분	만원
보조교사			시    분	시    분	만원

4. 귀하는 방과후과정반 담당교사 채용 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근무시간(오후시간대 근무)                      ② 낮은 급여 수준  
 ③ 자격기준에 적합한 지원자 적음                      ④ 혼합반 담당 경력있는 지원자 적음  
 ⑤ 기타( )
5. 귀 유치원은 방과후과정반 운영을 위해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외에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표 해 주십시오.(※ 방과후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추가로 채용한 인력만 기입합니다.)  
 ① 행정실무사                       ② 보조교사                       ③ 취사부 또는 조리사  
 ④ 유급 자원봉사자(예: 3세대하모니 등)                       ⑤ 기타( )                       ⑥ 기타( )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조사(교사)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조사표 번호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전국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에듀케어)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유치원 방과후과정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사내용 문의 :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배윤진 부연구위원(02-398-7745, byj@kicce.re.kr)  
 김정민 연구원(02-398-7757, cjdwnsk@kicce.re.kr)

기관 주소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	---------------------





3. 귀하는 방과후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학 및 컨설팅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필요하지 않음    ③ 필요함    ④ 매우 필요함

**IV.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근무여건 및 처우**

1. (문항 1-2에서 ① 방과후과정반 전담교사 응답한 경우) 귀하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을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2015년 6월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24시각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예: 오후 5시는 17시 00분)  
 평일 (            )시 (            )분 ~ (            )시 (            )분

2. (문항 1-2에서 ② 기본 교육과정 교사가 초과 근무하는 경우) 귀하는 정규 근무시간(8시간) 외에 평일 기준 평균 몇 시간 정도 초과근무 합니까?  
 1일 평균 (            )시간 초과근무

2-1. 초과 근무하는 경우, 귀하는 초과 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어떤 형태로 받으십니까? (1 가지 선택)

- ①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                      ②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하되 상한선을 둠  
 ③ 시간 계산없이 일정 금액 일괄 지급        ④ 기타(                      )        ⑤ 초과근무수당 없음

2-2. (문항 1-1에서 수당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는 시간외 수당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만족하지 않음    ③ 대체로 만족    ④ 매우 만족

3. (문항 1-2에서 ① 방과후과정반 전담교사 응답한 경우) 귀하가 방과후과정반을 운영하지 않는 나머지 근무 시간에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귀하가 시간이나 노력 등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업무 2가지만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번	2순위: (            )번
----------------------	----------------------

- ① 방과후과정반 수업 준비                      ② 기본교육과정반 수업 보조                      ③ 행정업무(공문, 전화상담 처리 등)  
 ④ 등하원 지도                                      ⑤ 특별활동 수업 담당                                      ⑥ 급간식 지도  
 ⑦ 등하원 차량지도                                      ⑧ 도서실 등 부속시설 운영 관리                                      ⑨ 기타(                      )

4. 귀하가 담당하는 방과후과정반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이 있습니까?

- ① 있음(☑ 문항 4-1로)                                      ② 없음(☑ 문항 5로)

4-1. (문항 4에서 보조인력이 있는 경우) 방과후과정반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은 누구이며, 각각 몇 명인지 인원 수를 적어 주십시오.(※ 보조인력이 없는 칸은 비워 두십시오.)

1) 보조교사	2) 3세대 하모니	3) 자원봉사자	4) 실습생	5) 인턴	6) 기타(            )
명	명	명	명	명	명

5. (문항 1-2에서 ① 방과후과정반 전담교사 응답한 경우) 귀하의 현 고용형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정규직(☑ 문항 5-1로)    ② 계약직(또는 기간제)(☑ 문항 5-2로)    ③ 시간제    ④ 기타(                      )

5-1. 귀하는 방과후과정반 경력을 교사경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 ① 교사경력 인정(☑ 문항 5-2로)                                      ② 교사경력 인정 안됨

5-2. (문항 5-1에서 경력 인정받는 경우) 귀하는 정교사와 동일 수준으로 경력을 인정받고 있습니까? 정교사 교사경력을 100%로 볼 때 어느 정도 경력을 인정받는지 백분율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



4. 귀하가 최초 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육기관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보육교사 교육원      ② 전문대(2, 3년제)      ③ 4년제 대학교      ④ 대학원

5. 귀하가 취득한 교사 자격은 무엇입니까?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 각각에 대해 상위자격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유치원 교사	① 유치원 2급 정교사	② 유치원 1급 정교사	③ 원감	④ 원장	⑤ 없음
2) 보육교사	① 3급 보육교사	② 2급 보육교사	③ 1급 보육교사	④ 원장	⑤ 없음

6. 귀하가 이 유치원에 재직하는 기간은 총 몇 개월입니까?(※ 재직기간을 개월단위로 환산하여 적어주십시오)  
총 \_\_\_\_\_개월

7. 귀하의 총 교사 경력과 방과후과정 교사 경력은 각각 몇 입니까?

(※ 총 교사경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경력을 모두 합산한 후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적어주십시오)

교사경력: 총 _____개월	방과후과정 교사 경력: 총 _____개월
-----------------	------------------------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5-1-2. (문항 5에서 운영한다고 응답한 경우) 1일 평균 몇 명의 유아가 돌봄교실에 참여합니까?

1) 휴업일 (※ 2015년 6월 기준) 1일 평균 ( )명	2) 토요일 (※ 2015년 6월 한달 기준) 1일 평균 ( )명	3) 방학기간(※ 2015년 1월 겨울방학 기준) (※ 2015년 1월 이후 개원한 유치원 기재하지 않음) 1일 평균 ( )명
---	--	--

5-2. (문항 5에서 '토요일'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토요일에 문 여는 시각과 문 닫는 시각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시 ( )분부터 ( )시 ( )분 까지

5-3. (문항 5에서 '토요일' 미운영하는 경우) 귀 유치원이 토요일에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 선택)

- ① 수요(토요일 등원 유아)가 없어서
- ② 수요 있으나 인원 적어서 인근 협력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으로 이용 유도
- ③ 기타( )

6. 돌봄교실도 방학이 있습니까? 방학이 있다면 몇 일입니까?(※ 2015년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응답)

- ① 방학 없음
- ② 방학 있음 ( ) 일

## II-2. 온종일 돌봄교실 인력 운영

1. 귀 유치원에서 온종일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강사는 모두 몇 명입니까?(※ 기본교육과정 교사 또는 방과후과정반 담당교사가 근무시간 연장하여 돌봄교실 담당하는 경우도 모두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총 ( )명

2. 귀 유치원은 온종일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교사를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 ① 돌봄교실 담당 돌봄강사 모두 별도 채용
- ② 일부만 별도 채용, 나머지 인원 방과후과정반 교사 연장 근무(☑ 문항 2-1로)
- ③ 일부만 별도 채용, 나머지 인원 기본 교육과정 교사 당직 근무(☑ 문항 2-2로)
- ④ 일부만 별도 채용, 나머지 인원 방과후과정반과 기본 교육과정 교사 연장/당직 근무(☑ 문항 2-1, 2-2로)
- ⑤ 별도 채용없이 방과후과정반 또는 기본 교육과정 교사 연장/당직 근무(☑ 문항 2-1, 2-2로)
- ⑥ 기타( )

2-1. (문항 2에서 방과후과정반 교사가 연장 근무하는 경우) 방과후과정반 교사에게 연장 근무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까? 지급한다면, 월평균 얼마입니까?

- ① 미지급
- ② 지급(얼마: 월평균 )원
- ③ 기타( )

2-2. (문항 2에서 기본교육과정 교사가 연장 근무하는 경우) 기본교육과정반 교사에게 연장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까? 지급한다면, 월평균 얼마입니까?

- ① 미지급
- ② 지급(얼마: 월평균 )원
- ③ 기타( )

2-3. (문항 2의 ①~④ 응답한 경우) 귀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돌봄강사의 고용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 하고, 강사 수를 각각 적어 주십시오

- ① 돌봄 전담강사 ( )명
- ② 시간제 강사( )명
- ③ 기간제 강사 ( )명
- ④ 보조교사 ( )명
- ⑤ 유급 자원봉사자(예: 하모니 등) ( )명
- ⑥ 기타(무엇: ) ( )명

2-3-1. (문항 2-3에서 ①~②에 응답한 경우) 돌봄강사를 별도 채용한 경우 강사별로 교사자격과 근무시간, 월 급여 등을 각각 적어 주십시오.(※ 순환교대제 운영 시 6월 기준으로 기입해 주세요)

돌봄 강사 수	교사 자격		근무시간		월 급여 (※ 세전금액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① 유치원 1급 정교사 ③ 보육교사 1급 ⑤ 보육교사 3급 ⑦ 기타 ( )	② 유치원 2급 정교사 ④ 보육교사 2급 ⑥ 사회복지사 ⑧ 자격 없음	출근시각 (※ 24시각 기준으로 기입)	퇴근시각 (※ 24시각 기준으로 기입)	
돌봄 전담강사			시 분	시 분	만원
돌봄 전담강사			시 분	시 분	만원
단시간 강사			시 분	시 분	만원
기간제 강사			시 분	시 분	만원
보조교사			시 분	시 분	만원



## II-4. 기타 사항

1. 귀하는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이 귀 유치원의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되지 않음      ② 도움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1-1. (문항 1에서 '도움된다'고 응답한 경우)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이 어떤 점에서 유치원 운영에 가장 도움이 됩니까? (1가지 선택)

- ① 원아 모집      ② 유치원 재정 운영  
 ③ 부모의 유치원 만족도 향상      ④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  
 ⑤ 기타(      )

2.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기준(운영시간, 교사 유형, 교사자격, 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 등)이 상이합니다. 귀하는 공통된 돌봄교실 운영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⑤ 잘 모르겠음

3. 귀 유치원이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 가지만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번	2순위: (      )번
----------------	----------------

- ① 돌봄 강사 채용      ② 지원예산 감소로 인한 유치원 운영비 부담 가중  
 ③ 경직된 운영시간(시작시각과 종료시각)      ④ 유아 및 교사 안전문제  
 ⑤ (이용 유아수 고려하지 않은) 지역 내 유치원 동일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⑥ 교육청의 지나친 지도점검(예: 재원 유아수, 돌봄강사 근무 등의 확인 전화 등)  
 ⑦ 돌봄 서비스가 필요없는 유아의 이용 증가      ⑧ 기타(      )

4.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 가지만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번	2순위: (      )번
----------------	----------------

- ① 보조인력 지원      ② 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증액  
 ③ 운영 상의 효율성 및 융통성 제고(운영시간 등)      ④ 정부(교육청)와 유치원 간의 신뢰 회복  
 ⑤ 돌봄강사 자격기준 완화      ⑥ 돌봄서비스 이용 유아 선정기준 마련  
 ⑦ 돌봄강사 인건비 인상      ⑧ 유치원 규모, 이용 유아 수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원  
 ⑨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⑩ 시도 간 통일된 운영지침 마련(예산배분, 급여채용기준 등)  
 ⑪ 기타(      )

5. 시도마다 저녁돌봄 또는 온종일 돌봄교실 종료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밤 8 시에서 10 시까지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귀하는 돌봄교실을 몇 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4시각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예) 오후 10 시는 22 시 00 분  
 (      )시 (      )분 까지

## III. 원장 인적사항

※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조사(원장)와 동일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교사조사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조사표 번호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엄마표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돌봄교실 운영 실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엄마표 돌봄교실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사내용 문의 :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배윤진 부연구위원(02-398-7745, byj@kicce.re.kr)  
김정민 연구원(02-398-7757, cjdwnsk@kicce.re.kr)

기관 주소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	---------------------



6. 귀하가 돌봄교실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2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번	2순위: (                    )번
------------------------------	------------------------------

- ① 혼합연령 학급 구성에 따른 교육활동 계획 및 실행의 어려움                    ② 돌봄교실에 적합한 프로그램 부족
- ③ 기본교육과정, 방과후과정반과 중복되는 활동 피해야 하는 어려움                    ④ 돌봄교실용 교재교구 부족
- ⑤ 급간식 제공, 생활지도, 유아별 상이한 하원시간 등 다른 활동으로 인한 실행시간 부족
- ⑥ 보조인력 부족                    ⑦ 저녁 급식 준비 및 배식
- ⑧ 하원지도                    ⑨ 기타(                    )

7. 귀하는 엄마표 돌봄교실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2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번	2순위: (                    )번
------------------------------	------------------------------

- ① 돌봄 강사 근로조건 개선(계약직 및 시간제)                    ② 돌봄강사 인건비 현실화
- ③ 돌봄강사 전문성 향상                    ④ 보조인력 지원 확대
- ⑤ 교육청 간 통일된 운영 지침                    ⑥ 돌봄교실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 ⑦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 확대                    ⑧ 돌봄강사의 업무부담 경감
- ⑨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 제도화                    ⑩ 기타(                    )

8. (문항 1-2에서 ① 돌봄강사 응답한 경우) 귀하는 기본 교육과정 교사 또는 방과후과정 교사와 교육과정 운영이나 돌봄교실 이용 유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 ① 교사회                     ② 구두 전달
- ③ 일일 근무일지 또는 반별 기록지                     ④ 블로그 및 카페
- ⑤ SNS, 메신저 등                     ⑥ 기타(                    )
- 정보 공유하지 않음

8-1. (문항 8에서 1가지라도 공유한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는 기본 교육과정 교사 또는 방과후과정 교사와 정보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                    ② 부족                    ③ 대체로 충분                    ④ 매우 충분

9. 귀하는 돌봄교실 운영 관련 교사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 정도 참여하였습니까? (※ 2015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참여한 적 있음(☞ 2015년                    회) (☞ 문항 9-1로)                    ② 참여한 적 없음(☞ 문항 9-2로)

9-1. (문항 9에서 ①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가 참여한 교육의 주관기관은 어디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 ① 교육부                     ②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③ 공사립유치원 연합회                     ④ 기타(                    )

9-2. (문항 9에서 ② 참여한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 돌봄교실 관련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돌봄교실 관련 교사교육이 있는지 잘 몰라서                    ② 돌봄교실 관련 교사교육 자체가 없어서
- ③ 연수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④ 교육일정이 근무시간과 겹쳐서
- ⑤ 교육 수강인원이 마감되어서                    ⑥ 교육 신청기간을 놓쳐서
- ⑦ 대체교사를 지원받지 못해서                    ⑧ 교사 연수비가 없어서
- ⑨ 기관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⑩ 기타(                    )

10. 귀하가 담당하는 돌봄교실에 대해 장학 원내외 장학 멘토링 등 및 컨설팅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2015년에 받아 본 적이 있다면, 몇 회 받았습니까?

- ① 받아본 적 있음(총                    회)                    ② 받아본 적 없음

10-1. 귀하가 받은 장학 또는 컨설팅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교수-학습지도                    ② 생활지도                    ③ 교육계획안 작성                    ④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 ⑤ 안전관리 및 위급시 대처                    ⑥ 교재교구 제작                    ⑦ 기타(                    )









연구보고 2015-07

---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

**발행일** 2015년 11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 2269-9917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32-5 93330